

제 10 집 의 정 백 서

— 제 6대 전반기 —
(2014. 7. 1 ~ 2016. 6.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 최

북구 상징물

| 마크 및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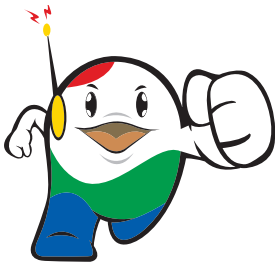


■ **녹색부분** : 산, 육지 - 자연

■ **주황색원** :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공단

■ **파랑부분** : 바다 - 자연

■ **의미** : 전체적으로 산과 바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연과 산업 중 어느 한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모습을 의미.



■ **컨셉** : 든든한 북구, 달리는 북구, 아이디어 북구

■ **형태** : 돌고래

■ **의미** : 강한 생명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젊고 높은 지능의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새로운 탄생,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

| 구 상징물



● 구화(區花) / 참나리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 구목(區木) / 느티나무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서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 구조(區鳥) / 산까치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발 간 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제6대 북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구의회는 전반기 2년간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7명의 의원님들이 삶의 터전 곳곳에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결집하여 민의가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간의 의회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제6대 북구의회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담은 「제10집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의정을 추진하고, 화합과 통합의 주민자치를 통한 선진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전문성 제고, 경쟁력 있는 의회 운영,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19만 북구 주민 모두가 풍요와 행복, 그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자료수집과 편찬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료(史料)로서의 역할은 물론 주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의회운영 모델을 정립하는데 소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축 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을 19만 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6대 북구의회를 개원한 이래,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현장 의정활동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의정백서」가 제6대 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역사적 자료로서 향후 의정활동 지침서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제6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제6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 현황

의 장 단

(재임기간 : 2014. 7. 1 ~ 2016. 6. 30)

의 장



이 수 선

부 의 장



강 진 희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2014. 7. 1)

제6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 현황

성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안 승 찬 가 선거구 (농소1동 · 강동동 · 송정동)	■ 학 력 - 연산초 · 동래중 · 브니엘고 졸업 - 울산대학교 자연과학대 졸업 ■ 경 력 -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 호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역임 - 송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역임 - 울산청년회(새날여는 청년회) 회장 역임 - 북구주민회 창립 초대회장 역임 - 울산 북구 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 역임 - 엄마손 도시락 배달봉사 초대단장 역임 -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 역임 -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위원 역임 - 국회의원 보좌관 역임 현) '미중말' 가족봉사단 회장 현) 북구주민회 참사랑봉사대 고문(초대대장 역임) 현)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북구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현) 도서관친구들 회원 현) 북구 주민회 줌마행복대학 학장 현) 화봉고등학교 운영위원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65 103동 205호 (화봉동, 대우아파트) (E-mail) asc1963@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an-jangggun/ HP : 010-6587-1287
 이 상 욱 가 선거구 (농소1동 · 강동동 · 송정동)	■ 학 력 - 농소초 · 농소중 · 울산고 졸업 - 동의공업전문대학 졸업 ■ 경 력 - 효성 바스프 재직 - 동부 한농화학 재직 - 울산고등학교 24회 동기회 회장 역임 - 농소1동 통정회장 역임 -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 역임 -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역임 현) 농소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 울산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19(호계동) ☎ 282-1069 (E-mail) sy23622@hanmail.net HP : 010-5535-2362
 이 수 선 나 선거구 (농소2동 · 농소3동)	■ 학 력 - 농서초 · 농소중 · 울산고 졸업 - 울산과학대학 토목과 졸업/영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경 력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초대단장 역임 - 농소농협이사 역임 - 새누리당 중앙위원 역임 - 새누리당 18대 대통령선거 북구 총괄선대본부장 역임 - 새누리당 울산광역시 연수위원회 위원장 역임 - 전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달천고등학교 초대 · 2대 운영위원장 역임 -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역임 2015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트 약속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역임 -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현) 새누리당 전국위원 현) 농서초 · 농소중 · 울산고 총동창회 부회장 현) 민주평통 북구지회 수석 부회장 현) 새누리당 울산시당 부대변인 현) 울산 강북교육발전협의회 위원 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천국길 131(천국동) ☎ 295-1929 Fax 281-1929 (E-mail) lss1929@naver.com HP : 010-2833-1929

성 명	학 력 및 경 력	주 소 · 전 화
 윤 치 용 나 선거구 (농소2동 · 농소3동)	■ 학 력 · 화랑초 · 경주중 · 경주공고 졸업 · 서라벌대학 졸업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재학 ■ 경 력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 상무집행위원 역임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교육위원 역임 ·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 초대회장 역임 · 쌍용아진 2단지 입주자대표 회장 역임 · 2013년 제5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 '2013 지방의원 매니페스트 약속대상' 수상 · 동천초 · 천곡중 · 동천고 운영위원장 역임 ·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역임 · (현) 호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 북구주민회 운영위원 · (현) 농소3동 자율방범대원 자문위원,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 회원 · (현)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 고문 · (현) 전국아파트연합회 울산지부 북구지회 자문 · (현)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5 214동 204호 (상안동, 쌍용아진아파트) ☎ 292-7321 (E-mail) ycy7321@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ycy7321 HP : 010-2299-7321
 강 진 희 다 선거구 (효문동 · 양정동 · 염포동)	■ 학 력 · 수암초 · 태화여중 · 울산여고 졸업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경 력 · 동구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역임 · 울산 상담소 · 시설협의회 부회장 역임 · 울산학교성폭력추방대책위 집행위원장 역임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명예감시관 역임 · 여성가족부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예방 강사 역임 ·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 (현) 양정 · 염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 위원장 · (현) '명존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문위원 · (현) 효정중학교 학교운영위원 · (현) 울산한부모가족센터 자문위원 · (현)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현) 울산 북구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 (현) 울산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장 · (현) 울산 북구 아동 · 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 · (현) 울산 북구 노동역사박물관 운영위원 · (현)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 106동 401호 (염포동, 성원상떼빌아파트) ☎ 288-4745 (E-mail) greenjin70@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greenjin70 HP : 010-8610-4748
 백 현 조 다 선거구 (효문동 · 양정동 · 염포동)	■ 학 력 · 효문초 · 제일중 · 경주문화고 졸업 · 대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경 력 · 양정동 주민자치위원 역임 · 양정동 선거관리위원 역임 · 양정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역임 · 북구 축구연합회 사무국장 역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수행팀장 역임 · 제18대 대통령선거 북구지역 상황실장 역임 · 박대동 국회의원 비서관 역임 · 새누리당 북구 양정동협의회 회장 역임 · 효문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역임 · 새누리당 북구 동협의회 간사 역임 · (현)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현)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379(양정동) ☎ 287-6822 (E-mail) bh6605@hanmail.net HP : 010-3801-8364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 학 력 • 동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사회복지사 석사) 졸업 ■ 경 력 • 화봉유치원 원장 역임 • 울산광역시 사립유치원연합회 북구회장 역임 • 울산중부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 송정동 주민자치위원장 역임 • 울산 태연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울산 북구 문화원 이사 역임 • 울산 북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역임 • 울산광역시 체육회 이사 역임 • 울산광역시 교육청 명예감시관 역임 •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회 회장 역임 • 화봉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협의회 수석부회장 역임 • 현)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 이사 • 현)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4길 9 401호(연암동) ☎ 287-1211 (E-mail) kmk20550303@nate.com HP : 010-3446-2002
정 복 금		
비례대표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6대 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원구성 (2014. 7. 1)



재활용선별장 자원봉사활동 (2014. 7. 18)



Ulsan Bukgu Council

Photo Gallery



의정역량강화 특별연수 (2014. 7. 29)



조례입법연구회 (2014. 8. 18)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매곡신천여성회 주관 어린이 북구의회 견학 (2014. 8. 19)



오토밸리로 2공구 사업 추진 현장방문 (2014. 10. 8)



Ulsan Bukgu Council

Photo Gallery



제1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4. 11. 2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 11 .24)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부산 연제구의회 북구의회 방문 (2015. 3. 9)



산하해변 자원봉사활동 (2015. 3. 13)



Ulsan Bukgu Council

Photo Gallery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2015. 4. 13)



북구의회 제6대 의원 기념식수 (2015. 4. 21)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구축 사업 현장방문 (2015. 4. 28)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사업 현장방문 (2015. 4. 28)



Ulsan Bukgu Council

Photo Gallery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개관식 (2015. 6. 4)



어르신 행복식당 자원봉사활동 (2015. 6. 29)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옥동~농소간 도로공사 현장방문 (2015. 7. 22)



경주시의회와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2015. 7. 29)



Ulsan Bukgu Council

Photo Gallery



매곡초등학교 자치의회 임원 견학 (2015. 8. 20)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체험 봉사활동 (2015. 9. 18)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울산장애인복지센터 추석 위문품 전달 (2015. 9. 21)



중국 비성시 대표단 북구의회 방문 (2015. 11. 5)



Ulsan Bukgu Council

Photo Gallery



2016년도 예산안 종합 심의 · 의결 (2015. 12. 16)



무릉산 환경정비 봉사활동 (2015. 12. 22)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6.25 참전유공자 선양비 준공식 (2015. 12. 22)



2015년도 북구의회 종무식 (2015. 12. 24)



Ulsan Bukgu Council

Photo Gallery



북구의회 의원 및 의회공무원 특별연수 (2016. 1. 27)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2016. 2. 3)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매곡도서관 기공식 (2016. 4. 27)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2016. 5. 2)



Ulsan Bukgu Council

Photo Gallery



북구 어린이 큰잔치 (2016. 5. 5)



울산동부경찰서 북구의회 초청 치안정책 설명회 (2016. 5. 10)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59회 북구의회 임시회 (2016. 5. 10)



봄꽃뜨레 이야기 개관식 (2016. 5. 11)



Ulsan Bukgu Council

Photo Gallery



경주시의회 문화교류 초청 행사 (2016. 5. 13)



제12회 울산쇠부리축제 개막식 (2016. 5. 13)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2016. 5. 23)



제5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2016. 5. 28)



Ulsan Bukgu Council

Photo Gallery



북구의회 선진지견학 (2016. 5. 31)



제16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6. 6. 10)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쇠부리체육센터 신축공사 사업 현장방문 (2016. 6. 23)



송정택지지구 LH공사 현장사무실 방문 (2016. 6. 23)

목 차

- 발간사
- 축 사
- 제6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 현황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43
제2절 의회연혁	45
제3절 의회 일반현황	47
1. 제6대 전반기 의회 원구성	47
2. 의회기구	48
3. 의원현황(의원정수, 직업, 학력, 연령, 성별)	48
4. 의회예산(당초)현황	49
5. 의사당 시설현황	50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50
7. 의회의 권한	51
8. 의회의 역할	52
제4절 구정 기본현황	53
1. 지역여건	53
2. 구정현황	53
3. 구민생활지표	54
4. 동별 인구·면적 현황	56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	57

제2장 의회 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61
1. 의회역대 집회현황	61
2. 연도별 집회현황	62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63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64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65

제3장 제6대 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47회 임시회	73
1. 개회이유	73
2. 의사일정	73
제2절 제148회 임시회	74
1. 개회이유	74
2. 개 회 사	74
3. 의사일정	76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77
제3절 제149회 임시회	80
1. 개회이유	80
2. 개 회 사	80
3. 의사일정	81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83

제4절 제150회 제1차 정례회	87
1. 개회이유	87
2. 개 회 사	87
3. 의사일정	89
제5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92
1. 개회이유	92
2. 개 회 사	94
3. 의사일정	95
4.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108
제6절 제152회 임시회	145
1. 개회이유	145
2. 개 회 사	145
3. 의사일정	147
4.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149
제7절 제153회 임시회	156
1. 개회이유	156
2. 개 회 사	157
3. 의사일정	158
4.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161
제8절 제154회 제1차 정례회	180
1. 개회이유	180
2. 개 회 사	181
3. 의사일정	182
4.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186

제9절 제155회 임시회	198
1. 개최이유	198
2. 개 회 사	198
3. 의사일정	200
4.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203
제10절 제156회 임시회	208
1. 개최이유	208
2. 개 회 사	209
3. 의사일정	209
4.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210
제11절 제157회 제2차 정례회	221
1. 개최이유	221
2. 개 회 사	222
3. 의사일정	224
4.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228
제12절 제158회 임시회	252
1. 개최이유	252
2. 개 회 사	253
3. 의사일정	254
4.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257
제13절 제159회 임시회	265
1. 개최이유	265
2. 개 회 사	267
3. 의사일정	268
4.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272

제14절 제160회 제1차 정례회	304
1. 개회이유	304
2. 개 회 사	304
3. 의사일정	306
4.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308
제15절 제161회 임시회	310
1. 개회이유	310
2. 개 회 사	310
3. 의사일정	310

제4장 예산 · 결산심의사항

제 1절 201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3
제 2절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17
제 3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
제 4절 2015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322
제 5절 2014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28
제 6절 201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2
제 7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36
제 8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40
제 9절 2015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42
제10절 2016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346
제11절 2015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52
제12절 201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56
제13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61
제14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5

제5장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369
1. 감사개요	369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370
3. 행정사무감사 일정	372
4. 감사자료 제출 요구	373
5.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373
6. 증인 선서 방식	373
7. 행정사항	374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375
제2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413
1. 감사의 목적	413
2. 근거	413
3. 감사기간	413
4. 감사대상 기관	413
5. 감사실시 경과	413
6. 감사결과	416
제3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445
제4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47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447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44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489
1. 감사개요	489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490
3. 행정사무감사 일정	492
4. 감사자료 제출 요구	493
5.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493
6. 증인 선서 방식	494
7. 행정사항	494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495
 제6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534
1. 감사의 목적	534
2. 근거	534
3. 감사기간	534
4. 감사대상 기관	534
5. 감사실시 경과	534
6. 감사결과	537
 제7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568
 제8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70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570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571

제6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결의안	623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633
제3절 5분 자유발언	659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720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735
제6절 의정활동일지	756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781
2. 초대의원 명단	783
3. 초대의원 사진	784
4. 제2대 의원 명단	785
5. 제2대 의원 사진	786
6. 제3대 의원 명단	787
7. 제3대 의원 사진	788
8. 제4대 의원 명단	789
9. 제4대 의원 사진	790
10. 제5대 의원 명단	791
11. 제5대 의원 사진	792
12.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 이전)	793
13. 역대 구청장 명단	794
14.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794
15. 역대 전문위원 명단	795



• 제 6 대 전 반 기 의 정 백 서 •

제 1 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제2절 의회연혁

제3절 의회 일반현황

제4절 구정 기본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홍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 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 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 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하고 울산면, 사항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편입)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농소·강동면→울주군 편입)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 실시
(2구 1출장소 40개동, 중·남구)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 설치
- 1991. 1. 1 :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 도·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과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확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 설치<신설> → 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 “광주광역시 북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 9개동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동·효문동 → 효문동(8개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차 구조조정 지침>
- 2001. 6. 1 : 청사 소재지 변경
(남구 신정3동 585-9→북구 연암동 1004-1)



제2절 의회연혁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1952. 4. 25 : 초대 읍·면의원 선거(56명)
- 1956. 8. 8 : 제2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1960. 12. 19 : 제3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1961. 9. 1 : 울산읍·면의원 해산

□ 울산시 승격 이후

- 1991. 3. 26 : 울산시의회의원 선거(50명)
- 1991. 4. 15 :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
 - 임기 : '91. 4. 15 ~ '95. 6. 30
- 1992. 7. 12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중·남·동구 각 1명)
- 1993. 7. 10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동구 1명)

□ 울산시·군 통합 이후

- 1995. 1. 10 : 울산시·군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5. 7. 11 :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60명)
 - 임기 : '95. 7. 1 ~ '98. 6. 30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97. 7. 15 ~ '98. 6. 30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98. 7. 1 ~ 2002. 6. 30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02. 7. 1 ~ 2006. 6. 30
- 2006. 5. 31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06. 7. 1 ~ 2010. 6. 30
- 2010. 6. 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제3절 의회 일반현황

1. 제6대 전반기 의회 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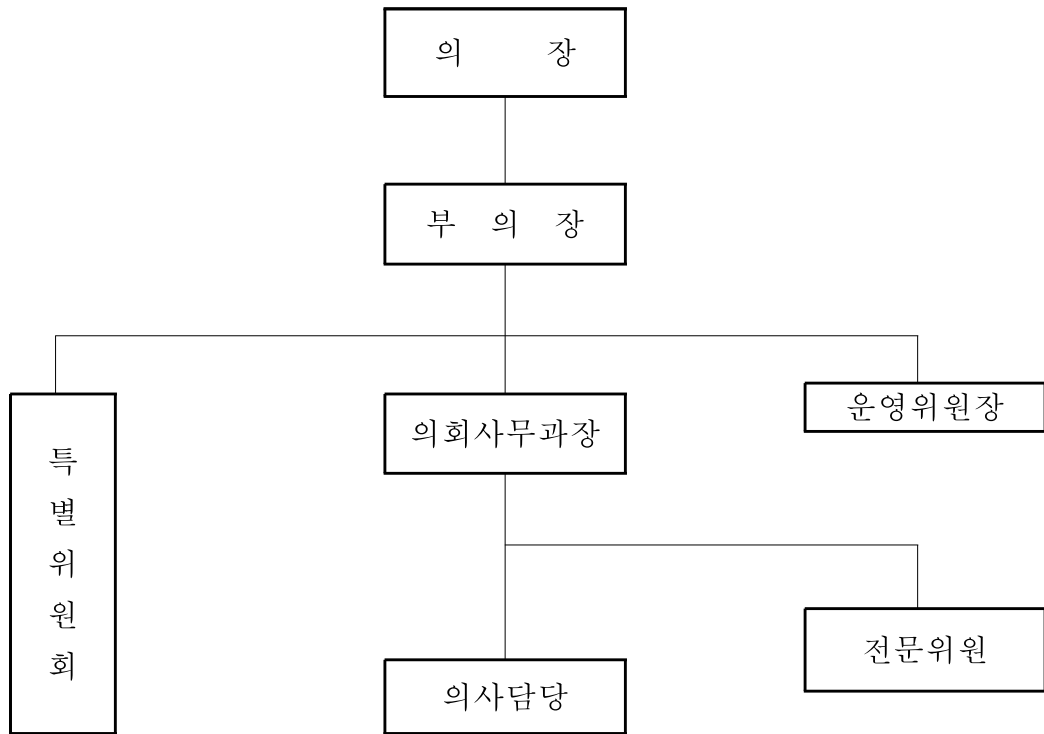
○ 의장단 선거

2014년 7월 1일 10:00에 개최된 제14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7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수선 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이수선 의원, 부의장에 강진희 의원을 선출하였음.

○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 : 7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 총 투표수 7표 중 이수선 의원이 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음.
- 총 투표수 7표 중 강진희 의원이 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

2. 의회기구



3. 의원현황

□ 의원정수

계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비례대표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3동	효문·양정·염포동	
7	2	2	2	1

□ 직업별

직업별 의원수	농 업	상 업	회사원	기 타	비 고
7				7	

□ 학력별

학력별 의원수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대학원졸	기타
7					6	1	

□ 연령별

연령별 의원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			3	3	1

□ 성 별

의 원 수	계	남	여	비고
7	7	5	2	

4. 의회예산(당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행정운영경비 (의사운영)
2007년도	949,808	315,442	634,366
2008년도	1,190,896	579,370	611,526
2009년도	1,287,155	664,987	622,168
2010년도	1,227,266	596,134	631,132
2011년도	1,125,438	499,923	625,515
2012년도	1,183,542	505,561	677,981
2013년도	1,200,978	501,063	699,915
2014년도	1,249,983	545,085	704,898
2015년도	1,281,039	540,605	740,434
2016년도	1,347,643	555,035	792,608

5. 의사당 시설현황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면적 : 북구청 5층 1,174.55㎡ (355.30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평)	비 고
본 회 의 장	211.23(63.90)	
방 청 객 실	60.23(18.22)	
소 회 의 실	108.00(32.67)	
의 장 실	70.47(21.32)	
부 의 장 실	60.70(18.36)	
의 원 사 무 실	201.05(60.82)	1인실 5개
다 목 적 실	129.00(39.02)	
의 회 사 무 과	102.85(31.11)	
전 문 위 원 실	51.43(15.56)	
방 송 실 등 6 실	179.59(54.33)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직위 및 직급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3	13	
5급(과 장)	1	1	
5급(전문위원)	1	1	
6급(의사담당)	1	1	
6급(전문위원)	1	1	
7급	4	5	행정4, 속기1
8급	4	4	행정1, 통신1, 속기1, 운전1
9급	1	0	

7. 의회의 권한

○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으로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음.

○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

(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 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8.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주민 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제4절 구정 기본현황

1. 지역여건

- 주거, 공단, 해양관광·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기능적 구분
- 주민생활 및 의식이 도시·농촌·어촌적 요소 공존
- 도·농 복합적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존재

2. 구정현황(2016. 6. 30. 현재)

□ 면 적

- 행정구역 ----- 157.32km²
- 도시계획구역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보전	생산	계획	
157.32	120.54	12.95	1.08	11.01	95.50	6.66	4.01	1.49	1.16	30.12

※ 개발제한구역 76.30km²(48.5%)

□ 인 구

가 구	총 인 구 수			외 국 인 수 등 록 인 수
	계	남	여	
68,807	193,481	100,165	93,316	2,577

□ 행정조직

○ 기 구

구 분	본 청	의 회	보건소	동
현 황	3국 1실 18과	1과 1전문위원	1소 1과	8개동

○ 공 무 원

(정원/현원)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553명/537명	419명/407명	13명/13명	38명/37명	83명/80명

○ 예산(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2014년도	206,235	204,616	1,620	35.7%
2015년도	223,756	222,540	1,215	34.89%
2016년도	246,550	245,233	1,317	33.59%

3. 구민생활지표(2016. 6. 30. 현재)

□ 보건복지

식 품 점 객	공중 위생	의료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명)						생활폐기물 발생량(일평균)		1일분뇨 수거량
		기관	병상수	소계	일반	시설	조건부	특 례		1인1일 발생량	총발생량	
2,329	514	184	1,227	1,759 2,708	1,579 2,528	180 180	106 233	122 179		0.23kg	7,690ton	24.61ton

□ 지역경제

경 지 면 적				기 업 체		노조설립업체	
소 계	전	답	과수원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조합원수
1,924ha	738ha	1,092ha	94ha	900개	47,502명	19개	28,691명

□ 도시건설

도 로				주 택	상 수 도			하 수 도		
연장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률	1일 급수량	1인당1일 급수량	보급률	총인구	보급인구	보급률
571km	36.8%	236km	97.41%	68,617 102.1%	62,577 ton/일	323.4ℓ	99.0%	193,481명	190,729명	98.6%

□ 교 통

자 동 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94,636	80,396	2,863	10,965	412

□ 교 육

(개소/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43개소 27,579명	19 13,108	13 7,035	11 7,436	0 0	2 277

4. 동별 인구·면적현황(2016. 6. 30. 현재)

구 분	면 적 (km ²)	법정동	인구수 (명)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32	27	193,481	
농소1동	14.91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신천동 (2개동중복)	30,517	농소라는 말은 고려 태조때의 박윤웅공의 식읍지(食邑地)인데서 생긴 말이며, 아파트단지가 많고 경주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채래시장 및 신개발주거지역 임
농소2동	11.42	중산동 매곡동 신천동 (2개동중복)	34,245	
농소3동	31.07	가대동 상안동 천곡동 달천동 시례동	42,713	
강동동	60.71	무룡동 구유동 정자동 신명동 대안동 당현동 신하동 어물동	11,375	강동지역은 신라초에 울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지역 이며 국제 규격의 강동축구장 이 있음
효문동	16.21	명촌동 진장동 연암동 효문동	29,083	효문은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이라 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많은 준 공업지역 임
송정동	10.78	화봉동 송정동	21,103	송정은 큰 노송들이 많이 우거져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 요충지역 임
양정동	6.68	양정동	12,278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소재해 있고, 7,800여평의 양정 생활체육공원 이 있음.
염포동	5.54	염포동	12,167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군 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 부산포와 함께 3포의 하나 였으며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회사가 소재하고 있음.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2016. 6. 30. 현재)

□ 인구·면적현황

구 분	면 적(km ²)	인 구 (명)			외 국 인 등록수(명)
		계	남	여	
계	1057.32	1,173,143	604,551	568,592	24,878
중 구	37.00	243,474	124,325	119,149	2,472
남 구	72.20	341,979	174,644	167,335	5,609
동 구	35.80	174,984	92,601	82,383	5,546
북 구	157.32	193,481	100,165	93,316	2,577
울주군	755.00	219,225	112,816	106,409	8,674

□ 재정규모현황(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울산광역시	3,234,398	2,407,507	826,891	63.8%
중 구	273,079	262,886	10,193	20.68%
남 구	365,737	348,953	16,784	38.86%
동 구	226,754	216,678	10,075	25.49%
북 구	246,550	245,233	1,317	33.59%
울 주 군	719,428	642,139	77,289	44.76%



•제6대 전반기 의정백서•

제2장

의회 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제1절 집회현황

1. 의회역대 집회현황

구 분	연 도	정 령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초대	계	1	35	9	25	10	60
	1997	1	35	4	11	5	46
	1998			5	14	5	14
제2대	계	6	140	36	184	42	324
	1998	1	35	6	31	7	66
	1999	1	35	11	45	12	80
	2000	2	35	8	45	10	80
	2001	2	35	9	45	11	80
	2002			2	18	2	18
제3대	계	8	152	29	168	37	320
	2002	2	35	5	27	7	62
	2003	2	35	8	45	10	80
	2004	2	34	8	46	10	80
	2005	2	48	5	29	7	77
	2006			3	21	3	21
제4대	계	8	184	22	170	30	354
	2006	2	40	3	12	5	52
	2007	2	44	5	31	7	75
	2008	2	50	6	50	8	100
	2009	2	50	6	51	8	101
	2010			2	26	2	26
제5대	계	8	197	21	191	29	388
	2010	2	50	5	46	7	96
	2011	2	50	3	32	5	82
	2012	2	50	6	45	8	95
	2013	2	47	5	46	7	93
	2014			2	22	2	22
제6대	계	5	112	10	89	15	201
	2014	2	48	3	18	5	66
	2015	2	49	4	42	6	91
	2016	1	15	3	29	4	44

2. 연도별 집회현황

연 도	정 려 회		임 시 회		합 계		법정회기일수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계	36	820	125	801	159	1,621	
1997	1	35	4	11	5	46	연 80일 (정기회 35일 이내)
1998	1	35	11	45	12	80	"
1999	1	35	11	45	12	80	"
2000	2	35	8	45	10	80	" (정례회 35일 이내)
2001	2	35	9	45	11	80	"
2002	2	35	7	45	9	80	"
2003	2	35	8	45	10	80	"
2004	2	34	8	46	10	80	"
2005	2	48	5	29	7	77	연 80일
2006	2	40	6	33	8	73	정례회 45일 이내, 임사회 매회기 15일 이내
2007	2	44	5	31	7	75	연 11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2008	2	50	6	50	8	100	"
2009	2	50	6	51	8	101	"
2010	2	50	5	46	7	96	"
2011	2	50	3	32	5	82	"
2012	2	50	6	45	8	95	연 10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2013	2	47	5	46	7	93	"
2014	2	48	5	40	5	88	"
2015	2	49	4	42	6	91	"
2016	1	15	3	29	4	44	"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회 기	회 별	소 집 요 구 인	집 회 기 간	일수
제147회	임시회	의회사무과장	2014. 7. 1.	1
제148회	임시회	백현조 외 2명	2014. 7. 10. ~ 7. 18.	9
제149회	임시회	이상육 외 2명	2014. 8. 28. ~ 9. 4.	8
제150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4. 9. 29. ~ 10. 13.	15
제151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4. 11. 20. ~ 12. 22.	33
제152회	임시회	안승찬 외 2명	2015. 1. 29. ~ 2. 11.	14
제153회	임시회	윤치용 외 2명	2015. 4. 20. ~ 5. 1.	12
제154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5. 7. 10. ~ 7. 24.	15
제155회	임시회	강진희 외 2명	2015. 9. 8. ~ 9. 21.	14
제156회	임시회	백현조 외 2명	2015. 10. 13. ~ 10. 14.	2
제157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5. 11. 20. ~ 12. 23.	34
제158회	임시회	정복금 외 2명	2016. 2. 17. ~ 2. 29.	13
제159회	임시회	이상육 외 2명	2016. 5. 10. ~ 5. 24.	15
제160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6. 6. 10. ~ 6. 24.	15
제161회	임시회	안승찬 외 2명	2016. 6. 29.	1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2014.7.1.~2016.6.30.) 2014~2016년도

회 수	기 간	일 수	계	예산 안	결 산	조폐 안	동의안 (승인)	건의 안	결의 안	청 원	보 고	질 문	기 타
합 계		204	232	8	3	129	12		4		7	4	64
소 계	2014년도	66	67	3	1	31	4		3		2	1	22
제147회	2014. 7. 1.	1	5										5
제148회	2014. 7.10.~ 7.18.	9	7			2			1		1		3
제149회	2014. 8.28.~ 9. 4.	8	7	1		1							5
제150회	2014. 9.29.~10.13.	15	10		1		1		2		1		5
제151회	2014.11.20.~12.22.	33	38	2		28	3					1	4
소 계	2015년도	91	100	4	1	58	6				2	2	27
제152회	2015. 1.29.~ 2.11.	14	11			5					1		5
제153회	2015. 4.20.~ 5. 1.	12	23	1		19							3
제154회	2015. 7.10.~ 7.24.	15	17		1	8	1				1	1	5
제155회	2015. 9. 8.~ 9.21.	14	12	1		4						1	6
제156회	2015.10.13.~10.14.	2	14			9	1						4
제157회	2015.11.20.~12.23.	34	23	2		13	4						4
소 계	2016년도	47	65	1	1	40	2		1		3	2	15
제158회	2016. 2.17.~ 2.29.	13	16			8					3	1	4
제159회	2016. 5.10.~ 5.24.	15	38	1		31	1		1			1	3
제160회	2016. 6.10.~ 6.24.	15	7		1	1	1						4
제161회	2016. 6.29.	1	4										4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회 별	집 회 요 구 자	집 회 기 간	회 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47회	의회사무 과장	2014. 7. 1.	1	○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 개원식
제148회	의원	2014. 7. 10. ~ 7. 18.	9	○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 결의안(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북구 유치를 염원하는 결의안) ○ 조례안 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제149회	의원	2014. 8. 28. ~ 9. 4.	8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조례안 1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베트남 안장성 룡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제150회	제1차 정례회	2014. 9. 29. ~ 10. 13.	15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 결의안 2건(부결) -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폐기 촉구 결의안 -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확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회 별	집 회 요 구 자	집 회 기 간	회 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51회	제2차 정례회	2014. 11. 20. ~ 12. 22.	33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조례안 28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 ○ 구정 질문 - 울산 북구 민선5대 구청장 공약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제152회	의 원	2015. 1. 29. ~ 2. 11.	14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5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 중국 산둥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 2020년 울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153회	의 원	2015. 4. 20. ~ 5. 1.	12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조례안 19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

회 별	집 회 요 구 자	집 회 기 간	회 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54회	제1차 정례회	2015. 7. 10. ~ 7. 24.	15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 조례안 8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 행정사무조사의 건 2건(부결) -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의 건 -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 구정질문의 건 - 울산 북구 구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제155회	의 원	2015. 9. 8. ~ 9. 21.	14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조례안 4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등 4건) ○ 구정질문의 건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156회	의 원	2015. 10. 13. ~ 10. 14.	2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조례안 9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

회 별	집 회 요 구 자	집 회 기 간	회 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57회	제2차 정례회	2015. 11. 20. ~ 12. 23.	34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출연 의결의 건 2건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조례안 1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제158회	의원	2016. 2. 17. ~ 2. 29.	13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1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조례안 8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 구정질문의 건 -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재생 사업, 계약직 공무원 선발에 대하여

회 별	집 회 요 구 자	집 회 기 간	회 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59회	의원	2016. 5. 10. ~ 5. 24.	15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구정질문의 건 - 시례새터 ~ 상안새터 도로개설 민원과 관련하여 ○ 조례안 31건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1건
제160회	제1차 정례회	2016. 6. 10. ~ 6. 24.	15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소로 3-248호선의 소로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조례안 1건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1회	임시회	2016. 6. 29.	1	○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 제6대 전반기 의정백서 •

제3장

제6대 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47회	임시회
	제2절	제148회	임시회
	제3절	제149회	임시회
제4절	제150회	제1차	정례회
제5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6절	제152회	임시회
	제7절	제153회	임시회
제8절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9절	제155회	임시회
	제10절	제156회	임시회
제11절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2절	제158회	임시회
	제13절	제159회	임시회
제14절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15절	제161회	임시회



제1절 제147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의회사무과장

나. 개회일시 : 2014. 7. 1.(화) 10:00

다. 회 기 : 2014. 7. 1.(1일간)

라. 부의안건

-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 제14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의 건
- 제14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제14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4. 7. 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4.7.1. (화) 10:00	1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2.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3. 제14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의 건 5. 제14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2절 제148회 임시회

1. 개회이유

- 가. 소집요구 : 백현조 의원 외 2명
- 나. 개회일시 : 2014. 7. 10.(목) 10:00
- 다. 회 기 : 2014. 7. 10. ~ 7. 18.(9일간)
- 라. 부의안건
 -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복금 외 2인 발의)
 -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북구 유치를 염원하는 결의안(강진희 의원 발의)
 -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출범한 제6대 북구 의회가 원 구성을 시작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의원 선

서를 통해 다짐했던 마음가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늘 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며 북구 주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일상 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는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중점 보고 하여 의원님들의 구정 파악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당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지역현안 및 구정업무를 조기에 파악하여 의정 활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번 임시회가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위한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19만 구민과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엔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3. 의사일정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4. 7. 10.~7. 18.(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4. 7. 10. (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윤치용 의원) 1.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북구 유치를 염원하는 결의안 (의안번호 제4호, 강진희 의원)	
2014. 7. 11. (금) 10:00	2	1.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2014. 7. 12. (토)		휴 회(공휴일)	
2014. 7. 13. (일)		휴 회(일요일)	
2014. 7. 14. (월) 10:00		<현장활동> ○ 해당 지역구 현장 활동	
2014. 7. 15. (화) 10:00	3	1.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계속》 ○ 총 무 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보 건 소	
2014. 7. 16. (수) 10:00	4	1.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4. 7. 17. (목) 10:00	5	1.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계속》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2014. 7. 18. (금) 10:00	6	1.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계속》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1 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 호, 건설도시국)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7. 2.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7. 18. (제148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 1. 28. 제정 공포되어 2014. 7. 29. 시행예정으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등 용어 및 명칭변경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행에 따른 용어 및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제16조)
· 문화예술, 지역 문화예술 → 지역문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문화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
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용어 및 명칭을 변경을 하
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
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등에 “문화예술진
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지역문화진흥법」
의 제정 취지에 맞게 “지역문화”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반영
함과 아울러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변경을 한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상위법령의 적용 및 용어, 명
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1. <u>문화예술</u> 의 창작과 보급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1. <u>지역문화</u> 의 창작과 보급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7. 2.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7. 18. (제148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 예
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4조)

【현행】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초과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상위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정(안 제14조)

【현행】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개정】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

-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하수개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변경,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징수 규정 신설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절 제149회 임시회

1. 개회이유

- 가. 소집요구 : 이상육 의원 외 2명
- 나. 개회일시 : 2014. 8. 28.(목) 10:00
- 다. 회 기 : 2014. 8. 28. ~ 9. 4.(8일간)
- 라. 부의안건
 -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 의원 외 2인 발의)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백현조 의원·이수선 의원)
 - 베트남 안장성 룡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
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구정 현안 파악,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수렴해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심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종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곧,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석맞이 종합대책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9만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3. 의사일정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4. 8. 28.~9. 4.(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4. 8. 28. (목) 10: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 5분 자유발언(안승찬 의원) 1.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호) - 제안설명(구 청 장) - 4.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 무 국 -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014. 8. 29. (금) 10:00	2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4. 8. 30. (토)		휴 회	
2014. 8. 31. (일)		휴 회	
2014. 9. 1. (월) 10:00	3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2014. 9. 2. (화) 10:00	4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홍보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4. 9. 3. (수) 10:00	5	1.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백현조의원·이수선의원 발의 - 총무국) 2. 베트남 안장성 룡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 (의안번호 제9호, 총무국)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북구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0호, 건설도시국) 4.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계수 조정	
2014. 9. 4. (목) 10:00	6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8. 20.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8. 28. (제14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8. 20. (백현조 · 이수선 의원)
- 심의일자 : 2014. 9. 4. (제14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북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지원시책 및 범위(안 제4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5조)
- 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안 제6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북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시책, 민간단체 등의 지원, 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전입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14년 7월말 현재 울산전체 445명 중 우리구가 162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정착지원과 관리가 요구되며,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기능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베트남 안장성 룡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의안번호 제9호, 총무국)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8. 20.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9. 3. (제14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외교부)의 추천을 받아 국제우호교류 추진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개발도상국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룡쑤엔시는 안장성의 성도로서 양 도시가 국제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교환 방문 및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공공의료분야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 구의 공공보건행정 소개 및 민간단체의 방문 등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양 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 체결로 양 도시의 관계를 격상하여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그간 추진상황 : 안건자료 참조
- 베트남 안장성 룡쑤엔시 방문 및 자매결연 체결
 - 방문기간 : 2014. 9. 15. ~ 9. 20.
 - 방문인원 : 8명 정도(집행부 및 의회)
 - 주요일정 : 룡쑤엔시와 자매결연 체결(9. 16.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 본 자매결연 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우리구가 베트남 안장성 룡쑤엔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룡쑤엔시를 방문하여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개발도상국으로서

1992년부터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룡쭈엔시는 안장성의 성도로서 호치민시~껀터~프놈펜으로 이어지는 경제구역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깐족, 호아족 등 4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의료시설과 큰 병원들이 있고,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창설하고 있는 도시임.

- 그동안 교류 추진상황을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외교부)의 추천을 받아 우호교류를 추진하게 되었고, 2012년 11월에 양도시가 국제 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교환방문 및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작년에는 공공의료분야 연수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민족, 다문화사회 이해 및 유대강화, 각종 연수 등 행정교류를 통한 우리구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강화,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추진을 위한 민간교류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자매결연 체결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절 제150회 제1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4. 9. 29.(월) 10:00

다. 회 기 : 2014. 9. 29. ~ 10. 13.(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치용 외 2인)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 건
(의장 제의)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폐기 촉구
결의안(윤치용 의원)
-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강진희 의원)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늘 구민과 함께하며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도시 복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월은 주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경로행사, 문화행사 등 많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는, 2013 회계연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써 집행기관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 속에서도 상호 존중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3. 의사일정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4. 9. 29. ~ 10. 13.(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29.(월) 10:00	1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호) - 제 안 설 명(총무국장) -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이상육 의원) 5.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30.(화) 10:00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10. 1.(수) 10:00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총 무 국(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10. 2.(목) 10:00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사회복지과)	
10. 3.(금)		휴 회	
10. 4.(토)		휴 회	
10. 5.(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6.(월) 10:00	5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10. 7.(화) 10:00	6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6호) (기획홍보실, 사회복지과,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농수산과)	
10. 8.(수) 10:00		<현장 방문>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 오토벨리 2구간 도로공사 현장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현장	
10. 9.(목)		휴 회	
10. 10.(금) 10:0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15호)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3호)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4호)	
10. 11.(토)		휴 회	
10. 12.(일)		휴 회	
10. 13.(월) 10:00	8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안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13.(월) 10:00	8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종합 심의의결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종합 심의의결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13.(월) 10:00	8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종합 심의의결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종합 심의의결 3.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6호, 윤치용 의원) 4.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7호, 강진희 의원)	



제5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4. 11. 20.(목) 10:00

다. 회 기 : 2014. 11. 20. ~ 12. 22.(33일간)

라. 부의안건

-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진희 외 2명)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구정질문의 건
 - 울산 북구 민선5대 구청장 공약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안승찬 의원)
- 행정사무감사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강진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육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강진희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향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9만 구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6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 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구민과 함께하며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년간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단편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것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종 안전 심의 시 의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여 19만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의 성원과 관심속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19만 북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3. 의사일정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4. 11. 20.~12. 22.(3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20.(목) 10: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 5분 자유발언(윤치용 의원) 1.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6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 울산 북구 민선5대 구청장 공약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21.(금) ~ 11. 29.(토)		행 정 사 무 감 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 붙임일정 참조)	
11. 30.(일)		휴 회	
12. 1.(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 건설도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강진회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기획홍보실) 8.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기획홍보실) 9.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기획홍보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기획홍보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안승찬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이상육의원 발의-의회사무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화)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강진희 의원 발의 - 총무국) 7.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총무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총무국) 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총무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 총무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향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보건소) 12.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보건소) 13.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이상육 의원 발의 - 보건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3.(수) 10:00	4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호, 총무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7호, 기획홍보실)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안번호 제18호, 보건소)	
12. 4.(목) 10:00	5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12. 5.(금) 10:00	6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2. 6.(토)		휴 회	
12. 7.(일)		휴 회	
12. 8.(월) 10:00	7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12. 9.(화) 10:00	8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2. 10.(수) 14:00	9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1.(목) 10:00	10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12. 12.(금) 10:00	11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12. 13.(토)		휴 회	
12. 14.(일)		휴 회	
12. 15.(월) 10:00	1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구청장) -	
12. 16.(화) 10:00	13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12. 17.(수) 10:00	14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8.(목) 10:00	15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 무 국 ○ 의회사무과	
12. 19.(금)	16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12. 20.(토)		휴 회	
12. 21.(일)		휴 회	
12. 22.(월) 10:00	17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안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 건설도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강진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기획홍보실) 8.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기획홍보실) 9.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기획홍보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기획홍보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안승찬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이상육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화)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강진희의원 발의 - 총무국) 7.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총무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총무국) 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총무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 총무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보건소) 12.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보건소) 13.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이상육의원 발의 - 보건소)	
12. 10(수) 14:00	9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건설도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 건설도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강진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기획홍보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기획홍보실) 1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기획홍보실) 12.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기획홍보실) 13.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안승찬의원 발의 - 기획홍보실)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이상육의원 발의-의회사무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화)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강진희의원 발의 - 총무국) 7.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총무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호, 총무국) 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총무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총무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총무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보건소) 13.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보건소) 14.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이상육의원 발의 - 보건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0.(수) 10:00	9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안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9.(화) 10:00	8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9.(화) 10:00	8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복지경제국)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안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5.(월) 10:00	1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구청장) -	
12. 16.(화) 10:00	13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12. 17.(수) 10:00	14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12. 18.(목) 10:00	15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 무 국 ○ 의회사무과	
12. 19.(금) 10:00	16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5.(월) 10:00	12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12. 16.(화) 10:00	13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구청장) -	
12. 17.(수) 10:00	14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12. 18.(목) 10:00	15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12. 19.(금)	16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 무 국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2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소하천 점용 취소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 소하천 점용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내용 변경(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 취소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소하천 점용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폐지이유

- 관련 법령인 「건축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옥상조경설치 등에 대하여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완화하는 사항만 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지방자치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부합되지 않고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법령인 「건축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완화하는 사항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부합되지 않고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과도한 규제 조항 및 타 법령과 중복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실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취소 사유 중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삭제(안 제11조)
- 손해보험 가입의무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영조물 공제 가입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과도한 규제 조항 및 타 법령과 중복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과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3. (강진희 · 안승찬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금지행위 (안 제1조 ~ 안 제3조)
- 책무,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시설장의 의무(안 제4조 ~ 안 제5조의 2)
- 교육, 홍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 안 제11조)
-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유사기능의 조례(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존치하여 기능중복 우려가 있으나, 최근 발생한 입양아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2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차차액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안 제5조 ~ 제8조)
-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 ‘소상공인 육성시책’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안 제4조)
-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0조)
-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안 제11조, 제12조)
- 고문변리사 자문지원, 기업단체 지원, 고용촉진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우리 구의 경우 920여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나 그간 지원 시책이 미비하였으므로, 향후 관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이 있어 성별영향평가 분석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 조례안임.

4) 심의결과 : 원안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분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 현행 북구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타 지역 거주 농업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조문 일부 정비(안 제2조, 제5조)
 -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 현행 북구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타 지역 거주 농업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조문 일부 정비(안 제2조, 제5조)
 -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4) 심의결과 : 원안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2014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하고, 향후 공무원 직종 개편 후 현행 기준 직급 불부합 개선 요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 증원 : 2명
 - 도시녹지와 분리에 따른 도시행정과 총괄업무 추진 : 행정 5급 +1
 - 교통과태료 징수업무 추진 인력 보강 : 행정8급 +1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34명 ⇒ 536명(증 2명)
- 일반직 계 : 532명 ⇒ 534명(증 2명)
 - 5급 계 : 31명 ⇒ 32명(증 1명)
 - 6급이하 계 : 496명 ⇒ 497명(증 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관련 법령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4) 심의결과 : 원안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민선 5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 단위 개편 : 1국 명칭 변경(총무국 → 행정지원국)

※ 직제순 : 행정지원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과 단위 개편

- 과 신설 : 안전정보과
- 과 분리 : 도시녹지과 →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 과 명칭변경
 - 주민참여과 → 자치행정과
 - 경제일자리과 → 창조경제과
 - 안전건설과 → 건설과
- 국 조정 : 농수산과(건설도시국 → 복지경제국)
- 과 통합 : 회계과 → 총무과

※ 국별 과 직제순

- 행정지원국 : 총무과 - 자치행정과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창조경제과 - 농수산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 건설도시국 : 건설과 - 안전정보과 - 도시행정과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 국·과 단위 분장사무 조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규정목표 실현을 위해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관련법령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4) 심의결과 : 원안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분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초과기준을 타 시·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향후 사이버위원회 개최를 고려하여 수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 변경 및 신설 (안 별표)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시 초과기준 변경
 - <현행> 회의시작 4시간 초과 시 → <개정>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 사이버위원회 심의 시 수당 지급 규정 신설: 회당 5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초과기준을 타시구 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향후 사이버위원회 개최를 고려하여 위원수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인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합되며, 현 실정을 감안하여 타 시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

□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의 보조대상, 예산편성, 성과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안 제4조 ~ 제5조)
 - 보조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12조)
 -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보조금관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안 제13조 ~ 제30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사업내역의 공시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제6조제2항의 경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 분석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임.
- 다만, 지난 11. 19.자로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개정되었으므로, 안 제5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 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하여 <u>안 전행정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안전행정부장관</u>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 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3. (안승찬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자치사무 민간위탁시 지방의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3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심사위원회 등(안 제5조~안 제8조)
-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9조~안 제10조)
- 책임의 소재, 사무처리 지원, 지휘·감독 등(안 제11조~안 제14조)

- 위탁사무의 감사, 재위탁 금지, 이의신청 등(안 제15조~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안승찬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 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마련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며,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의원들 간에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3. (이상육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분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14. 10. 30.)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월 2,139,160원에서 월 2,175,830원으로 개정함.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2014. 10. 30.에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 12. 11.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동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 12. 11.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폐지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 위주의 주민생활 불편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민원 처리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생활민원 처리분야 확대(안 제2조 및 제4조)
 -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불편민원까지 확대
- 운영 방법 개정(안 제5조)
 - 가사도움서비스 무료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민원 처리분야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 민원처리까지 확대·운영하기 위하

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생활민원 수혜대상을 확대 및 그 처리비용을 무료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의 규정(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3대학 입학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의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부여'라는 규정에 부합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친환경적, 창의적 가족중심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제3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이용시간, 강좌 등(안 제4조 ~ 제9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자원봉사자, 어린이자문단 운영(안 제10조 ~ 제11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친환경적, 창의적 가족중심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준공·운영을 앞두고 제정 필요성은 있으나,

조례안 제9조제3항 중 수강료에 대한 준용법규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수강료 징수 방법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수강료 징수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정이 필요함.

- 특히, 제11조에서 ‘성별, 장애정도별 균형을 고려한 어린이자문단을 구성·운영’ 하는 조문은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한 좋은 사례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강좌 운영 및 수강료) ① ~ ② (생략) ③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 「 <u>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 」을 준용한다.	제9조(강좌 운영 및 수강료) ① ~ ② (생략) ③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 「 <u>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u> 」를 준용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분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률을 인하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률 인하
 -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100분의 70 감면

(현행) 100분의 10 이상 → (개정) 100분의 5 이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강진희 · 윤치용 의원 대표발의)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 장애인체육 동호회, 사업의 종류 (안 제4조 ~ 안 제5조)
- 경비의 지원, 준용(안 제6조 ~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강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 체육동호회, 사업의 종류,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조례는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 지원 확대로 이동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2014. 1. 2.자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이동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동도서관 부분 삭제(안 제16조제1항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지원 확대에 2014. 1. 2.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이동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지원 확대에 이동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올해 초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함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된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미지급 교부금 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목 명칭변경(안 제4조)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주민세(종업원분)
-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 개선(안 제16조)
 - 공탁 → 구금고에 예탁
- 기타 용어 정비(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된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일부개정(2014. 1. 1)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목 명칭 변경 등 상위 법령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안 제5조, 제7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최저세액 3천원 → 6천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세율 50퍼센트 인상
- 세목 명칭변경(안 제24조, 제25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종업원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목 명칭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25.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항 삭제(안 제6조의2)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제13조)
-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이미 효력 상실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감면 신청 및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한 상위법령의 조항 개정사항 반영, 공익 등의 목적으로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위원정수 및 전문가와 주민참여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조정(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기준 개선방안(2014. 3.)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부합되며,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현 실정과 맞지 않고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현 실정과 맞지 않고,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결핵예방법」, 「2013 국가결핵관리 지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삭제가 가능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 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안 제2조, 제4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안 제5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규정 신설(2014. 1. 2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금연지도원의 자격) 규정 신설(2014. 7. 28)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지난 11. 20.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금연지도원의 자격)를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함.

- 수정 필요 부분 : 전체 7군데

- ① 조례안 제1조
- ② 조례안 제2조제1항제3호
- ③ 별지 제1호서식 금연신청서 (※ 2군데)
- ④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추천서
- ⑤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 ⑥ 별지 제7호서식 단독직무수행승인서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생략) 1. (생략)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생략) 1. (생략)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진 (3cm×4cm)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사진 (3cm×4cm)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제 정 안	수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중 재발급 신청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신청인</td><td style="width: 30%;">성명 (한자)</td><td style="width: 30%;"></td><td style="width: 30%;">사진 (3cm×4cm)</td></tr> <tr> <td></td><td>생년월일</td><td></td><td></td></tr> <tr> <td></td><td>주소(전화번호)</td><td></td><td></td></tr> </table>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중 재발급 신청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신청인</td><td style="width: 30%;">성명 (한자)</td><td style="width: 30%;"></td><td style="width: 30%;">사진 (3cm×4cm)</td></tr> <tr> <td></td><td>생년월일</td><td></td><td></td></tr> <tr> <td></td><td>주소(전화번호)</td><td></td><td></td></tr> </table>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별지 제7호 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단독 직무수행 승인서</th></tr> <tr> <td rowspan="3" style="width: 10%;">금연지도원</td><td style="width: 20%;">①소속단체명</td><td style="width: 20%;">②성명</td><td style="width: 50%;"></td></tr> <tr> <td>③생년월일</td><td>④전화번호</td><td></td></tr> <tr> <td colspan="3">⑤주소</td></tr> <tr> <td colspan="2">⑥출입기간</td><td colspan="2">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 <td colspan="2">⑦출입장소</td><td colspan="2"></td></tr> <tr> <td colspan="2">⑧직무수행범위</td><td colspan="2"></td></tr> </table>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지도원	①소속단체명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출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⑦출입장소				⑧직무수행범위				[별지 제7호 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단독 직무수행 승인서</th></tr> <tr> <td rowspan="3" style="width: 10%;">금연지도원</td><td style="width: 20%;">①소속단체명</td><td style="width: 20%;">②성명</td><td style="width: 50%;"></td></tr> <tr> <td>③생년월일</td><td>④전화번호</td><td></td></tr> <tr> <td colspan="3">⑤주소</td></tr> <tr> <td colspan="2">⑥출입기간</td><td colspan="2">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 <td colspan="2">⑦출입장소</td><td colspan="2"></td></tr> <tr> <td colspan="2">⑧직무수행범위</td><td colspan="2"></td></tr> </table>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지도원	①소속단체명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출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⑦출입장소				⑧직무수행범위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지도원	①소속단체명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출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⑦출입장소																																																					
⑧직무수행범위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지도원	①소속단체명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출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⑦출입장소																																																					
⑧직무수행범위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3. (이상육 · 이수선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4. 12. 2.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안 제3조 ~ 안 제6조)
- 환수조치, 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상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울산광역시 동구, 울주군이 같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액) ① (생략) 1. 장애등급 1급 및 2급 : <u>150만원</u> 2. 장애등급 3급 및 4급 : 80만원 3. 장애등급 5급 및 6급 : <u>40만원</u>	제4조(지원액) ① (생략) 1. 장애등급 1급 및 2급 : <u>100만원</u> 2. 장애등급 3급 및 4급 : 80만원 3. 장애등급 5급 및 6급 : <u>60만원</u>

□ 울산광역시 복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1.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1.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 2) 제안설명요지
- 가) 개정이유
-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차차액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안 제5조 ~ 제8조)
 -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난 12. 1. 제2차 본회의 시 의안번호 제34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근거법령 등의 미비로 심의보류된 바가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재심의함에 있어, 근거법령 및 목적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2. 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4. 12. 3. (제151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계획변경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계획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취득가격(백만원)		
	당 초	변경 후	증 감	당 초	변경 후	증 감
건물신축	1,240	1,240	-	4,192	4,192	-
토지매입	0	2,195	증2,195	0	806	증806

- 변경사유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 신규매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의 건은 북구 중보길 42-25 (중산동)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240㎡ 규모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 입지적 한계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라 인접토지인 중산동 830-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면적 2,195㎡, 주차면 60면, 추정가격 806백만원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통하여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7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12. 15. (강진희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4. 12. 3. (제151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995,151	667,852	5,000	52,800	3,997,929	99,570	172,000	4,995,151	394,000	80,000	4,497,151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06,867	0	0	0	202,367	4,500	0	206,867	0	0	206,867	0
문화진흥 기금	626,950	200,000	0	0	412,250	14,700	0	626,950	0	0	626,950	0
사회복지 기금	1,301,798	0	0	52,800	1,204,900	24,098	20,000	1,301,798	3,800	80,000	1,217,998	0
식품진흥 기금	441,466	0	5,000	0	370,466	6,000	60,000	441,466	30,200	0	387,266	24,000
재난관리 기금	1,846,961	467,852	0	0	1,338,467	40,642	0	1,846,961	360,000	0	1,486,961	0
옥외광고 정비기금	571,109	0	0	0	469,479	9,630	92,000	571,109	0	0	571,109	0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약

-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되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만 되어 있어 다른 의견이 없음.
- (문화진흥기금)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2013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으로만 되어 있어, 다른 의견이 없음.

-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에 있어, 전년도에는 없던 자활수익금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에 있어, 회 취급업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획하였는데, 자외선 칼 소독기 지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있어,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재난 피해 응급복구 추진비, 기금 적립금으로 기금 운용이 적정함.
-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에 있어, 기금 적립금 이외에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어, 다른 의견이 없음.



제6절 제152회 임시회

1. 개최이유

- 가. 소집요구 : 안승찬 의원 외 2명
- 나. 개최일시 : 2015. 1. 29.(목) 10:00
- 다. 회 기 : 2015. 1. 29. ~ 2. 11.(14일간)
- 라. 부의안건
 -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 의원 외 2명)
 -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2020년 울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중국 산둥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구청장 제출)

2. 개최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개최되는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구로 전입오신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개원한, 제6대 북구의회가 벌써 2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6대 의회는 생활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6대 북구의회와 제5대 민선 구정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뜻깊은 해로써, 서로가 협력을 바탕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지난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2015년도 시책과 사업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천동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기업지원통합시스템 구축, 체류형 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 준비, 다기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준비와 희망365 복지동네 허브 구축,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 노사민정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등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서는 안 될 중요한 시책과 사업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적 여건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한 2,237억원의 2015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만이 아닌 구정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을 위한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 해 우리 구가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단위 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 등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들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올해 첫 임시회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예방활동 등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3. 의사일정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5. 1. 29.~2. 11.(14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2015. 1. 29. (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강진희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치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안승찬 의원) 1.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2015. 1. 30. (금) 10:00	2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2015. 1. 31. (토)		휴 회	
2015. 2. 1. (일)		휴 회	
2015. 2. 2. (월) 10:00	3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2015. 2. 3. (화) 10:00	4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2015. 2. 4. (수) 10:00	5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행정지원국(세무과, 민원지적과) ○ 의회사무과	
2015. 2. 5. (목) 10:00	6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2015. 2. 6. (금) 10:00	7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복지경제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5. 2. 7. (토)		휴 회	
2015. 2. 8 (일)		휴 회	
2015. 2. 9. (월) 10:00	8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2. 2020년 울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 취의 건 (의안번호 제53호, 건설도시국)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고
2015. 2. 10 (화) 10:00	9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15. 2. 11. (수) 10:00	10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행정지원국) 6. 중국 산둥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의안번호 제52호, 행정지원국)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2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2. 11. (제152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대상에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3조)
 - 위원장 : 부구청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위원 중 공무원 비율 : 2분의 1 이내 → 4분의 1 이내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2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2. 11. (제152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 2) 제안설명요지
 - 가)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2호, 제4호서식)
 - 「지방재정법」 제10조 → 제1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 제2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2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2. 11. (제152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조례의 법적 근거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 및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인용 법령명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12조, 제14조)
 -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용어 변경 (안 제3조 ~ 제6조, 제12조 ~ 제14조, 제16조 ~ 제18조)
 - 야생동·식물 → 야생생물
 - 외래동·식물 → 외래생물
 - 희귀 동·식물 → 희귀생물
 - 보호야생동·식물 → 보호 야생생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법적근거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2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2. 11. (제152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통장교육 의무화 및 미 이수 시 통장의 신규 위촉과 연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고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장교육 관련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관련조문 삭제(안 제 7조의2)
 - 통장교육 의무화 삭제
 - 통장교육 미 이수 시 신규 통장 위촉 및 연임 제한 규정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 시 통장의 신규 위촉과 연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고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주민에게 의무사항 부과 및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개정 필요성은 있

으나, 통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2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2. 11. (제152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1조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띄어쓰기 조정(안 제1조, 제2조, 제11조)
 - 울산광역시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9조)
 - 경리관 → 재무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중국 산둥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의안번호 제5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21.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2. 11. (제152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와 비성시는 국제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교환 방문 및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관내 기업(달천농공단지 내 송재산업)이 진출해있어 경제·산업 분야의 교류를 진행하는 등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양 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 체결로 양 도시의 관계를 격상하여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그간 추진상황: 안건자료 참조
- 중국 산둥성 비성시 방문 및 자매결연 체결
 - 방문기간 : 2015. 4. 6. ~ 10.(4박 5일)
 - 방문인원 : 10명 정도(집행부 및 의회)
 - 주요일정 :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4. 7.예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자매결연 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우리 구가 중국 산둥성 비성시를 방문하여 양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해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 비성시는 석탄, 압연 등 광산자원이 풍부한 중국 중요에너지와 건축재료 기지로서 용산공원, 위두관 등의 관광자원이 있으며, 기계제조, 음식물가공업 등 위주의 공업도시이며, 국내외 연 관광객이 230만명 정도로, 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초·중·고·특수교육학교 등 177개의 교육시설과 473개의 의료시설이 있는 도시임.
- 그동안 교류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3월에 비성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 상호관심사항 및 교류협력을 위한 환담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까지 여섯 차례 상호 방문하여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및 자매결연 체결추진 협의, 교류협력사업 발

굴 논의 등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추진을 진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경제·산업 중심의 상호보완적 경제교류 활성화, 우리 구 국제경쟁력 및 위상 강화, 문화·체육·예술 분야 민간교류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자매결연 체결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절 제153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윤치용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5. 4. 20.(월) 10:00

다. 회 기 : 2015. 4. 20. ~ 5. 1.(12일간)

라. 부의안건

-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복금 의원 외 2명)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육·이수선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백현조·이수선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이상육·백현조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정복금·이수선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강진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이상육 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경제 북구 건설을 위해 왕성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사로운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마음 또한 따뜻한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우리 경제가 빠르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공무원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조기집행, 기업규제 발굴·애로사항 청취 등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항상 해 오셨듯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 지역을 보다 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각종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변화하는 북구 미래와 꾸준히 발전해가는 북구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19만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며, 약동의 계절 4월, 마음의 여유와 사랑이 가득한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수선

3. 의사일정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5. 4. 20. ~ 5. 1. (1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15. 4. 20.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안승찬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진희 의원)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0호) - 제안설명(구청장) - 4.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 5.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감사위원 선 임의 건(의안번호 제80호)	
2015. 4. 21. (화) 10:00	2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2015. 4. 22 (수) 10:00	3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15. 4. 23. (목) 10:00	4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 과, 환경미화과)	
2015. 4. 24. (금) 10:00	5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 지적과)	
2015. 4. 25. (토)		휴 회	
2015. 4. 26. (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15. 4.27. (월) 10:00	6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015. 4. 28. (화) 10:00		<현장방문활동> ○ 울산 ~ 포항 복선전철화 사업현장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 사업현장	
2015. 4. 29 (수) 10:00	7	1.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이상육 의원 발의 -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백현조 의원 발의 -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이상육 의원 발의 -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 기획홍보실)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 정복금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2015. 4. 30. (목) 10:00	8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강진희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호, 복지경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6.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건설도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건설도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의안번호 제71호,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백현조 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2015. 5.1. (금) 10:00	9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이상육, 이수선 의원)
- 심의일자 : 2015. 4. 29. (제153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추진 중인 자매결연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대응 역량 마련, 다양한 민간 교류사업의 지원 등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 결연 및 교류 대상, 결연 및 교류 제의, 사전교류(안 제4조~제6조)
- 자매결연 체결 의결, 협약체결, 민간교류사업 지원(안 제7조 ~ 제9조)
- 사후관리, 시행규칙(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추진중인 자매결연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발전과 다양한 민간교류사업의 지원 등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상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2015년 3월말 현재, 전국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계화 하고, 민간교류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류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u>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u> (사전교류를 포함한다)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u>결연 및 교류</u> (사전교류를 포함한다)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4. 29. (제153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3조, 별표)
 - 경리관 → 재무관
 -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백현조 · 이수선 의원)
- 심의일자 : 2015. 4. 29. (제153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1조~제4조)
-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회의 및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수당, 실무협의회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현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으로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백현조·이상육 의원)
- 심의일자 : 2015. 4. 29. (제153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과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등 (안 제1조 ~ 제4조)

- 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등 (안 제5조~제7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울산 지역어 보전(안 제8조 ~ 제9조)
- 예산 지원, 교육, 포상 등(안 제10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국어기본법」에 부합되며,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4. 29. (제153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천재지변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확대 (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 - 풍수해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당한 경우	• 시행령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로 시스템 작동 불가능상태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안 제39조) : 10일간 ⇒ 1개월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천재지변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확대 개정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근거법령인 「국세징수법」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4. 29. (제153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교 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단계적 축소(안 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 간	2015. 3. 현재	2016.12.31.까지	2017.1.1. ~ 2018.12.31.
감면율	면제	75%감면	50%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합되므로, 원 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4. 29. (제153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5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 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 증원 : 8명(국가시책 5명, 지역현안 3명)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 타 구·군 비율 평균값으로 조정

구분	현행						변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6% 이상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36명 → 544명(증 8명)
 - 일반직 계 : 534명 → 542명(증 8명)
 - 6급 이하 계 : 497명 → 505명(증 8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범위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정복금·이수선 의원)
- 심의일자 : 2015. 4. 29. (제153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조례가 아닌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은 향후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포상대상, 포상권자(안 제1조~안 제3조)
- 포상의 종류, 포상시기,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안 제4조~안 제11조)
- 대상자 추천, 포상계획 수립 등(안 제12조~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복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포상 수여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직선거법」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강진희 의원)
- 심의일자 : 2015. 4. 30. (제153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 8. 4. 개정·시행 예정됨에 따라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4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고려사항, 시기 등(안 제5조 ~ 제8조)
- 분석평가 결과 반영,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등(안 제9조 ~ 제11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안 제12조 ~ 안 제19조)
-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 등(안 제20조 ~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5. 2. 3. 일부개정)이 2015. 8. 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부합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4. 30. (제153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 조직개편(2015. 1. 1.시행)에 따른 담당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관리부서	개정조례안	개 정 내 용	비고
복지 지원과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나.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안 제2조 ~ 제4조)	
환경 미화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 환경미화업무담당주사 → 폐기물관리업무담 당주사	

관리부서	개정조례안	개 정 내 용	비고
		나.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5조) ○ 제7조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5조의 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 불필요	
창조경제과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및 담당 명칭 변경(안 제5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 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 → 창조경제업무 담당주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과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 조직개편(2015. 1. 1. 시행)에 따른 담당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및 법령정비기준, 조직개편 사항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4. 30. (제153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 및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나) 주요내용

-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 재래시장 → 전통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 시장의 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조항 삭제 (안 제3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요건 변경(안 제16조, 제18조)
 - 등록 → 신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명칭 변경(재래시장 → 전통시장,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등록 → 신고) 사항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부합되고, 시장의 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에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대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현행 조례 제2조제4호에 “상점가”의 정의를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4. 30. (제153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한설명요지

가) 제한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

의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용자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 및 지정사항 변경 (안 제8조)
 - 기금출납명령관(복지경제국장) → 기금운용관(환경위생과장)
 -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출납원
-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안 제9조)
- 용자사업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 변경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
회 및 용자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에 부합되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4. 30. (제153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
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관리 부서	개정조례안	개 정 내 용	비고
교통 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도시 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6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4. 30. (제153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구성(안 제3조, 제4조)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7조, 제8조)
-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안 제10조)
- 도시재생사업 지원(안 제11조 ~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2013. 12. 5.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부합되고, 도시재생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4. 30. (제153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경관법」(2014.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내용(안 제5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안 제18조)
 -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제2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부합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13. (백현조·이상육 의원)
 - 심의일자 : 2015. 4. 30. (제153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예산지원 근거,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법규 수정, 안전관련 목적 추가 (안 제1조)
- 조례의 적용범위 중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의 범위 신설 (안 제2조)
 - 안전관리 대상을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함.
- 종합계획 수립의 목적에 안전 추가(안 제3조)
- 「주택법」 제43조의3 및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조항 신설 (안 제4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현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관련법령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에 부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제154회 제1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5. 7. 10.(금) 10:00

다. 회 기 : 2015. 7. 10. ~ 7. 24.(15일간)

라. 부의안건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3호)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외 1명)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강진희 의원 외 2명)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강진희, 안승찬, 윤치용 의원)
-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강진희, 안승찬, 윤치용 의원)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및 민원상담실 운영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전 이 자리에서 제6대 북구의회를 개원하면서 우리 7명의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표로서 왕성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총 81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재정운영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 속에서 상호 존중함으로써 북구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구민

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말부터 발생한 ‘메르스’의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구민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3. 의사일정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5. 7. 10. ~ 7.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 10.(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2호) 제 안 설 명(행정지원국장)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윤치용 의원) -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11.(토)		휴 회	
7. 12.(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 13.(월) 10:00	2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7. 14.(화) 10:00	3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7. 15.(수) 10:00	4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7. 16.(목) 10:00	5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보 건 소	
7. 17.(금) 10:00	6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7. 18.(토)		휴 회	
7. 19.(일)		휴 회	
7. 20.(월) 10:00	7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의회사무과	
7. 21.(화) 10:00	8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3호) (기획홍보실, 농수산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 22.(수) 10:00		<현장방문 활동> ○ 농소하수처리시설 사업현장 ○ 옥동 ~ 농소간 도로 공사현장 (천마산 등산로 하부통로박스 설치 공사구간)	
7. 23.(목)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보건소) 2.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이상육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강진희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건설도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건설도시국)	
7. 24.(금) 10:00	10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당초〉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 23.(목)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보건소) 2.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이상육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강진희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분노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건설도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건설도시국)	
7. 24.(금) 10:00	10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 23.(목) 10:00	9	1. ~ 8. 변동없음 〈추가〉 9.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안번호 제93호, 강진희 의원 발의) 10.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안번호 제94호, 강진희 의원 발의)	
7. 24.(금) 10:00	10	1. ~ 2. 변동없음 〈추가〉 3. 구정질문의 건 ○ 울산 북구 구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강진희 의원)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7. 23. (제154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2조)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기준 정비(안 제3조, 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조, 제6조)
- 출산지원금 관련 대장관리 등(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목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보완·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지원금의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대장관리 등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서 ‘출산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부 및 영유아에 관하여는 「모자보건법」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7. 23. (제154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관광진흥에 관한 총칙(안 제1조 ~ 제3조)

- 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관광객 유치지원, 안내소 운영 등
- 관광진흥위원회 (안 제7조 ~ 제14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관광진흥에 관한 총칙, 제2장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안내소 운영 등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3장 관광진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관광업무 위탁 등으로, 우리 구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에 부합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의 위상과 관광진흥에 도움이 될 것임. 다만, 제4조의 관광진흥계획 수립은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30. (이상육·이수선 의원)
- 심의일자 : 2015. 7. 23. (제154회 제1차정례회 제9차분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들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서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족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수정.
-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지원대상에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조 ~ 제3조)
- 지원사업,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 (안 제4조 ~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변경하여,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관련 법령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법령의 내용을 인용하였고, 제3조의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변경하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으로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른 서식 일부를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하여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전몰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30. (강진희 · 안승찬 · 윤치용 의원)
- 심의일자 : 2015. 7. 23. (제154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 등 (안 제1조 ~ 제4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안 제5조 ~ 제7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 평가 및 포상, 시행규칙 (안 제8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과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부합되며,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

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7. 23. (제154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와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운임증가 등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뇨처리의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신설 및 기타 자구 수정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 감소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와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운임증가 등 원가 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임. 주요 개정내용은, 분뇨수집·운반의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따라 정화조 수의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수수료 인상은 2012년 7월에 47.1%를 인상하였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한 부담이 있고, 위생처리장이 남구 여천동에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로 이전함으로써, 운반거리 증가(왕복 약 35km)에 따른

운반시간 및 운송비 증가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치구 고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악화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장기적으로는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및 「하수도법」에 근거한 폐업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7. 23. (제154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현실화로 구 재정부담 경감
-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유입 확대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지정기준 확대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지정기준 확대(안 제2조제3호)
 - 다량배출사업장 중 식품집객업의 영업장 면적 기준 변경
 <현행> 250㎡ 이상 → <개정> 3,000㎡ 이상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안 별표1)
 - 주 택(ℓ 당) : 40원 → 50원(증 10원)
 - 사업장(ℓ 당) : 60원 → 100원(증 40원)
-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 인상(안 별표2)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민간이 처리하는 사업장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를 조정하여 공공처리를 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정의를,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으로 확대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단가를 단독주택·공동주택은 1ℓ당 40원에서 50원으로, 소규모사업장은 6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를 단독주택은 판매가의 8.3% ~ 10%를 8%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사업장은 7.5%에서 6%로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5)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9조제1항 관련)			
수집 방법	대 상	수수료(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u>일반주택</u>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 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 0.8kg			

수 정 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9조제1항 관련)			
수집 방법	대 상	수수료(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u>단독주택</u>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 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 0.8kg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비 고	수거방법	대 상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 주택	3 ℓ	138	12	150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 주택	3 ℓ	138	12	150	
		5 ℓ	230	20	250				5 ℓ	230	20	250	
	공동 주택	60 ℓ	2,820	180	3,000			공동 주택	60 ℓ	2,820	180	3,000	
		120 ℓ	5,640	360	6,000				120 ℓ	5,640	360	6,000	
	일반 음식업소	20 ℓ	1,880	120	2,000			소규모 사업장	20 ℓ	1,880	120	2,000	
		60 ℓ	5,640	360	6,000				60 ℓ	5,640	360	6,000	
		120 ℓ	11,280	720	12,000				120 ℓ	11,280	720	12,000	
주) 1. 일반음식업소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주) 1. 소규모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7. 23. (제154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2008. 7. 21. 시행) 중 ‘도시녹화위원회’는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이며, ‘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구·군 위임사무로서 상위 조례인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 조례안은, ‘도시녹화위원회’는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 구·군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도시녹화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는 시·도에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현재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도시공원 사무의 일부가 구·군에 위임되어 있으며,
- 가로수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사무 일부가 구·군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6.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3. 6. 28. (제154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건물, 가로수,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 살포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신설 (안 제20조의1)
 -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 (안 별표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건전한 거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신설과,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건은 지난 2013년 12월 2일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어, 자동 폐기된 조례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에 따른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효과 및 부작용과, 현재 타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7. 17. (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
- 심의일자 : 2015. 7. 23. (제154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사목적

- 아동보호시설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고자 함.
 - 조사범위
 - 거주씨 공동생활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 모두 조사
 - 시설장, 생활복지사, 학대아동, 입소아동들에 대한 조사
 - 운영비, 후원금 등에 대한 조사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 3) 심의결과 : 부결

□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7. 17. (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
 - 심의일자 : 2015. 7. 23. (제154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함.
 - 의회로 접수된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민원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사목적
 -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하고자 함.
 - 조사범위
 - 양정동 노래교실 설문조사 경위 및 설문지 결과
 - 양정동 주민센터의 대응
 -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회의록 및 관련자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양정동 민원 조사위원회』
- 3) 심의결과 : 부결



제9절 제15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 가. 소집요구 : 백현조 의원 외 2명
- 나. 개회일시 : 2015. 9. 8.(화) 10:00
- 다. 회 기 : 2015. 9. 8. ~ 9. 21.(14일간)
- 라. 부의안건
 -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 의원 외 2명)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승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진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현조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복금 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위가 완전히 가지 않은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래 없는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게더콘서트 등 각종 문화행사와 물놀이장 운영, 체육행사 등을 준비하고 추진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참석과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활동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지역현장에서 늘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 그동안 수렴해 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종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바랍니다.

곧,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맞이 종합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희망하며, 19만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3. 의사일정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5. 9. 8. ~ 9. 21.(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8.(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 5분 자유발언(안승찬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진희 의원) 1.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95호) -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9.(수) 10:30	2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9. 10.(목) 10:00	3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기획홍보실	
9. 11.(금) 10:00	4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9. 12.(토)		휴 회	
9. 13.(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14.(월) 10:00	5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보 건 소	
9. 15.(화) 10:00	6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9. 16.(수) 10:00	7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의회사무과	
9. 17.(목) 10:00	8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9. 18.(금)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96호, 강진희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강진희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호, 안승찬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윤치용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00호, 강진희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01호, 백현조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02호, 정복금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9. 19.(토)		휴 회	
9. 20.(일)		휴 회	
9. 21.(월) 10:00	10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당일의사일정변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21.(월) 10:00	10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21.(월) 10:00	10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추가〉 2. 구정질문의 건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안승찬 의원)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1. (강진희 의원)
- 심의일자 : 2015. 9. 18. (제15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가족의 가치 변화로 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 생계유지와 자녀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빈곤 소외계층으로 편입되고 있어,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안 제4조 ~ 제8조)
- 환수조치, 시행규칙 (안 제9조 ~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지원 대상,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지원 사업, 제8조 고용촉진, 제9조 환수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한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

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1. (강진희 의원)
- 심의일자 : 2015. 9. 18. (제15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2014. 5. 28. 공포, 2015. 7. 1. 시행)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근거법령 변경 :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각각 변경.
- 기타 여성에 국한된 조문을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2014. 11. 19. 개정, 2015. 7. 1. 시행), 관련 문구와 내용 등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법령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양성주간행사’로 각각 변경하며, 기타 여성에 국한된 조문을 양성평등에 맞게 조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문구와 내용 등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개정을 준비중이었으며, 근거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남성과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1.
- 심의일자 : 2015. 9. 18. (제155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개정 조례명	주민번호 수집현황	개정내용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지 『선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 의견서』 •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 요구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표 『신분증』 후면 •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 별표 및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 따라, 북구의회 조례 및 규칙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별지 서식] ‘선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의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원 소개의견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청원 철회요구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 신분증,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0절 제15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백현조 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5. 10. 13.(화) 10:00

다. 회 기 : 2015. 10. 13. ~ 10. 14.(2일간)

라. 부의안건

-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치용 의원 외 2명)
-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2. 개회사 (생략)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안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5. 10. 13.~10. 14.(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0.13.(화) 10:00	1	1.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6.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호 건설도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건설도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건설도시국)	
10.14.(수) 10:00	2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복지경제국)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0. 14. (제1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 재기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 기준을 따르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 적용
 - 점용료 산정(안 제4조)
 - 과태료 부과(안 제3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설치근거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그에 따르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관리 및 그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등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영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105조)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조(목적)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제2조(정의),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준용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그에 따르도록 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만을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은 현재의 추세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0. 14. (제1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 제7조)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문 삭제(안 제16조, 제18조~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60일)과 조례상 이의제기 기간(30일)이 다르므로 조례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여,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30일)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60일)과 상이하므로,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과태료 관련 규정인 제16조, 제18조~제20조를 삭제하고,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규정 중 서로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킴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의 관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0. 14. (제1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2015. 1. 6)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방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확대 : 21명 이내 → 25명 이내
 - 구성 인원 1명 증원 : 울산보훈지청장 신설
 -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을 보강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명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

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추가됨에 따라,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확대(21명→25명)하고, '울산보훈지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며, 제6조의 협의회 간사 중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을 '민방위담당'으로 통합하고, 제8조의 '행정지원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0. 14. (제1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
- 따라서 우리 구 자치법규內 주민번호 수집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 23종 별지 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별지 서식에,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별지 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6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 까지, 각 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일괄개정에 따른 조례제명이 길어지긴 했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일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0. 14. (제1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제1호, 제2호)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 제4조의2제1항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 제4조의2제4항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
-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서식 변경
-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제4조)을 변경하고,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제8조, 9조 11조),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며(서식),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0. 14. (제1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필요
-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기능 강화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표준안 시달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책무 규정(안 제7조~제8조)
-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와 회원 규정(안 제12조~제14조)
-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규정
(안 제15조 ~ 제18조)
-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과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의 기능강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

- 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제1장 총칙에서 구청장의 책무(제3조), 지역연대의 설치(제4조)·목적(제5조)과 기본원칙(제6조) 등을 규정하고,
 -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제7~14조),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제14~18조), 제4장 회의운영(제19~20조), 제5장 행정사항(제21~2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근거법령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의 설치·운영을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없으나, 여성가족부 지침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0. 14. (제1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조례 규제개선 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 및 보완

나)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위촉직 위원의 비율 명시(안 제5조제2항)
- 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
(안 제12조 ~ 안 제19조, 안 제26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 규정 삭제 (안 제25조제2항 삭제)
-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구성비율 추가 및 성비균형 반영 (안 제27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규제완화 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또는 임명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위원 구성에서 성비를 추가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자원센터’로 변경하고(제3장),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의 구성비율 추가 및 성비 균형 반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또는 임명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3. 6. 4.)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은 낮은 감은 있으나,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0. 14. (제1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규제개혁 개선대상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문구의 수정 및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재차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에 맞지 아니한 조항 정비 (안 제10조)
-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벗어나면서 상위법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의 삭제(안 제12조, 안 제13조)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6조,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과 규제개혁 개선대상의,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10조)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법령의 조항을 그대로 재기재한 조항(제12~13조)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정비(제16~17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그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므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며, 규제개혁 개선대상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0. 14. (제15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제4조) : 상위법 근거규정 명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제4조에는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규정하여야 하나,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4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을 명시하는 것임.
- 검토결과, 조례 상위법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1절 제157회 제2차 정례회

1. 개최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최일시 : 2015. 11. 20.(금) 10:00

다. 회 기 : 2015. 11. 20. ~ 12. 23.(34일간)

라. 부의안건

-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폐지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구청장)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6년 새해 설계를 위해 제 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애로사항을 함께 하고자 지역의 곳곳을 다니며 현장 의정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가 있는 해인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차세대 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였고,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쇄부리 체육센터 착공, 시민안전 체험 교육센터 유치, 정자 국가어항 재정비 사업 및 염포·양정 도시재생 사업비 확보 등으로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옥동·농소간 도로, 오토벨리로, 7번 국도 확장공사, 강동권 개발 사업을 비롯 북선전철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성장가능성을 현실화 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성장동력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장동력 확보는 시대변화에 맞는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따라 주어야 합니다.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3.0의 패러다임에 맞게 행정시스템 변화를 통한 구정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정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지역발전을 고민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구정운영에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큰 틀의 정책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편성 되었는지 어렵고 소외된 분야에 대한 배려와 변화하는 북구 건설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모든 안건이 원활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숙되고 내실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3. 의사일정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1. 20.~12. 23.(3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20.(금) 10:00	1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 5분 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33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 21.(토)		휴 회	
11. 22.(일)		휴 회	
11. 23.(월) ~ 12. 1.(화)		행 정 사 무 감 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 붙임 일정 참조)	
12. 2.(수) 10:00	2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복지경제국)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복지경제국)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복지경제국) -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복지경제국) -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복지경제국)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5호, 복지경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6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132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7호, 복지경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복지경제국)	
12. 3.(목)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행정지원국)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29호, 행정지원국) 5.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30호, 행정지원국)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31호, 행정지원국)	
12. 4.(금) 10:00	4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34호, 기획홍보실)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12. 5.(토)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 6.(일)		휴 회	
12. 7.(월) 10:00	5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12. 8.(화) 10:00	6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2. 9.(수) 10:00	7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12. 10.(목) 10:00	8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12. 11.(금) 10:00	9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12. 12.(토)		휴 회	
12. 13.(일)		휴 회	
12. 14.(월) 10:00	10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12. 15.(화) 10:00	11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 16.(수) 10:00	1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구청장) -	
12. 17.(목) 10:00	13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행정지원국 ○ 기획홍보실	
12. 18.(금) 10:00	14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 ○ 보 건 소	
12. 19.(토)		휴 회	
12. 20.(일)		휴 회	
12. 21.(월) 10:00	15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 ○ 의회사무과	
12. 22.(화) 10:00	16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12. 23.(수) 10:00	17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당일의사일정변경

<당초>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5.(화) 10:00	11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변경>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5.(화) 10:00	11	《추가》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132호, 복지경제국) 4.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2. (제15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5. 7. 1.)됨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와 동 인적자원망 구축 등 지역의 사회보장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신설하고 정비함.

나)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기능 및 구성·운영(안 제3조~제7조)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규정(안 제8조)
-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위원명단 공개 및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규정(안 제12조~제13조)
- 간사 및 직원의 업무 규정(안 제14조)
- 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 개최에 대한 규정(안 제15조~제16조)
- 회의수당,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당초 「사회복지사업법」이었으나, 금년 7월 1일 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운 법령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확대 개편하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약칭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약칭 동 협의체)’를 두며, 각각의 구성인원 및 기능, 위촉권자를 규정하고,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되,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본 조례의 개정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 위원의 위·해촉권자가 불일치하고, 협의체별 구성인원 확대에 따른 각 협의체 재구성 여부, 『실무분과 운영지침』의 제정권자, 부칙의 경과조치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만 규정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협의체’는 새로이 구성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2. (제15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등 개정(안 제2조, 제3조)
 - 정의 및 기금의 재원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
- 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4조)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5조의2)
 - 현행법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제5조의2)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제4조)하며, 정의 등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2. (제15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1조)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
- 「개인정보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별지 서식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제1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별지 서식)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별지 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2. (제15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 2015. 7. 1.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 2015.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으로 대상·내용이 중복 지원됨

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전액 구비의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하고,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 또한,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근거 없는 자체사업이,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시달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2. (제15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2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제정조례안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명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으나, 조례의 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기준’을 정하는 조례로 볼 수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명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기준에 관한 조례”가 바람직하고, 제1조(목적)도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보다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기준을 정함~”으로 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2. (제15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 문화의 집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구체화한 내용 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수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구체화(안 제7조제2항)
- 법령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3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집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임.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제2항의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 검토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7조제2항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적절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2. (제15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및 보완

나)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제4조제1항)

- 연임규정 변경 (안 제5조)
 - 자치단체 위원 위촉규정 반영(안 제6조제1항)
 -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및 제4조제1항의 「아동복지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연임 규정(제5조) 및 위촉 위원의 성비(제6조제1항) 규정 추가,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검토결과,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2. (제15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2014. 7.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
 -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수수당 등 유사수당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구 자체사업인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수혜자 대부분이 기초연금 받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2014년 7월 1일 부터 확대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에 장수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수당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기존 장수수당 수혜자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2. (제15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 12. 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전부에 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행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대상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14. 12. 30, 시행 2015. 7. 1.)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됨으로써, 수급자 중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수급자’ 전원에게 지급하던 쓰레기봉투 지원을, 앞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하고자, 제18조제1호의 “수급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였으나, 지금은 수급자 개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개별급여’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쓰레기봉투 지원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2. (제15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 12. 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배출수수료 감면대상자 조정(안 제10조)
 - 현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2014. 12. 30, 시행 2015. 7. 1)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됨으로써, 수급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수급자’ 전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 감면대상자로 하고자, 제10조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였으나, 지금은 수급자 개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개별급여’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자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3. (제157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7조)
【현행】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
【개정】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기존의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을, 상위법과 같이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2016. 1. 1. 시행)에 따라, 기존의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상위법과 같이 ‘1천만원 이상’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3. (제157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또는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의 지방세법 세율 적용(안 제5조, 제7조)

-제5조-

【현행】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제1호~제4호 생략

【개정】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현행】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 제1호~제5호 생략

【개정】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및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전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상위법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 제5조를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세율) <u>등록에 대한</u>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세율) <u>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u>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3. (제157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15. 7. 20.)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15. 9. 14.)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그 밖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개정
(현행)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개정)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현행)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개정)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회계간의 재산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5. 1. 20. 개정, 2015. 7. 21. 시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15. 2. 16. 개정, 2015. 8. 17. 시행)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제4조 및 제3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제11조),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제39조)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로 각각 신설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3. (제157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15. 7. 20.)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15. 9. 14.)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그 밖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개정
(현행)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개정)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현행)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개정)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회계간의 재산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5. 1. 20. 개정, 2015. 7. 21. 시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15. 2. 16. 개정, 2015. 8. 17. 시행) 개정예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제4조 및 제3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제11조),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제39조)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로 각각 신설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3. (제157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6회계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50백만원
 -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북구 교육발전에 기여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구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 다만, 재단 설립이후 2009년도에 3억원, 2010년도에 5억원이 각각 출연금으로 지원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은 출연하지 않다가 다시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3. (제157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6회계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8,228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부담분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2009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구 부담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이므로, 연도별 출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4. (제157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

2) 기금운용 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용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용자성 사업비	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755,958	699,462	5,000	55,200	4,746,124	75,172	175,000	5,755,958	460,000	60,000	5,211,958	24,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10,239	0	0	0	206,932	3,307	0	210,239	0	0	210,239	0
문화진흥기금	840,827	200,000	0	0	624,427	16,400	0	840,827	0	0	840,827	0
사회복지기금	1,361,247	0	0	55,200	1,266,419	19,628	20,000	1,361,247	23,000	60,000	1,278,247	0
식품진흥기금	420,389	0	5,000	0	350,584	4,805	60,000	420,389	27,000	0	369,389	24,000
재난관리기금	2,221,728	499,462	0	0	1,700,886	21,380	0	2,221,728	410,000	0	1,811,728	0
옥외광고정비기금	701,528	0	0	0	596,876	9,652	95,000	701,528	0	0	701,528	0

- 수입은 57억 5,595만 8천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6억 9,946만 2천 원, 보조금 500만원, 용자금 회수액 5,520만원, 예치금 회수액 47억 4,612만 4천 원, 이자수입 7,517만 2천 원, 기타수입이 1억 7,500만원임.
- 지출은 57억 5,595만 8천 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용자성 사업비 4억 6,000만원, 용자성 사업비 6,000만원, 예치금 52억 1,195만 8천 원, 기타지출 2,4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년도 말 현재액②	2016년도 기금운용		2016년도 말 조성액 ④=②+③-⑤	증 감 ⑥=④-②
		수입③	지출⑤		
합 계	4,746,124	1,009,834	544,000	5,211,958	465,834
남북교류협력기금	206,932	3,307	0	210,239	3,307
문화진흥기금	624,427	216,400	0	840,827	216,400
사회복지기금	1,266,419	94,828	83,000	1,278,247	11,828
식품진흥기금	350,584	69,805	51,000	369,389	18,805
재난관리기금	1,700,886	520,842	410,000	1,811,728	110,842
옥외광고정비기금	596,876	104,652	0	701,528	104,652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4,612만 4천 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0억 983만 4

천원, 지출이 5억 4,400만원으로 4억 6,583만 4천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1,195만 8천원으로 예상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15. (제157회 정례회 제1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5. 7. 1.)됨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와 동 인적자원망 구축 등 지역의 사회보장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신설하고 정비함.

나)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기능 및 구성·운영(안 제3조~제7조)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규정(안 제8조)
-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위원명단 공개 및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규정(안 제12조~제13조)
- 간사 및 직원의 업무 규정(안 제14조)
- 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 개최에 대한 규정(안 제15조~제16조)
- 회의수당,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운 법령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 지난 12월 2일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15. (제157회 정례회 제1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 2015. 7. 1.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 2015.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으로 대상·내용이 중복 지원됨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난방비 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사업과 중복 지

원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5. 12. 15. (제157회 정례회 제1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4. 7.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서는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
-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구 자체사업인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2절 제158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정복금 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6. 2. 17.(수) 10:00

다. 회 기 : 2016. 2. 16. ~ 2. 29.(13일간)

라. 부의안건

-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 의원 외 2명)
-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구정질문의 건(강진희 의원)
 -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재생 사업, 계약직 공무원 선발에 대하여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 201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복금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 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되고 일년 열두 달 가운데 벌써 한달 보름이 흘렀습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 전입 오신 임상진 부구청장, 광병주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6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 동안 생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입법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한 해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제5대 민선구청 3년차를 맞이하는 해로써,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10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제15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구정의 한 축으로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처음과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새해가 시작되어 새로이 첫 걸음을 내딛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 또, 새로운 사업은 추진계획의 세부사항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요 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단위 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 등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부서별 업무 보고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들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의 시작을 알리는 제158회 임시회가, 우리 북구 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의미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3. 의사일정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6. 2. 17.~2. 29.(1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16. 2. 17. (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 (안승찬 의원) ◆ 5분 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1.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재생 사업, 계약직 공무원 선발에 대하여(강진희 의원)	
2016. 2. 18. (목) 10:00	2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139호, 보건소)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 건 소 ○ 기획홍보실 ○ 의회사무과	
2016. 2. 19. (금) 10:00	3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2016. 2. 20. (토)		휴 회	
2016. 2. 21. (일)		휴 회	
2016. 2. 22. (월) 10:00	4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016. 2. 23. (화) 10:00	5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복지경제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창조경제과)	
2016. 2. 24. (수) 10:00	6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복지경제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16. 2. 25. (목) 10:00	7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2016. 2. 26. (금) 10:00	8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 201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147호, 복지경제국)	
2016. 2. 27. (토)		휴 회	
2016. 2. 28 (일)		휴 회	
2016. 2. 29 (월) 10:00	9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45호, 강진희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1호, 강진희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호, 백현조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정복금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호, 이상육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6호, 안승찬 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2. 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2. 29. (제15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확대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원 추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 변경
 -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부동산평가 관련자 등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추가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위촉 위원의 성별 문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분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보육 등 특수 분야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개정시 위촉 위원의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2. 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2. 29. (제15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 재기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 기준을 따르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 적용
 - 점용료 산정(안 제4조)
 - 과태료 부과(안 제3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 충전소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임.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2015. 1. 28., 시행 7. 29.)으로, 본 조례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2. 4. (강진희 · 안승찬 · 윤치용 의원)
- 심의일자 : 2016. 2. 29. (제15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안 제4조 ~ 제6조)
- 복지단체의 보호 · 육성, 복지시설 확충, 협력체계의 구축 등 (안 제7조 ~ 제10조)
- 예산의 지원,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안 제11조 ~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임.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복지서비스,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복지단체, 복지시설, 협력체계, 교육 · 홍보,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의 장애인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 보장 등에 관한 관심과 위상은 높아진다고 하겠으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2. 4. (강진희 의원)
- 심의일자 : 2016. 2. 29. (제15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구 정비과제임.

나) 주요내용

- 공인의 폐기 시 이관 기관명 정비사항 반영 (제10조제2항)
 - 기록물전문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별지 제1호서식(공인대장)에서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기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 개정.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성명” ⇒ “성명 및 상호”
 - 폐기방법란 “소각”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주요 개정 내용은 제10조제2항의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각각 변경하고, 폐기방법 란의 ‘소각’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2. 4. (백현조 의원)
- 심의일자 : 2016. 2. 29. (제15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제3조제2항의 여비구분과 별표 2의 여비의 명칭이 상이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3조의 여비구분에서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함. (안 제3조제2항)
 - 운임 · 일비 · 숙박료 · 식비 ⇒ 운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별표 2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 ‘현지교통비’ ⇒ ‘일비’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본문과 별표에 각기 다르게 규정된 여비의

구분과 명칭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별표2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각기 다르게 규정된 여비의 구분과 명칭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2. 4. (정복금 의원)
- 심의일자 : 2016. 2. 29. (제15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제3조제2항의 여비구분과 별표 2의 여비의 명칭이 상이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3조의 여비구분에서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함. (안 제3조제2항)
 - 운임 · 일비 · 숙박료 · 식비 ⇒ 운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별표 2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 ‘현지교통비’ ⇒ ‘일비’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본문과 별표에 각기 다르게 규정된 여비의 구분과 명칭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통

일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별표2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각기 다르게 규정된 여비의 구분과 명칭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2. 4. (이상욱 의원)
- 심의일자 : 2016. 2. 29. (제15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4. 8. 7.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지 제7호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비 및 기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함.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피신고자” ⇒ “신고대상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의장’은 의원 개인의 지위도 가지므로, 의원 개인자격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추천 규정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의원 1명’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2. 4. (안승찬 의원)
- 심의일자 : 2016. 2. 29. (제15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시행(개정 2014. 5. 28. 시행 2014. 11. 29.)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 및 결산서 제출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례회 집회일 조정(안 제4조제1호)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 매년 7월 10일 (기존) ⇨ 매년 6월 10일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 및 결산서 제출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0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지방재정법」(개정 2014. 5. 28., 시행 11. 29.)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 2015. 12. 4, 시행 2015. 12. 4.)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 및 결산서 제출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결산검사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한 달 앞당기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3절 제159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상육 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6. 5. 10.(화) 10:00

다. 회 기 : 2015. 5. 10. ~ 5. 24.(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복금 의원 외 2명)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결의안 (이상육 의원)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욱·백현조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초록이 싱그러운 5월에 제159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은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 없으며,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과 의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우리 구 대표축제인 쇄부리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즐겁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불어 행사장의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의 대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59회 임시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

의 및 조례 등의 안전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1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구민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각종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야외활동이 잦은 시기에 건강관리 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민의 안녕과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일 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3. 의사일정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6. 5. 10.~5.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6. 5. 10. (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 (윤치용 의원) 1.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52호) -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 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결의안 (의안번호 제153호, 이상욱 의원)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6. 5. 11. (수) 10:00	2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 기획홍보실	
2016. 5. 12. (목) 10:00	3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	
2016. 5. 13. (금) 10:00	4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6. 5. 14. (토)		휴 회	
2016. 5. 15. (일)		휴 회	
2016. 5. 16. (월) 10:00	5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2016. 5. 17. (화) 10:00	6	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55호, 행정지원국) 2.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2016. 5. 18. (수) 10:00	7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의회사무과	
2016. 5. 19. (목) 10:00	8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6. 5. 20. (금)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기획홍보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기획홍보실) 5.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호, 기획홍보실)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1호, 기획홍보실) 7.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호, 기획홍보실) 8.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174호, 건설도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75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건설도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호,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호, 건설도시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 건설도시국)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1호, 이상욱 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2016. 5. 21. (토)		휴 회	
2016. 5. 22. (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6. 5. 23. (월) 10:00	10	1.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5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70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1호, 복지경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호, 복지경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호, 복지경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1호, 보건소) 13.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호, 보건소) 14.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8호, 윤치용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9호, 강진회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0호, 백현조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2016. 5. 24. (화) 10:00	11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24. (화) 10:00	11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24. (화) 10:00	11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추가〉 2. 구정 질문의 건 ○ 시례새터 ~ 상안새터 도로개설 민원과 관련하여 (윤치용 의원)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17. (제159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
 - 사 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 취득내용 : 건물 신축(1개동, 지하1층 지상3층, 1,600㎡)
 - 추정가격 : 4,8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임.
- 검토결과, 본 건은 연암동 공공청사 부지에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00㎡로, 총사업비는 48억원임. 현재, 우리 구는 인구대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아동수와 어린이집이 적지 않음에도, 보육에 관한 정보 및 상담과 교육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실정이어서 복지혜택이 소외되고 있음을 호소해 왔고, 이러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기에 앞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종합적인 계획없이 단위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는 향후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종합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공공청사 부지 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6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향후로도 효율적·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 증원 : 9명(544명 → 553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44명 → 553명(증 9명)
 - 일반직 계 : 542명 → 551명(증 9명)
 - 6급 이하 계 : 505명 → 514명(증 9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계속적인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나,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2016년 기준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처리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정원 544명을 553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 9명을 증원하는 것임. 검토결과 우리 구는 날로 발전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증원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공무원 증원 사유 및 요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규정목표를 실현하고자, 규제개혁 업무를 복지경제국 창조경제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하고자 함.
- 어물보건진료소의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실 단위 분장사무 조정 등
 -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 별표 어물보건진료소의 주소 개정
 - 북구 아름1길 28-2 → 북구 아름1길 2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창조경제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하고, 어물보건진료소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실·국 단위 분장업무 조정으로,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를 복지경제국(창조경제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하고, 별표 어물보건진료소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는 지난 1월부터 기획홍보실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어물보건진료소 또한 약 2년 전에 재건축하였는데, 지금 주소를 변경하는 사유 및 조례 시행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 4조)
 - (기존)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
 - (변경)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정비(안 5조)
 - 제1호 중 “사망”은 당연상실로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자치법규 상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사망”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 검토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복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채권자의 구청장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는 「지방재정법」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상충됨에 따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법률에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 중 하나로, 채권자의 구청장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채무를 보증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채무 현황을 보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규제개혁 일환으로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는 모두 개선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에 일부 미반영된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함에 있어 법조문을 중복 표현하지 않고 법 조항을 인용하여 조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에 상위법 조항을 인용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조문을 그대로 규정하지 않고 법조항을 인용함으로써, 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법」 조항을 인용하고, 기타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 검토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조문을 그대로 표기하지 않고 법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더욱 명확히 함과 아울러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별도 정의를 두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의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주민의 권리)를 (주민의 참여)로 변경하여 주민의 참여 범위를 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제6조제1호 ‘구 주민’ 보다는 현행 제2조제1호 조문을 그대로 쓰는 것이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횡단차도 설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며,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도로점용에 대한 목적, 장소와 면적, 기간,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안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에 해당됨.
-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합리한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 조례안은 횡단차도 설치에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며, 상위법인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 목적, 장소와 면

적, 점용 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안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관련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을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조문을 “「도로법」 제76조”에서 “「도로법」 제91조”로 변경(안 제1조)
- 상위법령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항(도로법 제76조 → 제91조)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도로)를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에 선정되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u>1.<삭제></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u>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u>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 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조문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도로법」 제2조제2호”로 변경(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항(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 제2조제2호)을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용어를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 “부당이득금” ⇒ “변상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임.
- 검토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가 상이하므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3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 제5조제1항)을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6호의2, 안 제8조제1항·제2항·제4항제3호·제4항제5호의2 및 안 제14조·제16조제2항·별표 1·2)
- 인용 조례·기관·지침의 명칭 현행화(안 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8조)
- 그 밖에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용어 정비(안 제13조제3항·제15조제1항·제15조제3항·제1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일부 조문은 개정 내용이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 작업을 다시 하거나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즉,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하여 현재 삭제하는 추세인데 반해, 개정안 제2조 6의2호 정의 신설 조항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9의2호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하며, 제15조제3항과 제16조제2항의 개정안 중, “에”자는 붙이지 않는 현행 규정이 더 옳은 표현이므로 “에”자를 각각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u>시설·장비·예산 등에</u>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③ ----- ----- ----- <u>시설·장비·예산 등</u> ----- -----.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② 구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u>상담·교육·홍보 등에</u>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② 구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u>상담·교육·홍보 등</u>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 규정(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안 제3조~제4조)
 -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설립)된 민간단체, 협회 등
 - 교통안전 선진화구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통안전지도·봉사 등
 - 그 밖에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고취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임.
-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2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3조~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추진과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4. 29. (이상육 · 백현조 의원)
- 심의일자 : 2016. 5. 20.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16. 1. 16., 시행 2016. 8. 12., “구,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안 제1조 ~ 안 제3조)
-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 결정, 감사계획 수립 (안 제4조 ~ 안 제6조)
- 감사반의 구성, 사전조사의 실시, 감사의 실시 등(안 제7조 ~ 안 제10조)
-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통지, 감사결의 처리(안 제11조 ~ 안 제13조)
- 요청인의 비밀보호, 감사수당, 시행 규칙(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2015. 8. 11.,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

한 감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임.

-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감사 대상, 전문감사관 위촉(안 제1조~3조),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 결정, 감사계획 수립(안 제4조~6조), 감사반의 구성, 사전조사 실시, 감사실시 등(안 제7조~10조), 감사결과보고, 감사결과 통지, 감사결과 처리(안 제11조~13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감사수당, 시행규칙(안 제14조~16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우리 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2015. 6. 1.)되어 외부전문자문단 구성(50명), 상담실 운영, 공동주택의 조사·감사, 저소득층 및 안전점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와의 중복(충돌)이나 협조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

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삭제(안 제2조제3호, 안 제6조제3항)
- 반복적인 용어 삭제(안 제3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
-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보장을 위한 조문 삭제(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수용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있는 조문과, 반복적인 용어(위원회)를 삭제하고, 주민의 권리구제를 저해하는 조항(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있는 조문과 반복적인 용어(위원회), 주민의 권리구제를 저해하는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도로명 주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문구 신설·변경·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수용하여, 「도로명주소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 조문을 신설·변경·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북구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므로 잘못된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변경 및 삭제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2009. 6. 9., 시행 2009. 12. 10.)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근거 법령의 개정(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른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개정일 2013. 8. 13.)에 따라 조문 변경사항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 규정 반영(안 제20조) 동 조례 제20조제1항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을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으로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규정에 없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3. 8. 13., 시

행 2014. 2. 14.)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을 확대(추가)하고 보조금의 반환 규정 중 상위법에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 확대(추가) 규정을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문 정비

나)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규정 변경(안 제3조제3항)
- 자치단체 위원 위촉규정 반영(안 제3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안 제3조제4항 신설은, 현재 상위법령에 규정

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추세인데 반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조문에도 오류(‘각 호’가 아니라 ‘제3항 각 호’)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 정비

나)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제55조 반영(안 제5조제1호, 안 제7조제1항) 용어 수정
 - 동 조례 제5조제1호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수정
 - 동 조례 제7조제1항 “활동지원서비스”를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로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하는 것임.
 -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서비스 →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 검토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일 2015. 7. 29.)에 의한 상위법령 조문 변경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 대상시설 명확화(안 제4조제1항)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의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3호”를 “법 제7조”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015. 7. 29., 시행 2015. 7. 29.)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의 사전검사대상을 ‘법 제7조제3호’에서 ‘법 제7조’로 확대하는 것임.
- 검토결과 사전검사는 상위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신설(2015. 1. 28.)되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없는지와, 제4조의 사전검사대상을 같은 법 ‘제7조제3호’에서 ‘제7조’로 확대하는 것은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어촌·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우리 구가 어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안 제4조 ~ 제5조)
-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등(안 제6조 ~ 제17조)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안 제18조 ~ 제20조)
-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징수 등(안 제21조 ~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어촌·어항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어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은
 - 제1장 총칙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의무 등)
 -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등
 - 제3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 제4장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징수 등
 - 제5장 보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어촌·어항법」이 제정(2005. 3. 31,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어항지정권자 및 어항관리청으로써의 조례 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하지만,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하여 삭제하고 있는 추세이

므로, 제2조(정의)제2호의 “어항구역” 정의는 삭제하고, ‘점용과 사용’은 약칭하여 ‘점·사용’으로 통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본문에서는 ‘점용·사용’으로, [별표] 및 [별지]에서는 ‘점·사용’과 ‘사용·점용’으로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으므로, 본문과 같이 ‘점용·사용’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제2조(정의) 제4호와 같이 “이용단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인용 법률명의 변경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히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제명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안 제2조)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안 제2조)
-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됨. (안 제2조)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됨. (안 제4조)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제명 및 용어 변경)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 개정, 2013. 6. 2. 시행)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013. 12. 27. 개정, 2014. 12. 28. 시행)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01. 1. 26. 개정, 2001. 7. 1. 시행)으로 각각 법률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1. 6. 7., 2011. 12. 8. 시행)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가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됨.(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률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주요 개정 내용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법률용어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히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주요 개정 내용은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2015. 12. 15., 제정 2015. 12. 2.)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기존의 신청서식 외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검토결과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내용 일부 정비(안 제4조제3항)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 시행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관련 조례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2015. 8. 10.)됨에 따라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기존의 신청서식 외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검토결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명 변경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4. 29. (윤치용 의원)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정수(안 제2조)
 - 결산검사위원 정수 3명 이상 5명 이하 ⇒ 3명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결산 검사사항에 맞게 개정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검사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정수(3명 이상 5명 이하 ⇒ 3명)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결산검사 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4. 29. (강진희 의원)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맞게 개정.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중 하나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4. 29. (백현조 의원)
- 심의일자 : 2016. 5. 23. (제159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일부 누락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13조 직속기관장 ⇒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 제11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안 제2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안 제2조제1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일부 누락된 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중 하나로, 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4절 제160회 제1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6. 6. 10.(금) 10:00

다. 회 기 : 2016. 6. 10. ~ 6. 24.(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청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
(의안번호 제187호, 윤치용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 임시회를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정례회를 개최함에도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및 민원상담실 운영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제6대 북구의회가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 하겠다는 다짐을 한 지가 엇그제 같은 데 어느 덧 2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전반기의 242건의 안전처리는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 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주요 시책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이상욱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 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달궈진 쇠를 두드려 생활에 필요한 각종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내년이면 북구 출범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구민의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두드려 가며 추진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점차 무더워 지고 있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수 선

3. 의사일정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6. 6. 10. ~ 6.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6. 10.(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4호) - 제 안 설 명(행정지원국장) -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이상육 의원) 5.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11.(토)		휴 회	
6. 12.(일)		휴 회	
6. 13.(월) 10:00	2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의안번호 제187호, 윤치용 의원 발의)	
6. 14.(화) 10:00	3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행정지원국 (충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6. 15.(수) 10:00	4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행정지원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6. 16.(목) 10:00	5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6. 17.(금) 10:00	6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6. 18.(토)		휴 회	
6. 19.(일)		휴 회	
6. 20.(월) 10:00	7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6. 21.(화) 10:00	8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6. 22.(수) 10:00	9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3호) (기획홍보실, 총무과, 보건소)	
6. 23.(목) 10:00		<현장방문 활동> 1. 쇄부리체육센터 건립현장 2. 송정택지개발사업 현장	
6. 24.(금) 10:00	10	◆ 5분 자유발언 (안승찬 의원) ◆ 5분 자유발언 (윤치용 의원) ◆ 5분 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전처리 경과 및 결과

□ 소로 3-248호선의 소로 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6. 3. (윤치용 · 안승찬 · 강진희 의원)
- 심의일자 : 2016. 6. 13. (제160회 정례회 제2차분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동산새터~시례새터(3-248호선)도로가 민원을 이유로 소로 3-20호선으로 변경된 사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주민 제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 사업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의 필요성

나) 주요내용

- 조사목적
 - 주민 민원 처리에서의 구정 업무의 민주성을 확립
 - 주민과의 소통, 주민간의 소통에 대한 구청과 의회의 역할 확립
- 조사범위 ※ 조사사무 내용 및 대상기관의 범위 등
 - 소로3-248호선에서 소로3-20호선 변경에 대한 민원 내용
 - 민원 처리에서 불가하다고 한 이유와 내용
 - 이후 민원인의 재요구에 따른 구청장의 소방도로 변경에 대한 과정과 이유
 - 민원(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과 구청의 갈등 해소 노력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소방도로변경조사특별위원회”

3)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6. 3. (구청장)
- 심의일자 : 2016. 6. 15. (제160회 정례회 제4차분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전자파일의 공개 등 정보공개 환경의 변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산정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별표 4)
 - ‘1매’당 → ‘시간’당 변경, 1시간 내 무료, 초과 시 30분당 1,000원 부과
- 전자파일의 복제 시 수수료 산정 기준 개선(별표 4)
 - ‘1건’당 → ‘용량(MB)’당 기준 변경
 - 1MB(한글파일 60매 정도) 이하는 무료, 초과 시 1MB당 100원 부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정부 운영 등으로 전자파일의 공개가 확대되는 등 정보공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산정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정보공개수수료를 상위법에서 정하는 데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8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공개대상은 4개로, 4개로 된 공개방법은 2개로 각각 묶어 수수료 산정체계를 단순화 하고, 1일 1시간 이내의 열람과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의 전자파일 복제는 무료로 하는 등, 정보공개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정보공개수수료를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5절 제161회 임시회

1. 개회이유

- 가. 소집요구 : 안승찬 의원 외 2명
- 나. 개회일시 : 2016. 6. 29.(수) 10:00
- 다. 회 기 : 2016. 6. 29.(수) (1일간)
- 라. 부의안건
 - 제16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16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2. 개회사 (생략)

3. 의사일정

제16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6. 6. 29.(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16. 6. 29. (수) 10:00	1	1. 제16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6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4.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 제6대 전반기 의정백서 •

제4장

.....

예산 · 결산심의사항

- 제1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2절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제3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4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5절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6절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7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제8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9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0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11절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2절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3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제14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4. 8. 20.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4. 8. 28.(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4. 9. 4.(제6차 본회의)

2.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4년 예산액 (2회추경)	%	기 정 예산액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30,718,186	100.0	224,733,043	100.0	5,985,143	6,921,546
일 반 회 계		227,105,272	98.43	222,606,290	99.05	4,498,982	6,813,158
특 별 회 계		3,612,914	1.57	2,126,753	0.95	1,486,161	108,387
기 타 특 별 회 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6,894	0.07	135,791	0.06	31,103	5,007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47,300	0.24	541,300	0.24	6,000	16,419
	폐기물처리시설	1,435,981	0.62	-	0.00	1,435,981	43,079
	기 반 시 설	10,074	0.00	10,074	0.00	-	302
	주 차 장	1,452,665	0.63	1,439,588	0.64	13,077	43,580

3.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30,718,186	-	22,900	-	3,383,464	3,406,364	230,718,186	6,921,546
일 반 회 계		227,105,272	-	22,900	-	2,882,212	2,905,112	227,105,272	6,813,158
특 별 회 계		3,612,914	-	-	-	501,252	501,252	3,612,914	108,387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기금	166,894	-	-	-	3,000	3,000	166,894	5,007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47,300	-	-	-	-	-	547,300	16,419
	폐 기 물 처리시설	1,435,981	-	-	-	-	-	1,435,981	43,079
	기반시설	10,074	-	-	-	10,074	10,074	10,074	302
	주 차 장	1,452,665	-	-	-	488,178	488,178	1,452,665	43,580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9억 8,500만원이 증액된 2,307억 1,8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 16억 1,279만원, 지방교부세 7억 8,932만원, 보조금 9억 3,101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으로 1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59억 8,514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69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8만원, 교육 분야에 8,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억 7,147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5억 658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 4,327만원, 보건분야에 2,25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1,402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86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 6,10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4,989만원이, 예비비에 7억 8,118만원 기타로 3억 2,90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주민안전 및 현안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평화통일 추진을 위한 통일기행’의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도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함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인근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전 인근 아파트 지역주민에게 사전설명 등의 공청회 과정을 반드시 거쳐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함. 그 외 주민센터 외곽 소방도로 조성을 통한 활용 방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최적의 위치에 신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기자재 구입 및 환경개선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위탁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쓰레기 공용마대 제작과 관련하여 공용마대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배부 시 공용마대에 단체이름 또는 개인 실명을 기재하는 방안 강구 등 다각도로 관리감독을 하고, 낙엽수거용에 대하여는 폐 현수막을 재활용 하여 크게 제작하는 등 구 재원을 아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찰활동을 통한 사전 예방 및 방제작업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산림소유자는 감염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산림소유주가 신고의무를 하여 확산방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2절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 가. 접수일자 : 2014. 7. 10.
-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다. 심의일자 : 2014. 9. 30. ~ 10. 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 : 250,360,833,325원
 - 세출결산액 : 218,337,127,985원
 - 세계잉여금 : 32,023,705,34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567,839,610,963원
 - 부 채 : 7,328,409,800원
 - 순 자 산 : 560,511,201,163원

- 재정운영
 - 수 익 : 203,071,112,020원
 - 비 용 : 188,395,358,724원
 - 재정운영결과 : 14,675,753,296원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13년도 세입예산현액 2,480억 9,99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3억 6,083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428억 1,794만원에 수납액은 2,447억 2,269만원이고, 이월액은 88억 2,809만원임.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2억 8,20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3,813만원이며, 이월액은 28억 5,991만원임.
-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외수입은 체납액의 대부분이 교통관련 과태료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적극적인 징수 대책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2,480억 9,99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83억 3,712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428억 1,79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35억 9,5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2억 8,205만원이며, 지출액은 47억 4,168만원임.
-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 조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어야 할 것임.

-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 등으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주민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해당분야의 수혜 대상자가 누락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2013년도 처음 작성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면 성과목표 달성, 효과분석 등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부서별로 정착하기에는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내용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연구용역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목표대로 연구개발 사업이 수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구 정책에 반영이 되어, 연구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에 접목을 시켜주시길 당부 드림.
-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 수립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 가. 접수일자 : 2014. 7. 1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4. 10. 7.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업명	지출결정액	결정일자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계	4건	369,303,000		306,642,607	0	62,660,393	
일반회계	냉천경로당 점유토지보상금 지급	60,000,000	8. 8.	60,000,000	0	0	냉천경로당 사유지 일부 (108㎡) 점유와 관련 울산 지방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
"	과수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3,807,000	8. 8.	3,420,350	0	386,650	과수농가 냉해 피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00,000,000	10. 4.	237,726,270	0	62,273,730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피해목 조기제거 및 적기 방제작업이 시급
"	울산지구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5,496,000	10. 31.	5,495,987	0	13	도로파손 등 피해배상금의 울산지구배상심의회 의 배상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4.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3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3억 6,930만3천원 중 3억 664만2,607원을 지출하였으며, 6,266만 39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3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냉천경로당 점유토지보상금 지급으로 6,000만원, 과수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342만 350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2억 3,772만 6,270원을, 울산지구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549만 5,987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4. 11. 19.
- 제출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4. 11. 20.
- 본회의 의결일자 : 2014. 12. 16.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5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14년 당초)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23,755,501	100	206,235,586	100	17,519,915	6,712,665
일 반 회 계		222,540,318	99.46	204,616,062	99.21	17,924,256	6,676,210
특 별 회 계		1,215,183	0.54	1,619,524	0.79	△404,341	36,455
기 타 특 별 회 계	의 료 급 여 기 금	146,021	0.07	135,791	0.07	10,230	4,381
	기 반 시 설	10,303	0.00	10,074	0.00	229	309
	주 차 장	1,058,859	0.47	932,359	0.45	126,500	31,766

※ 전년도 예산액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41,300천원 포함 예산임.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등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23,755,501	-	417,824	0.19	2,536,959	2,954,783	223,755,501	6,712,665
일 반 회 계		222,540,318	-	417,824	0.19	2,352,791	2,770,615	222,540,318	6,676,210
특 별 회 계		1,215,183	-	-	-	184,168	184,168	1,215,183	36,455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기 금	146,021	-	-	-	3,000	3,000	146,021	4,381
	기반시설	10,303	-	-	-	10,303	10,303	10,303	309
	주차장	1,058,859	-	-	-	170,865	170,865	1,058,859	31,766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5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5억 1,9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9억 2,425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434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27억 4,700만원, 세외수입 16억 9,175만원, 조정교부금등 7억 4,581만원, 보조금 120억 7,106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2억 6,42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5.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

수입에 있어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조정교부금 등은 소폭 증가 하겠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사업 등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12.35% 증액되었음.

-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비·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5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75억 1,9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주요 편성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억 4,624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1,739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3억 3,249만원, 보건분야에 6억 1,924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억 8,42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억 1,86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7억 4,344만원 예비비, 기타에 23억 6,69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4,718만원, 교육분야에 1,67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억 1,931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 2,54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고장 스페셜 좋은날 좋은시간 프로그램’ 및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특집 프로그램’은 향후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위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시행 후 검토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을 하였음.
- ‘예술창작소 운영’ 사업은 일부 운영비 등에 있어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으며, 향후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상근직원 근무인원 조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
-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건강 걷기대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잔치’, ‘울산 복구의 책 도서구입’, ‘사회 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등 이러한 행사경비는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음.

‘중소기업인 해외경영기술연수’, ‘기업사랑 회사기 달기 운동’ 사업은 이번에 제정된 중소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이차보전 등 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서서히 추진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재정여건에 맞춰 일부 삭감하였으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차장조성사업의 경우 접근성, 부지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인접토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보상 시 감정평가사를 통한 공정한 감정을 통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수강료 인상, 강사선정에 있어 일부 동에서 민원이 있으니, 동별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람.

동별 환경정비 예산 풀베기 사업의 경우, 동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하절기 환경정비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민원은 구 해당부서로 넘길 것이 아니라 동에서 즉시 처리하여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 바람.

강동해변가요제, 투게더 콘서트, 강동해변 물놀이장 운영 등 강동지역의 각종 행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일정시기에 행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분산 시행함으로써, 관광객이 늘 찾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상인들에게는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보훈단체 위로연행사 시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제3회까지 합동

위로연 행사를 추진해오다 각 단체별로 시행하는 만큼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 주기 바람.

바우처 사업의 경우, 각 분야별 사업추진 실적 차이가 많음.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자체 홍보강화는 물론 바우처 사업예산의 통합운영, 수급자격 확대 등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에 지속 건의 추진 바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차세대 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매곡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위한 조사용역 사업의 경우 향후 유지보수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용역수행 시 비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바람

-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직원 정례조회 기획공연 및 석회 문화공연 시 관내 지역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지역예술단체 및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

신년인사회 위탁운영과 관련 행사 성격상 의견이 중요한 만큼 직접 시행을 검토 또는 위탁운영 시 의견 등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 중,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은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람.

예산편성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추진하겠지만, 주민편의시설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로 형평성있게 배분 편성되길 당부 드림.

최근의 기후는 겨울철 눈이 예전에 비하여 많이 예상이 되고 있

으므로, 설해대비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제설 전문차량 수요가 증가하니 구입에 대해 검토 바람.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의 신축, 기존 시설의 유지를 위한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시설확충을 할 수 있도록 바람.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절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4. 12. 5.
- 제출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4. 12. 16.(제13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4. 12. 22.(제17차 본회의)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4년 예산액 (3회추경)	%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44,058,400	100	230,718,186	100	13,340,214	7,321,752
일 반 회 계		238,970,359	97.92	227,105,272	98.43	11,865,087	7,169,111
특 별 회 계		5,088,041	2.08	3,612,914	1.57	1,475,127	152,641
기 타 특 별 회 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6,894	0.07	166,894	0.07	-	5,007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47,300	0.22	547,300	0.24	-	16,419
	폐기물처리시설	2,724,185	1.12	1,435,981	0.62	1,288,204	81,726
	기 반 시 설	10,074	0.00	10,074	0.00	-	302
	주 차 장	1,639,588	0.67	1,452,665	0.63	186,923	49,188

3.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44,058,400	-	-	-	14,487,145	14,487,145	244,058,400	7,321,752
일 반 회 계		238,970,359	-	-	-	13,779,946	13,779,946	238,970,359	7,169,111
특 별 회 계		5,088,041	-	-	-	687,199	687,199	5,088,041	152,641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기 금	166,894	-	-	-	-	-	166,894	5,007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47,300	-	-	-	-	-	547,300	16,419
	폐 기 물 처리시설	2,724,185	-	-	-	-	-	2,724,185	81,726
	기반시설	10,074	-	-	-	-	-	10,074	302
	주차장	1,639,588	-	-	-	687,199	687,199	1,639,588	49,188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3억 4,021만원이 증액된 2,440억 5,84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45억 6,700만원, 세외수입 29억 6,873만원, 지방교부세 9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억 7,980만원, 보조금 13억 2,2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33억 4,021만원이 증액된 2,440억 5,840만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1,37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억 2,572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2억 3,02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42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억 1,86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56만원, 예비비에 108억 7,48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억 8,072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8억 3,086만원, 보건분야에 3,74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484만원, 기타에 8억 5,154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편백림 산림욕장 입구 주차장 부지 매입건의 경우, 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삭감을 하나 주차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후에도 계속 검토 바람.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활동과 관련, 공사 시에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시설물 준공 직전 각 시설물에 대하여 확인을 함으로써 법적인 감독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호계공설시장 CCTV설치 사업의 경우, 기존 설치된 지역과의 형평성 및 상인요구로 설치를 하나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대해

서는 고민이 요구되므로 이후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 드림.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시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삭감을 결산추경에 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는 적기에 삭감이 되도록 바람.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6절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5. 4. 10.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5. 4. 20.(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5. 5. 1.(제9차 본회의)

2.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5년 예산액 (1회추경)	%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47,903,112	100	223,755,501	100	24,147,611	7,437,093
일 반 회 계		245,193,326	98.91	222,540,318	99.46	22,653,008	7,355,800
특 별 회 계		2,709,786	1.09	1,215,183	0.54	1,494,603	81,294
기타 특별 회계	의료급여기금	167,546	0.07	146,021	0.07	21,525	5,02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47,944	0.02	-	0.00	47,944	1,438
	폐기물처리시설	1,439,704	0.58	-	0.00	1,439,704	43,191
	기 반 시 설	10,303	0.00	10,303	0.00	-	309
	주 차 장	1,044,289	0.42	1,058,859	0.47	△14,570	31,329

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47,903,112	-	60,000	-	2,122,552	2,862,087	247,903,112	7,437,093
일 반 회 계		245,193,326	-	60,000	-	2,780,561	2,840,561	245,193,326	7,355,800
특 별 회 계		2,709,786	-	-	-	21,526	21,526	2,709,786	81,294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기금	167,546	-	-	-	3,000	3,000	167,546	5,026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7,944	-	-	-	-	-	47,944	1,438
	폐 기 물 처리시설	1,439,704	-	-	-	10,074	10,074	1,439,704	43,191
	기반시설	10,303	-	-	-	8,452	8,452	10,303	309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41억 4,761만원이 증액된 2,479억 311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억 2,969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 교부금등에 59억 2백만원, 보조금 98억 8,450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으로 75억 3,14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241억 4,761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억 2,95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64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6억 2,673만원, 환경 보호 분야에 15억 3,349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1억 5,424만원, 보건 분야에 13억 29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억 1,317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3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0억 2,17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억 8,488만원, 예비비와 기타에 4,198만원이 각각 증액 되어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도비보조금 및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주민편익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의 경우, 최단운행연한 초과와 수리비 과다에 따른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재원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차후에 구입을 고려,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6. 25참전 기념비 건립과 관련하여, 이전에 보훈 8단체 합동 건

립 계획에서 변경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월남참전 등 타 보훈 단체에 계획변경과 관련한 사전설명과,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역사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장소선정은 물론 예정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구 직영에서 위탁대행으로의 과정에서 대민서비스 저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위탁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이 계약사항을 이행하는지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하기 바람.

그리고 일부 부서의 경우,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사전 설명이 부족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파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었음.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지역적으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있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7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 가. 접수일자 : 2015. 6. 30.
-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다. 심의일자 : 2015. 7. 10. ~ 7. 2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 : 261,415,745,873원
 - 세출결산액 : 224,675,333,006원
 - 세계잉여금 : 36,740,412,867원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자 산 : 593,096,670,944원
 - 부 채 : 15,175,268,564원
 - 순 자 산 : 577,921,402,380원
 - 재정운영
 - 수 익 : 227,254,894,397원
 - 비 용 : 210,041,402,272원
 - 재정운영결과 : 17,212,834,645원

4. 심의의견 요지

-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그 외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성과, 예산편성 목적대로 운용을 하였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세입부문

-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 2,585억 3,01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14억 1,574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534억 4,209만원에 수납액은 2,545억 3,825만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969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0억 8,8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 7,749만원이며,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2,736만원임.
-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편성액과 실제수납액에서 차이가 있는 부서가 일부 있으므로 세외수입 총괄 관리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실제수입과 비교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지도·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구의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비롯 세외수입의 전체적인 세입전망을 분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도로 및 하천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임대 및 대부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세원 발굴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람.
- 아울러 결손처분 건에 있어서 결손처분 사유를 전반적으로 확

인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징수가능 재원을 적극 색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하여 세입 증대방안 등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2,585억 3,01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46억 7,533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534억 4,20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06억 7,2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0억 8,804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 307만원임.
-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중 예측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여전히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규모가 과다함.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 및 대상자 선정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수립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별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과 관련 안전분야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설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쇄부리터 녹지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차질없는 추진과, 여성어업인들의 지위향상과 권익 신장을

- 통한 여성어업인 육성 등, 각 분야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음.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 가. 접수일자 : 2015. 6. 3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5. 7. 21.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결정일자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계	1 건	72,495,000	2.14	68,846,050	0	3,648,950	
일반회계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추진	72,495,000	2.14	68,846,050	0	3,648,950	2014.1.17.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1. 30. 인근 경남 밀양에서 추가발생 함에 따라 AI 추가 확산 및 우리 구 유입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해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고 구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함.

4.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지출결정액 총 7,249만 5천원 중 6,884만 6,050원을 지출하였으며, 364만 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4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분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9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5. 9. 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5. 9. 8.(제 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5. 9. 21.(제10차 본회의)

2.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경 정 예산액	%	기 정 예산액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59,373,757	100	247,903,112	100	11,470,645	7,781,213
일 반 회 계		256,013,074	98.70	245,193,326	98.91	10,819,748	7,680,392
특 별 회 계		3,360,683	1.30	2,709,786	1.09	650,897	100,820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167,546	0.06	167,546	0.07	-	5,02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60,944	0.02	47,944	0.02	13,000	1,828
	폐기물처리시설	1,439,704	0.56	1,439,704	0.58	-	43,191
	기 반 시 설	10,303	0.00	10,303	0.00	-	309
	주 차 장	1,682,186	0.65	1,044,289	0.42	637,897	50,466

3.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59,373,757	15,000	20,000	-	3,988,917	3,993,917	259,358,757	7,780,762
일 반 회 계		256,013,074	15,000	20,000	-	3,156,280	3,161,280	255,998,074	7,679,942
특 별 회 계		3,360,683	-	-	-	832,637	832,637	3,360,683	100,820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기 금	167,546	-	-	-	3,000	3,000	167,546	5,026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0,944	-	-	-	-	-	60,944	1,828
	폐 기 물 처리시설	1,439,704	-	-	-	-	-	1,439,704	43,191
	기반시설	10,303	-	-	-	10,303	10,303	10,303	309
	주 차 장	1,682,186	-	-	-	819,334	819,334	1,682,186	50,466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4억 7,064만원이 증액된 2,593억 7,376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 2억 5,000만원, 세외수입 6억 9,866만원, 지방교부세 8억 774만원, 조정교부금에 5억원, 보조금 69억 6,118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에 22억 5,30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14억 7,064만원 증액 편성요구 되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2,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8,384만원, 교육 분야에 8,06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억 1,584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728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2억 6,450만원, 보건분야에 1억 42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9,064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억 8,99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6,670만원, 예비비와 기타에 8억 8,495만원이 각각 증액 되어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 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음.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 필수사업비 부족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1년차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나, 광역시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이후 삭감을 하여야 할 예산으로 이에 대한 국·시비 세입 및 세출예산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성립전 예산을 편성,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 등 사업내용에 대해 의회에서 내용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성립전 예산 편성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당사활어직판장 증축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주변 개인업소의 상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 심도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와 관련하여, 사업참여 대상의 대부분이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예상되는 바, 수거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불법유동광고물 부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의회에 보고된 사업 중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추경에는 기관운영과 관련되는 정상적 경비는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편의사업 위주로의 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0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5. 11. 19.
- 제출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5. 11. 20.
- 본회의 의결일자 : 2015. 12. 16.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6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15년 당초)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46,550,411	100	223,755,501	100	22,794,910	7,396,512
일반회계		245,233,114	99.47	222,540,318	99.46	22,692,796	7,356,993
특별회계		1,317,297	0.53	1,215,183	0.54	102,114	39,519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145,432	0.06	146,021	0.07	△ 589	4,36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8,800	0.02	-	-	38,800	1,164
	기반시설	10,483	0.00	10,303	0.00	180	314
	주차장	1,122,582	0.46	1,058,859	0.47	63,723	33,677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등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46,550,411	-	777,600	0.32	2,654,736	3,432,336	246,550,411	7,396,512
일 반 회 계		245,233,114	-	777,600	0.32	2,453,369	3,230,969	245,233,114	7,356,993
특 별 회 계		1,317,297	-	-	-	201,367	201,367	1,317,297	39,519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기 금	145,432	-	-	-	-	-	145,432	4,363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8,800	-	-	-	-	-	38,800	1,164
	기반시설	10,483	-	-	-	-	-	10,483	314
	주차장	1,122,582	-	-	-	201,367	201,367	1,122,582	33,677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227억 9,491만원이 증액된 2,465억 5,04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52억 3,311만원, 특별회계는 13억 1,729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34억 5,000만원, 세외수입 14억 1,334만원, 조정교부금 61억 536만원, 보조금 119억 3,659

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1억 1,04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91%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조정교부금은 약 19% 증가하였는데, 이는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시세 보통세의 18.1%에서 20%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증액 되었음.
보조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10.87% 증가되었음.
-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27억 9,491만원이 증액된 2,465억 5,041만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에 156억 7,26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6억 6,620만원, 교육분야에 6억 57만원, 문화 및 관광에 167억 4,046만원, 환경보호에 82억 7,147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95억 89만원, 보건분야에 76억 1,176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59억 2,847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10억 143만원, 수송및 교통에 87억 5,93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34억 7,296만원, 예비비에 24억 5,336만원, 기타 448억 7,084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동해변가요제,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건강달리기 대회,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의 행사경비 삭감과 관련해서는 매년 행사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음.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보조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금이 다소 부족하겠지만 타 행사경비와 비교하여 지난해 대비 일부 증액하고 삭감하였음.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 3개년에 걸쳐 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재검토해야 될 분야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분야에 실내, 실외 공사를 구분하여 휴관일수를 최소한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재수립하여 향후 추정 등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바람.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부적합하여 삭감하였으며,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 시 공익활동 상황 등 단체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하여 주기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도시발전 전문가 등 학계의 자문과 여러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단계부터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소기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울산의 성장동력 북구의 재발견 다큐 제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 도시재생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시 활용도록 하고, 우리구의 대표적인 쇠부리축제와 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울산 북구의 쇠부리 문화 역사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주제로서 완성된 다큐 제작을 하여 주기 바람.

각 도서관별 도서구입 시 신청에서 구입, 비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간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구입 방법에 대해 검토 바람.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과 관련하여 북구 지역자활센터로 이전 운영함으로써 효문, 연암지역 청소년들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청소년문화의 집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원지경로당 신축’의 경우 처음으로 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하는 사업으로, 향후 이에 따른 경로당 신축수요가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부지·건축면적 등 경로당 신축규모 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주기 바람.

해양레저체험마을 장비구입,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체험장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마을주변에 소재한 각종 자원이 어우러져 마을전체를 관광화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요구되므로 행정적 지원을 당부 드림.

양정동 벽화거리 도로정비, 양정교회 일원 소방도로 개설 사업 등의 각종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될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 내용적 측면에서 개선은 되었으나 일부 부서는 해당이 없는 부서도 있으므로 적절한 사업발굴은 물론 사업수혜자,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작성하여 주길 당부 드림.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방보조금의 예산은 자치단체별 보조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공익활동 등 단체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을 하되, 일부 특정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다양한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추억의 학교 운영과 관련, 교육청 임대시설로 시설투자 등을 할 수 없어 방문객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생산자(판매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매장 내 소비자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곳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용역’ 사업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한 시설로 방과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설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

진하여 주길 바람.

편백산림욕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각각의 사업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가 입구까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강동누리길, 염포누리길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음. 앞으로도 업무 전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좋은 아이템의 사업개발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기 바람.

끝으로, 각종 공공건축물이 신축 및 계획 중에 있음. 공공건축물 신축시 허실공간을 최소화하고, 냉·난방 에너지 절감 설계를 반영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주기 바람.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1절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5. 12. 9.
- 제출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5. 12. 16.(제12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5. 12. 23.(제17차 본회의)

2.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5년 예산액 (3회추경)	%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265,542,969	100	259,358,757	100	6,184,212	7,966,289
일 반 회 계		261,896,635	98.63	255,998,074	98.70	5,898,561	7,856,899
특 별 회 계		3,646,334	1.37	3,360,683	1.30	285,651	109,390
기 타 특 별 회 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7,546	0.06	167,546	0.06	-	5,02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60,944	0.02	60,944	0.02	-	1,828
	폐기물처리시설	1,439,704	0.54	1,439,704	0.56	-	43,191
	기 반 시 설	10,303	0.00	10,303	0.00	-	309
	주 차 장	1,967,837	0.74	1,682,186	0.65	285,651	59,035

3.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65,542,969	-	-	-	14,625,257	14,625,257	265,542,969	7,966,289
일 반 회 계		261,896,635	-	-	-	13,429,314	13,429,314	261,896,635	7,856,899
특 별 회 계		3,646,334	-	-	-	1,195,943	1,195,943	3,646,334	109,390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기 금	167,546	-	-	-	3,000	3,000	167,546	5,026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0,944	-	-	-	-	-	60,944	1,828
	폐 기 물 처리시설	1,439,704	-	-	-	-	-	1,439,704	43,191
	기반시설	10,303	-	-	-	10,303	10,303	10,303	309
	주차장	1,967,837	-	-	-	1,182,640	1,182,640	1,967,837	59,035

4. 심의의견 요약

□ 세입 분야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8,421만원이 증액된 2,655억 4,296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56억 1,000만원, 세외수입 8억 2,650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조정교부금등에 1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 33억 3,7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회 추경 대비 61억 8,421만원이 증액된 2,655억 4,296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억 9,02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02만원, 교육분야에 1,24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4,795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105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6억 6,54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5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77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7,671만원, 기타 분야에 13억 930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건 분야에 1,73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1억 1,299만원, 예비비로 97억 9,02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정 및 제안된 사항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블루마시티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로 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앞으로도 신축 중인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시설로의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드림.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과 관련, 주변일대는 복선전철화 사업, 송정택지지구 등 도시변화가 많은 지역이므로 향후 도시계획과 비교 중복투입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국도와 연계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도로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 보완 후 예산을 집행하여 주기 바람.

무룡천 좌안 제방도로 개설공사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제방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주기 바람.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은 적기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1, 2회 추경 시 삭감을 하여야 함에도 결산추경에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기에 삭감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을 하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2절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6. 5. 2.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6. 5. 10.(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6. 5. 24.(제11차 본회의)

2.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6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68,103,216	100	246,550,411	100	21,552,805	8,043,096
일 반 회 계		264,273,483	98.57	245,233,114	99.47	19,040,369	7,928,204
특 별 회 계		3,829,733	1.43	1,317,297	0.53	2,512,436	114,892
기 타 특 별 회 계	의 료 급 여 기 금	278,212	0.10	145,432	0.06	132,780	8,34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42,390	0.02	38,800	0.02	3,590	1,272
	폐기물처리시설	1,244,313	0.46	-	0.00	1,244,313	37,329
	기 반 시 설	10,483	0.00	10,483	0.00	-	314
	주 차 장	2,254,335	0.84	1,122,582	0.46	1,131,753	67,630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68,103,216	621,000	1,218,384	-	4,042,687	4,640,071	267,482,216	8,024,466
일 반 회 계		264,273,483	621,000	1,218,384	-	2,715,621	3,313,005	263,652,483	7,909,574
특 별 회 계		3,829,733	-	-	-	1,327,066	1,327,066	3,829,733	114,892
기 타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기금	278,212	-	-	-	-	-	278,212	8,346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2,390	-	-	-	-	-	42,390	1,272
	폐 기 물 처리시설	1,244,313	-	-	-	-	-	1,244,313	37,329
	기반시설	10,483	-	-	-	-	-	10,483	314
	주 차 장	2,254,335	-	-	-	1,327,066	1,327,066	2,254,335	67,630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5억 5,280만원이 증액된 2,681억 321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32억 955만원, 지방교부세 20억 5,626만원,

조정교부금등에 84억 3,451만원, 보조금 40억 3,721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 등으로 38억 1,52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 대비 215억 5,28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억 94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32만원, 교육 분야에 2,85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2억 3,522만원, 환경 보호 분야에 18억 5,866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7억 5,028만원, 보건 분야에 5억 8,66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억 9,23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억 9,06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억 1,04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8,990만원이 각각 증액 되어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도비보조금 및 2015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사용잔액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주민편익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의 경우, 공모사업이라고는 하나 사업의 성격, 운영 방안, 시설규모 등 전반적인 논의 없이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으로 재검토 후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그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구가 건립해야 하는 시설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는 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음.

‘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연수’의 경우, 투입예산에 비해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기 바람.

‘농소운동장~시장사거리 도로정비공사’의 경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고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야하나, 당초에 요구한 금액의 100%를 증액 요구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함.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과 더불어 야외공연장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연관람객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도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후 추진되어야 하겠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임차시설의 사용으로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구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가지므로 향후 시설 건립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함.

노사민정 공동워크숍과 해외우수사례탐방과 관련하여,

노사민정 공동워크숍과 해외우수사례탐방 사업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는 하나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이며 공동워크숍을 통해서 실무위원들과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바람.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의 예산이므로
향후에는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발전하고 있는 우리구의 지역
적 여건이 잘 반영되어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사
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
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3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 가. 접수일자 : 2016. 5. 10.
-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다. 심의일자 : 2016. 6. 10. ~ 6. 21.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282,372,461,555원
 - 세출결산액 : 230,891,839,439원
 - 세잉여금 : 51,480,622,116원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자 산 : 609,407,114,069원
 - 부 채 : 9,314,777,533원
 - 순 자 산 : 600,092,336,536원
 - 재정운영
 - 수 익 : 243,512,530,932원
 - 비 용 : 222,525,739,323원
 - 재정운영결과 : 20,986,791,609원

4. 심의의견 요지

-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그 외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성과, 예산 편성 목적대로 운용을 하였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세입부문

- 2015년도 세입예산현액 2,808억 3,92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23억 7,246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769억 1,623만원에 수납액은 2,781억 1,718만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3,835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9억 2,30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억 5,528만원이며,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2,565만원임.
-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편성액과 실제 수납액에서 차이가 있는 부서가 일부 있으므로, 세외수입 총괄관리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실제수입액과 비교하여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지도·관리함으로써, 우리구의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의 전체적인 세입전망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확대되고 있는 북구 사업에 보탬이 되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국비확보 및 자체 세원 발굴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2,808억 3,92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08억 9,184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769억 1,62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82억 2,0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9억 2,303만원, 지출액은 26억 7,147만원임.

-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의 평가와 분석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음.
또한, 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나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규모가 과다함.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구민창안 시상금, 추억의 학교 운영,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 사업 등과 같이 몇몇 활성화 되지 못하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긴급도로복구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긴급하게 도로복구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만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겠음.
-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혹은 주민이 건의한 사업은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단계에서 관련 부서 및 주민센터 등과 소통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바람.
-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

는 것으로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으나,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4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 가. 접수일자 : 2016. 5. 1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6. 6. 22.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2건	10,370,000		9,411,800	-	958,200	
일반 회계	기관유지 업무추진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7,500,000	2015. 11.25.	6,541,800	-	958,200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 운영('15. 11. 23. ~ 11. 26.)에 따른 분향 물품 임차 및 구입비를 예비비로 지출함.
	검사실 운영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확산 방지)	2,870,000	2015. 6.29.	2,870,000	-	-	2015. 5. 20.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 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울산공항, 호계역 등 외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발열여부 측정·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함.

4.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지출결정액 총 1,037만원 중 941만 1,800원을 지출하였으며, 95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5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비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6대 전반기 의정백서 •

제5장

행정사무감사

- 제1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제2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제3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제4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제5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제6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제7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제8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1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14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기간 : 제1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 11. 21. ~ 2014. 11. 29.]

라.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마.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이 수 선
- 부 의 장 : 강 진 희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김남희, 권미정
- 사무직원 : 차 영 주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구 청 장	박 천 동		
		부 구 청 장	곽 상 희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홍 성 욱		
	총 무 국	총 무 국 장	최 석 두		
		총 무 과 장	안 희 수		
		주민참여과장	손 기 익		
		회 계 과 장	윤 일 호		
		문화체육과장	한 상 길		
		도 서 관 과 장	박 경 란		
		세 무 과 장	박 해 성		
		민원지적과장	이 병 국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홍 대 의		
		복지지원과장	이 차 범		
		사회복지과장	최 평 환		
경제일자리과장		이 문 걸			
환경위생과장		하 헌 주			
환경미화과장		박 경 규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임 용 균			
	안전건설과장	하 종 섭			
	도시녹지과장	김 종 구			
	교통행정과장	심 규 환			
	건축주택과장	이 상 철			
	농 수 산 과 장	박 성 화			
보 건 소	보 건 소 장	황 병 훈			
	보건행정과장	강 걸 수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 태 희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전 동	농소1동장	이 석 원		
		농소2동장	윤 채 걸		
		농소3동장	강 수 상		
		강 동 동 장	이 해 균		
		효 문 동 장	서 정 남		
		송 정 동 장	정 매 자		
		양 정 동 장	박 두 용		
		염 포 동 장	윤 기 현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제1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 11. 21. ~ 2014. 11. 29.]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 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 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일 시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4. 11. 21.(금)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 기획홍보실 ○ 총무국 • 총무과 • 주민참여과 • 회계과	
2014. 11. 22.(토)			휴회	
2014. 11. 23.(일)			휴회	
2014. 11. 24.(월)	10:00	"	○ 총무국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2014. 11. 25.(화)	10:00	"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경제일자리과	
2014. 11. 26.(수)	10:00	"	○ 복지경제국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 보건소	
2014. 11. 27.(목)	10:00	"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과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4. 11. 28.(금)	10:00	"	○ 건설도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2014. 11. 29.(토)			휴회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홍보실	총무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386	22	20	100	111	98	26	9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 감사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작성요령 : 「별첨 2」 참조
- 감사범위 : 2013. 10. 1. ~ 2014.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4. 9. 30. 현재
- 제출기한 : 2014. 11. 5.(수)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32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20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 「별첨 3」 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6급 전문위원 권미정 외 5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 작성 제출 : 감사의원 「별첨 4」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6급 전문위원 권미정·사무직원 차영주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속기사 허순자 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 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 공무원 현지 안내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구 분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386	
공 통 사 항		22	
기 획 홍 보 실		20	
총 무 국	소 계	100	
	총 무 과	13	
	주 민 참 여 과	22	
	회 계 과	13	
	문 화 체 육 과	24	
	도 서 관 과	9	
	세 무 과	7	
	민 원 지 적 과	12	
복지경제국	소 계	111	
	복 지 지 원 과	15	
	사 회 복 지 과	40	
	경 제 일 자 리 과	13	
	환 경 위 생 과	22	
	환 경 미 화 과	21	
건설도시국	소 계	98	
	안 전 건 설 과	27	
	도 시 녹 지 과	19	
	교 통 행 정 과	10	
	건 축 주 택 과	14	
	농 수 산 과	28	
보 건 소		26	
의 회 사 무 과		9	

(전부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2. 인·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 현황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공사명 (사업명)		사업개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공정률	시공업체	예산 확보시기
	계							
	6.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결과	계약자
	7. 2014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 현황							
	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가액	설계변경 요청자	설계자	비고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13.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2.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해당동		통보일자	공사명	공사개요	통보내용	비고		
계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통사항]	1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13. 10. 1. ~ 2014. 9. 30.(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단체명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환수일	사업명	환수대상		환수사유	금액	비고			
			성명(업체,기관,단체명)	주소						
16.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비고
						일자	내역	비용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비고	
				○구 ○○동						
- 작성기간 : 2013. 10. 1. ~ 2014. 9. 30.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기간	지역		인원		목적		비고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4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 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4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 계약 서	임금	상 여 금	퇴 직 금	근로 시간	법정수 당	법정휴 가	사회보 험	계약 기간	근속 기간	재계약 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 (명)											
본청	기획 홍보실	기획 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복지 경제국	복지지 원과															
		...															
	...	...															
의회	의회사무과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4.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4.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홍보실)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 홍보실	1. 구청장 공약 실행계획서 ※ 별도 책자로 제출																																											
	2.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3. 구정연구동아리 운영 실적, 정책연구모임 운영 실적과 내용																																											
	4.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																																											
	5. 구민창안제도 운영 실적																																											
	6.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14. 9. 30. 현재)																																											
	<table><tr><td>구 분</td><td>총계</td><td>법령</td><td>조례</td><td>기타 규정</td></tr><tr><td>설치근거별</td><td></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총계	법령	조례	기타 규정	설치근거별																														
	구 분	총계	법령	조례	기타 규정																																							
	설치근거별																																											
<table><tr><td>구 분</td><td>총계</td><td>심의</td><td>의결</td><td>자문</td><td>협의</td></tr><tr><td>성격별</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총계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성격별																														
구 분	총계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성격별																																												
② 위원회 위원 현황																																												
<table><tr><th rowspan="2">위원회명</th><th rowspan="2">위원장</th><th colspan="6">위 원 수</th><th rowspan="2">임 기</th></tr><tr><th rowspan="2">계</th><th rowspan="2">남</th><th rowspan="2">여</th><th rowspan="2">당연직 임명직</th><th colspan="2">위 축 직</th></tr><tr><th>공무원</th><th>시·구의 원</th><th>민간위원 (시민단체)</th><th></th></tr><tr><td>총계</td><td>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민간위원()</td><td></td><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계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축 직		공무원	시·구의 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총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민간위원()		0	0	0	0	0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계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축 직																																						
공무원	시·구의 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총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민간위원()		0	0	0	0	0																																					
③ 위원회 개최 현황																																												
<table><tr><th rowspan="2">위원회명</th><th rowspan="2">회의주기</th><th rowspan="2">개최횟수 (서면)</th><th rowspan="2">회의록</th><th colspan="3">예산집행내역</th></tr><tr><th>예산액 (천원)</th><th>인원 (명)</th><th>집행액 (천원)</th></tr><tr><td>총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총계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총계																																												
※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 : 별도 제본 제출																																												
④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table><tr><td>소관부서</td><td>위원회명</td><td>설치일자</td><td>설치근거</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자	설치근거	비고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자	설치근거	비고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대 집행내역																																												
<table><tr><th rowspan="2">소관부서</th><th rowspan="2">위원회명</th><th colspan="4">집행내역</th><th rowspan="2">비고</th></tr><tr><th>일시</th><th>장소</th><th>참석인원</th><th>소요금액</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소관부서	위원회명	집행내역				비고	일시	장소	참석인원	소요금액																										
소관부서	위원회명	집행내역				비고																																						
		일시	장소	참석인원	소요금액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 홍보실	7.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성과 8.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2013년도, 2014년도) 9.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4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명단(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현황 및 실적(일정, 교육대상, 주제, 참석인원) -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록, 소규모 사업 주민 의견 수렴 자료 10. 주민참여예산제 2014년도 당초예산 반영내역 11.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1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 인센티브 종류(승진점수 가산,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13. 우리 구 채무 현황(지방채, 보증채무 등) 14.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5.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신규 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 접수(제소 포함) 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동안 사건 완료 건도 포함 16. 고문변호사 활동 현황 및 실적 17.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 처분사항, 모범 사례) 18.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9.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안행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20.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 실적	

(총무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총무과	1.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 현황																						
	2. 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 수, 교수 현황, 북구청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3. 해외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 실적																						
	4. 인력 운용 관련																						
	- 전체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3)																						
	5. 공무원 현황																						
	-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4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연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6. 여성공무원 보건 휴가 현황(2013, 2014년)																						
	7. 5급 공무원 진보내역																						
<table><tr><th>대상자</th><th>부서명</th><th>근무기간</th><th>비 고</th></tr><tr><td rowspan="3"></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td><td>~ 현재</td><td></td></tr></table>				대상자	부서명	근무기간	비 고									~ 현재							
대상자	부서명	근무기간	비 고																				
		~ 현재																					
8.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																							
<table><tr><th>부서명</th><th>성명</th><th>직급</th><th>계약기간</th><th>업무</th><th>채용방법</th><th>월평균급여</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부서명	성명	직급	계약기간	업무	채용방법	월평균급여	비고								
부서명	성명	직급	계약기간	업무	채용방법	월평균급여	비고																
※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포함																							
9.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2013, 2014년)																							
10.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 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 현황(복무연장 등)																							
11.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현황																							
12.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1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2014. 9. 30. 기준)

구분	지방공무원 인력										기타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공무직				
											계	단순 노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청원 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4. 9. 30. 기준)

구 분		지방공무원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주민참여과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										
	:										
의회											
보건소											
농소 1동											
:											
:											

(붙임 3)

□ 기타 인력 규모(2014. 9. 30. 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 분		업 무	기타 인력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단순 노무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계	180일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												
		:												
		:												
	주민 참여과													
	:													
:	:													
의 회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주민 참여과	1. 주민참여 추진현황																									
	2. 주민참여학교 운영 실적 (참여자치아카데미, 통장학교, CB학교)																									
	3.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 현황(시간당 강사료 표기), 보조금 지원 현황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 표기 - 동별 취합)																									
	4.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직업 표기, 연령 표기), 위원의 타 단체 가입 현황, 여성위원 현황, 사무국장 현황, 주민자치위원장 현황																									
	5.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 (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 현황), 회의록 제목(안건)																									
	6.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각 단체별 사업실시 현황																									
	<table><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7. 민주평통북구협의회 현황 관련																									
	- 명단(회원경력 포함), 직업(소속단체), 사업 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지원 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자부담 포함)																									
<table><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8. 구청장 동순회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 현황																										
9.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상황																										
10. 지역별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 현황, 운영비 지원내역, 정산내용, 활동일지																										
11. 동별 예산 집행 현황(동별 취합)																										
12.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용																										
13. CB 공모사업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주민 참여과	14. 관내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예산지원 내역 포함)								
	설립일	기업명	주생산품	투 자 비			종사자수	월평균 매출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15.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								
	- 재단 기금 및 매년 장학금 집행실적, 향후계획								
	16.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2014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요약분),예산 포함								
	17.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8.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 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19.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20. 비문해 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 현황								
	21.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								
	-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22.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 추진상황								
	- 9. 30 까지 추진 실적과 중간점검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회계과	1. 공개입찰 계약 현황 - 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발주부서	계약일자	건명	사업량 (수량)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입찰참여 업체수	낙찰자
	2. 관급공사 계약 현황 -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수의계약 현황 - 1천만원 미만 ~ 1백만원 이상 - 부서명,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4.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5.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6.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5개소 - 청소 관련 계약내역(총괄) - 청사 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7.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 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8. 공유 재산 취득 현황(구 소유 - 토지, 건물) - 토지								
	연 번	품 명			취득일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취 득 목 적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 건물								
	연 번	품 명			취득일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취 득 목 적	비고
		소재지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 부서별(소계) 작성								
	9.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 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10. 구청사 개보수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역		사업비		비고
	11. 구청사 냉방기 가동 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12.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2013, 2014년 월별 비교)								
	13. 중산행복샘 위탁 조건 및 감사 결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체육과	1.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문화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 문화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각종 공연·전시행사 개최 현황																										
	4. 농소큰사랑 작은 음악회 개최 현황 (회원수 등 현황, 개최일시, 예산지원 내역, 집행내역 등)																										
	5. 인문학 서재 몽돌 운영 현황, 인문학 강좌 등 사업 현황																										
	6.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colspan="3">예 산 액</th> <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 <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계</th> <th>보조금</th> <th>자부담</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7. 강동사랑길 세부 조성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자재비, 노무비, 홍보비 등), 개통전 월 이용자와 개통후 이용자 비교																										
	8. 강동해변 물놀이장(바다 수영장 포함) 운영 실적																										
	9.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 관리 현황																										
	10. 달천철장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11.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현황(추진사항)																											
12.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13. 운동장별 대여 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14. 북구청소년 통일축구대회 (개최일시, 참여인원, 예산지원 내역, 집행내역 등)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체육과	15.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16. 2013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7. 생활체육회 운영비 - 보조금 지출 일자별 세부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8.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현황 19.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 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현황 20.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인력 운용 현황 21.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각 운동장 전기료 사용내역(2013, 2014년 월별 비교) 22.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23.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현황, 예산 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24. 투게더 콘서트 운영 현황(당초 계획서 및 진행 결과), 예산액, 집행내역(일자별 세부 지출 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서관과	1.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 평균 이용자수 - 도서(장서) 보유 현황 - 인력 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사서 자격증 보유 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도서관 인력 운영 현황 - 각 도서관별(작은도서관 포함) 자원봉사자 수, 봉사참여 비율(월 1회 이상) -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도서관 봉사 경력 유무)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 포함) 4.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운영 실적, 도서 대출 현황, 이용자 현황,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5.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추진 성과 - 도서 대출 현황 - 독서 감상문 참여 현황 및 독서릴레이 참여현황 - 주민 홍보 현황 -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 전략 6. 9월 독서의 달 추진 현황, 사업 실적, 사업 평가 7. 5개 도서관 전기료 사용내역(2013, 2014년 월별 비교) 8.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록, 사업내역 등) 9. 자원봉사자 현황, 활동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세무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 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 신청(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 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table><tr><th colspan="2">체납자</th><th colspan="3">결손내역</th><th rowspan="2">결손처분일자</th><th rowspan="2">결손사유</th></tr><tr><th>성명</th><th>주소</th><th>세목</th><th>부과연도</th><th>결손액</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체납자		결손내역			결손처분일자	결손사유	성명	주소	세목	부과연도	결손액							
	체납자		결손내역			결손처분일자	결손사유																			
성명	주소	세목	부과연도	결손액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 지적과	1.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2.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 실적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실적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6.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 7.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8.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정 현황(과년도 대비) 9.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0.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 1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 12.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지 지원과	1.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2.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세부지출내역(사업별, 사업기간)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단체별 구분 작성,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							
	4.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 (지원월, 지원내용, 대상자 수, 지원금액)							
	5.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현황							
	6.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현황 및 지원 현황(금액 등)							
	7.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4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 현황							
	- 금년도 사업실적(2013, 2014년도 비교 작성)							
	- 총 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추진현황							
	8.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추진상황							
	9.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10.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11. (사)행복발전소 기부금 및 물품 기탁내역							
	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현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현황							
	13. 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							
	14. 동 복지위원 현황(명단, 직업) 및 활동 현황							
	15. 동별 복지사업 추진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 복지과	1.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 현황(주소, 이용인원, 건물형태, 소유형태),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 내역 (세부 단가 포함) 3. 노인인구 현황(동·통별 / 65세 이상) 4.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5.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6.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7.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8.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근무시간 등 9. 2014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 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10. 북구 여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1.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 현황 12. 지역아동센터 현황 -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종사자 임금 현황 등 13.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4.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현황 15.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급식지원 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16.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사업 17. 다문화가족 현황(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예산지원, 지원사업 현황, 중점 추진시책,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이용자 현황 18.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대상지역 선정기준, 향후 시설확충 계획 19. 어린이집 관련 -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 복지과	20.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내역																																							
	21.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상세 작성																																							
	22. 어린이집 점검 내용																																							
	23. 정부지원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전담, 기타 법인 등 3개소에 대한 현황																																							
	24.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내역																																							
	25.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현황																																							
	26.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내역																																							
	27. 청소년지원센터 관련																																							
	- 월별 상담실적																																							
	<table><tr><td>상담내용별</td><td>1월</td><td>2월</td><td>3월</td><td>.....</td></tr><tr><td>성적</td><td></td><td></td><td></td><td></td></tr><tr><td>친구</td><td></td><td></td><td></td><td></td></tr><tr><td>가정</td><td></td><td></td><td></td><td></td></tr><tr><td>가출</td><td></td><td></td><td></td><td></td></tr><tr><td>부적응</td><td></td><td></td><td></td><td></td></tr><tr><td>기타</td><td></td><td></td><td></td><td></td></tr></table>					상담내용별	1월	2월	3월		성적					친구					가정					가출					부적응					기타				
	상담내용별	1월	2월	3월																																				
	성적																																							
	친구																																							
	가정																																							
가출																																								
부적응																																								
기타																																								
※ 상담내용별은 예시이므로 실제 상담내용별로 구분 작성																																								
- 상담 후 처리결과(상담일지 참조)																																								
<table><tr><td>상담일지별</td><td>1월</td><td>2월</td><td>3월</td><td>.....</td></tr><tr><td>범률연계</td><td></td><td></td><td></td><td></td></tr><tr><td>학교연계</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상담일지별	1월	2월	3월		범률연계					학교연계					...					...															
상담일지별	1월	2월	3월																																					
범률연계																																								
학교연계																																								
...																																								
...																																								
※ 상담내용별은 예시이므로 실제 상담내용별로 구분 작성																																								
- 사례별 지속상담(10회 이상)관리 내담자수																																								
<table><tr><td>사례별</td><td>내담자수</td><td>처리결과</td><td>비고</td></tr><tr><td></td><td></td><td><예> 상담종료...</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사례별	내담자수	처리결과	비고			<예> 상담종료...																													
사례별	내담자수	처리결과	비고																																					
		<예> 상담종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 복지과	- 긴급위기상담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여부와 사례					
	- 센터 종사자 현황					
	종사자명	근무년수	자격증	학력	업무분장	
	-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과 연계나 지원사업 여부(상담 등)					
	28.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29.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 명단, 위원회 개최 관련 시기 및 회의록					
	30.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 현황					
- 보조금, 성금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 신청대상자 현황 및 지정 인원						
- 기초노령지급에 따른 인력 지원내역(인원, 사역기간, 소요예산)						
31.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립생활 지원 현황,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32.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 기본 현황						
- 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지회 감사결과(2013~2014년도)						
- 직원 현황(작성일 현재)						
성명	나이(성별)	부양가족수	장애유형	장애등급	월 평균임금	비고
계						
- 생산단가,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량(2013~2014년도) - 비누 생산분만 작성						
- 손이익 현황(2013~2014년도)						
- 자원봉사 현황(2013~2014년도)						
- 시설운영 위원회 회의록(2013~2014년도)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2013~2014년도)						
- 고용장려금, 인건비 등 각종 예산 지원 현황						
-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 복지과	33.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 운영 규정 - 시설 종사자 및 근로자 업무분장표 - 근로자 월급명세서 : 1개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운영위원회 회의별 참석자 명단(참석사인 포함) - 보조금 정산서 34.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 현황 ※ 시설별 구분 작성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 기본 현황 <서식 적의 조정>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계</th><th colspan="3">지체</th><th colspan="3">지적장애</th><th colspan="3">정신장애</th><th colspan="3">.....</th><th colspan="3">....</th></tr><tr><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2014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 현황, 감시감독 실적 - 2014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35.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동산 2013년도 예산 지원, 사업 실적, 정산서 36. 2014년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 어린이집 이용수, 미이용 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37.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 현황(일, 월 평균) 38.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복지 일자리 참가자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39.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사업비 내역 40. 장애통합 어린이집 현황	구분	계	지체			지적장애			정신장애																							계																남																여																
구분	계			지체			지적장애			정신장애																																																																							
계																																																																																	
남																																																																																	
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경제일 자리과	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 처리상황 등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4.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관련 지원사업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6.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추진 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 자료, 명단, 소속 7.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실적, 상담 실적, 상담 후 조치결과 (조례 제정 이전과 비교 데이터 포함) 8. 종합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실적 9.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10. 20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인력 분석 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11.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 실적 12. (예비적)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 사업 현황 13. 규제개혁위원회 활동 내역 및 규제개혁 사업 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환경감시요원 단속 실적 및 각종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 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계약 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2012, 2013, 2014년도 비교 작성) 5.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 현황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9.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10. 1하천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 현황, 사업내용 11.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 12.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 결과 보고 - (2012, 2013, 2014년도 작성) 13.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현황, 추진결과 (수질 개선효과 등 결과치 분석내용) - 사업일, 대상, 사업내용 포함 ※ 천곡천, 배수지 등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상황 별도 작성 14.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위치표시) 15. 관내 음식점 남은 음식 줄이기 추진실적 - 음식물 싸주기, 모범 식단, 도시락 용기 보급 등 ※ 모범음식점 포함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6. 게임장 현황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 현황 포함) 17.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18.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도표) 최근 3년(2012년 ~ 2014년) 업소명, 단속일시,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19. 위생관리 도우미 운영 현황 및 실적 20.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 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 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21.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기타 현황 22.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 인센티브 지원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미화과	1. 기본 현황(2014. 9월말 현재) -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 직영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 환경미화원 포함) 2. 환경미화원 정·현원(2014년도) 및 담당구역 현황 3.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4. 청소전방지회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5.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6. 노면청소차량 운행 현황(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 포상금 지급 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 포함(과태료 부과내역 등) 8.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9.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점검 내용 10.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13~2014)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13~2014)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 현황(2013~2014)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2013~2014)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2.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미화과	13.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12, 2013, 2014 연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년도>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계</td> <td>1월</td> <td>2월</td> <td>...</td> <td></td> </tr> <tr> <td>아파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식당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주 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 분	계	1월	2월	...		아파트						식당별						주 택					
	구 분	계	1월	2월	...																									
	아파트																													
	식당별																													
	주 택																													
	14. 음식물폐기물 시범지역 추진상황 및 민원 발생내용 등																													
	15.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 정책 실패(2012. 대우아파트 시범사업) 이후 추진 현황																													
	16. 재활용품 선별장 및 재활용 교환판매장 관련																													
	- 위탁 실적 현황(기간, 업체명, 위탁금액)																													
	- 입찰계약서, 입찰조건, 인건비, 소요인력																													
	- 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매출실적, 예산지원 현황, 이용자수)																													
	- 교환판매장 수익 비교 현황(2011, 2012, 2013, 2014 작성)																													
	- 재활용품 선별장 수익 현황																													
	- 재활용품 수거 실적(2011, 2012, 2013, 2014년 작성), 처리내역																													
- 선별장내 구청 자산 목록(구입 시기, 내구연한, 구입비 등)																														
- 재활용품별 가격 산정단가(폐지, 공병, 플라스틱, 캔 등)																														
17.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8.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9.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 현황(동별)																														
20. 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망 관리내역																														
<table border="1"> <tr> <td>동 명</td> <td>거점망 관리장소수</td> <td>관리단체</td> <td>지정일</td> <td>비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동 명	거점망 관리장소수	관리단체	지정일	비고																				
동 명	거점망 관리장소수	관리단체	지정일	비고																										
21. 공공용마대 제작 내역 및 사용 내역																														

(건설도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안전 건설과	1.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민원접수일	내 용	처리결과	완료일자	비 고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불용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 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거치대 현황				
	7.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8. 공용자전거 구입내역(단가, 구입대수), 부서별 이용 실적, 현재 이용실태, 관리 현황(분실대수, 현재대수)				
	※ 휴일 관리방법 포함				
	9.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 (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 현황)				
	10.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11.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12. 동천 보 현황				
13. 동천 하상정비공사 현황(준설모래 처리 현황 포함)					
14. 동천강변 내 각종 식재 현황, 예산 집행내역 및 현재 생존율					
15.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안전 건설과	16.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상황 (사업개요, 추진상황, 당초계획과의 변경된 사항, 향후 계획 등) 17.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8.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9.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 현황(조직도), 운영 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 20.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 실적 21.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 구 자체 판단 위험 취약지역 포함 22.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23.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24.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 25. 오토밸리 2공구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26. 옥동~농소 2구간 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27.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 녹지과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 -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 현황, 민원 현황 및 지원 실적 -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 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 시설 현황, 산불 발생 현황 - 산불예방 대비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 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예산집행 포함) -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현황(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 공원 현황 (위치, 시설 현황, 개·보수내역 - 소요예산 포함, 관리대장) -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 공원시설물 정비 관련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 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 가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 일자별 세부지출내역(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투입 인력 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 현황 - 가로수 식재,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포함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조성사업 현황 (세부 소요예산, 자문회의 개최결과, 회의록 사본, 국·시비 보조금 신청 내역 및 확보내역 등)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운영 현황(물놀이장 등), 민원 및 사고 내역, 향후 운영 일정 및 계획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교통 행정과	1.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 현황													
	- 미설치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민원 현황													
	2.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 해소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 단속)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													
	<table><tr><td>구분</td><td>건수</td><td>과태료부과액</td><td>비고</td></tr><tr><td>주·정차</td><td></td><td></td><td></td></tr></table>				구분	건수	과태료부과액	비고	주·정차					
	구분	건수	과태료부과액	비고										
	주·정차													
	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4.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5. 찌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													
	6.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현황 및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 발급 현황													
<table><tr><td>연번</td><td>사업자</td><td>차고소재지</td><td>차고지면적</td><td>용도</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연번	사업자	차고소재지	차고지면적	용도						
연번	사업자	차고소재지	차고지면적	용도										
-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table><tr><td>단속일자</td><td>단속차량대수</td><td>행정처분 실적</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단속일자	단속차량대수	행정처분 실적	비고							
단속일자	단속차량대수	행정처분 실적	비고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7.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 실적 등														
8.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9. 저소득층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실적														
10. 과태료 체납 현황, 징수(정리)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 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5. 건축허가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조치 현황 6.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그간 세부 진행사항, 소송 대응 방안 7.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8.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적 9.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실적 10. 공동주택 주민공동체사업 추진 현황, 실적 11. 미분양 아파트 현황(2014. 9. 30 현재) 12.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13. 주민참여형 아름다운거리 조성 현황 14.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 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업인 복지지원 내역 (일시, 지원내용, 수급자, 지원금액)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관내 저수지 유로납시터 현황 8.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 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9.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0.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친환경 농가수 현황, 친환경 농가 지원 현황, 계절별 작물재배 현황, 물량수 포함 - 유기질성분 비료 생산농가, 생산량, 지원실적, 평가 현황 11.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 실적 12.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성과, 시장대비 가격 비교 13.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 14. 재해위험지구 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 15.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6.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 실적 17.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8.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 실적(위치, 생산량 표기) 19.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20.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물	21.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22.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23.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구성에 따른 예산지원 내역, 이용 현황, 수익금 현황 24. 2단계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 세부 현황(예산집행내역 포함) - 당사해양낙시공원 등 사업 전반 25.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농가수익증대, 판매실적, 육우 품질 향상 여부 등 포함) 26.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 현황 27. 강동 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5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 28.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 학교별 세부지원내역(※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적(각종 간담회 포함)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건소	1.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 진료 실적, 예산 내역 - 진료 실적을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 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 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 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2.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 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 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약품 관리 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 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고혈압 치료제 구입 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 수(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 구입 및 접종 실적 7. 방역장비 현황, 방역실적 및 대책 8.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9.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10.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임신부 지원 현황 포함 11. 2자녀·3자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1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건소	13.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 현황, 대상자 선정 기준 14.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출산 지원내역 15.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 12세까지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 현황(병의원 포함), 시행 이전과 비교 실적, 이용자 홍보 실적, 관리대상자 수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 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6.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7.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 청소년(10세~18세) 교육 방식, 교육 횟수, 금연사업 18.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19.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 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계획 프로그램 20.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 21.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22.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부수, 내용 등 23.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 ※ 2014 여름방학 중 구강검진 사업 추진 실적 포함 24.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 25. 노인 의치 지원사업 26. 보건소 전기료 사용내역(2013, 2014년 월별 비교)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 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3. 조례 제정·개정 의원 발의 총괄 현황 4. 의원 발의 결의안, 자유발언,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현황 5. 의원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 현황 6. 의원 정기회, 임시회 출석 현황 7. 의회 방청 현황 8. 의회 견학 현황 9. 언론 홍보, 보도 현황	



제2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14. 11. 21. ~ 11. 29.(9일간)

4. 감사대상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이 수 선	강 진 회	이상욱 안승찬 윤치용 백현조 정복금	김 남 희 권 미 정	차 영 주

②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4. 11. 21.(금)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 기획홍보실 ○ 총무국 • 총무과 • 주민참여과 • 도서관과	
2014. 11. 22.(토)			휴 회	
2014. 11. 23.(일)			휴 회	
2014. 11. 24.(월)	10:00	"	○ 총무국 • 회계과 • 문화체육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2014. 11. 25.(화)	10:00	"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경제일자리과	
2014. 11. 26.(수)	10:00	"	○ 복지경제국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 보건소	
2014. 11. 27.(목)	10:00	"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과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4. 11. 28.(금)	10:00	"	○ 건설도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2014. 11. 29.(토)			휴 회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386	32	
공 통 사 항	22		
기 획 홍 보 실	20	1	
총 무 국	100	16(동장 8)	
복 지 경 제 국	111	6	
건 설 도 시 국	98	6	
보 건 소	26	2	
의 회 사 무 과	9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5	27	78
공 통 사 항	3	1	2
기 획 홍 보 실	7	1	6
총 무 국	32	9	23
복 지 경 제 국	27	4	23
건 설 도 시 국	31	10	21
보 건 소	3	1	2
의 회 사 무 과	2	1	1

6. 감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긴급재난 등 각종 안내표지판 관리 철저

- 주민들의 재난사고에 대비해 설치한 긴급재난 안전표지판의 전화번호가 옛 전화번호로 표기되어 있어 비상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긴급재난 안내표지판을 비롯 각종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잘못 표기된 안내판 교체 등 시설정비를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성인지 예산서 직원교육 내실화

- 예산편성전 시기적절하게 공무원에게 교육을 한 효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적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였으나, 좀 더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참석자가 실무자 뿐만 아니라 담당급 이상에서 많은 교육이 요구되므로 검토 추진 바람.

② 각종 공연 및 행사시 안전요원 배치 운영

- 전국적으로 각종 공연 및 행사시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므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안전요원 배치, 안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철저

-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단체 관련 해당부서에서 평가함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위원회 운영 철저

-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 동별 구성현황을 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동이 상당수이므로 일반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지역위원 교육시에는 접근성 등을 고려, 장소선정에 세심한 배려로 참석을 제고와 함께 동 지역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동 간사의 회의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인력운용 철저

- 우리구의 인력현황을 보면, 일반직공무원 외 총액 인건비내 운영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있음.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는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여야 하겠으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직무분야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운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채용에 대해 엄격히 운용하기 바람.

③ 성인지 예산 운영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및 동 지역위원 등 다양한 계층에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도 적극 검토 하기 바람.

④ 구정홍보 철저

- 구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와 관련, 우리구에 해당하는 대형사업, 국책사업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준은 물론, 각종 큰 행사에 대해 주민들이 몰라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사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구정 홍보에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 또한, 지면으로 발행하는 홍보지는 필요이상 제작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⑤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시기 검토

- 공무원연구모임 연구성과 평가 결과, 우수 연구모임에 대해 인센티브로 선전지 견학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반기 각종 업무들이 집중되어 시기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 운영하기 바람.

⑥ 각종 행사의 의회 회기중 지양

- 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초 연간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행사들이 의회 회기와 겹쳐 의원의 행사 참석에 차질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일정과 중복을 지양 하여 주길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력관리 철저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업무의 비중도 및 역할에 따라 직급별 운영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부서 및 채용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분장 등 역할에 맞는 채용을 함과 아울러 채용 이후 직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생활민원바로처리 사후관리 철저

- 생활민원바로처리 접수·처리와 관련, 자체처리외 타부서 통보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빠짐없이 해당 동 및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여 알려주기 바람.

③ 인사고충 상담 적극 수렴 반영

-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입어 고충상담시에는 즉시 접수와 동시에 조사하여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고충이 해소되어 바람직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방사능 피해 사전대비 철저

- 우리구는 월성원자력 반경 6.5km이내로 원전사고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임. 시와 연계하여 사고시 주민소산계획 등 대비 매뉴얼을 작성하기 바람.

- 또한, 주민홍보와 관련한 홍보지 등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홍보하기 바람.

② 실질적 국제교류 사업 추진

- 터키 이즈미트시, 베트남 룡쑤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대표단이 상호 방문을 하는 등 교류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이 없음. 뚜렷한 목표를 세워 상호 이익을 주고 받는 실질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 또한, 베트남 룡쑤엔시와 상호 방문시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므로 관련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 추진 바람.

③ 각종 행사 주최, 주관, 후원 명칭 사용기준 수립

-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시 행정기관의 명칭사용과 관련 논란이 있었음. 우리구도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의 행사가 직접시행 또는 위탁, 후원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최, 주관 및 후원 명칭 사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 바람.

④ 비정규직 휴게공간 조성 검토

- 주차장 관리요원, 청사안내, 공공근로 등 청사내 비정규직에 대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 마련이 필요함. 사무실 공간이 좁아 적정한 장소가 어렵 겠지만 단독적 공간이 아니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근무후 잠시라도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 검토 바람.

주민참여과



시정요구

①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철저

- 자율방범대 정산 서류를 살펴보면, 집행방법에 있어 아직까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 사용, 현금 지출을 하고 있는 동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되며,
- 보험료 지출의 동별 차이, 일부 지출내용에 있어서도 운영비 목적에 맞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기 바람.

② 마을기업 사후관리 철저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조건에 맞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하고, 지원조건을 어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동 실정에 맞게 정착이 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회원들로 인해 신규 회원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과목별 수준을 고려한 반 구성 등 프로그램간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하기 바람.

② 통장 기본교육 지속추진

- 통장의 기본적인 자질향상을 위하여 신규통장에게는 기본교육

을, 재직중 통장에게는 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장으로서의 소양과 규정시책 등에 대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③ 통장 명함, 민방위복 지급

- 최일선에서 주민과 대민접촉이 많은 통장의 직무 특성상 직책에 대한 명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통장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배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또한, 통장은 민방위통대장으로서 민방위훈련 계도 등 민방위복을 착용하여 임무수행을 하여야 할 시 개인별 민방위복이 없어 직무수행에 애로가 있으므로 개인별 민방위복 지급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④ 동 중복행사 지양

- 각 동별 연간행사 추진상황을 보면,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 의 행사로 하는 동이 있는 반면, 일부 행사는 구에서 하는 행사와 비슷한 행사로 자칫 너무 행사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와 중복행사는 지양 검토 바람.

⑤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내실화

-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 학교별 배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내용에 있어 시설 정비 등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인성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적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의 역할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지원하기 바람.

회계과



시정요구

① 중산행복샘 위탁 운영관리 철저

- 중산행복샘 위탁운영과 관련, 앞서 지적된 부실운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시설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서비스 업종으로서 이용객들이 친절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북구의 시설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북구 관외 및 울산관외 업체가 많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 북구 관내 업체가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세수확대에도 기여 바람.

② 공공화장실 설계시 성인지 예산 반영

- 여성과 남성의 성 불평등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공공시설물 화장실 설계시 이를 반영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공공시설물 건축시 중장기적 계획 반영

- 공공시설물 건축시 위치 선정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계시는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를 감안한

실질적 공간배치 및 설계로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부설시설로 주차공간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설이용자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겹치기 행사 지양

- 각종 행사 추진상황에 있어서 강동해변가요제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투게더 콘서트 추진, 강동사랑길 걷기 후 낭만콘서트 추진 등 겹치기 행사는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으므로 지양하기 바람.

②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예산 효율적 사용

-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동별 예산 집행내역이 기념품, 1회성 용품 구입, 뒷풀이 비용에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효율적 예산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사용은 아니라고 보여짐. 또한 동별 체육대회도 일부 동의 경우 뒷풀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조금 예산이 적재적소에 건전한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기박산성 의병제 고유행사로 추진

- 추모식 및 기념식 위주의 경건한 행사 분위기가 각종 부대행사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본취지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본연의 행사성격을 살릴 수 있도록 부대행사 내용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람.

② 염포운동장 조성 추진 철저

- 염포운동장 조성 추진과 관련, 국비확보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부지 우선 확보 등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진하여 주고, 사업추진과정이 주민들에게 적기에 공지될 수 있도록 바람.

③ 중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화 사업 검토

- 중산동 고분군은 시 기념물 제9호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이 일대는 중산어린이공원, 기적의도서관, 관문성, 동천강과 순금산, 한울타리체험장, 세대 공감창의놀이터, 중산화훼단지 등의 많은 시설이 모여 있어 이 시설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여짐. 주변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④ 신현동 구남마을 화석 보존 방안 검토

- 신현동 구남마을 뒷산 교량 공사현장에서 신생대 연체동물 화석 발견과 관련 이 일대는 신생대 화석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확인되는 등 학계의 관심이 많음. 문화재 발굴까지는 문화재청 승인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지만, 향후 우리지역의 문화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자연사박물관 유치 등을 통하여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⑤ 쇠부리축제 내실화

- 쇠부리축제 행사경비로 2005년 제1회 70,000천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4년 제10회 522,000천원으로 증가 하였으나 행사내용은 공연, 체험 등 위주로 비슷함. 주민참여를 위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쇠부리 지역고유의 특성을 강조 할 필요가 있음.
쇠부리와 연관되는 관내 기업체 참여유도로 산업문명의 발달상

황을 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등 내용적 측면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람.

⑥ 강동해변가요제 내실 추진

- 강동해변가요제 초청가수가 몇 년째 트로트 가수로 집중이 되어 있음.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다양한 장르의 가수를 초청하여 다양한 계층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행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기 바람.

⑦ 각종 문화행사 균형있게 추진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문화행사가 일부 시설에 집중이 된 경향이 있으므로 여러 시설에 골고루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도록 추진 바람.
- 투게더콘서트 행사시 초청가수 및 일부 진행과정에서 단체장 위주의 진행이 있으므로 향후 각종 행사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바람.

도서관과



건의사항

① 작은도서관 연계 지원 강화

-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강사 발굴 및 연계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지원금 뿐 아니라, 인적자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주기 바람.

②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 주민홍보 철저

- 제1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의 체험행사, 각종 공연행사

사업내용은 좋았음. 좋은 내용의 각종 공연이 체험행사 쏠림으로 인하여 빈자리가 많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홍보강화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평가회 등을 통하여 향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강구 바람.

세 무 과



건의사항

① 기업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

- 지방세 감면제도에 있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감면효과가 없는 법률에 대해서는 새로운 여건에 맞는 감면제도 발굴 및 제안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활성화를 꾀하고, 이에 따른 경제활성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민원지적과



시정요구

①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화

-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행초기로 아직까지 많이 혼용이 되고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 본래의 취지 목적 달성보다는 어렵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국가적 사업이지만 많은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으로 중앙과 연계, 보완책을 강구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구 바람.



건의사항

① 울산중부등기소 폐소 관련 주민지원

- 울산중부등기소 폐소에 따라 기본적 등기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 무인민원 발급기가 구청 1층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음.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북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사항은 울산지방법원에 하되, 우리구는 운영 서비스 등에 대해서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람.

복지지원과



시정요구

① 동 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동별 복지위원회 구성 현황이 일부 동의 경우 각종 자생단체회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적극 운영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욕구를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여 장기적으로는 탈수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로서, 직업상담사 운영은 좋은 사업인 만큼 보다 더 잘 활용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주기 바람.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공제제도 보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수급한 기초연금액만큼 공제되어 생계비가 지원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실질적 혜택은 전혀 없는 상황임. 이는 기초연금의 기본취지인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에 반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중앙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민간과 연계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기탁물품 배분 철저

- 연말이 되면 개인 및 각종 단체에서 불우세대에 대해 김장 등의 기탁품이 배부됨. 그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과 중복지원이 있으므로 개인 및 각종 단체가 배부하는 물품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④ 동 복지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동 복지위원회 활동 사업 중 기금마련 사업은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복지위원회 고유기능인 긴급지원,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신고, 결연, 후원 등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사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어린이집 시설점검 철저

- 어린이집 시설 점검내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점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설 운영자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 교사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 바람.

②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내실 운영

- 북구 관내 모든 장애인들이 참석하여야 하는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지체장애인 위주이며, 경로행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음.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등에 중점 홍보하여 평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웃놀이 및 노래자랑대회’ 자원봉사자 지원 연계

- 북구노인회 ‘웃놀이 및 노래자랑대회’와 관련, 어르신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 하기에는 힘겨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자원봉사자 지원을 연계하여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②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지도

-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임대 운영과 관련, 임대료가 공동주택 별 차등이 크며 임대료가 높은 만큼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육정원의 5%이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기 바람.

③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최근 입양아동의 학대 및 사망사건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음. 우리 구에서도 양육수당을 지

급하는 입양아동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여 입양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④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수립 시행

- 아동학대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임. 우리구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예정으로, 공동생활가정 등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사회 정착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하여 부부 교육,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나,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함.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욕구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개발에 노력 바람.

⑥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요구

- 학업과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요구되므로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조성, 체육대회 등 건전한 문화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⑦ 성인지 예산서 직원교육 내실화

- 예산편성전 시기적절하게 공무원에게 교육을 한 효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적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였으나, 좀 더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참석자가 실무자 뿐만 아니라 담당급 이상에서 많은 교육이 요구되므로 검토 추진 바람.

경제일자리과



건의사항

① 호계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함. 시설 및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정신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시장환경에 대응을 하여야 함. 기존 5일장을 상설화하는 방안 검토 등 호계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②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사회적기업이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일반기업으로 전환후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생산품목에 대한 판로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함.
공공 부문에서부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 바람.

③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실시

- 201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 건의사항이 있었음.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인권침해 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정규교육과정에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도 건의 추진 바람.

④ 일자리지원센터 주민 홍보 철저

- 일자리지원센터가 구청 민원실 1층에서 지난해부터 친환경급식센터내의 인생이모작이음센터로 위탁운영 하면서 접근성 등이

떨어져 상담에 애로가 있으므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바랍.

⑤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

- 우리 구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기관표창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우수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간연속 2교대 관련 용역 추진, 고용포럼, 체불임금센터 운영 등 좋은 사업이 많았음. 이후에도 근로복지사업 등 노사협력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자연보호복구협의회 보조금 정산 철저

- 자연보호정화활동 등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내역에 있어 세부내역별 증빙 내용이 미흡하므로 보완과 함께 자부담 중 일부 현금사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이 되도록 지도 바랍.



건의사항

① 실질적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 기업, 단체 등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연계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칫 정화활동이 전시성 행사로 비쳐지는 등 책임성 있게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기 바랍.

② 갯안마을 간이상수도 해결 지원

- 중산 이화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갯안마을 상수도 민원과 관련, 공사주체 관계업체와의 협의 지연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수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 관리 철저

-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④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지역의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자제 등 녹색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을 솔선수범하여 전개하기 바람.

환경미화과



건의사항

① 노후화된 노면청소 차량 교체 검토

- 10년 이상된 노면청소 차량의 수리비 등 연간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신차 구입시와 비용을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 개선 검토

- 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 분리수거 방식이 장·단점이 있겠으나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거점장소가 공원 인근지역으로 환경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현 방식에서 보완책을 할 것인지, 내집 앞 분리수거로 방식을 변경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 바람.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철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 대행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이 월별 급여청구서와 임금내역서 정산서류가 일부 상이한 업체가 있으니, 2014년도 정산 후 최종 임금 지급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 바람.
- 또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재계약시 반영이 되도록 바람.

안전건설과



시정요구

① 긴급제동시설 정비 보완

- 마우나리조트에서 매곡산단으로 내려오는 도로노면에 브레이크 파열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설치된 긴급제동시설이 다져진 석분으로 완충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속히 시설 정비를 하기 바람.

② 긴급재난 등 각종 안내표지판 관리 철저

- 주민들의 재난사고에 대비해 설치한 긴급재난 안전표지판의 전화번호가 옛 전화번호로 표기되어 있어 비상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긴급재난 안내표지판을 비롯 각종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잘못 표기된 안내판 교체 등 시설정비를 하기 바람.

③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효율적 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으로 선진지 견학, 식비 등에 주로 지출이 되고 오히려 자부담으로 강사료, 보험료 등이 사용됨. 보조금으로 식비 등 과다 지출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정 항목이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 지도 바람.

④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한 동 통보 공문발송 철저

- 각종 공사 시행시 동(洞) 안내를 위한 공문발송 실적이 공사 건수에 대비하여 저조하므로, 공사건별 발송을 하여 주민안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폐 정화조 처리 방안 검토

-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단독주택지 등에 대한 기존 폐 정화조 처리 방법에 있어 정화조를 철거하여 처리하지 않고, 땅 속에 매립하거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토양오염 우려가 있으니 적절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염포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 주민의견 수렴 추진

- 염포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 개설 추진과 관련, 무엇보다도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다소 어렵더라도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③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정비

- 매곡천, 천곡천, 수성천 등 하천을 중심으로 도심이 지속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요구가 되고 있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천곡천 정비 시 원동현대아파트 인근 천곡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설계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④ 집중호우시 상방지하도 배수 대책 수립

- 집중호우 시 주산업로인 7번 국도 상방지하도 남쪽의 도로 침수로 이 일대가 전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당 침수지역이 충분한 배수처리가 되도록 도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⑤ 기타 건의사항

- 진장동 하수관거공사(시 추진)와 관련,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지도 관리감독 강화
- 어물동 마을 입구 파손된 배수로 정비
- 화봉사거리 일대 화단 정비 및 쾌적한 문화의 거리 조성 검토
- 화봉중학교, 호계중학교 인근 노후화된 보도블럭 교체 검토
- 양정동 554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검토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①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활동 철저

-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활동과 관련 방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산림작업단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 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기 바람.

② 가로수 관리 철저

-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도심 내 가로수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가로수 뿌리의 인도 돌출 등 생육환경 문제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가로수 전수조사를 통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선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입구 지역주민의 마을안길 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음.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우회 등산로를 통한 이용객 분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주민 민원해결은 물론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강동권도시개발사업 추진 만전

- 강동권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 및 분양으로 조속한 정주 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 협조는 물론 민간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와 연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

③ 도심 물놀이장 안전관리 철저

- 명촌 어린이공원, 신천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내 물놀이장 운영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특히 송정 박상진호수공원은 이동거리, 계곡에서의 유수유입 등 위험요인이 상시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 바람.

④ 화봉고등학교 뒤 도로 활용방안 강구

- 송정택지개발사업 공사 추진으로 화봉고등학교 인근 도로가 폐쇄되어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LH와 협의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통행로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의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대형 화물차량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 연암동 대영교회~성원아파트 일대, 화봉초등학교, 에너지고등학교 인근은 대형 화물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등교시 교통혼잡 등 상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바람.



건의사항

①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 노력

- 교통관련 과태료에 대한 징수 실적이 상당히 낮으므로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변호판 영치활동, 체납자에 대한 물권 확보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② 원지 버스정류장 정비

- 원지 버스공영주차장 입구 2개의 버스정류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지도 및 위탁체계 개선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 노인일자리창출 등의 일환으로 지역 경로당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안내 불편, 이용객들에 대한 불친절 등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위탁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바람.

④ 양정동 문화회관 주차장 확보 조속 추진

- 양정동 문화회관 일원에 추진중인 주차장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되어 지역주민의 주차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⑤ 마을버스 이용 불편사항 해소

- 마을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불규칙한 배차간격, 운전종사자 불친절, 버스 정보 미제공, 안내표지판 및 버스베이 미설치 등으로 일반 시내버스 이용과 달리 민원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시에 건의 바람.

⑥ 기타 건의사항

- 진장 메가마트 사거리에서 명촌 경남은행 사이 차선이 넓아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 조속히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경주방면 상방지하도 출구에서 북구청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 진입차단을 위한 탄력봉을 설치하여 사전에 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바람.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무허가건축물 순찰활동 강화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신고에 따른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순찰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실화

-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및 영세한 아파트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등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지도

-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임대 운영과 관련, 임대료가 공동주택별 격차가 크며 임대료가 높은 만큼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육정원의 5%이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기 바람.

③ 양정동 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 양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방안이 나오겠지만, 현대자동차 소재지로서의 지역특성에 맞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자동차 도시로서의 문화콘텐츠가 가미되어 특색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농수산물



시정요구

① 도시텃밭 만들기 사업 추진 철저

- 도심내에서 공공유희지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만들기 사업은 도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하여 농촌과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통의 장으로 적극 추진하되, 민원이 생기지 않는 적법한 지역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②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한 동 통보 공문발송 철저

- 각종 공사 시행 시 동(洞) 안내를 위한 공문발송 실적이 공사건수에 대비 하여 저조하므로, 공사건별 발송을 하여 주민안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친환경 농산물 판로지원 개척

- 지역의 우수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판로개척이 중요함. 농산물 꾸러미, 로컬푸드 확산 및 지역의 공동주택과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 운영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는 판로지원을, 소비자에게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값싸게 접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 바람.

② 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은 우리 북구 뿐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집 등의 단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③ 농로 공사시 주민참여감독제 활용

- 농로공사시 지역 여건에 맞는 설계와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는지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극 활용하여 부실공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

보 건 소



시정요구

① 여성보건휴가 이용 권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의 경우 2014년 실적이 한건도 없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특성, 출장, 교육 등으로 여건이 어렵겠으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소아폐구균’ 무료접종 주민홍보 철저

- ‘소아폐구균’ 예방접종이 2014. 5월부터 국가 무료접종사업으로 되었음. 총 4회에 걸쳐 한번에 10만원 내외로 접종비가 비싸 접종을 하지 않은 신생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② 베트남 룡쑤엔시 국제교류관련 의료분야 연계추진

- 베트남 룡쑤엔시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 방문 시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총무과와 협의하여 향후 교류업무 추진 시 공공의료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람.

의회사무과



시정요구

① 체험 및 봉사활동 내실 운영

- 분기별 1회 실시하는 체험 및 봉사활동 계획 시 실질적으로 체험 및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집행부 각종 주요행사의 회기중 지양

- 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초 연간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행사들이 의회 회기와 겹쳐 의원의 행사참석에 차질이 있으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일정과 중복을 지양 하여 주길 바람.



제3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2013. 10. 1. ~ 2014.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386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05건이며, 시정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78건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5년 1월 2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제4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105	27	16	11		78	21	57	
공 통		3	1		1		2		2	
기 획 홍 보 실		7	1		1		6	3	3	
행 정 지원국	총 무 과	7	3	3			4	1	3	
	자 치 행 정 과	6	1		1		5		5	
	문 화 체 육 과	9	2		2		7	1	6	
	도 서 관 과	2					2		2	
	세 무 과	1					1	1		
	민 원 지 적 과	2	1	1			1	1		
복 지 경제국	복 지 지 원 과	5	1		1		4		4	
	사 회 복 지 과	9	2		2		7	1	6	
	창 조 경 제 과	6	1		1		5		5	
	농 수 산 과	5	2	2			3	2	1	
	환 경 위 생 과	6	1	1			5		5	
	환 경 미 화 과	3					3		3	
건 설 도시국	건 설 과	6	2	2			4		4	
	안 전 정 보 과	4	3	3			1		1	
	도 시 행 정 과	3					3	1	2	
	공 원 녹 지 과	4	2		2		2		2	
	교 통 행 정 과	7	1	1			6	6		
	건 축 주 택 과	5	1	1			4	1	3	
보 건 소		3	1	1			2	2		
의회사무과		2	1	1			1	1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기획홍보실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철회 ○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단체 관련 해당부서에서 평가함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파악이 가능한 소관부서의 1차적인 확인점검 차원의 평가는 필요하며, 2015년부터 새롭게 구성·운영될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민간위원이고(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4미만 해당) 위원장 또한 민간위원 중에 호선 되므로 사업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이 보다 확보될 것임. ○ 성과평가 항목과 배점기준 또한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운영 철회 ○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 동별 구성현황을 보면, 통장·주민자치위원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동이 상당수이므로 일반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위원 교육시에는 접근성 등을 고려, 장소선정에 세심한 배려로 참석률 제고와 함께 동 지역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동 간사의 회의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2015년 동 지역위원회 구성 시 동 간사와의 협조 및 위원 모집홍보를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예산교육 계획 수립시 지역위원과 교육일정, 내용, 장소 등을 협의하여 교육 참석률을 높일도록 노력하겠음. ○ 동 지역위원회 활동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② 인력운용 철저 ○ 우리구의 인력현황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 외 총액 인건비내 운영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있음.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는 목적에 맞게 운을 하여야 하겠으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직무분야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운용함이 타당할 것 이므로 채용에 대해 엄격히 운용하기 바람.	○ 정원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건비기준에 포함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 대해서는 임기 종료시 업무 분석과 실적점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운용하겠음. ○ 행정환경,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외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운용하겠음.	완 결
	③ 성인지 예산 운영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및 동지역위원 등 다양한 계층에 성인지 예산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2015년 예산학교 운영시 전 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성인지 예산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음. 2015년 성인지예산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	추진중
	④ 구정홍보 철저 ○ 구정 소식지 등 각종 홍보와 관련, 우리 구에 해당하는 대형사업, 국책사업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준은 물론, 각종 큰 행사에 대해 주민들이 몰라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사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구정홍보에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 우리 구 관내에 추진중인 국가 또는 광역시 사업의 준비 및 추진상황 정보를 안내하고 인접 주민들이 공유하여 필요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 구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지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정량을 제작 배부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또한, 지면으로 발행하는 홍보지는 필요이상 제작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도록 노력하겠음.	
	⑤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시기 검토 공무원연구모임 연구성과 평가 결과, 우수 연구모임에 대해 인센티브로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반기 각종 업무들이 집중되어 시기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 운영하기 바람.	1월 현재, 2015년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모집 중임. - 연구과제는 창조경제도시 북구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이며, 우수모임에 대해서는 7~8월 중에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였음.	완결
	⑥ 각종 행사의 의회 회기중 지양 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초 연간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행사들이 의회 회기와 겹쳐 의원의 행사 참석에 차질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일정과 중복을 지양하여 주길 바람.	2015년 북구의회 회기일정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의회 회기중에는 주요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안내하였음. - 향후에도 구 주관 주요행사 준비과정 단계에서 의회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결

□ 총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력관리 철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업무의 비중도 및 역할에 따라 직급별 운영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부서 및 채용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분장 등 역할에 맞는 채용과 아울러 채용 이후 직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채용요청 부서에서 업무의 비중 및 역할에 따라 직급을 선정하여 충원을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충원계획 사전심의를 통해 임용 시험을 실시하여 역할에 맞는 채용을 함과 아울러 채용 이후에는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직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완결
	② 인사고충 상담 적극 수렴 반영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입어 고충상담시에는 즉시 접수와 동시에 조사하여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고충이 해소되어 바람직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전자우편, 전화, 인사랑 「사이버 인사마당」 등을 통해 인사고충 상담 및 기타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상담자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고 반영 불가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사유를 통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음.	완결
	③ 중산행복샘 위탁 운영관리 철저 중산행복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앞서 지적된 부실운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시설이용 주민 만족도가 낮으므로 서비스 업종으로서 이용객들이 친절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복구의 시설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일반주민이 목욕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운영초기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있었음. 향후 지속적인 실태 조사 및 행정지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실한 운영을 모색하겠음. - 아울러 시설 이용 주민 만족도 조사로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실질적 국제교류 사업 추진 ○ 터키 이즈미트시, 베트남 롱쑤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대표단이 상호 방문을 하는 등 교류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이 없음. 뚜렷한 목표를 세워 상호 이익을 주고 받는 실질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 또한, 베트남 롱쑤엔시와 상호 방문시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므로 관련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 추진 바람.	○ 2015년도에도 지속적인 상호 방문 및 초청을 통하여 우호와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교류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겠음. ○ 베트남 롱쑤엔시의 경우는 5월 쇄부리축제 시 초청하여 문화교류와 더불어 공공의료 분야 교류에 대하여 보건소와 협조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 중국 비성시의 경우는 2015년 4월중 방문하여 양도시의 관계 격상 차원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 터키 이즈미트시의 경우는 2015년 하반기에 방문하여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를 협의할 예정임.	추진중
	② 각종 행사 주최, 주관, 후원 명칭 사용기준 수립 ○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 시 행정기관의 명칭사용과 관련 논란이 있었음. 우리구도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의 행사가 직접시행 또는 위탁, 후원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최, 주관 및 후원 명칭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 바람.	○ 각종 행사시 주최·주관·후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사 성격에 따른 역할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주관·후원기관 명칭 사용기준 강화 계획을 전 실, 과, 소, 동에 통보함.[총무과-744(2015. 1. 8.)호]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③ 비정규직 휴게공간 조성 검토 주차장 관리요원, 청사안내, 공공근로 등 청사 내 비정규직에 대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 마련이 필요함. 사무실 공간이 좁아 적절한 장소가 어렵겠지만 단독적 공간이 아니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근무 후 잠시라도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을 검토 바람.	- 공공근로, 청사 주차관제 기간제 근로자 등의 쉼터조성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의 선행과제이나,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대기실(쉼터)기 조성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함. - 청내 및 외청 기간제근로자의 쉼터 기 조성 여부 및 필요성 수요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통합 또는 개별쉼터 조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유휴공간 확보 후 조성하겠음.	추진중
	④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북구 관외 및 울산관외 업체가 많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 북구 관내 업체가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세수확대에도 기여 바람.	울산광역시 타 구군(남구: 202, 울주군: 308, 동구: 80, 북구: 68, '14. 12. 31.현재)에 비해 전문건설 업체 현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나, 동일한 시공능력과 이행능력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북구 소재 건설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음.	추진중

□ 자치행정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철저 ○ 자율방범대 정산서류를 살펴보면 집행방법에 있어 아직까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카드사용, 현금지출을 하고 있는 동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되며, ○ 보험료 지출의 동별 차이, 일부 지출내용에 있어서도 운영비 목적에 맞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바람.	○ 자율방범대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14. 12. 9.(화) 19시, 사무국장 7명]하여 보조금 카드 사용, 카드 결제 원칙, 정산서식 공동화, 운영비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수시 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실질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이 이뤄지도록 관리에도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동 실정에 맞게 정착이 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회원들로 인해 신규 회원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과목별 수준을 고려한 반 구성 등 프로그램간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하기 바람.	○ 일부 주민의 프로그램 장기 수강을 막기 위한 수준별 반 구성, 동아리 활성화, 유료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동 주민센터에 통지하였음. [자치행정과-52(2015. 1. 2.)호]	추진중
	② 통장 기본교육 지속추진 ○ 통장의 기본적인 자질향상을 위하여 신규통장에게는 기본교육을, 재직중 통장에게는 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장으로서의 소양과 규정시책 등에 대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통장의 기본적인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40명 정도 위촉되는 신규 통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재직 중 통장에 대해서는 통장의 임무와 각종 알아할 법규 등을 정리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각종 규정시책은 매월 “주민만남의 날” 운영시 자료를 배부하여 홍보할 계획임.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③ 통장 명함, 민방위복 지급 ○ 최일선에서 주민과 대민접촉이 많은 통장의 직무 특성상 직책에 대한 명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통장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배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또한, 통장은 민방위통대장으로서 민방위훈련 계도 등 민방위복을 착용하여 임무수행을 하여야 할 시 개인별 민방위복이 없어 직무수행에 애로가 있으므로 개인별 민방위복 지급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 2015년 상반기 내에 각 동별 통장 의견수렴을 거쳐 명함제작 및 배부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민방위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민방위복은 한 벌에 60천원 정도 소요되며, 통장 216명에 대하여 개인별로 모두 지급하는 것은 예산부담도 크고, 통장 변경 시 매번 다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음. ○ 동에 여벌 민방위복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민방위훈련 계도 및 교육시 출석하는 통장에 대하여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추진중
	④ 동 중복행사 지양 ○ 각 동별 연간행사 추진상황을 보면,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행사로 하는 동이 있는 반면, 일부 행사는 구에서 하는 행사와 비슷한 행사로 자칫 너무 행사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와 중복행사는 지양 검토 바람.	○ 동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의 행사 추진 및 구와 중복되는 성격의 행사는 지양토록 동주민센터 통지. [자치행정과-52(2015. 1. 2.)호] ○ 동별 고유의 행사 발굴 및 1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	추진중
	⑤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내실화 ○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 학교별 배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내용에 있어 시설정비 등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인성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적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의 역할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지원하기 바람.	○ 교육경비 지원계획 수립 및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심의시 시설정비나 확충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인성 및 정서함양, 진로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후에도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 문화체육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겹치기 행사 지양 ○ 각종 행사 추진상황에 있어서 강동 해변가요제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투게더 콘서트 추진, 강동 사랑길 걷기 후 낭만콘서트 추진 등 겹치기 행사는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으므로 지양하기 바람.	○ 무대설치, 음향, 광고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시, 동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향후 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겠음.	추진중
	②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예산 효율적 사용 ○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동별 예산 집행내역이 기념품, 1회성용품 구입, 뒷풀이 비용에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효율적 예산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사용은 아니라고 보여짐. 또한 동별 체육대회도 일부 동의 경우 뒷풀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조금 예산이 적재적소에 건전한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개선 바람.	○ 사전에 북구 생활체육회 및 동 생활 체육회 관계자와의 연찬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출 항목과 상한선 등에 대한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개선 토록 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기박산성 의병제 고유행사로 추진 ○ 추모식 및 기념식 위주의 경건한 행사 분위기가 각종 부대행사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본 취지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본연의 행사성격을 살릴 수 있도록 부대행사 내용선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람.	○ 2015년 기박산성 의병제는 주민, 학생들과 함께하는 의병 재현 행사, 플래시 몹 등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임.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② 염포운동장 조성 추진 철저 ○ 염포운동장 조성에 따른 국비가 조속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부지를 우선 확보하는 등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진하여 주고, 사업추진과정이 주민들에게 적기에 공지될 수 있도록 바람.	○ 염포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2011. 3월 투·융자 심사 후 3년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및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증가 되었음.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행정 절차인 투·융자 재심사, 공유 재산 관리계획(변경)심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확보 가능성 높은 국비(광특회계)를 신청하여 빠른 시일내 염포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공지하겠음.	추진중
	③ 중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화 사업 검토 ○ 시 기념물 제9호 중산동 고분군 일대는 중산어린이공원, 기적의 도서관, 관문성, 동천강과 순금산, 한울타리체험장, 세대 공감 창의 놀이터, 중산화훼단지 등의 많은 시설이 모여 있어 이 시설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 검토.	○ 중산동 고분군과 주변의 시설을 연계하는 역사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또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북구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활성화계획 마련과 자문기구 구축,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추진중
	④ 신현동 구남마을 화석 보존방안 검토 ○ 신현동 구남마을 뒷산 교량 공사 현장에서 신생대 연체동물 화석 발견과 관련 이 일대는 신생대 화석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확인되는 등 학계의 관심이 많음. 문화재 발굴까지는 문화재청 승인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지만, 향후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이 외부로 유출	○ 문화재 발굴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울산광역시 및 문화재청 소관으로 우리 구에서는 출토유물 보존방안에 대하여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건의하였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되지 않고, 자연사박물관 유치 등을 통하여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건의 사항	⑤ 쇄부리축제 내실화 ○ 쇄부리축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였으나 행사내용은 공연, 체험 등 위주로 비슷함. 주민참여를 위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쇄부리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강조 할 필요가 있음. 쇄부리와 연관되는 관내 기업체 참여유도로 산업문명의 발달 상황을 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등 내용적 측면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람.	○ 2015년도에는 주 출입구에 쇄부리 주제관을 설치하여 달천철장과 이의립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고, 현대 자동차를 비롯하여 관내 기업체의 제품 전시도 유도하여 철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쇄부리축제의 근본 취지를 홍보할 계획임.	추진중
	⑥ 강동해변가요제 내실 추진 ○ 강동해변가요제 초청가수가 몇 년째 트로트 가수로 집중이 되어 있음.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다양한 장르의 가수를 초청하여 다양한 계층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행사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기 바람.	○ 2015년도 강동해변가요제는 국악, 댄스, 트로트, 발라드, 락 밴드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하여 인기가수 및 지역가수를 초청하여 남녀 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요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	추진중
	⑦ 각종 문화행사 균형있게 추진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문화행사가 일부 시설에 집중이 된 경향이 있으므로 여러 시설에 골고루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도록 추진 바람. ○ 투게더콘서트 행사시 초청가수 및 일부 진행과정에서 단체장 위주의 진행이 있으므로 향후 각종 행사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바람.	○ 2015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 선정시 예술단체들의 신청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예술단체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북구 전 지역에 골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음. ○ 2015년도 투게더콘서트에는 각 계 각층의 단체장들을 초청하여 더욱 알차고 모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개최하겠음.	추진중

□ 도서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작은도서관 연계 지원 강화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강사 발굴 및 연계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지원금뿐 아니라, 인적자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주기 바람.	-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 및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개설로 자원봉사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인형극, 동화구연 등 배운 것을 도서관에서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함께 연계하여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책잔치 등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강사 정보 공유 등 인적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②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 주민홍보 철저 제1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잔치의 체험행사, 각종 공연행사 사업내용은 좋았음. 좋은 내용의 각종 공연이 체험행사 쏠림으로 인하여 빈자리가 많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홍보강화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함은 물론, 사업평가회 등을 통하여 향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강구 바람.	-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북구의 책 사업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2014년도 책잔치 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도 책잔치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아울러 홍보 포스터 A4사이즈 제작,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재 등 행사 홍보물을 사전에 제작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 세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기업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 ○ 지방세 감면제도에 있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감면효과가 없는 법률에 대해서는 새로운 여건에 맞는 감면제도 발굴 및 제안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활성화를 꾀하고, 이에 따른 경제활성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행정자치부에서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 감면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그 동안 감면효과가 미미 하거나 불합리한 일부 감면 대상은 그 혜택이 축소되었음. ○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새로운 여건에 맞는 감면제도 발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인 문제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 민원지적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화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행초기로 아직까지 많이 혼용이 되고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 본래의 취지, 목적 달성보다는 어렵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국가적 사업이지만 많은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으로 중앙과 연계, 보완책을 강구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구 바람.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중에 있으며, 2015년에도 중앙과 연계하여 보완 및 제도정착화에 노력 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① 울산중부등기소 폐소관련 주민 지원 - 울산중부등기소 폐소에 따라 기본적 등기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무인 민원 발급기가 구청 1층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음. -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북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사항은 울산지방법원에 하되, 우리 구는 운영 서비스 등에 대해서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람.	울산지방법원과의 체계적 업무 협의를 통해 무인발급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 복지지원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동 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동별 복지위원회 구성 현황이 일부 동의 경우 각종 자생단체회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장 추천에 의해 구청장 위촉하고 있으므로 동 복지위원의 임기만료 등 해촉사유 발생시 사회복지분야 경험이 많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에 협조 요청하였음. - 향후 동 복지위원회 전문교육, 워크숍 등으로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적극 운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욕구를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여 장기적으로는 탈수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로서, 직업상담사 운영은 좋은 사업인만큼 보다 더 잘 활용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주기 바람.	- 자립지원직업상담사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여 201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근무하게 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전환하여 우리 구에 파견근무하게 됨. 2014년 한 해 800여건의 상담으로 100명의 수급자를 취업알선 하였으며, 이 가운데 26명은 취업에 성공하였고 18명은 탈수급 하였음. 2015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특별 채용되어 안정된 신분으로 수급자의 취업알선 및 자립지원에 집중근무함으로써 사업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공제제도 보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기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수급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되어 생계비가 지원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실질적 혜택은 전혀 없는 상황임. 이는 기초연금의 기본취지인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에 반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중앙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민간과 연계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기초수급자에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 산정이유는 수급자의 소득을 우선 적용 후 기초급여를 지원하는 보충성원칙에 따른 것으로, ○ 노인가구는 특성상 의료비 등 지출이 일반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아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앙부서에 건의 하겠음. ○ 기초연금 7월 시행으로 8월 기초급여 감소한 노인가구 361세대에 이웃돕기 등 민간 후원 대상자 선정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검토하여 노인의 안정적 생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추진중
	③ 기탁물품 배분 철저 ○ 연말이 되면 개인 및 각종 단체에서 불우세대에 대해 김장 등의 기탁품이 배부됨. 그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과 중복지원이 있으므로 개인 및 각종 단체가 배부하는 물품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추석·설명절,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대상자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원기관 등과 협조하여 배분과 지원 연계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④ 동 복지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동 복지위원회 활동사업 중 기금 마련 사업은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복지위원회 고유기능인 긴급 지원,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 및 신고, 결연, 후원 등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사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동 복지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게 결연가정 방문, 취약계층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희망365 복지동네 허브화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민관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 사회복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어린이집 시설점검 철저 ○ 어린이집 시설 점검내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점검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시설 운영자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 교사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 바람.	○ 2월중 관내 어린이집(219개소)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회계전반,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또한, 연합회 주관 교육(원장, 교사, 학부모) 실시로 어린이집의 운영 마인드 향상과 운영기준 및 법령등 환경변화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직원 및 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시설 점검 및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추진중
	②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내실 운영 ○ 북구 관내 모든 장애인들이 참석하여야 하는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지체장애인위주이며 경로행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음.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등에 중점 홍보하여 평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2015년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개최시 주관하는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와 협의, 관내 여러 장애인단체와 연계하여 많은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마당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윗놀이 및 노래자랑대회 자원봉사자 지원 연계 ○ 북구노인회 ‘윗놀이 및 노래자랑 대회’와 관련, 어르신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힘겨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자원봉사자 단체와 연계하여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2015년 ‘윗놀이 및 노래자랑 대회’ 추진시 행사주관단체인 노인지회와 협의하여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음. ○ 또한 ‘윗놀이 및 노래자랑대회’와 ‘한궁대회’를 통합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②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지도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임대운영과 관련, 임대료가 공동주택별 차등이 크며 임대료가 높은 만큼 보육시설의 질적저하를 초래하므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권고 하고 있는 보육정원의 5%이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기 바람.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2014. 7. 3.자 개정됨에 따라, 건축 주택과(2014.7.16.)와 사회복지과(2014.10.8.)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정준칙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공문시달 하였으며, 2015. 1. 5일 건축주택과의 협의를 거쳐 임대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권고함.	완 결
	③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최근 입양아동의 학대 및 사망 사건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음. 우리 구에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입양 아동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여 입양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 입양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 45명에 대하여 아동양육실태와 건강상태 등 입양부모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 완료. - 추후 지속적인 유선확인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④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수립 시행 아동학대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임.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예정으로, 공동생활가정 등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사회 정착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하여 부부 교육,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나,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함.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욕구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개발에 노력 바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실 강화를 통해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음. - 또한 가족캠프 등의 문화사업 및 외부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숨은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⑥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요구 학업과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요구되므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조성, 체육대회 등 건전한 문화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난해 개관한 북구청소년 문화의집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⑦ 성인지 예산서 직원교육 내실화 예산편성전 시기적절하게 공무원에게 교육을 한 효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적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였으나, 좀 더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참석자가 실무자 뿐만 아니라 담당급 이상에서 많은 교육이 요구되므로 검토 추진 바람.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 진행되는 “성별영향평가 실무교육”시 실무자 뿐만 아니라 담당급 이상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음.	추진중

□ 창조경제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마을기업 사후관리 철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 조건에 맞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하고, 지원 조건을 어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마을기업 선정 이후 내실 있는 사업운동을 위해 분기 1회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하여 수시로 마을기업 현장 지도·점검 및 지원을 하고 있음. 2014년 폐업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을 환수처리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감독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호계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함. 시설 및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정신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시장환경에 대응을 하여야 함. 기존 5일장을 상설화하는 방안 검토 등 호계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전통시장 현대화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상태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위해 시장상인에 대한 마인드 제고 및 전통시장 상설화 등의 방안을 포함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연중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추진중
	②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기업이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일반기업으로 전환후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생산 품목에 대한 판로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함. 공공 부문에서부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 바람.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해 전 실과소동에 우선구매를 요청하였고, 구 각종 행사 시 홍보 부스 운영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주민인식 개선 및 생산제품 홍보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③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실시 ○ 201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 건의사항이 있었음.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 인권침해 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정규교육과정에 청소년 노동인권 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도 건의 추진 바람.	○ 2014년 10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인권증진, 사회초년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책자 200권을 제작하여 고등학교, 청소년시설 등에 배부하였음. 향후, 학교·청소년시설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청과 청소년 인권 증진 MOU를 체결하여 청소년 노동법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④ 일자리지원센터 주민 홍보 철저 ○ 일자리지원센터가 구청 민원실 1층에서 지난해부터 친환경급식센터 내의 인생이모작이음센터로 위탁 운영 하면서 접근성 등이 떨어져 상담에 애로가 있으므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바람.	○ 민원실내 홍보 배너 설치 및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상설홍보관 운영), 민원실 안내요원과 협조하여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직업상담사를 중심으로 현장 일자리 발굴 및 상담을 활성화하여 구인구직률 성과를 높이겠음.	추진중
	⑤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 ○ 우리 구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기관표창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우수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간연속 2교대 관련 용역 추진, 고용포럼, 체불 임금센터 운영 등 좋은 사업이 많았음. 이후에도 근로복지사업 등 노사협력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내실있는 노사민정협의회 및 하부 회의 운영으로 지역 고용현안에 대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 관계전문가과정, 영세사업장 건강권 지원 등 우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사민정이 화합하여 상생하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음.	추진중

□ 농수산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도시텃밭 만들기 사업 추진 철저 도시심 내에서 공공유희지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만들기 사업은 도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하여 농촌과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통의 장으로 적극 추진하되, 민원이 생기지 않는 적법한 지역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도시텃밭사업 추진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민원인 면담과 민원 원인에 대한 해결 대책강구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였음. - 동천강 하천부지 내 텃밭조성은 하천관리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 하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완결
	②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한 동 통보 공문발송 철저 각종 공사 시행시 동(洞) 안내를 위한 공문발송 실적이 공사건수에 대비하여 저조하므로, 공사건별 발송을 하여 주민안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	사업 시행시 주민안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공사추진과 관련한 공문발송을 철저히 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① 친환경 농산물 판로지원 개척 지역의 우수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판로개척이 중요함. 농산물 꾸러미, 로컬푸드 확산 및 지역의 공동주택과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 운영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는 판로지원을, 소비자에게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값싸게 접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 바람.	- 전년대비 1개소 확대된 공동주택 내 4개소, 주말장터 1개소 상설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구청 대단위 행사시 농산물 직거래 및 타 지자체 행사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하는 등 직거래장터를 수시로 개척하고 있음. - 또한, 대형마트내 로컬푸드 판매장을 2월중 개설예정이고, 농수산물의 판로확대와 지속적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직제를 친환경무상급식담당에서 농수산유통담당으로 개편하였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② 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은 우리 구 뿐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집 등 단체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농소한울타리체험마을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농촌체험마을 관계자 회의, 체험 마을 관련 워크숍 등을 통하여 안전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격년제로 체험마을 평가를 중앙정부의 방침을 받아 평가하고 있음.(평가항목에 안전, 위생 등의 항목이 있음)	완결
	③ 농로 공사시 주민참여감독제 활용 ○ 농로공사시 지역 여건에 맞는 설계와 지방서대로 공사가 되는지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극 활용하여 부실공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대하여 공사 시행시 주민참여감독을 임명하여 현장을 관리·감독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에서 제외된 3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도 지역여건 및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통·반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음.	완결

□ 환경위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자연보호복구협의회 보조금 정산 철저 자연보호정화활동 등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내역에 있어 세부 내역별 증빙내용이 미흡하므로 보완과 함께 자부담 중 일부 현금 사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이 되도록 지도 바람.	- 전단지, 어깨띠 등 예산 집행시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사진, 전단지 등)를 지출서류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 자부담 사용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수 있도록 지도 하였음.	완 결
건의 사항	① 실질적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기업, 단체 등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연계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칫 정화활동이 전시성 행사로 비쳐지는 등 책임성 있게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기 바람.	1사1하천 살리기운동이란 민간단체·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으로 시비보조 사업임.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12월 16일 기업 및 자생단체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집게, 장갑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고, 향후 지정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외래식물 퇴치 등 1사1 하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추진중
	② 갯안마을 간이상수도 해결 지원 중산 이화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갯안마을 상수도 민원과 관련, 공사주체 관계 업체와의 협의지연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수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중산이화산업단지 조성으로 편입된 마을상수도 취수원은 공단 상류지역으로 이전 작업 중이며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행부서, 시공사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시상수도는 중산동 498-8번지까지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으나 일부 토지가 사유지로 급수공사에 어려움이 있음.	
	③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 관리 철저 ○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간이상수도와 먹는물 공동시설은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검사결과를 우리 구 홈페이지와 현장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중임. ○ 수질검사 결과 주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하여 시설물 이용중단 또는 폐쇄 조치하여 먹는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④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지역의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부터 1회용품 사용 자제 등 녹색 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을 솔선수범하여 전개하기 바람.	○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한해 기후학교 운영, 동별 녹색생활실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근 아파트에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 활동 및 기후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겠으며, ○ 행정기관에서부터 계단이용, 1회용품 사용자제 등 녹색생활실천 운동이 확산되도록 관련부서(총무과, 환경미화과)에 협조 요청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⑤ 폐 정화조 처리 방안 검토 ○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단독주택 등에 대한 기존 폐정화조 처리 방법에 있어 정화조를 철거하여 처리하지 않고, 땅 속에 매립하거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토양오염 우려가 있으니 적절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거나,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에 모래, 자갈 등 잡석을 채워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폐하는 방법이 있으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방법은 하수도법상에 선택사항이므로 강제할 수 없으나, 시설 폐쇄 시 가급적 철거하도록 안내하겠음.	추진중

□ 환경미화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노후화된 노면청소차량 교체 검토 ○ 10년 이상된 노면청소차량의 수리비 등 연간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신차 구입시 비용을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2014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6톤 노면청소차량 1대 구입하여 현재 노면청소차량은 8톤 1대와 16톤 2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향후 노면청소차량 구입시 비용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추진중
	②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 수거방식 개선 검토 ○ 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분리방식이 장·단점이 있겠으나, 단점으로 대부분의 거점장소가 공원 인근지역으로 환경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현 방식에서 보완책을 할 것인지, 내집 앞 분리수거로 방식을 전환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바람.	○ 현재 진장·명촌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동별 주1회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거점수거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나, 예산문제(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차량증차 등)로 당장 시행은 곤란하며,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음.	추진중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 철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 대행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이 월별 급여 청구서와 임금내역서 정산서류가 일부 상이한 업체가 있으니, 2014년도 정산후 최종 임금 지급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 여부 확인 바람. 또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재계약 시 반영이 되도록 바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계약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업체별 임금지급내역을 받아 확인 후 미지급분 등 차액이 있을 시 추가 지급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 ○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향후 계약시 반영토록 하겠음.	추진중

□ 건설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긴급제동시설 정비 보완 마우나리조트에서 매곡산단으로 내려오는 도로노면에 브레이크 파열 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설치된 긴급제동시설이 다져진 석분으로 완충작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속히시설 정비를 하기 바람.	2015. 1. 9.자로 긴급제동시설 노면정비 및 모래채움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철저히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음.	완 결
	②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한 동 통보 공문발송 철저 각종 공사 시행 시 동 안내를 위한 공문발송 실적이 공사 건수에 대비하여 저조하므로, 공사건별 발송을 하여 주민 안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	현재까지는 주민참여감독 임명 대상공사(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에 한하여 공사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향후 공사건별로 발송하여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결
건의 사항	① 염포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 주민의견 수렴 추진 염포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 개설 추진과 관련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다소 어렵더라도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 학교 측의 무리한 요구 및 학부모 반대로 인해 인근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구간까지 개설하고 잔여 구간은 장기검토. - 향후 일정은 '15. 1월 실시계획 인가, '15. 3월 보상완료, '15. 3월 공사착공, '15. 5월 공사준공 예정임.	추진중
	②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정비 - 매곡천, 천곡천, 수성천 등 하천을 중심으로 도심이 지속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요구가 되고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천곡천 정비시 원동현대아파트 인근 천곡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설계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천곡천은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사업시행 예정임. -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시 천곡뜰 침수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천곡천이 주민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③ 집중호우시 상방지하도 배수대책 수립 ○ 집중호우시 주산업로인 7번 국도 상방지하도 남쪽의 도로 침수로 이 일대가 전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당 침수지역이 충분한 배수처리가 되도록 도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연암삼거리(효문동주민센터 일원) 침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음.	추진중
	④ 기타 건의사항 ○ 어물동 마을 입구 파손된 배수로 정비 ○ 화봉사거리 일대 화단 정비 및 쾌적한 문화의 거리 조성 검토 ○ 화봉중학교, 호계중학교 인근 노후화된 보도블럭 교체 검토 ○ 양정동 554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검토	○ 금천아름마을 배수로 정비 건으로 동절기 이후(2015년 3월경)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화봉사거리 일원 디자인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시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화봉중학교 일원 보도정비는 특별 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차로 폭 조정을 통한 보도 확장 및 노후 블럭 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호계중학교 일원 보도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소방도로 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구 재정여건으로는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 안전정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긴급재난 등 각종 안내표지판 관리 철저 주민들의 재난사고에 대비해 설치한 긴급재난 안전표지판의 전화번호가 옛 전화번호로 표기되어 있어 비상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긴급 재난 안내표지판을 비롯 각종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잘못 표기된 안내판 교체 등 시설 정비를 하기 바람.	무룡산에 설치된 구조안내표지판은 낙후되어 철거조치하였으며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표지판 97개소에 대해 새로이 스티커 부착을 통해 정비하였고 물놀이 위험안내표지판은 추가로 4개소 설치 완료하였음. 향후에도 변색되거나 변경사항 발생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완결
	②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효율적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으로 선진지 견학, 식비 등에 주로 지출이 되고 오히려 자부담으로 강사료, 보험료 등이 사용됨. 보조금으로 식비 등 과다 지출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정항목이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 지도 바람.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집행전 사전 계획서 접수시 철저히 검토 토록하여 식비 위주의 지출은 자부담으로 유도하고 교육비, 강사료 등에 보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 하겠음.	완결
	③ 생활민원처리 사후관리 철저 생활 민원바로처리 접수·처리와 관련, 자체처리외 타부서 통보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빠짐없이 해당 동 및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여 알려 주기 바람	생활민원바로 처리 접수 및 처리시 타부서 통보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를 해당 동 및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민원해결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방사능 피해 사전대비 철저 ○ 우리 구는 월성원자력 반경 6.5km이내로 원전사고 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임. 시와 연계하여 사고 시 주민소산계획 등 대비 매뉴얼을 작성하기 바람. ○ 또한, 주민홍보와 관련한 홍보지 등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홍보하기 바람.	○ 방사능 전담 조직·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울산시·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연계하여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겠음. ○ 향후 방사능 피해예방 주민 홍보물 제작시 원자력 관련 기관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 도시행정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강동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만전 강동권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 및 분양으로 조속한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 협조는 물론 민간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와 연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조합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강동권 관광단지(2012. 12. 2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4 - 280호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의 민간투자 활성화 등에 대하여 우리 구 문화체육과(관광계)에 협조요청 공문발송하였음.(‘15. 1. 8)	완결
	② 화봉고등학교 뒤 도로 활용방안 강구 송정택지개발사업 공사 추진으로 화봉고등학교 인근 도로가 폐쇄되어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LH와 협의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통행로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의 바람.	기존 도로(화봉고등학교 뒤, 화산길)의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 및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구간의 우회 보행통행로를 확보하여 구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LH에 협조요청 하였음.(‘14. 12. 26.)	추진중
	③ 양정동 재생사업 적극 추진 양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방안이 나오겠지만, 현대자동차 소재지로서의 지역특성에 맞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자동차 도시로서의 문화콘텐츠가 가미되어 특색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올해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으로 신청하여 2016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 공원녹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활동 철저 ○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활동과 관련 방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산림작업단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 하여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2015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피해목 제거사업 책임방제 시행 - 8개지구 8,640본/7개 업체 - 3월까지(우화기전) 사업 완료 · 나무주사 사업 시행 - 3개지구 128ha(102,400본)/3개 업체 - 2월까지(수액이동전) 사업 완료 · 감리용역(피해목 제거 및 나무주사) 시행 - 권역별 3개지구/3개 업체 - 3월까지 용역 완료 · 지상방제 사업 시행 - 8개 지구 240ha(80ha×3회) - 5~7월 사업 시행 · 매개충 포획(페르몬) 사업 시행 - 7개 지구 30ha - 5~10월 사업 시행 ○ 솔껍질깍지벌레 등 기타 병해충 방제 · 피해목 제거사업 시행 - 강동해안가 일원 100ha 정도 - 5월 조사, 7월 사업시행 · 기타 병해충 방제 - 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등 - 발생시 즉시 방제 시행 ○ 병해충 예방을 위한 산림작업단 운영 · 운영인원 : 12명(예찰방제단 6, 산림재해조사원 6) · 운영기간 : 1월~10월 · 운영방법 : 전구역에 대하여 예찰 및 방제활동을 시행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② 가로수 관리 철저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도심내 가로수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가로수 뿌리의 인도 돌출 등 생육환경 문제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가로수 전수조사를 통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 바람.	- 동대로 일원 가로수 생육환경 정비공사 시행 완료 : 2014. 12월 (시 녹지공원과) - 은행나무 암나무 현황 보고 · 도시녹지과-26318호(2014.11.21.) → 시 녹지공원과 - 열매 낙과시 도심미관을 해치는 은행암나무를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임(시 녹지공원과) - 종합관리 대책수립 추진 : 울산광역시(녹지공원과)와 연계 추진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선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입구 지역 주민의 마을안길 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음.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우회 등산로를 통한 이용객 분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주민 민원 해결은 물론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편백산림욕장으로 갈 수 있는 우회 등산로(1.67km/달천농공단지 옆으로 돌아가는 길)는 기존진입로(1.28km)보다 거리가 멀고, 농공단지 옆 산림 내는 사면부 낭떠러지 및 배수로를 통과해야 되는 구간으로 안전사고 등의 우려 때문에 우회등산로로 이용 불가한 실정임 -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변 우회등산로 개선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음 ※ 편백산림욕장 도로개설 추진(건설과) - 실시설계용역(80,00천원) : 2015. 1.~ 4.	추진중
	②도심 물놀이장 안전관리 철저 명촌 어린이공원, 신천공원, 송정 박상진호수공원내 물놀이장 운영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특히 송정 박상진호수공원은 이동거리, 계곡에서의 유수유입 등 위험 요인이 상시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 바람.	- 물놀이 운영시설 주위 안전펜스 설치 : 2015. 3.(2개소) - 개소마다 응급조치 자격증 소지자 배치(1명이상) 및 안전사고예방에 만전(관리인원 6명) : 2015.6.~8. - 송정박상진호수공원내 물놀이장 :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한 종합대책을 적극 검토한 후 추진 방안 강구하겠음.	추진중

□ 교통행정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대형 화물차량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연암동 대영교회~성원아파트 일대, 화봉초등학교, 에너지 고등학교 인근은 대형 화물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등교시 교통혼잡 등 상시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바람.	단속반원 근무시간 단속 외에도 추가로 야간단속 주2회(화,목) 조별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실시하고, 밤샘 화물자동차 단속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음.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①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 노력 교통관련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이 상당히 낮으므로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자에 대한 물건 확보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통합체납 안내 고지서 및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체납자 전체에게 발송하여 체납 징수하고 있음. -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활성화하고, - 향후, 체납처분으로 압류시 자동차, 부동산, 기타 채권압류 및 물건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2015. 1. 2자 부서내 과징담당 신설로 체납 처분절차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음.	완결
	② 원지 버스정류장 정비 원지 버스공영주차장 입구 2개의 버스정류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일반노선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지붕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농소공영 버스차고지 내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환승개념으로 설치된 시설임. - 북구 관내 버스승강장 설치율은 48% 정도로, 2개의 승강장 통합개설은 버스승강장 설치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③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지도 및 위탁체계 개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일환으로 지역 경로당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안내 불편, 이용객들에 대한 불친절 등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은 물론 위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5개 경로당에 위탁운영 중이므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계약위반 및 민원발생 시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계약해지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④ 양정동 문화회관 주차장 확보 조속 추진 양정동 문화회관 일원에 추진중인 주차장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상황이 계속 지연 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되어 지역주민의 주차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항으로 반드시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주차장 조성부지에 설치운영 중인 테니스장을 이전해야하므로 대체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확보되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함.	완결
	⑤ 마을버스 이용 불편사항 해소 마을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불규칙한 배차간격, 운전종사자 불친절, 버스 정보 미제공, 안내 표지판 및 버스 베이 미설치 등으로 일반 시내버스 이용과 달리 민원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시에 건의 바람.	- 울산시에서 매년 상·하반기 벽지노선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운행시간 노선 등을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음. -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한 사항은 적극 개선토록 하겠음.	완 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⑥ 기타 건의사항 진장 메가마트 사거리에서 명춘 경남은행 사이 차선이 낡아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 조속히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15. 1. 6. 차선 재도색 완료함.	완결
	경주방면 상방지하도 출구에서 북구청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 진입 차단을 위한 탄력봉을 설치하여 사전에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바람.	- 도로관리기관인 울산광역시에 검토 요청한 바, 시선유도봉(탄력봉)은 설치 후 1~2개월 내 파손 및 훼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설치를 지양하고 있음. 2007년 이후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파손으로 전체 철거 조치함. - 향후 도로 재포장시 차선조정 등을 통한 중앙분리대 설치 등에 대하여 검토 할 계획임.	완결

□ 건축주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무허가건축물 순찰활동 강화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신고에 따른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순찰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바람.	○ 무허가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분기별로 지도·점검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실화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영세 아파트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등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2013. 3. 11. 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2014년도부터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13개 소규모단지가 선정되어 9개단지가 사업 완료됨. 향후에도 소규모 단지에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②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지도 ○ 보육시설 임대료가 공동주택별 격차가 크며 임대료가 높은만큼 보육시설의 질적저하를 초래하므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육정원의 5%이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요청 함.	○ 어린이집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이내로 정 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 규약준칙」 제50조제3항을 반영하여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개정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③ 공공화장실 설계시 성인지 예산 반영 ○ 여성과 남성의 성 불평등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공공시설물 화장실 설계시 이를 반영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공공시설물 화장실 설계시 양성 이 평등하도록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중
	④ 공공시설물 건축시 중장기적 계획 반영 ○ 공공시설물 건축시 위치 선정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계시는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를 감안한 실질적 공간 배치 및 설계로 효율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부설시설로 주차공간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설 이용자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 향후 공공청사 건립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리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중

□ 보건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여성보건휴가 이용 권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은 매 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의 경우 2014년 실적이 한건도 없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특성, 출장, 교육 등으로 여건이 어렵겠으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개선 바람.	○ 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보건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① ‘소아폐구균’ 무료접종 주민홍보 철저 ○ ‘소아폐구균’ 예방접종이 2014. 5월부터 국가 무료접종사업으로 되었음. 총 4회에 걸쳐 한번에 10만원 내외로 접종비가 비싸 접종을 하지 않은 신생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 무료 예방접종 시행으로 병의원 어디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소아폐구균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② 베트남 룡쑤엔시 국제교류관련 의료분야 연계추진 ○ 베트남 룡쑤엔시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 방문시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총무과와 협의하여 향후 교류업무추진시 공공의료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람.	○ 향후 우리 구와 룡쑤엔시 간 공공보건의료분야 국제교류시 선진보건정책 전수를 통한 우호협력 및 신뢰증진 도모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기대.	완결

□ 의회사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체험 및 봉사활동 내실 운영 분기별 1회 실시하는 체험 및 봉사활동 계획시 실질적으로 체험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매 분기 장소 선정시, 형식적인 봉사가 아닌, 실질적인 체험 및 봉사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정하기 위해적정성, 중복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간담회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음.	완결
건의 사항	① 집행부 각종 주요행사의 회기 중 지양 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초 연간일정을 사전공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행사들이 회기와 겹쳐 의원의 행사 참석에 차질이 있으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일정과 중복을 지양하여 주기 바람.	연간일정을 사전공지하고 있으며, 의원 참석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회기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의, 정보공유하고 있음.	완결



제5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15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세부계획

- 감사기간 : 제15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 11. 23. ~ 2015. 12. 1.]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라.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이 수 선
- 부 의 장 : 강 진 희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이정걸, 권미정
- 사무직원 : 차 영 주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구 청 장	박 천 동		
		부 구 청 장	이 형 조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최 평 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구 일 우		
		총 무 과 장	한 상 길		
		자치행정과장	김 도 원		
		문화체육과장	김 정 열		
		도 서 관 과 장	조 여 문		
		세 무 과 장	박 해 성		
	민원지적과장	곽 정 영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조 충 래		
		복지지원과장	박 경 란		
		사회복지과장	황 상 현		
		창조경제과장	이 문 걸		
		농 수 산 과 장	박 성 화		
	환경위생과장	정 영 귀			
환경미화과장	김 용 종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최 창 울			
	건 설 과 장	강 흥 모			
	안전정보과장	하 헌 주			
	도시행정과장	윤 일 호			
	공원녹지과장	김 종 구			
	교통행정과장	정 혜 도			
건축주택과장	이 상 철				
보 건 소	보 건 소 장	황 병 훈			
	보건행정과장	강 결 수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 태 희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비 고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전 동	농소1동장	손 기 익		
		농소2동장	윤 채 결		
		농소3동장	김 기 향		
		강동동장	이 해 균		
		효문동장	안 희 수		
		송정동장	정 매 자		
		양정동장	박 두 용		
		염포동장	홍 성 욱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제15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 11. 23. ~ 2015. 12. 1. 9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 공무원은 항상 출석
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 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일 시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5. 11. 23.(월)	10:00	소회의실	○ 증인선서 • 국 · 소 · 실 · 과 · 동장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015. 11. 24.(화)	10:00	"	○ 행정지원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민원지적과	
2015. 11. 25.(수)	10:00	"	○ 행정지원국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 무 과	
2015. 11. 26.(목)	10:00	"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창조경제과	
2015. 11. 27.(금)	10:00	"	○ 복지경제국 • 농수산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15. 11. 28.(토)		휴 회		
2015. 11. 29.(일)		휴 회		
2015. 11. 30.(월)	10:00	소회의실	○ 건설도시국 • 건 설 과 • 안전정보과 • 도시행정과	
2015. 12. 1.(화)	10:00	"	○ 건설도시국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홍보실	총무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417	25	22	110	137	86	28	9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 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작성요령 : 「별첨 2」 참조
- 감사범위 : 2014. 10. 1. ~ 2015.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5. 9. 30. 현재

○ 제출기한 : 2015. 11. 9.(월)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32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20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행정지원국장
- 선서문 : 「별첨 3」 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전문위원(6급) 권미정, 전직원
- 감사지적사항 당일 작성 제출 : 감사의원 「별첨 4」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전문위원(6급) 권미정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속기사 허순자 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 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 공무원 현지 안내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구 분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417	
공 통 사 항		25	
기 획 홍 보 실		22	
행정지원국	소 계	110	
	총 무 과	25	
	자치행정과	29	
	문화체육과	24	
	도 서 관 과	10	
	세 무 과	10	
	민원지적과	12	
복지경제국	소 계	137	
	복지지원과	15	
	사회복지과	37	
	창조경제과	17	
	농 수 산 과	26	
	환경위생과	20	
	환경미화과	22	
건설도시국	소 계	86	
	건 설 과	22	
	안전정보과	12	
	도시행정과	13	
	공원녹지과	15	
	교통행정과	10	
	건축주택과	14	
보 건 소		28	
의 회 사 무 과		9	

(전부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table><tr><td>민원명</td><td>접수일자</td><td>처리일자</td><td>민원인</td><td>민원내용</td><td>처리결과</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2. 인·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 현황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table><tr><td>공사명 (사업명)</td><td>사업개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d><td>사업비</td><td>공정률</td><td>시공업체</td><td>예산 확보시기</td></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공사명 (사업명)	사업개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공정률	시공업체	예산 확보시기	계											
	공사명 (사업명)	사업개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공정률	시공업체	예산 확보시기																			
	계																								
	6.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table><tr><td>사업명</td><td>용역종류</td><td>용역비</td><td>착수일자</td><td>완료일자</td><td>용역결과</td><td>계약자</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결과	계약자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결과	계약자																		
	7. 2015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 현황																								
	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tr><td>공사명</td><td>변경사유</td><td>공사금액 증가액</td><td>설계변경 요청자</td><td>설계자</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가액	설계변경 요청자	설계자	비고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가액	설계변경 요청자	설계자	비고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14.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2.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table><tr><td>해당동</td><td>통보일자</td><td>공사명</td><td>공사개요</td><td>통보내용</td><td>비고</td></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해당동	통보일자	공사명	공사개요	통보내용	비고	계											
	해당동	통보일자	공사명	공사개요	통보내용	비고																			
계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통사항]	14. 지방보조금(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14. 10. 1. ~ 2015. 9. 30.(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단체명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환수일	사업명	환수대상				환수사유	금액	비고		
			성명(업체,기관,단체명)		주소						
	16.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비고	
						일자	내역	비용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비고		
				○구 ○○동							
- 작성기간 : 2014. 10. 1. ~ 2015. 9. 30.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기간		지역		인원		목적		비고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통사항]	23. 국가·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 기획홍보실 개별사항 ‘2.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자료중 당선(채택)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24.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체 현황					
	위원회명	개최일시	주요안건	심사방법	심사결과	
	※ 심사기준표 첨부 제출					
	25. 축제성 행사 개최현황(축제명, 개최일시, 장소, 예산액, 집행액)					
	(단위:천원)					
	축 제 명	개최일시	장 소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 명 또는 직 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
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5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 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 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5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 로 계 약 서	임 금	상 여 금	퇴 직 금	근 로 시 간	법 정 수 당	법 정 휴 가	사 회 보 험	계 약 기 간	근 조 기 간	재 계 약 방 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 (명)											
본청	기획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행 정 지원국	총 무 과			:												
					:												
					:												
	복 지 경제국	복지지원 과															
		...															
	...	...															
	의 회	의회사무과															
직속 기관	보 건 소																
	농 소 1 동																
	...																

(1) 구성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5.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5.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홍보실)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 홍보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현황, 공약이행율, 향후계획							
	2.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3. 공무원 창의정책연구모임 운영 실적과 내용							
	4.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							
	5. 구민창안제도 운영 실적							
	6.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15. 9. 30. 현재)							
	구 분	총계	법령		조례		기타 규정	
	설치근거별							
	구 분	총계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성격별							
② 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계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축 직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총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민간위원()	0	0	0	0	0	0	
③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총계								
※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 : 별도 제본 제출								
④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자	설치근거	비고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집행내역								
소관부서	위원회명	집행내역				비고		
		일시	장소	참석인원	소요금액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 홍보실	7.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성과, 워크숍 개최 현황, 예산집행액, 워크숍 내용 8.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2014년도, 2015년도) 9.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5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명단(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현황 및 실적(일정, 교육대상, 주제, 참석인원) -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록, 소규모 사업 주민 의견 수렴 자료 10. 주민참여예산제 2015년도 당초예산 반영내역 11.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1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 인센티브 종류(승진점수 가산,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13. 우리 구 채무 현황(지방채, 보증채무 등) 14.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5.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신규 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 접수(제소 포함)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동안 사건 완료 건도 포함 16. 고문변호사 활동 현황 및 실적 17.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 처분사항, 모범 사례) 18.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9.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안행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20.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 실적 21. 구정성과, 구정홍보 영상물 예산집행 내역 (※ 영상물 별도 제출) 22. 구정화보집 제작 예산집행내역 (※ 화보집 별도 제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총무과	1.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 현황 2. 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 수, 교사 현황, 북구청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3.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 4. 인력 운용 관련 - 전체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3) 5. 공무원 직원현황과 급여 지급내역 (기준단가, 성과급, 가족수당등 각종수당 지급 현황) 6. 공무원 현황 -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4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 최근 3년간 동 공무원 성별 비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2015년도(9.30기준)</th><th colspan="3">2014년도(9.30기준)</th><th colspan="3">2013년도(9.30기준)</th></tr><tr><th>계</th><th>남</th><th>여</th><th>계</th><th>남</th><th>여</th><th>계</th><th>남</th><th>여</th></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 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7.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부서별, 월별 현황(2014, 2015) 8. 5급 공무원 전보내역<table><tr><th>대상자</th><th>부서명</th><th>근무기간</th><th>비 고</th></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 현재</td><td></td></tr></table> 9.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table><tr><th>부서명</th><th>성명</th><th>직급</th><th>계약기간</th><th>업무</th><th>채용방법</th><th>월평균급여</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포함 10.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11. 직원고충 처리현황(건수, 처리결과) ※ 건수 : 주요내용별 건수 12.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2014, 2015년)	구분	2015년도(9.30기준)			2014년도(9.30기준)			2013년도(9.30기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 동										대상자	부서명	근무기간	비 고							~ 현재		부서명	성명	직급	계약기간	업무	채용방법	월평균급여	비고									
구분	2015년도(9.30기준)			2014년도(9.30기준)			2013년도(9.30기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 동																																																																					
대상자	부서명	근무기간	비 고																																																																		
		~ 현재																																																																			
부서명	성명	직급	계약기간	업무	채용방법	월평균급여	비고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총무과	13. 공개입찰 계약 현황 - 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발주부서	계약 일자	건명	사업량 (수량)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입찰참여 업체수	낙찰자
	14. 관급공사 계약 현황 -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5. 수의계약 현황 - 1천만원 미만 ~ 1백만원 이상 - 부서명,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16.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17.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8.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5개소 - 청소 관련 계약내역(총괄) - 청사 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19.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 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20. 공유 재산 취득 현황(구 소유 - 토지, 건물) - 토지								
	연 번	품 명			취득일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취 득 목 적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 건물								
	연 번	품 명			취득일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취 득 목 적	비고
	소재지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 부서별(소계) 작성									
21.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 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22. 구청사 개보수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역		사업비		비고	
23. 구청사 냉방기 가동 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24.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2014, 2015년 월별 비교)									
25. 중산행복샘 운영현황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2015. 9. 30.기준)

구분	지방공무원 인력										기타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 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공무직				기간 제근로자
											계	단순 노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5. 9. 30.기준)

구분		지방공무원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행정과										
	:										
	: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소1동											
:											
:											

(붙임 3)

□ 기타 인력 규모(2015. 9. 30. 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 분		업 무	기타 인력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단 노무원	순 보수원	도 로 환 미 화원	경 청원 경찰	계	180일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기획홍보실														
행정 지원국	총무과	:												
		:												
		:												
	자치 행정과													
	:													
:	: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자치 행정과	1. 주민참여 추진현황 2. 주민참여학교 운영 실적 (참여자치아카데미, 통장학교, CB학교) 3.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 현황(시간당 강사료 표기), 강사계약기간, 보조금 지원 현황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 표기 - 동별 취합) 4.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직업 표기, 연령 표기), 위원의 타 단체 가입 현황, 여성위원 현황, 사무국장 현황, 주민자치위원장 현황 5.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 (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 현황), 회의록 제목(안전) 6.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7.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체계 개선실적 8. 소통과 공감의 힐링문화조성(양정동) 실적 9. 농소3동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 10. 주민자치한마음, 통장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상황 11.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각 단체별 사업실시 현황 <table><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2.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 현황 관련 - 명단(추천기관, 회원경력 포함), 직업(소속단체), 사업 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지원 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자부담 포함) <table><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3. 구청장 동순회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 현황 14.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상황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자치 행정과	15. 지역별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 현황, 운영비 지원내역, 정산내용, 활동일지 16. 동별 예산 집행 현황(동별 취합) 17. 각 동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월별 사용량 및 요금 (2014, 2015년 월별 비교) 18.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용 19. CB 공모사업 현황 20.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 - 재단 기금 및 매년 장학금 집행실적, 향후계획 21.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2015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요약분), 예산 포함 2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23.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실적, 식전공연 추진내용 및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 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24.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25. 제3대학 졸업 후 활동실적 26. 비문해 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 현황 27.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 -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28.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29. 추억의 학교 운영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체육과	1.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향후 사업운영 계획 (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각종 공연·전시행사 개최 현황																									
	4. 인문학 서재 몽돌 운영 현황, 인문학 강좌 등 사업 현황																									
	5.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table border="1"><thead><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thead><tbody><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6. 강동(바다 수영장포함), 양정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7.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 관리 현황																									
	8.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9.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현황																									
	10.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연수 추진상황																									
11.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12. 운동장별 대여 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13.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14. 2015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5. 생활체육회 운영비 - 보조금 지출 일자별 세부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체육과	16.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현황 17.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 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 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현황 18.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인력 운용 현황 19. 문화예술회관·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가스·전기·수도)월별 사용량, 요금 및 각 운동장 전기료 사용내역 (2014, 2015년 월별 비교) 20.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21.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현황, 예산 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22. 투게더 콘서트 운영 현황(당초 계획서 및 진행 결과), 예산액, 집행내역(일자별 세부 지출 내역) 23.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 현황 24. 문화예술회관 동아리 현황과 추진사업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서관과	1.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 평균 이용자수 - 도서(장서) 보유 현황 - 인력 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사서 자격증 보유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도서관 인력 운영 현황 - 각 도서관별(작은도서관 포함) 자원봉사자 수, 봉사참여 비율(월 1회 이상) -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도서관 봉사 경력 유무)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 포함) 4.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운영 실적, 도서 대출 현황, 이용자 현황,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5. 울산 북구의 책 사업 추진성과 - 도서 대출 현황 - 독서 감상문 참여 현황 및 독서릴레이 참여현황 - 주민 홍보 현황 -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 전략 6. 9월 독서의 달 추진 현황, 사업 실적, 사업 평가 7. 5개 도서관 전기료 사용내역(2014, 2015년 월별 비교) 8.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록, 사업내역 등) 9. 자원봉사자 현황, 활동내역 10. 자원봉사자(도서관 친구들 포함)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지원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세무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세목별 부과, 징수, 예산편성액)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 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 신청(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 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table><tr><th colspan="2">체납자</th><th colspan="3">결손내역</th><th rowspan="2">결손처분일자</th><th rowspan="2">결손사유</th></tr><tr><th>성명</th><th>주소</th><th>세목</th><th>부과연도</th><th>결손액</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체납자		결손내역			결손처분일자	결손사유	성명	주소	세목	부과연도	결손액																											
	체납자		결손내역			결손처분일자	결손사유																																							
	성명	주소	세목	부과연도	결손액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선진지 견학 추진상황																																														
9. 주민세 종업원분 기업별 현황 (단위:천원)																																														
<table><tr><th rowspan="2">종업원수</th><th colspan="2">부과</th><th colspan="2">징수</th><th rowspan="2">비고</th></tr><tr><th>업체수</th><th>부과액</th><th>업체수</th><th>징수액</th></tr><tr><td>1~50</td><td></td><td></td><td></td><td></td><td></td></tr><tr><td>51~100</td><td></td><td></td><td></td><td></td><td></td></tr><tr><td>101~200</td><td></td><td></td><td></td><td></td><td></td></tr><tr><td>201~300</td><td></td><td></td><td></td><td></td><td></td></tr><tr><td>301이상</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종업원수	부과		징수		비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1~50						51~100						101~200						201~300						301이상					
종업원수	부과		징수		비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1~50																																														
51~100																																														
101~200																																														
201~300																																														
301이상																																														
10. 시세 지방소득세 기업별 현황(종업원 50인 이상) (단위:천원)																																														
<table><tr><th rowspan="2">종업원수</th><th colspan="2">부과</th><th colspan="2">징수</th><th rowspan="2">비고</th></tr><tr><th>업체수</th><th>부과액</th><th>업체수</th><th>징수액</th></tr><tr><td>50~100</td><td></td><td></td><td></td><td></td><td></td></tr><tr><td>101~200</td><td></td><td></td><td></td><td></td><td></td></tr><tr><td>201~300</td><td></td><td></td><td></td><td></td><td></td></tr><tr><td>301이상</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종업원수	부과		징수		비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50~100						101~200						201~300						301이상											
종업원수	부과		징수		비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50~100																																														
101~200																																														
201~300																																														
301이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 지적과	1.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2.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 실적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실적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6.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 7.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8.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정 현황(과년도 대비) 9.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0.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 1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 12.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지 지원과	1.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2.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세부지출내역(사업별, 사업기간)																								
	<table><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단체별 구분 작성,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																								
	4.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 (지원월, 지원내용, 대상자 수, 지원금액)																								
	5.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현황																								
	6.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적																								
	- 국비, 시비129, 희망365 구분(지원금액 등)																								
	7.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5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 현황																								
	- 금년도 사업실적(2014, 2015년도 비교 작성)																								
	- 총 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추진현황																								
	8. 자활사례관리 추진현황																								
	9.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10.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현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현황																								
	12.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																								
	13. 동 복지위원 현황(명단, 직업) 및 활동 현황																								
	14. 동별 복지사업 추진현황																								
	15.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추진상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 복지과	1.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 현황(주소, 이용인원, 건물형태, 소유형태),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 내역 (세부 단가 포함) 3.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4.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5.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6.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근무시간 등 7. 2015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 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8. 북구 양성평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9.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 현황 10. 지역아동센터 현황 -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종사자 임금 현황 등 11.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급식지원 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13.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사업 14. 다문화가족 현황(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예산지원, 지원사업 현황, 중점 추진시책,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이용자 현황 15. 어린이집 관련 -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 복지과	16.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내역																				
	17.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상세 작성																				
	18. 어린이집 점검 내용																				
	19. 정부지원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전담, 기타 법인에 대한 현황																				
	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내역																				
	21.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현황																				
	22.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23.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 명단, 위원회 개최 관련 시기 및 회의록																				
	24.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 현황																				
	- 보조금, 성금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25.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립생활 지원 현황,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26.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 기본 현황																				
	- 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지회 감사결과(2014~2015년도)																				
	- 직원 현황(작성일 현재)																				
<table border="1"><thead><tr><th>성명</th><th>나이(성별)</th><th>부양가족수</th><th>장애유형</th><th>장애등급</th><th>월 평균임금</th><th>비고</th></tr></thead><tbody><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성명	나이(성별)	부양가족수	장애유형	장애등급	월 평균임금	비고	계						
성명	나이(성별)	부양가족수	장애유형	장애등급	월 평균임금	비고															
계																					
	- 생산단가,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량(2014~2015년도) - 비누 생산분 만 작성																				
	- 손이익 현황(2014~2015년도)																				
	- 자원봉사 현황(2014~2015년도)																				
	- 시설운영 위원회 회의록(2014~2015년도)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2014~2015년도)																				
	- 고용장려금, 인건비 등 각종 예산 지원 현황																				
	-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 복지과	27.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 현황 ※ 시설별 구분 작성 - 기본 현황 <서식 적의 조정>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계</th> <th colspan="3">지체</th> <th colspan="3">지적장애</th> <th colspan="3">정신장애</th> <th colspan="3">.....</th> <th colspan="3">....</th> </tr> <tr> <th></th><th></th><th></th> <th></th><th></th><th></th> <th></th><th></th><th></th> <th></th><th></th><th></th> <th></th><th></th><th></th> </tr> <tr> <td>계</td> <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r> <tr> <td>남</td> <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r> <tr> <td>여</td> <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r> </table> - 2015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 현황, 감시감독 실적 - 2015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28.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동산 2014년도 예산 지원, 사업 실적, 정산서 29.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 현황(일, 월 평균) 30.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복지 일자리 참가자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31.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사업비 내역 32. 노인대학 운영실적 33.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사업실적, 정산내역서, 기부물품현황 34. 관내 아동학대 사건 현황 35.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관리 실적 36. 어린이집 관련 민원현황 37.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	구분	계	지체			지적장애			정신장애																								계																	남																	여																	
구분	계			지체			지적장애			정신장애																																																																											
계																																																																																					
남																																																																																					
여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창조경제과	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 처리상황 등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4.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관련 지원사업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6. 노사민정협의회 현황, 추진 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 자료, 명단, 소속																												
	7. 종합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실적																												
	8.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9. 2015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인력 분석 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10.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 실적																												
	11. (예비적)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 사업 현황																												
	12. 규제개혁위원회 활동 내역 및 규제개혁 사업 내역																												
	13. 관내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예산지원 내역 포함)																												
	<table><tr><th rowspan="2">설립일</th><th rowspan="2">기업명</th><th rowspan="2">주생산품</th><th colspan="3">투 자 비</th><th rowspan="2">종사자 수</th><th rowspan="2">월평균 매출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설립일	기업명	주생산품	투 자 비			종사자 수	월평균 매출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설립일	기업명	주생산품	투 자 비			종사자 수	월평균 매출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14.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15. 협동조합 등록 현황																												
	16.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실적																												
	17.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동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관련 주민민원 및 간담회 개최 내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 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업인 복지지원 내역 (일시, 지원내용, 수급자, 지원금액)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 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8.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9.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친환경 농가수 현황, 친환경 농가 지원 현황, 계절별 작물재배 현황, 물량수 포함 - 유기질성분 비료 생산농가, 생산량, 지원실적, 평가 현황 10.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 실적 11.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성과, 시장대비 가격 비교 12. 재해위험지구 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 13.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4.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 실적 15.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6.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 실적(위치, 생산량 표기) 17.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18.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19.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20.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21.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농가수익증대, 판매실적, 육우 품질 향상 여부 등 포함) 22.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 현황 23. 강동 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5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 24.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 학교별 세부지원내역(※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적(각종 간담회 포함) 25. 농수산물 센터내 로컬푸드매장 운영 실적 26.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 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계약 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2013, 2014, 2015년도 비교 작성) 5.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 현황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9.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10. 1하천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 현황, 사업내용 11.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 12.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 결과 보고 - (2013, 2014, 2015년도 작성) 13.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소재지) 14. 음식문화 개선 추진실적 - 남은 음식 싸주기, 좋은식단, 위생영업주 교육 등 ※ 모범음식점 포함 15. 게임장 현황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 현황 포함) 16.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7.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 최근 3년(2013년 ~ 2015년) 업소명, 단속일시,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18.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 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 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19.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20.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 인센티브 지원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미화과	- 기본 현황(2015. 9월말 현재) -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 직영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 환경미화원 포함) - 환경미화원 정·현원(2015년도) 및 담당구역 현황 -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 청소전방지회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 청소차량 현황 및 운행 실적 ※ 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 포함(과태료 부과내역 등) -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점검 내용 -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14~2015)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14~2015)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 현황(2014~2015)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2014~2015)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미화과	13.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13, 2014, 2015 연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년도)																									
	<table><tr><td>구 분</td><td>계</td><td>1월</td><td>2월</td><td>...</td><td></td></tr><tr><td>아파트</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식당별</td><td></td><td></td><td></td><td></td><td></td></tr><tr><td>주 택</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계	1월	2월	...		아파트						식당별						주 택						
	구 분	계	1월	2월	...																					
	아파트																									
	식당별																									
	주 택																									
	14. 음식물폐기물 시범지역 추진상황 및 민원 발생내용 등																									
	15.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 정책 실패 이후 추진 현황																									
	16. 재활용품 선별장 및 재활용 교환판매장 관련 - 위탁 실적 현황(기간, 업체명, 위탁금액) - 입찰계약서, 입찰조건, 인건비, 소요인력 - 재활용품 선별장 수익 현황 - 재활용품 수거 실적(2013, 2014, 2015년 작성), 처리내역 - 선별장내 구청 자산 목록(구입 시기, 내구연한, 구입비 등) - 재활용품별 가격 산정단가(폐지, 공병, 플라스틱, 캔 등)																									
	17.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8.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9.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 현황(동별)																									
	20. 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망 관리내역																									
	<table><tr><td>동 명</td><td>거점망 관리장소수</td><td>관리단체</td><td>지정일</td><td>비고</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동 명	거점망 관리장소수	관리단체	지정일	비고																				
	동 명	거점망 관리장소수	관리단체	지정일	비고																					
	21. 공공용 마대 제작 내역 및 사용 내역																									
	22. 한뼘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건설도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설과	1.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table border="1"><thead><tr><th>민원접수일</th><th>내 용</th><th>처리결과</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thead><tbody><tr><td> </td><td> </td><td> </td><td> </td><td> </td></tr></tbody></table>					민원접수일	내 용	처리결과	완료일자	비 고					
	민원접수일	내 용	처리결과	완료일자	비 고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불용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 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거치대 현황														
	7.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8.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														
	(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 현황)														
	9.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10.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11. 동천강변 내 각종 식재 현황, 예산 집행내역 및 현재 생존율														
	12.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13.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상황(용역사업 등)														
	14.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5.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6.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 실적														
17. 오토밸리 2공구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18. 옥동~농소 2구간 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유관기관 협조)															
19.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현황 및 저소득층 가사도우미 운영실적															
20.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추진실적															
21. 긴급도로 복구사업 추진실적															
22. 하천부지 현황, 불법 점유 현황 및 관리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안전 정보과	1.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 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 현황(복무연장 등) 2.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4.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 현황(조직도), 운영 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 5.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6.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7.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8.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 9.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0. 도로 등 현장 작업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안전 매뉴얼 11.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 전반적인 추진상황 12. 통일 및 안보교육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 행정과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 2.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 현황, 민원 현황 및 지원 실적 3.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4.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5. 평창리비에르 1·2·3차 아파트 민원관련 간담회 내용 및 처리결과 6.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염포양정 도심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8.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등 각종 주민편의사업 추진실적 (2014년~2015년) 9.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현황 10. 도시계획사업지구 사업변경 현황 11. 산업단지 추진상황 12. (가칭)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 및 활용방안 13. 철도이설후 철로 활용방안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원 녹지과	1.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2.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3.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 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 시설 현황, 산불 발생 현황 - 산불예방 대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 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4.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 (예산집행 포함) 5.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6.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현황(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7. 공원 현황 (위치, 시설 현황, 개·보수내역 - 소요예산 포함, 관리대장) 8.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9. 공원시설물 정비 관련 향후 추진계획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1. 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2. 국화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투입 인력 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 현황 13. 가로수 식재,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포함 14. 명촌, 신천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15. 재선충 방제 관련 인력운영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교통 행정과	1.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 현황													
	- 미설치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민원 현황													
	2.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 해소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 단속)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													
	<table><tr><td>구분</td><td>건수</td><td>과태료부과액</td><td>비고</td></tr><tr><td>주·정차</td><td></td><td></td><td></td></tr></table>				구분	건수	과태료부과액	비고	주·정차					
	구분	건수	과태료부과액	비고										
	주·정차													
	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4.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5. 짜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														
6.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현황 및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 발급 현황														
<table><tr><td>연번</td><td>사업자</td><td>차고소제지</td><td>차고지 면 적</td><td>용도</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연번	사업자	차고소제지	차고지 면 적	용도					
연번	사업자	차고소제지	차고지 면 적	용도										
-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table><tr><td>단속일자</td><td>단 속 차량대수</td><td>행정처분 실적</td><td>비 고</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단속일자	단 속 차량대수	행정처분 실적	비 고						
단속일자	단 속 차량대수	행정처분 실적	비 고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7.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 실적 등														
8.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9. 과태료 체납 현황, 징수(정리) 실적														
10. 노인보호구역 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개선사업 추진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 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5.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그간 세부 진행사항, 소송 대응 방안 6.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7.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적 8.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실적 9. 공동주택 주민공동체사업 추진 현황, 실적 10. 미분양 아파트 현황(2015. 9. 30 현재) 11.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과태료 부과 등) 12.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13. 불법광고물 관리 차량 현황 및 업무처리 과정 14. 주거급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실적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건소	1.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 진료 실적, 예산 내역 -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 현황 - 취약계층, 이용환자 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 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2.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 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 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 약품 관리 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 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고혈압 치료제 구입 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 수(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신) 유형별 약품 구입 및 접종 실적 7. 방역장비 현황, 방역실적 및 대책 8.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9.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10.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임신부 지원 현황 포함 11. 2자녀·3자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1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건소	13.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 현황, 대상자 선정 기준 14.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출산 지원내역 15.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 12세까지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 현황(병의원 포함), 시행 이전과 비교 실적, 이용자 홍보 실적, 관리대상자 수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 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6.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7.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 청소년(10세~18세) 교육 방식, 교육 횟수, 금연사업 18.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19.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 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계획 프로그램 20.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 21.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22.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부수, 내용 등 23.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 ※ 2015 여름방학 중 구강검진 사업 추진 실적 포함 24.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 25. 노인 의치 지원사업 26. 보건소 전기료 사용내역(2014, 2015년 월별 비교) 27. 금연지도원 현황 및 금연단속 실적 28. 우리마을 치매사랑방 운영실적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 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3. 조례 제정·개정 의원 발의 총괄 현황 4. 의원 발의 결의안, 자유발언,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현황 5. 의원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 현황 6. 의원 정기회, 임시회 출석 현황 7. 의회 방청 현황 8. 의회 견학 현황 9. 언론 홍보, 보도 현황	



제6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15. 11. 23. ~ 12. 1.(9일간)

4. 감사대상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이 수 선	강 진 희	이상욱 안승찬 윤치용 백현조 정복금	이 정 결 권 미 정	차 영 주

②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시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5. 11. 23.(월)	10:00	소회의실	○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015. 11. 24.(화)	10:00	"	○ 행정지원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민원지적과	
2015. 11. 25.(수)	10:00	"	○ 행정지원국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 무 과	
2015. 11. 26.(목)	10:00	"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창조경제과	
2015. 11. 27.(금)	10:00	"	○ 복지경제국 • 농수산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15. 11. 28.(토)		휴 회		
2015. 11. 29.(일)		휴 회		
2015. 11. 30.(월)	10:00	소회의실	○ 건설도시국 • 건 설 과 • 안전정보과 • 도시행정과	
2015. 12. 1.(화)	10:00	"	○ 건설도시국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17	26	
공 통 사 항	25	1 (구청장)	
기 획 홍 보 실	22	1	
행 정 지 원 국	110	7	
복 지 경 제 국	137	7	
건 설 도 시 국	86	7	
보 건 소	28	2	
의 회 사 무 과	9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3	33	70
공 통 사 항	2	2	-
기 획 홍 보 실	6	2	4
행 정 지 원 국	31	10	21
복 지 경 제 국	26	7	19
건 설 도 시 국	33	11	22
보 건 소	3	1	2
의 회 사 무 과	2	-	2

6. 감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각종위원회 운영 내실화

- 89개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 법적으로 존치해야 하는 위원회 등 위원회별 특성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바람
- 또한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② 여성보건휴가 이용 재고를 위한 개선책 강구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은 매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일부 부서에 지적을 했음에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철저

-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반영 등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에 비하여 이행율이 높게 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추진상황을 근거

- 로 이행율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공약사항이 변경 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기 바람.

②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89개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 법적으로 존치해야 하는 위원회 등 위원회별 특성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바람
- 또한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구정 업무의 기획·조정 역할 강화

- 기획홍보실은 구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역할을 하여야 하는 부서로서 북구의 미래에 대한 중장기 발전비전과 미래지향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② 창의정책 연구모임 연구결과 구정시책 반영

-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제안으로 행정 역량 강화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었음. 이렇게 발굴된 과제의 결과물이 구정시책에 반영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기 바람.

③ 국가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

- 각종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으로 언론보도는 되고 있으나, 주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아울러 각종 국가 공공시설 유치와 관련 공모사업 유치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후평가를 하여 향후 전략방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바람.

④ 각종 행사시 복구 홍보 적극 활용

-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보다 찾는 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관광, 문화, 먹거리를 적극 홍보하여 복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하기 바람.

총 무 국

1. 총무과



시정요구

① 여성보건휴가 이용 재고를 위한 개선책 강구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은 매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일부부서 지적을 했음에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② 직원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직원고충상담에 있어 인사, 직무관련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음이 있음. 개인의 고충상담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고충상

담창구를 설치·운영하기 바람.

- 또한, 신규직원 및 대민업무 처리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람.

③ 각종 행사시 의전업무 철저

- 구 주관(구 지원)행사 진행시 내빈소개 순서와 대상이 행사마다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행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부서에서 통일된 의전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중국 비성시, 터키 이즈미트시, 베트남 룡쑤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상호 방문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함.
- 민간단체와 기업의 참여를 통한 민간교류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건의료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계획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②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대체적으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파악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기 바람.

2.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사업내역 및 정산현황을 보면, 교육과 무관한 물품구입, 교사 개인별 일괄 지급 등 일부 지원 목적에 적절치 않은 사업들이 있음.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목적에 맞는지 면밀히 살피고, 또한 정산시에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검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방범용 CCTV 효율적 운영

- 관내 방범용 CCTV 총 144대중 초기에 설치된 41만화소가 9대 있음. 41만 화소는 얼굴, 차량번호 등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 방범 효과가 떨어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여 방범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 바람.

③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지난해에 비하여 보조금 이용실태 및 정산 내용이 많이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일부는 영수증 미첨부, 유류비, 급식비 등을 한꺼번에 결재하는 등 정산에 미비함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됨.
- 또한, 지원조례에 지원범위로 초소 운영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TV 등의 물품구입, 자체연합회비는 적절치 않으므로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남북교류협력 업무 의견수렴 추진

- 2015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조성된 기금의 활용방안 및 향후 기금조성 계획,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매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일부 인기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들의 장기 수강으로 신규 회원들의 진입이 어렵고 고착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 프로그램별 일정기간 수강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수강생은 수료제 등 제도를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람.
- 또한 일정 정원 모집 미달 시 폐강이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중 최소 수강인원을 채우기 위해 실제 참여하지 않는 수강생을 등록 하는 사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업참여 현황을 살펴 효율적 운영을 하기 바람.

③ 주민자치센터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

- 주민자치센터 헬스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샤워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의 주인의식 결여로 필요 이상의 물 사용으로 수도, 도시가스 공공요금에 과다하게 나옴으로 홍보 등을 통하여 공공요금이 낭비 되지 않도록 지도 바람.

④ 주민자치회 운영 검토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첫째, 중앙정부의 지원만 있었고 2년차 접어들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회와 차별성이 없음.
- 예산지원이 없어 수강료 인상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 요구 및 제도 보완에 대해 건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이 없으므로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바람.

⑤ 주민자치 한마음,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격년제 시행 검토

- 주민자치 한마음,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매년 시행하고 있음. 대부분 각종 단체에 중복 소속된 위원으로 연중 각종 행사 등에 참여기회가 많음.
- 그간의 노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는 할 것이므로 매년 시행하기보다 격년제 운영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⑥ 민주평화통일 북구협의회 통일기행 격년제 시행 검토

-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 이후 매년 국외연수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상황, 타 단체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추진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예산 효율적 사용

-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체육대회 개최 후 뒷풀이 명목의 식대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음. 일정 부분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동의 경우 전체예산 8,000천원 중 2,000천원 이상 사용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로 개선하기 바람.

② 생활체육회 보조금 사용 철저

- ‘생활체육 유공자 시상 및 체육인의 밤’ 지원사업은 당초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 사업에서 사전 승인없이 변경 추진된 사업으로 차후에는 사업 변경시 사전승인을 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건의사항

① 쇄부리 축제 운영 강화

- 우리구의 대표 축제로서 잘 추진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축제의 자문역할을 하는 쇄부리축제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연구지원 등으로 단순한 축제가 아닌 전문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 바람.
- 또한, 쇄부리 관련 각종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쇄부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각종 행사시 지역홍보 활용

- 강동해변가요제, 투게더콘서트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음. 이러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의례적인 지역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진행진과 협의하여 지역특성과 지역의 구체적인 문화유산, 관광자원, 먹거리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홍보에 적극 활용 바람

③ 행사·축제 효율적 운영

- 강동해변가요제, 동별 투게더 콘서트는 매년 비슷한 내용의 행사 진행으로 일정부분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강동해변가요제는 강동동 투게더 콘서트와 통합개최, 각 동별 투게더콘

서트의 권역별, 격년제 추진을 검토하여 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바람.

④ 인문학 서재 몽돌 운영 관리 철저

- 강동지역은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문화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인문학 서재 몽돌을 주축으로 학교도서관,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이 서로 연계하여 인문학 서재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⑤ 물놀이장 내실운영

- 양정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나, 첫째 운영상 일부 개선 사항으로 물의 양, 교체주기 조절로 적절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었으며, 위탁업체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최선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므로 위탁업체 선정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주고, 운영 취지에 맞게 성인용 풀장은 지양하고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으로 운영을 검토 바람.

⑥ 상안테니스장 운영 준비 철저

- 상안테니스장은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체육시설로서, 동호회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계약시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여 추진하고, 테니스 동호회간에도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⑦ 노후화된 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

- 관내 체육시설 89개소 중 20년 이상 된 시설이 일부 있음. 유지관리를 통한 이용은 하고 있겠으나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설 교체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⑧ 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초급반 확대 검토

- 체육센터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초급반의 경우 정원 초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하므로 중·고급반으로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수영인구 저변확대 등 공익적 목적 측면에서 중·고급반을 조정, 초급반 확대 운영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아울러 65세 이상의 실버반,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4. 도서관과



시정요구

①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 내실있는 추진

- 책 잔치 개최시기가 11월로 날씨가 추워 방문객이 적은 듯하므로 개최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대공연 시 체험 부스의 분산으로 관객이 적었는데 진행순서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매곡도서관 건립 철저

-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주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역할도 중

요함.

-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차별화된 도서관 건립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냉·난방비 등 에너지 효율성을 반영하여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바람.

② 북 콘서트 추진 철저

- 북 콘서트를 책잔치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기존 실내에서 야외로 추진한 결과 집중이 되지 않는 등 아쉬움이 있었으므로 북 콘서트 단독으로 실내에서의 추진에 대해서 검토 바람.

③ 달천편백림 숲속 작은도서관 비치 도서 검토

- 숲속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 도서 비치 시 잠깐씩 들렀다 부담이 없이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수필, 시집, 그림책 등의 도서를 비치함으로써 전시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 세무과



시정요구

① 지방세 과오납 사전 예방 철저

- 지방세 과오납 주요사유를 보면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납세자 착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시에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에 따른 환급이 대부분으로 제도적으로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음.
- 그러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충분히 안내하여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상 불가피한 과오납금은 발생 즉시 환급하는 등 최소화 노력 바람.

6.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지적불부합지 정비

- 쇄부리체육센터 건립 추진과정에서 인근 농지에 대한 지적 불부합 사항이 있었음. 지적경계 분쟁에 따른 측량비용 경감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비가 요구되므로, 본 지역에 대하여 지적 정비가 될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②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 지난해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는데 인지와 이해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도로명주소의 부여 원리,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등에 대하여 홍보가 필요함.
- 특히 전입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일괄 안내 시스템 운영 등은 좋은 시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당부 드림.

복지경제국

1.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 참여 유도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가 올해 4회째로 체험, 홍보부스는 다양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박람회의 근본 목적으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짐. 각종 사례 홍보, 참여방법 안내 등을 통하여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

하고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운영 바람.

②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철저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비 정비 지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던 난방비 지급이 중단되는데, 수혜자의 대부분이 노인 빈곤층으로 이와 유사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지원 연계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특히,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창조경제과와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바람.

③ 6. 25참전 기념비 명각 대상자 발굴 철저

- 6. 25참전 기념비 건립과 관련 명각 대상자 발굴에 있어 국가보훈처, 각 동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예비공간을 두어 이후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2.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평가 철저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나, 일부 부서에서 각 주기별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시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② 청소년 진로체험 행사 부스 운영 개선

- 청소년 문화의집 주관으로 2회째 개최한 청소년 진로체험 행사

와 관련, 운영상 일부 미비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앞 인도에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제기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 조절하여 시행하기 바람.

③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업무 개선 추진

-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에 따르면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창구,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 임원, 외부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 등으로 구성된 고충상담원 운영, 신규 임용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침이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각 항목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철저

- 발달장애인 부모는 보육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고 삶의 피로도가 높음. 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많은 부모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북구 거주 활동보조인이 많지 않아 북구 지역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하므로 북구 거주 활동보조인 양성 및 연계 방안에 대해서 검토 바람.

②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적극 추진

- 장애인 수에 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주간보호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등의 시설은 우리 구에는 전무하여 타

구로 이동하여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 중증장애인이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시설확충을 위하여 우리 구의 노력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 시설확충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바람.

③ 어린이집 운영 관련 보수교육 철저

- 어린이집 점검결과 매년 비슷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장, 보육교사에 대하여 보수교육, 회계처리 지침 교육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을 하기 바람.

④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후속 철저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비 정비 지침」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이 중단되는데, 노인 빈곤층 관리와 폐지에 따른 예산이 노인복지에 활용이 되어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3. 창조경제과



시정요구

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제품 우선구매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매실적은 매우 저조함. 민간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은 물론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매가 되도록 전 부서에 협조 바람.



건의사항

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호계시장, 화봉시장이 그간의 오랜 준비기간 끝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음.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됨으로써 시설 현대화사업 및 마케팅, 상인대학 등 각종 지원사업이 가능해지는 등 전통시장의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무엇보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변환이 중요하므로 상인의식 변환을 통한 활기찬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기 바람.

②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철저

- 직영 체제로의 변경과, 노사발전재단과의 협업 추진 등 운영체계에 있어 변동이 있었음. 이에 따른 일자리지원, 은퇴자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은퇴자 지원사업 시 단순히 취업 목적이 아닌 인생설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로의 유입 연계, 네트워크 조성 등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③ 울산 노동역사관 1987 내실있는 운영

- 1987년 전후의 노동중심의 역사를 전시하고 체험관을 운영하는 노동역사관은 장소 협소 등으로 운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쉽게 찾고, 방문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의 운영과 1987전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60년대 이후 공업도시 울산의 발전상과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산업기술 박물관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바람.

④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 철저

- 2015.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특히,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비 정비 지침」에 따라 2016. 1월부터 폐지가 되므로 이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4. 농수산물



시정요구

① 해양레저 체험마을 내실있는 운영

- 우가항, 제전항의 해양레저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 7~9월 운영상황을 보면 시행 초기로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실적이 저조함.
- 2015년 운영상황을 토대로 체험종목 확대 검토, 대기실 등 편의시설 개선, 주민들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책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바람.

②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공급 물품 내역 공개

-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각종 식재료 내역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품목만 게시되고 있음. 품목별 생산지, 규격, 가격 등 상세한 이력을 표시하여 우수한 식재료로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생산자를 표시함으로써 지역 친환경 생산 농가 홍보에도 기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지원

- 친환경 인증 농가가 23가구로 매년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품목 개발 지원으로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고, 농산물 직매장, 공동주택 로컬푸드 등을 연계한 판로개척으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지원 바람.

② 수산종묘 방류사업 방법 검토

-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단일어종을 동일 장소에 일시 방류 시 생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종으로 분산해서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식에 기여하기 바람.

③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계도

- 해양환경 정비를 위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환경정비 인부사역 등 깨끗한 해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낚시객, 어촌 주민의 인식변환 없이는 개선이 어려우므로 지역어촌계를 통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바람.

④ 우리지역 쌀 판로 개척

- 쌀값 하락으로 농업 경쟁력이 떨어짐은 물론 풍작으로 과잉생산된 쌀의 판로가 없어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음. 생산된 쌀 전량이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과 연계 지원하고, 각급 급식소 등에서도 우리지역의 쌀이 소비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⑤ 유기동물 대책 마련

-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동물사체로 인한 도시미관 저

해, 길거리를 확보하는 개들로 인한 주민불안 등 민원이 많으므로 유기동물 포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 바람.

5.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① 기후변화적응 연구용역 결과 각 분야 반영 추진

- 기후변화적응 연구용역 결과의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관련부서와 연계, 각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용역 결과가 시 계획 수립 시에 반영되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② 화동마을 간이상수도 관련 진정 민원 조속 해결

- 화동마을 간이상수도 진정 민원과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 한국 철도 공사와 협의로 빠른 기간 내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6. 환경미화과



건의사항

① 화봉고가도로 밑 환경정비 철저

- 화봉고가도로 밑 컨테이너를 비롯 재활용품 분리수거 거점장소에 상습적인 불법투기로 도시환경이 아주 좋지 않음. 향후 철거이설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정비하여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진 바람.



건의사항

①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 개선 검토

-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현 방식은 거점장소 주변의 도시 환경저해 요인 및 주민 간 싸움의 요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인력, 장비 등 여러가지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문전수거 등 수거방식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건설도시국

1. 건설과



시정요구

① 마우나 리조트 매곡산단 방면 비상제동 장치 수시 점검 관리

- 마우나리조트에서 매곡산단 방면에 설치된 비상제동장치가 바닥이 패여 비상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고, 또한 설치 안내판이 제동장치 위치에서 적절한 거리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정비 바람.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재검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민자전거 이용 제도,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 현실에 맞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검토·반영한 조례 개정이 요구됨.



건의사항

① 농소운동장, 원지삼거리 구간 도로 교통대책 건의

- 농소운동장 일대는 현재 약 850여 세대의 호계 한양수자인 공동주택이 건설 중에 있어, 향후 준공 시 교통수요가 농소운동장을 거쳐 원지 삼거리로 집중될 것이 예상됨.
- 현재 농소공영 버스차고지 주변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며,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 더욱 더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도로대책을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대설관련 도로분야 설해 대책 만전

- 겨울철 안전한 도로관리와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장비, 자재 확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분야 제설지도 작성을 통한 체계적 제설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염화칼슘 살포작업 장비가 각 동별 1대로는 부족함으로 농가의 비료살포기(트랙터) 활용하는 등 주민과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③ 오토벨리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 오토벨리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오토벨리로 개통 시 오토벨리로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을 비롯하여, 현대자동차 통근자들의 오토벨리로 접근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 건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④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반영

-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시 하천 기본계획과 연계한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실시설계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람.

⑤ 기타 건의사항

- 매곡산단 옹벽 배부름 관련 정비 조속 추진
- 염포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 조속 추진 당부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지역 내 도로변, 명촌 평창 2차 아파트 인근 도로변 싱크홀 관리 철저
- 원지삼거리 농소운동장 사이 과속방지턱이 교통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많음. 경찰서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안전정보과



시정요구

① 현장업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메뉴얼 작성

- 각 부서별 현장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메뉴얼 작성을 당부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서가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작성 여부를 파악하여 정비하기 바람.

② 민방위 교육 불참자 관리 철저

-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불참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자에게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음.
- 불참자에 대해서는 통지서 전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 객관적 자료를 확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③ 분야별 안전대책 추진 당부

-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지자체 분야별 안전수준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는 7개 분야 중 화재, 범죄, 감염병 분야는 1등급이며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연재해 분야는 4등급이었음.
- 자연환경적 여건상 취약한 점도 있겠으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등 대책을 수립, 개선할 수 있도록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풍수해(대설) 대책 준비 만전

- 풍수해 및 동절기 설해 등 각종 재난·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연계 등 전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총괄적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환경방사선 감지기 실시간 자료 제공 검토

- 방사능 조기탐지를 위한 실시간 방사능 측정기인 환경방사선감지기가 구청사 광장에 설치되어 우리구와 원전안전기술원에서 실시간 방사선 값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한 각종 실시간 상황을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활용, 구 홈페이지에 자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연계하기 바람.

③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

- 방사선비상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관련 위기대응 대책을 위한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방사성 방호약품, 물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한, 각종 물품을 각동에 비축을 함에 있어 대부분 동의 보관 장소가 창고로 습하여 보관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④ CCTV 통합관제센터 적정인력 배치 검토

-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기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배치인력은 변동이 없음. 현재 1인 평균 관리기기가 80여대로 적절한 모니터링이 되는지 우려되므로, 비용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여 검토하기 바람.

⑤ 지역축제 안전관리 절차 대책 수립

- 쇄부리 축제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축제,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테마에 따른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안전매뉴얼이 필요함.
- 작성된 안전 매뉴얼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자문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3. 도시행정과



건의사항

① 오토밸리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주민의견 수렴 추진

- 오토밸리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단지 조성 예정부지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한 상황임.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울산시, 시 행사에 협조 요청하기 바람.

② 도시계획 사업지구 행정지도 및 제도개선 강구

-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 지구사업은 2006년 12월 시행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행정적 한계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로 인한 고통 해결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중앙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 바람.

③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비전 제시

- 우리 북구는 도시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이며 특히 농소권이

두드러짐.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도시재정비 계획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자문 및 울산시와 정보교류 등을 통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 이러한 계획이 2016년 계획 중인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이 되고, 울산시 도시계획에 우리구의 계획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기 바람.

4.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①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 작업지 재정비

-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입구 절개지 사면안정화 작업지의 마무리된 법면이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맞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향후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바람.

② 조림사업 후 사후관리 철저

- 재선충병 방제지역,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조림사업 이후 고사된 나무가 많음. 식재단계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식재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작업토록 지도하고, 식재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도시공원 물놀이장 안전 운영

- 신천, 명촌공원내 운영중인 물놀이장의 안전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체 선정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주고, 위탁업체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수

시로 지도·감독을 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최선을 기하여 주기 바람.

②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지속 추진

- 소나무 재선충의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 피해목 제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도 중요하므로 병행 추진토록 하고, 산림이 아닌 주택가 인근의 소나무에 대한 방제와 훈증처리중인 제거목의 찢어진 훈증 덮개를 재정비하여 매개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하기 바람.

③ 천마산 산림욕장 운영 관련 검토

- 천마산 산림욕장 사업으로 편백산림길 조성, 전망데크, 쉼터 및 피크닉장 조성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 및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유지로서 안정적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람.

5.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주거 밀집지역 인근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 주거 밀집지역 인근의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로 주민들로부터 소음·매연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또한, 대규모아파트 단지 일대의 주차단속으로 농서초등학교, 달천 중·고등학교 일대로 불법 주차차량이 몰리어 학생 통학 시 안전에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단속도 인근지역과 병행 추진 바람.

② 공영주차장 수탁자 운영 지도 철저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 노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대부분 지역 경로당에 위탁하고 있는데 불친절 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차 안내시 어르신들의 안전에도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 바람.



건의사항

① 무단방치차량 단속

- 차량의 장기 무단방치로 범죄발생 우려, 교통소통 장애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통·반장과 기관단체 회원 등을 중심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무단방치 차량이 조속히 발견 처리될 수 있도록 바람.

② 농소공영버스차고지 주변 주차 대책 수립

- 농소공영버스차고지 주변 일대가 근무자, 환승손님의 야간주차 등으로 차고지가 부족하여 야간에는 농소운동장 입구까지 주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이 일대에 교통이 집중되어 러시아워때 체증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소공영차고지 주변 도로교통여건 및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시 해당부서에 건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대비 대중교통 확보 대책 수립

- 농소권, 강동산하지구 일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 중에 있고 수 년 내에 입주를 시작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교통수요 또한 증가할 것임. 입주시점이 되면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 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노선 확보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④ 양정 도시재생주거사업 추진시 주차장 반영

- 도시 인프라 확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거, 도로를 비롯 주차장 확보가 중요함. 이와 관련 양정 도시재생주거사업 추진 시 주차장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기 바람.

⑤ 기타사항

- 성우현대아파트 ↔ 귀영 하이얏트 아파트 간 택시승강장 설치 검토
- 송정동 유아진흥원 입구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좌회전 수신호 검토

6.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학교주변가 성인용품 광고물 단속 정비

- 진장중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인용품 광고물로 등하교길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음. 교육상 부적절하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도록 바람.

② 도로변 불법현수막 강력한 단속으로 정비 철저

- 도로변 특히 주말의 경우 국도변이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휴일과 야간 집중단속과 정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게시를 하고 있으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및 운영 지원

-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련 법령,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실시시 아파트 입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자간 화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교육을 운영하기 바람.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 입주자대표회는 동별대표자로 구성이 되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번만 중임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4년 임기가 끝나면 할 수 없음. 동별 대표자 선출이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 구성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앙에 건의 제 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보 건 소



시정요구

① 약품관리 철저

- 약품 보관 냉장고 고장으로 약품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음.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약품 잔고관리에 있어서 유효기한 도래 약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 폐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치매예방 사업 추진 철저

-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개선이 가능하므로,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 추진함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당부 드림.
- 또한, 치매환자 실종 시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실종자의 소재 파악 등 행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하므로 실종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연계기관과의 공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② 보건소 전문인력 정원 책정 검토

- 보건소 인력운영에 있어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에 일부 직종이 미충족되고 있음. 인력운용은 기준인건비 적용 등으로 일방적 증원이 어렵겠지만 법상 최소배치인력 기준은 충족을 하여야 한다고 보여짐. 전문인력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원관리 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의원 공무국외연수 내실 추진

- 의원 공무국외연수 추진과 관련 대상지 선정 시 구정업무와 접목할 수 있는 곳으로의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연수 후에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 도출

과 보고회 등을 거쳐 성과있는 연수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② 민원상담실 운영 개선

- 의원 부재 시 민원상담 및 각종 건의서, 진정서 등이 의회로 접수, 해당부서로 이첩되어 처리결과가 통보되고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있어서 해당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전 의원들에게도 배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성실한 답변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람.



제7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2014. 10. 1. ~ 2015.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417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

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03건이며, 시정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70건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6년 1월 29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제8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103	33	10	23	-	70	26	46	-
공 통		2	2	-	2	-	-	-	-	-
기 획 홍 보 실		6	2	-	2	-	4	-	4	-
행 정 지원국	소 계	31	10	3	7	-	21	8	13	-
	총 무 과	5	3	-	3	-	2	-	2	-
	자 치 행 정 과	9	3	-	3	-	6	1	5	-
	문 화 체 육 과	10	2	2	-	-	8	5	3	-
	도 서 관 과	4	1	-	1	-	3	2	1	-
	세 무 과	1	1	1	-	-	-	-	-	-
	민 원 지 적 과	2	-	-	-	-	2	-	2	-
복 지 경제국	소 계	26	7	2	5	-	19	5	14	-
	복 지 지 원 과	3	-	-	-	-	3	-	3	-
	사 회 복 지 과	7	3	-	3	-	4	-	4	-
	창 조 경 제 과	5	1	-	1	-	4	1	3	-
	농 수 산 과	7	2	1	1	-	5	3	2	-
	환 경 위 생 과	2	-	-	-	-	2	1	1	-
	환 경 미 화 과	2	1	1	-	-	1	-	1	-
건 설 도시국	소 계	33	11	4	7	-	22	10	12	-
	건 설 과	7	2	1	1	-	5	1	4	-
	안 전 정 보 과	8	3	-	3	-	5	4	1	-
	도 시 행 정 과	3	-	-	-	-	3	2	1	-
	공 원 녹 지 과	5	2	-	2	-	3	-	3	-
	교 통 행 정 과	7	2	1	1	-	5	2	3	-
	건 축 주 택 과	3	2	2	-	-	1	1	-	-
보 건 소		3	1	1	-	-	2	1	1	-
의회사무과		2					2	2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기획홍보실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철저 -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반영 등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에 비하여 이행율이 높게 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추진상황을 근거로 이행율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공약사항이 변경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기 바람.	○ 연간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고 있음. ○ 향후 보고회 개최시 공약 이행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이행율을 객관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음. ○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약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별 주민만의 날 개최시 주민들에게 변경내용을 홍보 하였음. 향후 공약변경시 의회 및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89개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 법적으로 존치해야 하는 위원회 등 위원회별 특성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바람 - 또한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 2016년 상반기 중 위원회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몇년 동안 위원회 운영개최 현황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도록 정비하겠음. ○ 또한 부서와 협의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직접심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구정 업무의 기획·조정 역할 강화 - 기획홍보실은 구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역할을 하여야 하는 부서로서 북구의 미래에 대한 중장기 발전비전과 미래지향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북구의 미래비전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27 울산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추진 중이며 1. 21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추진중
	② 창의정책 연구모임 연구결과 구정시책 반영 -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제안으로 행정역량 강화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었음. 이렇게 발굴된 과제의 결과물이 구정시책에 반영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기 바람.	○ 과제 선정 시부터 구정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 연구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구정 베스트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부여로 구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③ 국가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 - 각종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으로 언론보도는 되고 있으나, 주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아울러 각종 국가 공공시설 유치와 관련 공모사업 유치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후평가를 하여 향후 전략방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바람.	○ 구정소식지, 영상뉴스, 인터넷신문, SNS 등 자체매체 및 KTX 전광판, 언론사 홍보를 통하여 국가사업, 공공시설 유치, 공모사업 유치결과 등을 시기적절하게 홍보하겠음. 또한, 구정홍보 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부서별 행정 보도자료 및 기고문 등 실적 관리를 통하여 사후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④ 각종 행사시 북구 홍보 적극 활용 -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보다 찾는 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관광, 문화, 먹거리를 적극 홍보하여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하기 바람.	○ 언론사 관광, 여행 기획기사 보도시 우리 구의 명소,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홍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겠음. 또한, 다큐 제작과 방송, 홍보 영상물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도시 북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 총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여성보건휴가 이용 제고를 위한 개선책 강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난해 일부 부서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음. 대책 강구·개선책을 마련 바람.	○ 전 부서 보건휴가 활성화 방안 통지(총무과-2687호) - 활성화 방안 · 여성보건 휴가 사용 협조 당부를 위한 실·과 주무담당 회의 ※ 1. 22.(금) 16:00, 3층 상황실 · 분기 말 부서별 보건휴가 사용 실적 확인, 실적 저조한 부서 사유 확인 예정	추진중
	② 직원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직원고충상담에 있어 인사, 직무 관련 개인인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이 있음. 개인의 고충상담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기 바람. - 또한, 신규직원 및 대민업무 처리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람.	○ 2016년 직원 고충상담 운영계획('16.1.15.)에 따라 총무과에 직원 고충상담 전담창구 설치하고, 매월 고충상담일을 지정하여 정례적 운영 및 동주민센터 등 현장 방문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직원 고충상담이 되도록 하겠음. ○ 또한, 신규직원 및 대민업무 처리 직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하기 위한 소속 국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임	추진중
	③ 각종 행사시 의전업무 철저 - 구 주관(구 지원)행사 진행시 내빈소개 순서, 대상이 행사마다 상이하므로, 행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구 주관 행사의 경우, 행사 특성과 취지에 맞게 내빈 소개 및 연설 순서가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 · 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 국제교류 업무를 단순히 상호방문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간단체와 기업의 참여를 통한 민간교류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건의료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계획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 국제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구축이 중요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보건 등 분야별 실무급 담당이 주체가 되어 구체적인 교류 대상 · 방법 · 시기 등을 연구하도록 하겠음. ○ 도시별로는 맞춤형 교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베트남 푹쑤엔시의 경우 5월 최부리축제에 초청하여 문화 및 의료 분야 교류를 추진할 예정임. - 중국 비성시의 경우 9월 비성시 복숭아축제에 방문하여 문화 교류 및 친선 체육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 - 터키 이즈미트시의 경우 산업 · 기술 분야 교류를 추진할 예정	추진중
	②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대체적으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파악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기 바람.	○ 우리 청사를 포함한 동 동주민센터 건축물은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에 적합하게 건립 되었으나,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 많은 예산과 건축물의 구조적 변경 등을 수반하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중

□ 자치행정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사업내역 및 정산현황을 보면, 교육과 무관한 물품구입, 교사 개인별 일괄 지급 등 일부 지원 목적에 적절치 않은 사업들이 있음.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목적에 맞는지 면밀히 살피고, 또한 정산시에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검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교육경비 지원 계획 수립 및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심의 시 교육과 무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사업목적에 맞는지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정산 시에도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방범용 CCTV 효율적 운영 - 관내 방범용 CCTV 총 144대중 초기에 설치된 41만화소가 9대 있음. 41만 화소는 얼굴, 차량번호 등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 방범 효과가 떨어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여 방범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 바람.	○ 현재 설치요구 지역이 많아 9대 모두 즉시 교체는 어려워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예산 확보 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③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지난해에 비하여 보조금 이용실태 및 정산 내용이 많이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일부는 영수증 미첨부, 유류비, 급식비 등을 한꺼번에 결재하는 등 정산에 미비함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됨. - 또한, 지원조례에 지원범위로 초소 운영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TV 등의 물품구입, 자체연합회비는 적절치 않으므로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자율방범대 보조금 정산서 영수증 첨부, 유류비·급식비의 지출 및 정산을 철저히 하고, ○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원범위는 초소운영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자율방범대연합회 단합대회 분담금, 연합회 회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등에 통보하였음[자치행정과-16771(2015. 12. 29.)] ○ 또한, 방범대 사무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 집행,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남북교류협력 업무 의견수렴 추진 - 2015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조성된 기금의 활용방안 및 향후 기금조성 계획,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추진하여 주기 바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결산보고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상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산보고 및 기금의 활용방안,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매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일부 인기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들의 장기 수강으로 신규 회원들의 진입이 어렵고 고착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 프로그램별 일정기간 수강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수강생은 수료제 등 제도를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람. - 또한 일정 정원 모집 미달시 폐강이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중 최소 수강인원을 채우기 위해 실제 참여하지 않는 수강생을 등록하는 사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업참여 현황을 살펴 효율적 운영을 하기 바람.	○ 일부 주민의 프로그램 장기 수강을 막기 위한 수준별 반 구성, 동아리 활성화, 수료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실제 참여하지 않는 수강생을 등록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실제 수업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등에 통보하였음[자치행정과-16771(2015. 12. 29.)]	추진중
	③ 주민자치센터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 - 주민자치센터 헬스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샤워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의 주인의식 결여로 필요 이상의 물 사용으로 수도, 도시가스 공공요금의 과다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홍보 등을 통하여 공공요금이 낭비 되지 않도록 지도 바람.	○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냉·난방기 가동 및 샤워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의 주인의식 결여로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절수기 설치로 공공요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하였음[자치행정과-16771(2015. 12. 29.)]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④ 주민자치회 운영 검토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첫째, 중앙정부의 지원만 있었고 2년차 접어들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회와 차별성이 없음. - 예산지원이 없어 수강료 인상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 요구 및 제도 보완에 대해 건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이 없으므로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바람.	○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시범실시를 위하여 지원을 할 예정임.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관하여는 성비, 직업군(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소득수준, 연령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구성하도록 등에 요청하였음[자치행정과-16771(2015. 12. 29.)]	추진중
	⑤ 주민자치 한마음,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격년제 시행 검토 - 주민자치 한마음,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매년 시행하고 있음. 대부분 각종 단체에 중복 소속된 위원으로 연중 각종 행사 등에 참여기회가 많음. - 그간의 노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는 할 것이므로 매년 시행하기 보다 격년제 운영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통장협의회와 논의하여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하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2017년도에 시행하여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사기진작과 교류의 장을 만들 계획임.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⑥ 민주평화통일 북구협의회 통일 기행 격년제 시행 검토 -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 이후 매 년 국외연수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상황, 타 단체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추 진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민주평통 통일기행은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실상에 접목시키 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상황, 타 구·군의 추진 상황 등을 비교하 여 검토하겠음.	추진중

□ 문화체육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예산 효율적 사용 -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체육대회 개최 후 뒷풀이 명목의 식대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음. 일정 부분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동의 경우 전체예산 8,000천원 중 2,000천원 이상 사용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로 개선하기 바람.	○ 8개동 생활체육회 임원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5년도 제16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정산결과 뒷풀이 비용으로 2,000천원 이상 사용한 동은 없었음 ○ 향후에도, 북구생활체육회와 동 생활체육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하겠음 【문화체육과-1330(2016.1.19.)호 공문 통보】	완결
	② 생활체육회 보조금 사용 철저 - “생활체육 유공자 시상 및 체육인의 밤” 지원사업은 당초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 사업에서 사전 승인없이 변경 추진된 사업으로 차후에는 사업변경시 사전승인을 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지방재정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관련절차에 따라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화체육과-1330(2016.1.19.)호 공문 통보】	완결
건의 사항	① 쇄부리 축제 운영 강화 - 우리구의 대표 축제로서 잘 추진이 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축제의 자문역할을 하는 쇄부리축제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샵, 연구지원 등으로 단순한 축제가 아닌 전문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 바람. - 또한, 쇄부리 관련 각종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쇄부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쇄부리축제위원회 위원들의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해 건문을 확대하여 철기관련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음.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울산북구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및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유일의 쇄부리문화를 소재로한 울산쇄부리축제가 우리나라 대표 산업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② 각종 행사시 지역홍보 활용 - 강동해변가요제, 투게더콘서트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음. - 이러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의례적인 지역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진행진과 협의하여 지역특성과 지역의 구체적인 문화유산, 관광자원, 먹거리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홍보에 적극 활용 바람.	○ 향후 각종행사시, 당해 행사관련 홍보 뿐만아니라, 우리 구 관광정보, 문화유산, 먹거리 등 우리구 문화·관광관련 정보를 전반적으로 홍보하여 행사를 찾은 관람객들에 제공토록 하겠음.	완결
	③ 행사·축제 효율적 운영 - 강동해변가요제, 동별 투게더콘서트는 매년 비슷한 내용의 행사 진행으로 일정부분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강동해변가요제는 강동동 투게더 콘서트와 통합개최, 각 동별 투게더 콘서트의 권역별, 격년제 추진을 검토하여 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바람.	○ 2월 중 주민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권역별 및 격년제를 검토 반영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④ 인문학 서재 몽돌 운영 관리 철저 - 강동지역은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문화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인문학 서재 몽돌을 주축으로 학교도서관,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이 서로 연계하여 인문학 서재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강동지역 일대 관광단지 조성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인문학 서재 몽돌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작은도서관, 동 주민센터, 학교 등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⑤ 물놀이장 내실 운영 - 양정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나, 첫째 운영상 일부 개선 사항으로 물의 양, 교체주기 조절로 적절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었으며, 위탁업체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최선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므로 위탁업체 선정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주고, 운영 취지에 맞게 성인용 풀장은 지양하고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으로 운영을 검토 바람.	○ 지난해 물놀이장 운영시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한 깨끗한 수질과 안전관리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 위탁업체 선정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정토록 추진하고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 운영 등 물놀이장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⑥ 상안테니스장 운영 준비 철저 - 상안테니스장은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체육시설로서, 동호회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계약시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여 추진하고, 테니스 동호회간에도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상안테니스장 시설관리는 북구생활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계약시 일반 주민에게 최우선적으로 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명기하였으며, 우리 구 대표 테니스장으로서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지도 하도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⑦ 노후화된 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 - 관내 체육시설 89개소 중 20년이 상 된 시설이 일부 있음. 유지관리를 통한 이용은 하고 있겠으나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설 교체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야외체육시설 정기점검계획(문화체육과-470호)을 수립하여 '16. 1. 7.~1. 15. 8일동안 관내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수 할 계획임. ○ 향후에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⑧ 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초급반 확대 검토 - 체육센터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초급반의 경우 정원 초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하므로 중·고급반으로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수영인구 저변 확대 등 공익적 목적 측면에서 중·고급반을 조정, 초급반 확대 운영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아울러 65세 이상의 실버반,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 2015. 12월부터 수영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초급반을 3개반에서 5개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실버반, 장애인 수영교실은 물론 다문화자녀 수영교실과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실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완결

□ 도서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 내실 있는 추진 - 책 잔치 개최시기가 11월로 날씨가 추워 방문객이 적은 듯하므로 개최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대공연시 체험 부스로의 분산으로 관객이 적었는데 진행 순서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2016년 책잔치 기본계획 수립 시 행사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 개최시기의 조정, 행사진행 순서 등 충분히 검토하여 많은 주민이 책잔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처리중
건의 사항	① 매곡도서관 건립 철저 -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주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함. -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차별화된 도서관 건립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냉·난방비 등 에너지 효율성을 반영하여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바람.	○ 시청각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북카페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 설계되어 있음. ○ 2016. 1. 14. 최종 설계안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이 우수한 단열재를 사용하고 바닥 난방을 병행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향후에도 관련 부서(건축주택과)와 협의하여 매곡도서관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② 북 콘서트 추진 철저 - 북 콘서트를 책잔치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기존 실내에서 야외로 추진한 결과 집중이 되지 않는 등 아쉬움이 있었으므로 북 콘서트 단독으로 실내에서의 추진에 대해서 검토 바람.	○ 2016년 북 콘서트 계획 수립 시 책 읽는 울산북구 추진위원회, 도서관 관계자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 행사참여 구민들과 함께하는 최적의 북콘서트를 개최토록 하겠음.	처리중
	③ 달천편백림 숲속 작은도서관 비치 도서 검토 - 숲속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 도서 비치시 잠깐씩 들렀다 부담이 없이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수필, 시집, 그림책 등의 도서를 비치함으로써 전시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달천편백림 숲속작은도서관의 비치도서를 지난 1월 25일에 다양한 장르의 도서, 주민들이 야외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집, 그림책 등의 도서로 교체하였음.	완결

□ 세무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지방세 과오납 사전 예방 철저 - 지방세 과오납 주요사유를 보면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납세자 착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시에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에 따른 환급이 대부분으로 제도적으로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음. - 그러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충분히 안내하여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상 불가피한 과오납금은 발생 즉시 환급하는 등 최소화 노력 바람.	○ 과오납 환부 발생 시 환부금 지급 통지서를 안내문과 함께 발송하고, 2012년부터 정기분 부과(등록면허세, 자동차세(2회), 재산세(2회))시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10만원미만의 소액환부액은 직권충당하고 있으며, ○ 매년 과오납 일제정리 기간을 두어 미환부 대상자에게 환부금지급 통지서 및 안내문 재발송, 연락 가능한 미환부자에게 전화 안내하고 있으며, ○ 향후 각 세목에 대한 올바른 신고안내와 홍보로 과오납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 민원지적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지적불부합지 정비 - 쇄부리체육센터 건립 추진과정에서 인근 농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사항이 있음. - 지적경계 분쟁에 따른 측량비용 경감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비가 요구되므로, 본 지역에 대하여 지적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현재 쇄부리체육센터 인근토지이용현황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음. ○ 현황측량 자료를 토대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임.	처리중
	②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 지난해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는데 인지와 이해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도로명주소의 부여원리, 도로명주소 사용안내 등에 대하여 홍보가 필요함. - 특히 전입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일괄 안내 시스템 운영 등은 좋은시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당부 드림.	○ 도로명주소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 관련 부서 및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노인 등에 대하여 도로명주소의 내용 및 사용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 도로명주소 일괄 안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처리중

□ 복지지원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 참여 유도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가 올해 4회째로 체험, 홍보부스는 다양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박람회의 근본 목적으로 자원봉사참여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짐. 각종 사례홍보, 참여방법 안내 등을 통하여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운영 바람.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는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민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코자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음. 향후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는 4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체험은 지양하고 단체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사항 등을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 또한, 자원봉사센터 홍보부스를 별도로 마련하여 자원봉사자 등록, 참여방법 및 인정제도·재능기부 활동 연계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재능기부 등의 봉사활동 사항을 게시·홍보하여 잠재적 자원봉사자 발굴 및 참여 독려하여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 하도록 노력하겠음.	처리중
	②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철저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비 정비지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던 난방비 지급이 중단되는데, 수혜자의 대부분이 노인 빈곤층으로 이와 유사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지원 연계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 중위소득 40%이하이면서 노인·장애인·영유아 포함 가구 900여명을 대상으로 '15.11.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별 우편 발송하였고, 언론사 등을 통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해당사업 담당자(동, 복지지원과, 창조경제과)가 대상자에게 개별 전화 안내, 주민자치위원회·통장회	처리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바람. 특히,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창조경제과와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바람.	의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추진 중임. ○ 노인 빈곤층에 우리 구는 연 1회 400가구에 대하여 7만5천원을 지원하는 노인세대 월동비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지원금액을 33%증액한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매년 현대자동차, S-OIL 등의 민간 후원으로 저소득 2천여 가구에 3억원 상당의 연료비를 지원 할 계획임.	
	③ 6. 25참전 기념비 명각 대상자 발굴 철저 - 6. 25참전 기념비 건립과 관련 명각대상자 발굴에 있어 국가 보훈처, 각 동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예비공간을 두어 이후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15. 8월 울산보훈지청으로부터 6.25참전유공자 명단을 받아 최초 956명으로 명각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후 명각 대상자 추가신청 고시 공고 및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와 각 동별 주민만남의 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명각대상자 67명을 추가 발굴 및 신청 받아 총 1,023명으로 명각 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15. 12. 선양비를 준공하였음. ○ 또한, 선양비에 예비공간을 두어 반기별(연2회)로 누락된 대상자를 발굴하여 명각을 추진할 예정임	처리중

□ 사회복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평가 철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나, 일부 부서에서 각 주기별로 하는 기본계획수립 시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각 실·과·소에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안내하고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직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교육을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실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음.	추진중
	② 청소년 진로체험 행사 부스 운영 개선 청소년 문화의집 주관으로 2회째 개최한 청소년 진로체험 행사와 관련, 운영상 일부 미비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앞 인도에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제기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 조절하여 시행하기 바람.	행사 주관 기관인 청소년 문화의집에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획단계에서부터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제3회 청소년직업체험축제가 안전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③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업무 개선 추진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에 따르면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창구,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 임원, 외부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등 으로 구성된 고충상담원 운영 신규 임용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침이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각 항목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고충상담원 구성, 신규 임용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철저 - 발달장애인 부모는 보육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고 삶의 피로도가 높음. 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많은 부모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북구 거주 활동보조인이 많지 않아 북구 지역을 끼리는 경향이 있다하므로 북구 거주 활동보조인 양성 및 연계 방안에 대해서 검토 바람.	○ 구청,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각종 주민행사를 통한 발달장애인 사업 안내와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부모회 등의 협조를 통해 발달장애인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는 등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지역제한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시 타구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북구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을 적극적으로 모집 및 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겠음.	추진중
	②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적극 추진 - 장애인수에 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 확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울산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 시설확충이 되도록 노력바람.	○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건립방안을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과제로 제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설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추진중
	③ 어린이집 운영 관련 보수 교육 철저 - 어린이집 점검결과 매년 비슷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음. 원장, 보육교사에 대하여 보수교육, 회계처리 지침 교육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을 하기 바람.	○ 2015년도에는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 집합교육형태로 추진하였으나, 2016년에는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분과별 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임원진을 강사요원화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시 회계처리 교육 등에 중점을 두어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④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후속 철저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회 보장사업비 정비 지침」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이 중단되는데, 노인빈곤층 관리와 폐지에 따른 예산이 노인복지에 활용이 되어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현재 노인빈곤층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지원 등 저소득 노인지원과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한 노인여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향후에도 노인복지 사각지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 창조경제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제품 우선구매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매실적은 매우 저조함. 민간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은 물론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매가 되도록 전 부서에 협조 바람.	○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제품에 대하여 우리 구청은 물론 전국 시·군·구에 우선구매 협조 공문을 매월발송하고, 새울게시판 안내, 부서별 구매 담당자에게 개별 안내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016년 정부 합동평가(‘15년 실적) 사회적기업 구매실적률 점검결과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 1위를 달성함】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호계시장, 화봉시장이 그 간의 오랜 준비기간 끝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음.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됨으로써 시설 현대화사업 및 마케팅, 상인대학 등 각종 지원사업이 가능해지는 등 전통시장의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무엇보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변환이 중요하므로 상인의식변환을 통한 활기찬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기 바람.	○ 2016년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호계시장은 상인들의 의식개혁, 고객관리, 점포경영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채용, 공동마케팅 사업을 신청하였고 화봉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개선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2017년도 사업)에 공모신청 준비중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②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철저 - 직영 체제로의 변경과, 노사발전재단과의 협업 추진 등 운영체계에 있어 변동이 있었음. 이에 따른 일자리지원, 은퇴자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은퇴자 지원사업시 단순히 취업 목적이 아닌 인생설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로의 유입 연계, 네트워크 조성 등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와 협업하여 인생이모작 이음학교, 귀농귀촌학교 등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음 ○ 취업을 통한 고용 창출은 물론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사회의 유입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③ 울산 노동역사관 1987 내실 있는 운영 - 1987년 전후의 노동중심의역사를 전시하고 체험관을 운영하는 노동역사관은 장소 협소 등으로 운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쉽게 찾고, 방문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의 운영과 1987전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60년대 이후 공업도시 울산의 발전상과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산업기술 박물관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바람.	○ 오토벨리복지센터 4층 복도를 활용한 역사관인 만큼 장소의 한계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겠으며, ○ 60년대 이후 공업도시 울산의 발전상과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는 자료수집과 보다 넓은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국립산업 박물관 건립 추진시 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울산시 관련부서에 협의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④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 철저 - 2015.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특히,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비 정비 지침」에 따라 2016. 1월부터 폐지가 되므로 이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에너지바우처사업에 저소득층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주민 센터와 협조하여 전화·개별방문을 통하여 독려, 신청토록 추진하였으며, ○ 향후에도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완결

□ 농수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해양레저체험마을 내실있는 운영 - 우가항, 제전항의 해양레저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 7~9월 운영상황을 보면 시행 초기로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실적이 저조함. - 2015년 운영상황을 토대로 체험종목 확대 검토, 대기실 등 편의시설 개선, 주민들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책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바람.	○ 해양레저체험마을 운영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개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 '16년도에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체험마을 사무장을 중심으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책 등을 논의하여 보다 활력있는 체험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음.	추진중
	②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공급 물품 내역 공개 -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각종 식재료내역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품목만 게시되고 있음. - 품목별 생산지, 규격, 가격 등 상세한 이력을 표시하여 우수한 식재료로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생산자를 표시함으로써 지역 친환경 생산농가 홍보에도 기여하기 바람.	○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되는 물품의 연간 내역은 매년 3월경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재되고 있으며, 식재료별 상세내역의 확인이 가능함. ○ 또한, 연월별 공급품목 및 가격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음.(다만, 품목별 생산지, 생산자는 일자·지역별 수시로 변경되므로 홈페이지 게시가 어려움)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지원 - 친환경 인증농가가 23가구로 매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음.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품목 개발지원으로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고, 농산물 직매장, 공동주택 로컬푸드 등을 연계한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지원 바람.	○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을 위하여 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조성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인증 장려금 지원 및 친환경농업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환경농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판로 확대를 위하여 강동직거래장터, 공동주택 직거래 장터, 진장하나로마트 직판장, 신천 하나로마트 등 직거래장터를 확대·운영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매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완결
	② 수산종묘 방류사업 방법 검토 -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단일어종을 동일 장소에 일시 방류시 생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종으로 분산해서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식에 기여하기 바람.	○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시 주관 사업과 구 주관 사업으로 구분되며, 방류품종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연안환경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종묘를 방류하고 있으며, 향후 품종 선택시 다 품종이 방류될 수 있도록 어촌계와 협의를 강화하겠으며, 방류지역 선정도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③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제도 - 해양환경 정비를 위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환경정비 인부사역 등 깨끗한 해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낚시객, 어촌 주민의 의식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연근해어선 어업인들의 해양정화 활동 참여의식 제고로 사업비의 조기소진 등 정착되고 있음. ○ 2016년에는 연안 및 어항의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월 1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변환 없이는 개선이 어려우므로 지역어촌계를 통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바람.	회 어촌계와 자망자율관리협회, 강동소형선박협의회를 통하여 어민들에게 교육,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인 정화활동의식 제고를 하였음.	
건의 사항	④ 우리지역 쌀 판로 개척 - 쌀값 하락으로 농업 경쟁력이 떨어짐은 물론 풍작으로 과잉 생산된 쌀의 판로가 없어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음. 생산된 쌀 전량이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과 연계 지원하고, 각급 급식소 등에서도 우리 지역의 쌀이 소비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 구청장, 농소농협장 및 관내 중·고등학교장과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관내 중·고등학교와 급식용 지역 쌀 사용 가능여부 등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및 예산 지원할 예정임. ○ 관내 기업 및 구청 직원들에게도 우리 지역 쌀의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 구 각종 행사 추진 시 농협과 연계하여 지역 쌀이 경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⑤ 유기동물 대책 마련 -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동물사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길거리를 확보하는 개들로 인한 주민불안 등 민원이 많으므로 유기동물 포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 바람.	○ 현재 우리 구는 유기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안, 로드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3개소와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 및 보호를 하고 있으며, ○ 또한, 개의 경우 '13년부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가 실시된 이후 우리 구는 연도별 유기동물이 점차적으로 감소(20~30%)하고 있으며, 고양이의 경우 TNR사업 시행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있음.	완결

□ 환경위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기후변화적응 연구용역 결과 각 분야 반영 추진 - 기후변화적응 연구용역 결과의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관련부서와 연계, 각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용역 결과가 시 계획 수립시에 반영되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기후변화적응 대책 연구용역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옥외근로자 폭염대비 강화사업 등의 추진 가능한 세부사업 41개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제안하였고, ○ 2015년 11월 2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부서별 최종검토를 거쳐,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책자를 시 및 각 부서에 배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시 반영하도록 하였음.	완결
	② 화동마을 간이상수도 관련 민원 조속 해결 - 화동마을 간이상수도 진정 민원과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 한국철도 공사와 협의로 빠른 기간 내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 화동마을상수도의 취수원 고갈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마을주민과 철도공사 관계자 회의를 거쳐 대체관정 개발에 합의하였으며, 시 공사인 SK건설(주)에서 화동마을주민이 선정한 위치 중심으로 지하수 개발을 위한 지점조사 및 시추 예정임. ○ 개발된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취수원 관정으로 활용 예정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와 배수관부설공사 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였음	추진중

□ 환경미화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화봉고가도로 밑 환경정비 철저 - 화봉고가도로 밑 컨테이너를 비롯 재활용품 분리수거 거점장소에 상습적인 불법투기로 도시환경이 아주 좋지 않음. 향후 철거이설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정비하여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화봉2교 하부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담당부서인 건설과에 철거토록 요청하였고, 재활용거점장소에 대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해당지역에 폐지를 수집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도시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향후 재활용 거점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하여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①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 개선 검토 -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현 방식은 거점장소 주변의 도시환경저해 요인 및 주민간 싸움의 요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인력, 장비 등 여러가지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문전수거 등 수거방식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현재 진장·명촌지역을 제외한 북구 전 지역에 대한 재활용 수거는 주1회 거점수거로 운영하고 있으나, 거점장소 주변 환경저해, 주민 불편 등 문제점이 있음. ○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력, 장비 등 많은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하나, 1~2년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 건설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마우나 리조트 매곡산단 방면 비상제동 장치 수시 점검 관리 - 마우나리조트에서 매곡산단 방면에 설치된 긴급제동시설을 수시 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고, 설치 안내판이 운전자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정비 바람.	○ 2016. 1. 19일자로 비상제동시설 노면 정비 완료하였음. ○ 또한 운전자 식별이 쉽도록 안내판 문구를 수정하였음. (500m → 전방 500m)	완결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재검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현실에 맞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검토·반영한 조례 개정이 요구됨.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인프라 구축에 편중되었음. ○ 울산광역시에서 NFC(근거리무선통신)를 활용한 “자전거 안심등록제” 구군통합 운영 등을 검토 중임. ○ 향후 구정현안에 부합되도록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농소운동장, 원지삼거리 구간 도로 교통대책 건의 - 농소운동장 일대 공동주택 건설중으로 준공 시 교통수요가 농소운동장을 거쳐 원지삼거리로 집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도로대책을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현재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 구간은 최근 건축물 신축 등으로 노선확장이 불가한 실정임. ○ 따라서 대3-59호선을 산업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할 2016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 건의할 계획임. (도시행정과)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② 대설관련 도로분야 설해대책 만전 - 겨울철 안전한 도로관리와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장비, 자재 확보 준비 철저 및 도로분야 제설 지도 작성을 통한 체계적인 제설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건설과) - 염화칼슘 살포작업 장비가 동별 1대로 부족하므로 농가의 비료살포기(트랙터)를 활용하는 등 주민과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안전정보과)	○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운용반 편성 및 제설 담당구역(구청별, 동별) 배정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설해대비 제설장비 점검 및 제설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 ○ 겨울철 제설작업 시 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완료 및 운영 - 트랙터(22대) 제설작업반 구성 ○ 제설취약구간(이면도로) 50개소 제설협력체계 구축완료 - 동 주민단체 및 시·구 행정지원부서 87개(1,548명)	완결
	③ 오토밸리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 오토밸리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 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오토밸리로 개통시 오토밸리로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통근자들의 오토밸리 접근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 건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현재 오토밸리 공용구간(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연암IC/B=35m) 내 노면에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계석 설치가 되어 있으나, 연암IC 이후 구간은 도로 폭이 35m에서 30m로 줄어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도로관리청인 광역시에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④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 반영 -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시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한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실시설계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람.	○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은 2016년 3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실시설계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천곡천이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⑤ 기타 건의사항 - 매곡산단 옹벽 배부름 관련 정비 조속 추진 - 염포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 조속 추진 당부 - 원지삼거리 농소운동장 사이 과속방지턱이 교통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많음. 경찰서와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매곡산단 보강토 옹벽 보수보강공사 미확보 예산 12억원(재난기금) 중 시 재난기금 5억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7억은 구 재난기금 운용계획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3월 공사착공 할 계획임. ○ 염포동 290-8번지 협의보상 후 일부구간(L=52m) 개설할 계획이며, 잔여구간(L=50m)은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예산추가 확보 등 장기 검토하겠음. - 1월 :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 2월 : 설계서 작성 및 계약의뢰 - 3월 : 공사 착공 - 6월 : 공사 준공 ○ 2016. 1. 14일자로 농소1동주민센터를 통해 과속방지턱 정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월 중 단가계약을 통해 과속방지턱 정비를 추진하겠음.	추진중

□ 안전정보과

구 분	시정 · 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현장업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매뉴얼 작성 - 각 부서별 현장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매뉴얼 작성을 당부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서가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작성 여부를 파악하여 정비하기 바람.	○ 현장업무 추진 부서에 “현장업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정비·작성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16. 1. 8.) 2월 중 부서별 매뉴얼을 취합, 총괄 매뉴얼로 작성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음.	추진중															
	② 민방위 교육 불참자 관리 철저 -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불참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자에게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음. - 불참자에 대해서는 통지서 전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 객관적 자료를 확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 교육훈련 통지서는 소속 민방위 대장이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통지서 수령증 징수가 있어야 하나 통대장들의 업무 미흡으로 과태료 부과에 애로가 있음. ○ 2016. 3월 통대장 교육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빙자료 확보방안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키겠음. ○ 2016년에 통지서 교부를 철저히 하고 전대원이 교육에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고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음.	추진중															
	③ 분야별 안전대책 추진 당부 -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지자체 분야별 안전수준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는 7개 분야 중 화재, 범죄, 감염병 분야는 1등급이며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연재해 분야는 4등급이었음.	○ 2015 우리구 분야별 안전지수 등급 현황 (국민안전처 발표) <table border="1"><tr><td>구분</td><td>감염병</td><td>자살</td><td>범죄</td><td>자연재해</td><td>화재</td><td>교통사고</td><td>안전사고</td></tr><tr><td>등급</td><td>1</td><td>2</td><td>1</td><td>4</td><td>1</td><td>4</td><td>4</td></tr></table>	구분	감염병	자살	범죄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급	1	2	1	4	1	4	4
구분	감염병	자살	범죄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급	1	2	1	4	1	4	4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 자연환경적 여건상 취약한 점도 있겠으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등 대책을 수립, 개선할 수 있도록 바랍.	○ 지역안전지수 개선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조례, 규칙, 지침, 매뉴얼 등),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안전교육, 재난대응 훈련, 안전점검, 홍보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안전수준 등급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 사항	① 각종 풍수해(대설) 대책 준비 만전 - 풍수해 및 동절기 설해 등 각종 재난·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연계 등 전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총괄적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	○ 재난상황관리를 위해 평상시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비상시(예비특보 이상) 단계별/재해유형별 비상근무를 통해 신속한 상황보고·상황전파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 기상·피해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 회의를 실시, 탄력적으로 인력·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협의 기능, 임무 역할 등을 통해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완결
	② 환경방사선 감지기 실시간 자료 제공 검토 - 방사능 조기탐지를 위한 실시간 방사능 측정기인 환경방사선감지기가 구청사 광장에 설치되어 우리구와 원전안전기술원에서 실시간 방사선 값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한 각종 실시간 상황을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 환경방사선 감지기 실시간 자료 제공은 구청광장 전광판 제작 후 제공 가능하며(소요사업비 : 20백만원 - 1회 추정 확보), 구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추가하여 실시간 자료 제공토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 · 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록 전광판 활용, 구 홈페이지에 자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연계하기 바람.		
건의 사항	③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 - 방사선비상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관련 위기대응 대책을 위한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방사성 방호약품, 물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한, 각종 물품을 각동에 비축을 함에 있어 대부분 동의 보관 장소가 창고로 습하여 보관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원전사고 발생시 주민 행동매뉴얼을 2015. 11. 11. 작성완료, 향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구 홈페이지 상시 게재하고 주민모임 시 홍보 교육을 실시하겠음. ○ 방사선 비상시 현장 대응 요원은 실과동별 1명씩 임명하여 원전 사고 발생에 대처하고 있으며, ○ 방사선 방호약품은 1인 2정 기준으로 460,000정을 기 확보하여 동주민센터 창고에 습도계 설치 등으로 약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고 있음.	완결
	④ CCTV 통합관제센터 적정인력 배치 검토 -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기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배치인력은 변동이 없음. 현재 1인 평균 관리기기가 80여대로 적절한 모니터링이 되는지 우려되므로, 비용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여 검토하기 바람.	○ 행자부에서 권고한 1인당 적정 모니터링 CCTV수는 50대임. ○ 우리 구는 2013년 2월부터 모니터링 인력 10명을 확보하여 행자부 권고치보다 20대가 더 많은 1인당 70대 정도의 CCTV대수를 할당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개소 이후 300여대(매년 100대 정도)의 CCTV가 확충됨에 따라 모니터링 인력이 10명이 더 증원되어 현재 방법용 CCTV 561대를 20명이 모니터링 하고 있음.(1인 100대, 울산시 5개 구군 비슷한 실정)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 현재 561대의 CCTV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선 40명 정도의 인력 운영이 적정하나 이를 해소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여 인력확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원활한 CCTV 모니터링을 위해 인력확충도 중요하지만 향후 연차적 계획을 세워 이상 징후 발생을 자동으로 인지하여 알려주는 CCTV 관제시스템 도입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건의 사항	⑤ 지역축제 안전관리 절차 대책 수립 - 쇄부리축제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축제,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테마에 따른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안전매뉴얼이 필요함. - 작성된 안전 매뉴얼에 따라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자문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 국민안전처에서 배부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을 현재 전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음.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이거나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의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우리구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완결

□ 도시행정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오토밸리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주민의견 수렴 추진 - 오토밸리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단지조성 예정 부지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한 상황임.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울산시, 시행사에 협조 요청하기 바람	○ 산업단지 승인권자인 울산광역시(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진행토록 협조요청('15. 12. 24.)하였으며, ○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결
	② 도시계획 사업지구 행정지도 및 제도개선 강구 -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 지구사업은 2006년 12월 시행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행정적 한계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로 인한 고통해결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중앙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에 대 개선 방안을 강구 바람.	○ 관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지역 내 도로변, 명촌 평창 2차 아파트 인근 도로변 싱크홀 관리 철저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현장조치 및 사업장관리 철저토록 협조요청 ('15. 12. 2, '15. 12. 24.)하였으며, ○ 강동산하지구 내 발생한 싱크홀에 대하여는 복구완료('16. 1. 15.)하였음. ○ 주민불편 및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건의사항	③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비전 제시 - 우리 북구는 도시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이며 특히 농소권이 두드러짐.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도시재정비 계획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자문 및 울산시와 정보교류 등을 통한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이러한 계획이 2016년 계획중인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이 되고, 울산시 도시계획에 우리구의 계획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기 바람.	○ 2016년 상반기 중 우리 구 관내 중장기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등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경시 용역비 확보 추진 ○ 2016년 계획중인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될 사항과 상기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 등을 2016년 하반기부터 시에서 추진될 예정인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음.	추진중

□ 공원녹지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 작업지 재정비 -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입구 절개지 사면안정화 작업지의 마무리된 법면이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맞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향후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바람.	○ 사면안정화 작업지는 쇠파이프를 절개면에 고정하고 철재망을 절개면 전체에 감싼 후 녹생토를 살포하여 초화가 자랄 수 있도록 사면안정화 사업을 하였으나 가뭄 등으로 초화가 자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공사에 하자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 사면이 녹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
	② 조림사업 후 사후관리 철저 - 재선충병 방제지역,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조림사업 이후 고사된 나무가 많음. 식재단계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식재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작업토록 지도하고, 식재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2016년 조림사업 시 묘목의 생육 환경에 맞춘 식재방법을 택하여 철저한 작업지도를 실시하고, 식재후에는 사후관리로 조림묘목에 대한 활착 도모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도시공원물놀이장 안전 운영 - 신천, 명촌공원 내 운영 중인 물놀이장의 안전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업체 선정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주고, 위탁업체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최선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수상안전 인력 공급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전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위탁용역을 검토하겠으며, ○ 개소마다 인명구조원 수료증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전원 배치(명촌 4명, 신천 4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 · 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②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지속 추진 - 소나무 재선충의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 하고 있음. - 피해목 제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도 중요하므로 병행 추진토록 하고, 산림이 아닌 주택가 인근의 소나무에 대한 방제와 훈증처리 중인 제거목의 찢어진 훈증 덮개를 재정비하여 매개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하기 바람.	[2016년 소나무재선충 방제 추진 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피해목 제거) 추진방향 · 추진방법 : 책임방제 계속 시행 · 책임방제 구역 분할(울산광역시 총괄) - 추첨을 통한 업체 선정 - 구역 수 : 6개 구역(시 전체 26개) · 추진내용 - 가대 · 상안지구 등 6개 구역 - 1,240ha, 15,719본 책임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계획 · 피해목 제거사업 책임방제 시행 - 6개지구 15,719본/6개 업체 - 주택가(염포동 등) 위험목(34본) 포함 - 3월(우화기전) 사업 완료 · 나무주사 사업 시행 - 2개지구 80.2ha(60,407본) /2개 업체 - 2월(수액이동전) 사업 완료 · 감리구역(피해목 제거 및 나무주사) 시행 - 권역별 8개지구/5개 업체 - 3월 용역 완료 · 매개충 포획(페르몬) 작업 시행 - 20개 지구 30ha 170개 - 3~11월 작업 시행 · 항공방제 작업 시행 - 금천마을 뒷산 200ha(40ha×5회) - 5~7월 작업 완료 · 지상방제 사업 시행 - 성내 등 8개 지구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240ha(80ha×3회) - 6~8월 작업 완료 · 연막방제 작업 시행 - 효문 등 7개 지구 200ha(40ha×5회) - 7~8월 작업 완료 ○ 병해충 예방을 위한 산림작업단 운영 · 운영인원 : 21명 (예찰방제단 11, 산림관리작업단 10) · 운영기간 : 1월~11월 · 운영방법 - 예찰 및 방제활동 시행 - 주요 등산로 등에 훈증처리목 수집 및 정비(2015년 680개 정비)	
건의 사항	③ 천마산 산림욕장 운영 관련 검토 - 천마산 산림욕장 사업으로 편백 산림길 조성, 전망테크, 쉼터 및 피크닉장 조성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 및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유지로서 안정적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람.	○ '16년 1회 추경 시, 편백산림 욕장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조성·관리방안을 마련하고, ○ 향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설치완료 후,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 도입지 토지보상 착수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 교통행정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주거 밀집지역 인근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 주거 밀집지역 인근의 화물차밤샘 불법주차로 주민들로부터 소음·매연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초등학교 주변 등학교길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또한, 대규모아파트 단지 일대의 주차단속으로 농서초등학교, 달천중·고등학교 일대로 불법 주차 차량이 몰리어 학생 통학시 안전에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단속도 인근지역과 병행 추진 바람.	○ 2015. 10. 23.~12. 16.까지 약2개월간 총7회에 걸쳐 관내 주거 밀집지역 및 농서초교 등 학교 인근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0시~4시 사이)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534대 계도, 112대 적발(화물 99, 여객 13) 및 행정조치 완료 ○ 차고지외 밤샘 주차한 화물 및 여객 자동차에 월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며, 특히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밤샘 주차가 되풀이 될 경우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임.	추진중
	② 공영주차장 수탁자 운영지도 철저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지역 경로당에 위탁하고 있는데 불친절 민원이 지속 발생하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차 안내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바람	○ 2015. 11. 11.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개선 간담회 개최로 민원 발생사항에 대한 개선 논의 ○ 2016년 상반기 교육 및 하반기 감사 실시로 민원발생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발생시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 강화	완결
건의 사항	① 무단방치차량 단속 - 차량의 장기 무단방치로 범죄발생 우려, 교통소통 장애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통·반장과 기관단체 회원 등을 중심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무단방	○ 무단방치차량 조기 발견 및 신고를 위해 “무단방치차량 신고 안내문”을 만들어 주민만남의 날 등을 통해 통·반장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자생단체 등에 대해서도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치 차량이 조속히 발견 처리될 수 있도록 바람.	홍보 강화예정 ○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권역별 순찰 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방치차량을 조기 발견하고 폐차장까지 견인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실시	
건의 사항	② 농소공영버스차고지 주변 주차 대책 수립 - 농소공영버스차고지 주변 일대가 근무자, 환승손님의 야간주차 등으로 차고지가 부족하여 야간에는 농소운동장 입구까지 주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이 일대에 교통이 집중되어 러시아워때 체증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소공영 차고지 주변 도로교통 여건 및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시 해당 부서에 건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람.	○ 시에 건의 결과 농소차고지 확장은 여건상 어려우며, 덕하권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는 2017년도에는 노선분산으로 불법밤샘주차가 완화될 것임 ○ 그동안 농소공영버스차고지 앞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버스운송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중임 ○ 주간 차고지 주변 불법 주정차는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 월1회 이상 밤샘주차 단속 실시예정	추진중
	③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대비 대중교통 확보 대책 수립 - 농소권, 강동산하지구 일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 중에있고 수년내에 입주를 시작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교통수요 또한 증가할 것임. 입주시점이 되면 대중교통노선 신설 등 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노선 확보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북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강동산하지구를 포함한 대규모 공동주택이 조성되고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할 예정임. 이에 각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및 입주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여 버스노선 증가 등 대중교통 확보대책에 대하여 교통행정과-10703(2015. 3. 6.)호로 시 버스타xito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 및 제안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④ 양정 도시재생주거사업 추진 시 주차장 반영 - 도시 인프라 확충에 있어 주차장 확보가 중요함. 양정 도시재생 주거사업 추진 시 주차장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바람	○ 양정 도시재생주거사업에 양정공영주차장 조성이 포함되어 있고, 주차장조성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및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겠음	완결
	⑤ 기타 - 성우현대아파트 ↔ 귀영 하이얏트 아파트 간 택시승강장 설치 검토 - 송정동 유아진흥원 입구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좌회전 수신호 검토	○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택시승강장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도로공사가 필요하며 승강장 설치 시 주민들의 대기공간이 부족하고 택시 또한 명신유치원 쪽으로 가서 U턴을 해와야 하는 상황으로 택시승강장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 택시승강장 위치 선정 및 설치하는 시 버스택시과 소관사항으로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치 가능 여부 건의코자 함. ○ 유아진흥원에서 산업로 좌회전 신호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해당기관(중부경찰서)에 문의한 바 해당위치는 인근에 교차로가 위치해 있어 좌회전 신호 설치하는 불가하다는 의견임.	추진중

□ 건축주택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학교주변가 성인용품 광고물 단속 정비 - 진장중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인용품 광고물로 등하교길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음. - 교육상 부적절하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도록 바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철거 행정처분(계고)을 하였음	완결
	② 도로변 불법현수막 강력한 단속으로 정비 철저 - 도로변 특히 주말의 경우 국도변이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 휴일과 야간 집중단속과 정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게시를 하고 있으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 바람.	○ 불법현수막에 대해 상시단속반이 신속히 철거하고 상습 게시자에게는 현수막 한 장당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및 운영지원 -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련 법령,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시 아파트 입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자간 화합 및 공동체 의식함양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교육을 운영하기 바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 입주자대표회는 동별대표자로 구성이 되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번만 중임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4년 임기가 끝나면 할 수 없음. 동별대표자 선출이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 구성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앙에 건의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공동주택 운영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되는 한편 입주민간 화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강사 선정 시 고려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 2015.12.22.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음.	완결

□ 보건소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약품보관 냉장고 고장 사례발생 약품관리 철저 - 약품 보관 냉장고 고장으로 약품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음.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약품 잔고관리에 있어서 유효기한 도래 약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 폐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주기 바람.	○ 보유 백신이 여유가 있어 접종에 문제가 없었으며, 주민이 예방 접종을 못하는 피해도 없었으며, ○ 백신냉장고 수리 완료하고 백신 냉장고 정기점검 기준 마련 및 백신 책임 관리자 지정하였음.(‘15. 9. 3.)	완결
건의 사항	① 치매예방사업 추진 철저 -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 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개선이 가능하므로,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 추진함으로써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당부 드림. - 또한, 치매환자 실종시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실종자의 소재파악 등 행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하므로 실종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연계기관과의 공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만 60세 이상 주민 대상 찾아가는 검진의 날 운영 및 선별 검진팀 구성·운영으로 적극적인 환자발굴 하고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협약된 병원 정밀검사 연계 및 경로당과 가정으로 찾아가는 인지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예방사업을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구성, 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치매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업추진.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② 보건소 전문인력 정원 책정 검토 - 보건소 인력운영에 있어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에 일부 직종이 미충족되고 있음. 인력운용은 기준인건비 적용 등으로 일방적 증원이 어렵겠지만 법상 최소배치인력 기준은 충족을 하여야 한다고 보여짐. 전문인력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원관리 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 북구보건소-605(2016.1.8.)호와 관련, 보건소 전문인력 정원책정 검토 협조요청(기획실 공문발송 및 현재 협의 중)	추진중

□ 의회사무과

구 분	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① 의원 공무국외연수 내실 추진 의원 공무국외연수 추진과 관련 대상지 선정 시 구정업무와 접목할 수 있는 곳으로의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연수 후에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 도출과 보고회 등을 거쳐 성과 있는 연수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의원 공무국외연수 대상, 장소 선정시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구정업무와 접목가능한 분야로 결정하고, 연수 전 의원 스스로 연수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사전지식 습득으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② 민원상담실 운영 개선 의원 부재시 민원상담 및 각종 건의서, 진정서 등이 의회로 접수, 해당부서로 이첩되어 처리결과가 통보되고 있으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해당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전 의원들에게도 배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성실한 답변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람	- 의원 부재시 민원상담실 운영에 있어, 전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여 성실한 답변처리가 될 수 있도록, - 민원 접수 후 접수내용을 전 의원 공람하여, 담당부서 이첩 후 민원인 회신 전에 지역구 의원 주도로 해결방안 논의하여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1월 의원간담회(2016. 1. 20.)를 통해 보완·개선함.	완결



•제6대 전반기 의정백서•

제6장

.....

기타의정활동

제1절 결의안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제3절 5분 자유발언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제6절 의정활동일지



제1절 결의안

1. 결의안 현황

의안 번호	본회의 의결일	의안명	결의안 발의자	처리 결과
4	제148회 임시회 (2014. 7. 18.)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북구 유치를 염원하는 결의안	강진희 의원	원안가결
16	제150회 제1차 정례회 (2014. 10. 13.)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폐기 촉구 결의안	윤치용 의원	부결
17	제150회 제1차 정례회 (2014. 10. 13.)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	강진희 의원	부결
153	제159회 임시회 (2016. 5. 1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이상욱 의원	원안가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복구 유치를 염원하는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48회 임시회(2014. 7. 18.)
-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 의원



지난해 8월 대통령의 울산 대선공약 1호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이 공식 확정되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는 울산광역시, 지역 국회의원, 120만 울산 시민이 만들어낸 쾌거였다. 2011년말 정부가 소리 소문없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입지를 서울 용산으로 지정해 추진하던 중 우리 울산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120만 울산시민의 25%인 30만명이 산업박물관 유치서명에 참여하여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울산 대선공약 1호로 만들어 마침내 대통령령으로 울산유치가 확정된 것이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울산시는 연간 250만~400만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울산 일대의 부지 20만여제곱미터 이상에 건축연면적 10만제곱미터, 건축비 4500억원 규모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설계 3년, 공사 3년 등 6년간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최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추진지원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개최하여 입지선정 평가절차와 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시기 등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현재 현대경제연구원이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가운데 7월 11일까지 후보지 중 상위 3곳을 시에 추천하고, 시는 7월 18일 입지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5개 구·군은 저마다 입지 타당성을 내세우며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각 구·군이 추천한 후보지를 살펴보면, 중구의 경우 다운동 다운목장 일원에 부지 2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며, 남구는 울산박물관 인근으로 2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다. 동구는 대왕암공원 일원으로 26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원지역이며, 울주군은 KTX역세권 일원으로 부지 2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다. 우리 북구가 추천한 후보지는 강동관광단지내로 22만제곱미터 이상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타 구·군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이 아

니어서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국·공유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토지매입 또한 용이하다. 정부 초기 연구보고서와 2000년도에 실시한 울산시의 공업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조원 규모로 조성시 11조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만큼 교육과 관광기능이 활발해 질 것이며,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학생 및 산업과 일반 관광객 등 연간 300만 명이 몰려드는 필수방문 코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반경 1km가 관광타운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머물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우리 북구가 추천한 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인 동해안을 조망하고 있어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며, 강동산하지구내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상품개발이 가능한 최적의 부지이다. 제조업에 치우친 울산 경제를 관광서비스산업과 접목하여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산업도시로서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축대가 되어 관광서비스산업이 그 활력을 북돋게 될 것이다. 또한 울산 북구는 고대 야철 생산지로 대한민국 산업사의 기원을 이룬 곳이며, 세계굴지의 기업,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 산업역사의 장으로서 손색이 없다. 지리적으로는 연 800만명에 달하는 경주관광객의 연계 관광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경부고속 봉계IC에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 준공시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등 산업시설에 인접해 박물관 본래 설립목적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과 산업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산업도시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는 19만 북구 주민을 대표하여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북구 강동관광단지내 유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미래산업도시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산업기술박물관과 그 주변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단순히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시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설로 국가적 자존심을 책임과 사명을 다해 보존하고 드높일 의지가 우리 북구에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50회 제1차 정례회(2014. 10. 13.)
- 결의안 발의자 : 윤치용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를 117만 울산시민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로 설계 수명 30년이 종료되었고, 지난 2009년 4월부터 5년(57개월)간 전력생산을 중단한 사실상 폐로화된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수명 연장한 사례도 거의 없으며, 중주국 캐나다조차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를 결정한 단종된 핵발전소라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 원전 중에서 설계수명인 30년을 다 채워 가동한 경우는 드물며, 2011년까지 60년 원전 가동 역사 중에서 143기의 원전이 폐쇄되었는데, 평균 가동연수가 23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핵분열로 인한 부식 등 노화정도가 해를 더할수록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2년 국제원자력 기구도 월성1호기 점검 후 “모든 구조물과 부품들의 열화 메커니즘과 노화효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월성 원전측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8월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분석 자료에는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경제성은 전력생산을 중단한 지난 5년간 설비투자에 사용된 매몰비용 5,383억원을 제외하고도 수명 연장을 위한 비용 외 안전비용을 추가하게 된다면 편익대비 최대 2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이후 고리 1호기의 평균 가동률이 50%임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1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공급 비중은 0.8% 가량으로, 7~15% 수준의 전력 예비율을 고려하면 대정전(‘블랙아웃’)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원전사고의 직접 피해반경은 30km입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1호기는 경주 생활권 중심인 경주시청에서 27km인 반면, 울산 경계까지 6.5km, 북구청까지 17km, 울산시청

까지는 23km에 불과해 피해반경인 30km 이내에 울산의 생활권이 대부분이 포함되는 직접 피해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울산은 30km 피해반경 이내에 10기가 넘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도시입니다. 거기에다 막대한 원전지원금을 대가로 울주군 서생면에서 신고리 3, 4호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고, 이어 같은 지역 인근에 5, 6호기 까지 유치한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석유화학공단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과거에도 가동 중에 수십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또다시 안전문제가 발생 한다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일 것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수명연장이 되어 현재까지 36년 동안이나 가동되어 온 고리 1호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멈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대한민국을 멈춘 세월호 참사의 공통점은 설계수명 연장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들은 최근 가짜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뢰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달 동안 월성 1호기의 10km 인근에서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3.5와 2.2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지역이 활성단층 지역으로 더 이상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은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시민들 70%도 원전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59%가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세계는 에너지 정책을 핵 발전에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97.5%나 공사가 진행된 원전건설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300여명의 아이들과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그 어떤 정책과 이윤보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노후 원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시민과 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모든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연장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 역시 당장 폐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노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하고 실효적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원자력발전소를 현행 23기에서 42기로 늘리는 에너지 정책과 전력수급계획을 핵에너지 감소정책으로 당장 전환하고 신재생친환경에너지 사업 확대 및 활성화 대책을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50회 제1차 정례회(2014. 10. 13.)
-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것을 117만 울산시민과 함께 유관기관에 촉구합니다.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최하위입니다. 2014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평균이 69.1%로 70%에 육박하는데 반해 울산은 절반인 36.3%에 불과합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 세종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은 공립초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공립초와 중학교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대전은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울주군 초등학교와 도시지역에 4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울주군은 당초 제외됐던 범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울주군과 교육청이 분담하여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동구와 북구는 기초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개 학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울산, 대구, 경북 뿐이며 무상급식 비율은 대구 45.5%, 경북 49.5%에 이어 36.3%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에 반해 제주 86.9%, 전남 84.5%, 전북 83.7%, 강원 82.1%, 경기 79.4%, 충남 78.6%, 충북 78.1%, 세종 77.7%, 광주 75.1%, 서울 71.6% 등 영남과 대전, 인천을 제외하고 무상급식 비율이 모두 70%가 넘어섰습니다. 울산의 학교 무상급식 시행이 저조한 이유는 울산교육청과 울산시가 무상급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광역시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은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포함하여 약 25억으로 5개 구군 무상급식 예산 35억보다도 적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원예산 4,407억의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울산교육청도 무상급식 확대에 소극적입니다.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했지만 지난 4

년간 그 성과는 미미합니다.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액은 205억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1조 5666억 중 1.3%에 불과합니다. 울산은 수출액 전국 1위와 1인당 생산액 전국 1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동력, 산업수도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력이 울산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울산시민들의 자부심 또한 반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함께 살아가는 학생들이 살아가는 장소에 따라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같은 울산에 살면서도 사는 구, 군에 따라 급식비를 내야 하는 학생과 내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 공존하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는 기관들이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 확대에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은 구민들의 염원을 모아 관련 유관기관이 무상급식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학교급식법에는 지자체장이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는 학교급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책임기관으로서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라. 또한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 차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보장하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59회 임시회(2016. 5. 10.)
- 결의안 발의자 : 이상욱 의원



2011년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해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5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원전반경 5~10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였으며, 울산광역시도 30km로 규정하여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전국의 가동원전 25곳 중 13기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건설 중 1기, 건설계획 2기 등 총 16기의 원전이 입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성원전의 30km 반경에는 우리 북구 주민 20만명의 삶의 터전이 있으며, 또한 월성 원전과 신고리 원전에 둘러싸여 원전 반경 30km이내에 중첩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울산 북구에만 75,4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1호기는 경주 생활권 중심인 경주시청에서 27km인 반면, 울산 경계까지 6.5km, 북구청까지 17km, 울산시청까지는 24km에 불과해 피해반경인 30km 이내에 울산의 생활권이 대부분이 포함되는 직접 피해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는 이미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노후 원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울산에서도 지진이 감지될 정도로 국내 대형 지진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피해반경 주민의 불안감이 높고, 유사시 피해범위가 넓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 지원금 등 원전 지원금은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변 지역과 원전시설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 이래 지원 지역범위를 27년 동안 반경 5km이내에서 단 한 차례도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9년 법 제정 당시에는 민원이 대부분 발전소 반경 4~6km 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14기의 원자력 발전기를 추가

로 설치하고 발전규모도 증가한 상황 변화가 있었음에도 주변지역 지원 범위는 5km 이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등 과거 발생한 원전 사고의 광범위한 피해상황에 비추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범위를 20km 이상 30km 이내로 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현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27년 동안 5km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면,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복구 주민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 피해반경에서 6.5km도 안 되는 근접거리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복구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형적인 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함에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신규 편입된 지역은 위험 부담과 방재훈련 실시 등 해당 주민들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자치단체는 전문인력도 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방사선 교육, 홍보, 물품 구입, 방사선 방재 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시민과 복구주민 20만 모두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 제공과 복구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반경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와 동일하게 30km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로, 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1.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의원 : 안승찬 의원
- 질문일시 : 제151회 제2차 정례회(2014. 11. 20.)
- 질문요지 : 울산 북구 민선5대 구청장 공약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첫째, 민선5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구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구의 과제와 구체적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계획,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

▶ 구청장 답변

먼저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창조경제 핵심은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과학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는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과 R&D산업을 유치하여 울산 북구가 기업하기 가장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구가 울산의 산업과 주거의 중심이 되도록 도시를 발전시키고, 천혜의 강동지역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고 세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역점적으로 나아갈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의 R&D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산업단지조성, 도로망 확충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유입으로 인한 신도시 구축은 도로망의 확충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까지 산업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어 왔고 우리구로 통하는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가 완공되면 산업물자와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시설 확장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오토밸리로를 중심으로 송정·울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호계·매곡지구,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호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택지개발사업과 이화·매곡2·매곡3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농소~옥동간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주민공청회가 무산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설되면 경부고속도로 및 울산~포항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북구로 진출입하는 도로망이 원활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동권 개발로 신도시가 구축되어 인구가 대폭 유입될 것입니다. 강동권관광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행정절차 자문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는 결국 우리 구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저는 4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둘째, 민선5대 구청장 공약사항 중 북부경찰서 건립, 농소~옥동간 국도 건설 등의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 우리 구와 협조·연계하여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에 대해?

▶ 구청장 답변

북부소방서와 북부경찰서는 건립예정지가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하고 있어, 이 개발사업의 진행추이에 따라 개서도 추진되므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함

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사업계획의 변경,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가 효문공단, 우정 혁신도시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송정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4년 7월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 계획변경 신청이 있었으나, 그간 울산광역시의 검토, 효문공단 및 송정이주택지 위치선정 민원 조정 등으로 처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11월 14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단지 및 단독주택 용지 배치변경 개발계획안이 부결되어 12월에 재심의 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구는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택지 내 공공청사 부지확보, 공원조성 등을 요청하였고 울산광역시 및 LH와 지속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12월 심의 시에는 보완된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변경안이 가결되면 2015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8년까지는 개발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송정택지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북부경찰서와 소방서 설립도 가시화 될 것입니다. 북부경찰서는 부지매입계약까지 완료된 상황으로 변경안 가결 시 무리없이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북부소방서 설립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진행이 늦은 북부소방서는 2016년 임시청사를 화봉파출소 옆에 조기 개서 예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소~옥동간 도로 개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으로 우리구가 포함된 성안동~농소지역 구간은 2015년 공사 준공예정으로 우리 구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잔여구간은 그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형성, 민원사항 전달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내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80억을 요구 중으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예산에 국도 7호선 확장은 200억, 오토밸리로 2공구는 250억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추진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약사항 외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은 설계비 10억을 요구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이 확정되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토해양부, 울산시 등 타기관 추진 사업으로 우리구의 뜻과 노력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조기에 완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에 포함시킨 것은 도로망 확충으로 사람, 자원, 그리고 자본이 막힘없이 순환하고 그 원활한 흐름속에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일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취임전 울산광역시에서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시와 시의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구 사업이 중앙부처, 시 예산에 편성되고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뛰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소1동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재검토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

▶ 구청장 답변

호계문화체육센터는 민선4대 때 여러 위치를 검토하여 최종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근린공원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5대 출범 후 7월 15일 농소1동 방문시 시설규모 확대와 위치변경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호계문화체육센터건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결과 3곳의 신규 부지를 추천 받았습니다. 신규 추천 부지 3곳에 대하여 제반 법적요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 관련부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쇄부리체육센터 건립에 159억원이 소요되어 2015년 예산에 81억원이 필요하지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심히 걱

정되는 상황으로, 대규모의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더욱 열악한 상황임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현재 국가 재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떠하며, 복지비용과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에 대해?

▶ 구청장 답변

지난 11월 6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발표한 경주선언문 중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가 시급하다」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복지비용과 사업예산 등에 대한 우리 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첫해에 8억 3천만원, 2012년 8억 3천 7백만원, 2013년 6억 7천 3백만원, 2014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11억 5백만원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4억 4천 5백만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무상급식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건의해 오는 도로분야에 2014년 당초예산에 11억 6천 1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2014년 무상급식 예산 11억 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이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비중있게 투자한 것입니다.

또한 무상보육은 2012년 0세에서부터 2세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2013년 전면시행되었고, 2014년 보육료 예산 437억원 중 구비는 27억 5천만원을 의무부담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4년 기초연금 예산 127억원 중 구비는 15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기초연금 총예산 187억원 중 구비부담분 22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분야 투자비중이 2011년 37%, 2012년 38.6%, 2013년 41.5%, 2014년 45.3%, 2015년 46.4%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재정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전년대비 179억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4억원, 보조금 126

억원,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9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이 137억원, 민간보조금과 경상경비가 22억원 늘어났으며, 이를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년대비 오히려 3억원이 감소된 217억원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4대 민선구청장이 추진해오던 석부리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미확보된 예산 81억원 중 40억원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그래도 부족한 41억원 중 31억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로 편성하여, 민선4대에서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소2동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2015년 당초예산에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 여론을 이유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뚜렷한 재정확보 방안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 5대 처음으로 편성한 2015년 당초예산에 신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37억원에 불과하여 민선 5대에서 주민들과 공약한 사업은 하나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2015년은 어느 해 보다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확장,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원지삼거리에서 공영주차장간 도로확장 등 주민욕구가 팽창하고 있으나,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왔던 울산 북구형 창조경제를 추진하여 세입 증대를 꾀하고 재정여건을 탄탄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경주선언문의 내용과 같이 앞으로 불합리한 세수구조의 개선에 대해서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자체간 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의견 표출과 공동 대응으로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복지예산이 국비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의 대부분이 광역시세로 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 또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우리구의 세수확대로 이어져 서두부터 말씀드린, 창조경제 즉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도시개발과 인구유입, 관광사업 개발로 세수증대를 이루겠다는 저의 구정목표와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명의 공무원들은 세원발굴, 세입확보,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세수증대 및 튼튼한 재정운영으로 주민이 제일 행복한 도시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 질문일시 : 제154회 제1차 정례회(2015. 7. 24.)
- 질문요지 : 방사능 방재대책,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 무상급식에 대하여



첫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안전을 위한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해?

▶ 구청장 답변

첫번째, 전담인력과 예산확보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재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7월 1일자로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였고, 올해 11월 울산광역시 신규공무원 채용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인력의 채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재대책 관련 예산은, 향후 수립되는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검토하여 2016년 당초예산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방사능교육과 훈련계획 관련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계획구역설정 승인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 후속조치 워크숍, 고리원전 방호협의회 및 월성원전 방사능 방재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업무연찬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주민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타 지자체의 우수 교육사례 등을 참고하여 내실있는 주민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방사능 측정기 관련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주군 지역에 방사능 측정기 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방사능 측정기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 및 울산광역시와의 간담회시 환경방사선 측정기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방사선 측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방사능사고 대응메뉴얼 수립, 방호약품 확보 등 방사선 비상계획, 울산광역시 및 월성원전과의 협의 관련입니다.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방사능 사고 대응메뉴얼은 현재 관련규정에 따라 수립 중으로 방사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방사능 방호약품 11만 6천 772명분과 2014년에 방호마스크 10만 7천 4백개를 해당 5개동에 배부 하였으며, 이번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추가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5월 1월 20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 및 울산광역시와의 간담회에서는 방사능 보호장비 보관장소 확보, 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 주민교육 지원, 원전지원금 관계법 개정 검토, 방사능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등 우리 구 방사능 방재대책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수립과 함께 원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퇴직자 지원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에 대해?

▶ 구청장 답변

먼저,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 이음센터의 운영인력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탁 운영하던 인생이모작 이음센터를 9월부터 직영함에 따라, 창조경제과 일자리지원팀에 행정 6급 1명을 전담 배치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인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취업관련 구직 및 면접 상담 등을 업무로 하는 전문 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9월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퇴직자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2회에 걸쳐 실시한 퇴직예정자 지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업과 퇴직예정자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청과 연계된 노사민정협의체, 산업단지협의회 및 기업체와 상호협약을 통하

여, 필요인력을 사전 전수 조사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한 구인구직 박람회를 확대하고, 센터 내 면접을 전문으로 상담해주는 인력도 배치하여 구직상담과 면접방법까지 지원하는 등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분야의 취업 특강이나 강연 등 맞춤형 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들이 성공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인생이모작 이음센터내 일자리사업 관련한 인력과 업무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 이음센터에는 일자리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2명과 관리지원 인력 1명 등 총 3명을 배치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생이모작 이음학교 등과 같은 우수사업은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자 3명을 보강하여 기업체 자료수집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생이모작 이음센터는 우리 구와 기업체, 고용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은퇴이후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 무상 급식사업 운영에 대해?

▶ 구청장 답변

첫번째, 2015년 교육청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무상급식 구비 절감액 및 절감액의 무상급식 확대사용 여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015년 친환경무상급식사업 소요액을 조사하여, 21억 8천만원을 2015년 당초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1억 5천만원이 삭감된 20억 3천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올해 3월 20개 초등학교에 전액을 교부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5월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의 60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신청자가 증가함으로써 우

리 구 무상급식예산중 3천 6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동과 호계지역 아파트단지에 젊은 연령층의 입주로 초등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3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친환경급식센터 인원보충 및 향후 교육·체험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친환경급식센터 인력은 계약직 3명이었으나, 2월에 1명이 계약만료 되었고 연말에 1명이 계약기간 만료됩니다.

향후 급식센터 교육 및 체험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사업을 위해 운영인력 보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험사업과 관련해서는 생산농가 사정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강사 확보상의 문제로 상반기에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체험 참여농가 및 대상학교 선정이 완료되어 8월부터 10월까지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무상급식센터의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센터 역할에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한 바 없으며, 어린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도모와 지역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급식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안승찬 의원
- 질문일시 : 제155회 임시회(2015. 9. 21.)
- 질문요지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첫째, 북구의회와 해당 지역구 의원 및 주민의견 수렴없이 건립계획변경 한 것에 대해?

▶ 구청장 답변

민선 5대 구청장 취임이후인 지난해 7월 15일, 농소1동 동 순회 방문 때, 기존에 계획 중인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시설 규모가 협소하고 주차면이 부족해, 센터가 건립된 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이 예견된다는 지적과 함께, 인근의 국민체육센터 내 규모의 수영장을 포함한 센터의 건립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후,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이미 선정된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부지와 대체부지 몇 곳을 후보지로 놓고 회의를 거친 후, 최종 3곳을 추천하였는데, 부지면적, 접근성, 환경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소운동장 위쪽 창평동 390번지 일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올해 1월 농소1동 순회 방문 때에, 주민들 다수가 센터건립에 대해 궁금해 하시기에 최종 결정한 바는 없으나 대체부지 3곳 가운데 농소운동장 위쪽 제1추천 부지가 접근성 등 여러 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계문화체육센터 기존 부지와 시설규모에 대해 여러 차례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주민의 대표 격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사업계획 변경과 대체 후보지 여러 곳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주민의 의사와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총 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18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소규모 체육시설, 그리고

사무실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다기능 문화체육센터이며, 2019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성공적인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2월 3일, 제152회 제4차 본회의와 4월 24일, 제153회 제5차 본회의 시에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심의 중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가 있었고, 이에, 현장 접근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결과, 농소운동장 인근 부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해, 위치와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상의 호계문화체육센터의 추진계획은 센터 건립에 대한 변경계획이 확정되기 전의 보고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7일, 부지확정과 함께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등을 거친 호계문화체육센터 최종변경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별도의 현안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둘째,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등 향후계획에 대해?

▶ 구청장 답변

우선 구(區)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시(市)지방재정투자재심사와 구(區)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도에는 토지보상협의를,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2018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우리구로 봐서는 네 번째 체육센터가 됩니다. 앞으로 센터가 건립되기 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업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지금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승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 질문일시 : 제158회 임시회(2016. 2. 17.)
- 질문요지 :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재생 사업,
계약직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첫째, 북구만 노인복지관 전용 건물이 없어 종합복지관에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입장과 계획에 대해?

▶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1997년 신설된 후 지금까지 경제, 환경, 인구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으며 특히 인구는, 1997년 북구 출범당시 10만 4천명에서 2015년 말 현재 19만 1천명으로 약 90%가 증가하였고 올해는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시설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구 재정여건, 계층별, 분야별,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건립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진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는 호계동에 1개 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로서 일일 평균 이용자가 약 650여명으로 포화상태인 만큼 제2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2노인복지관은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건립 부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적합한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확정시 의회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제2노인복지관이 건립되기까지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도 제2노인복지관 건립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한 후 노인 복지수요와 권역별 균형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제3노인복지관 건립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의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해?

▶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지난 2015년 3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작년 12월에 최종 선정되어 2016년부터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의 최종 목표는 지역의 역사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기업과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 염포와 양정지역을 활기가 넘치는 지역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 건축물과 가로환경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에는 주민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후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주민들이 참여하여 각각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는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현장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며 센터에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정과 주민간 가교역할 및 갈등조정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센터장인 총괄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부코디네이터, 상근인력,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며 센터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는 현장지원센터 등의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금번 1월 정기인사 이동으로 담당과장과 계장이 부득이 하게 바뀌게 되었으나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 협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유대관계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와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때부터 역할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성과로 작년 4월에는 현대자동차 노사를 포함한 7개 단체가 도시재생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그간 추진했던 지역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하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협업의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사와 서로의 역할과 의견을 적극 조율하여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제안서의 내용처럼 지역기업과 근로자,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염포·양정 도시재생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약직 및 기간제 공무원 선발의 공정성 보장 문제에 대해?

▶ 구청장 답변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공무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충원 요구 및 임용시험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는 인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구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시험실시 결과에 따라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합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임기제의 경우 당초 공고된 임용자격 기준에 합격한 2명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면접관은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외부면접관으로 외부면접관은 해당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자와 실무공무원 등입니다.

면접시험 평가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평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면, 임용권자가 임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의 고유기능으로서 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진희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의원 : 윤치용 의원
- 질문일시 : 제159회 임시회(2016. 5. 24.)
- 질문요지 : 시례새터 ~ 상안새터 도로개설 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첫째, 시례새터와 상안새터마을을 잇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상안동 555번지 일원에서 상안동 559-5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3-20호선)로 공사가 변경되어 추진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민원 사항의 해결방안에 대해?

▶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팔목할만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상 우리 구가 포함된 북부대생활권은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등을 감안하여 24만 9천명으로 계획되었으며 올해는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에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방어진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중구 일부지역과 농소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하기 위하여 상안동 73-1번지 일원에 농소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농소하수처리장의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협심하여 농소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창좌마을 진입도로를 포함한 6개노선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로 10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새터마을 진입도로개설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2013. 4. 4. 상안새터 입구에서 시례새터구간을 소3-248호선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추진하던 중에 2015. 8. 20. 12통장 이모, 부녀회장 정모, 지역주민 이모, 신모씨 등 46명이 연명으로 하여 2005. 3. 24.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마을안길로 사용하고 있는 소3-20호선으로 도로개설 변경을 요구 해왔으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노선변경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 8. 31. 12통장 이모, 부녀회장 정모, 지역주민 신모, 이모씨 등 8명으로 구성된 지역주민들이 구청장과 면담하여 농지 한가운테를 가로지르는 신설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노선을 변경해야 상·하수도과 도시가스 인입이 용이하며, 버스정류장 이용이 편리해져 노인들 통행 불편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유로 도로개설 노선 변경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노선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실제 서명한 46명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시례·상안 새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22세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면담확인 결과 빈집 4세대를 제외한 17세대가 찬성한 바 있어,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노선변경을 검토하기로 결론을 지었으며, 2015. 9. 11. 구청장과 12통장 이모, 지역주민 류모, 이모씨 모친 등 16명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소3-248호선에서 소3-20호선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모든 지역주민의 뜻이라면 사업비가 일부 증가 되더라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노선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사업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 12. 24. 변경노선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 3. 23.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0%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16. 5. 9. 12통장 이모, 지역주민 이모씨 등 지역주민 14명이 당초 계획했던 노선으로 원 위치 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14명중에서 11명은 당초에 노선변경을 요구한 주민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선 재 변경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구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이와 유사한 민원제기 시 우리 구의 대처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노선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초 노선대로 또 다시 변경할 경우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사업 시행자와 계약 파기를 해야하며 이에 대한 손해보상 우려도 있고 현재 선금급 37,700천원이 지출된 부분도 있어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편입토지 분할측량비, 토지감정비 등 3천만원 정도가 지 집행 된 상태이기에 노선 재변경은 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결정된 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3-248호선에 대해서는 마을의 발전 추세와 우리 구 전체의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대화와 공감으로 구정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를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윤치용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면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의원 : 이상육 의원
- 질문일시 : 제157회 정례회(2015. 11. 20.)
- 질문요지 : 축제·행사의 발전적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첫째, 투게더 콘서트를 권역별로 추진하거나, 동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 구청장 답변

우리 구에서는, 2008년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문화예술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공연인 “투게더 콘서트”를 8년째 개최하여, 한여름 밤의 꿈과 낭만이 숨 쉬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공연을 위해 울산문화방송에서 주관하는 서머페스티벌을 유치할 예정이며, 여름 피서객을 위한 강동해변 가요제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게더 콘서트의 권역별 공연개최는 지난해처럼 동별로 개최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권역별로 공연규모를 확대해 개최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장르 및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연 기획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한층 더 확대하고,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공연 등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울산시에서 주관하는 서머페스티벌을 우리 구에서도 개최하는 방안은?

▶ 구청장 답변

2003년부터 시작된 서머페스티벌은 울산의 대표적인 여름 음악축제로써 대중성과 인지도가 높은 가수를 초대해 한여름 밤의 더위를 식혀주는 문화·예술의 한마당입니다.

서머페스티벌 북구 유치를 위해, 올해 8월경 울산문화방송 공연 관계자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친바 있으며, 내년에는 북구에서 서머페스티벌을 유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져 2016년 당초예산에 8천만 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내년 여름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한여름 음악축제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단위 음악 축제 유치를 통하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의 대표축제인 쇄부리축제와 고현 박상진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기획할 의향은 없는지?

▶ 구청장 답변

현재,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박상진 의사 생가를 포함한 24,009m²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해 오는 2017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한창 공원조성을 위한 주변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박상진 의사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2회 울산 공연, 2011년 대구 오페라 하우스 공연, 2014년 중구 장춘 동방대극장 공연하였으며,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및 박상진 의사가 설립한 대한 광복회 설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서울국립극장에서 창작오페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복, 다시 찾아온 빛”이란 주제로 울산박물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와 광복회와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하는 학술회의 개최, 그 외에도 (사)고현박상진 의사추모사업회에서 매년 8. 15일 추모식 개최, 기념책자 발간, 항일유적지 탐방, 매년 추모 학생글짓기 대회(18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울산이 낳은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현 박상진 의사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울산시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박상진 의사 업적선양과 애국심 고취와 문화도시 울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력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고현 박상진 의사를 주제로 하는 축제는 생가와 호수공원, 무룡산과 동대산 둘레길 등 역사체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역사와 생태가 살아있는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생생문화재 사업 등 울산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사 축제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

▶ **구청장 답변**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총한도제 운영과 소규모 유사·중복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2016년~2018년까지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공개한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 개최한 행사·축제가 2013년도에 46건 1,598백만 원에서 2014년도에 39건 1,298백만원으로, 7건에 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의 행사·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 주민화합 등의 순기능도 있는 반면, 유사·중복 행사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추진계획」이 시달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사 주관단체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제성, 공익성, 성과 달성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를 위한 대표 축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전국축제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제 및 사회과급 효과가 저조하거나 관례적으로 개최한 소규모 유사·중복 행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통폐합하여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동별 체육행사를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없다면 일부 주민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동민 전체를 아우르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 의견에 대해?

▶ **구청장 답변**

우리 구에는 19만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고, 북구민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체육행사로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와 「동별 자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는 19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가장 많은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우리 구 최대의 체육행사로 자리잡고 있

습니다.

동별 자체 체육대회는 그동안 자연부락과 아파트 주민 간 동민화합에 기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폐지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동 생활체육회장님과의 몇 차례 간담회에서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행사지원 보조금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2016년 당초예산에 기존 동별 6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을 증액한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북구생활체육회와 동 생활체육회,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보다 많은 동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내실 있는 지역의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윤치용 의원
- 질문일시 : 제159회 임시회(2016. 5. 24.)
- 질문요지 : 농소2동, 농소3동 지역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첫째, 농소2동 종합운동장 건립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 구청장 답변

농소2동 지역의 운동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운동장 조성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다양한 행정절차 이행과 최소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소2동은 지역반경이 넓고, 매곡동(3,362세대 10,000여명), 신천동(2,892세대 9,200여명), 중산동(4,583세대, 13,000여명)등 지역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어,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건립위치를 선정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건립 가능성 및 주민의 접근성, 시설조성이 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동장 건립 가능부지 2~3개소에 대하여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건립부지 및 시설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체육센터 진출입에 따른 교통불편 및 주차난 해소방안은?

▶ 구청장 답변

신천근린공원은 2000. 3.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어 울산광역시에서 2004. 8. 26.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하였으며, 2016년 현재 공원면적 97,667.5㎡중 61%의 토지가 보상되어, 2020년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신천근린공원 내 주요시설로, 이용 차량은 호계성당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도보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산책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엠코타운 방향에서 국민체육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개설은, 해당 도로개설지가 공원부지로 현재 울산광역시 공원조성계획에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신천근린공원 내 도로는 주요시설로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설치가능하며,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신천근린공원 조성권자인 울산광역시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향후 엠코타운 방향에서 국민체육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개설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조성된 주차면수는 77면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10시, 20시 전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조성중인 신천근린공원 부지 일부(국민체육센터 앞)를 활용하여 임시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임시주차장 설치사업비는 약 8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신천근린공원이 준공되면 공원 내 주차장도 조성되고, 쇄부리체육센터가 2017년 7월 준공되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농소3동 주민 일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신천근린공원 조성계획도에는 주차장이 공원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와 공원이용자가 함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울산시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매곡천 상류부 좌안의 순환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추가개설 계획은?

▶ 구청장 답변

매곡천은 지방하천으로 2010년 5월 「고향의 강」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540백만원(국2,700, 시900, 구940)으로 2012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0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곡천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하천으로 거듭났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현황을 감안하여 매곡천 상류부 좌안은 매곡고등학교까지, 우안은 매곡교까지 자전거 도로 등의 하천을 정비한 바 있으며, 매곡교 위쪽으로는 하천 내 산책로가 아닌 확장된 도로변 인도가 조성되어 구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매곡동 일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매곡도서관 신축 등 매곡천 상류부 친수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도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곡교에서 돌논천 합류부까지는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곡교 상류 우안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하도 구간 내 저수호안 설치 등이 필요하며 적지 않은 예산(10억 정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매곡천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된 사항으로 추가 국·시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구 전체 20개의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친수공간 조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상안어린이 공원 내 풋살구장 이전 요구에 대해?

▶ 구청장 답변

상안어린이공원 내 풋살구장은 2007년도에 어린이공원과 동시에 조성되었으며, 2015년 사용건수는 총 433건으로 연인원 5,000명 정도로 북구 관내 6곳 풋살구장 중 두 번째로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풋살구장 쓰레기 투기 및 운동소음에 대한 민원제기로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전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이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운동 소음 등에 대해서는 풋살구장 예약 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용 동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음주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2회 이상 적발된 단체에 대하여는 풋살구장 사용허가를 6개월에 한하여 제한토록 조치를 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풋살구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등 풋살구장 신규설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절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48회 임시회(2014. 7. 10.)
- 발언요지 :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바라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6. 2 지방선거를 통해 ‘북구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당찬 약속으로 제5대 북구의회에 첫 입성하여, 크고 작은 지역현안과 주민숙원사업들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아 구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영광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년의 구정성과를 되돌아보면, 개원 첫해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하여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활기차고 역동성 있게 달려왔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주민참여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참여와 소통의 구정운영으로 지난 4년의 구정성과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개청 이래 가장 큰 행사였던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는 큰일을 해내었다는 자긍심과 함께 주민자치와 북구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모아져 2012년, 201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성과의 이면에는 참여와 소통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등 중요한 사안마다 주민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던 결과들이 주민참여행정의 모범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간에 다소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던 행정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회복하여 행정의 쇄신을 이루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주민 참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정책을 제도화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모범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와 관련 협력사들의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를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2년 연속 전국 첫 우수마을기업을 배출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울산 노동역사박물관을 개관 운영하여 울산의 공업도시지정 50년 사에 언제나 소외되어왔던 노동자들의 삶과 희생,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 평생학습공동체 조성, 통장학교, 예산학교, CB학교 등 지역리더의 다양한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지역인재 양성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 한글교실, 제3대학 등 체계적이고 다채로운 평생교육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왔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북구에 달천 편백숲을 조성하였고, 강동사랑길,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조성,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도심속의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체육 수요 충족은 물론 북구의 자랑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퇴직자 지원센터인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으로 은퇴자들과 퇴직예정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가고 있으며, 책 읽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도서관 정책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곳으로 바뀔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정착단계에 이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 학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간다면 학부모 부담도 줄고, 수입 농산물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경제에도 활력

을 되찾을 수 있고,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이외에도 오토밸리 2공구 착공, 동해남부선철도 이설사업은 지역주민과 지역 정치권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500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다양성에 기초한 적극적인 구정 운영의 결과이며, 소모적인 이념적 정쟁보다는 따뜻한 생활정치를 실천해 왔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박천동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정치적인 이념과 정당을 달리하고 있다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동료 의원님들의 각오 속에는 구민들을 위한 민생정치를 이루려는 마음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천동 신임 구청장께서도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시하였던 공약들을 주민의 뜻을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상대 후보의 공약이라도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의 잘한 업적과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써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구의 주요 현안업무들이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49회 임시회(2014. 8. 28.)
- 발언요지 :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죽어간 아이들과 승객들에 대한 슬픔은 가족을 넘어 온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불분명함과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분노, 국가의 안전체계가 무너졌다는 사실 확인에 대한 불안감이 겹쳐 국민들을 정신적인 큰 충격 상태로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34일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요구를 묵살한 체 이루어진 여야합의로 가족과 국민적 분노만 더할 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월호 침몰에 대한 원인과 구조활동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두 번 다시는 세월호 참사같은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가족과 국민의 요구입니다. 앞서 일어난 한국사회의 대형사고와 억울한 죽음은 우리는 인재라고 말해왔습니다.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502명이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고, 어린 새싹들 21명 등 23명이 희생된 99년 씨랜드 화재 사고, 6명의 사대부고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10명이 희생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등 모두 세월호 참사의 예고였습니다. 그때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과 구조활동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었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이 오늘로 4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가족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에 갇힌 채 7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를 살리자는 국민들과 종교계의 동조단식이 3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서명운동이 다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가족대책위를 만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유족에게 약속한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켜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16일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5월 19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고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고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피하고 침묵하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제 가족도 국민도 만나 소통하면서 나라를 운영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가족들의 요구에 맞는 특별법 제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분명히 규명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무엇이 두려워 조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에 합의하지 못합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진상을 낱알이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급하다고 말하는 민생법안이라는 것이 학교주변에 숙박시설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크루즈법,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입니까? 그런 민생법안 우리 국민에게는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죽어간 학생들과 국민들, 다시는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법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여야는 가족들의 요구를 담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보상금 요구, 대학 특례입학 등 자신들의 혜택을 위한 법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의 목숨을 팔아먹고 살려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법안은 세월호사건에 대한 올바르게 진실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어버린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헤아려 본다면 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행복을 위한 국가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믿을 수 없다면 이 믿을 가고 국가를 원망하는 뼈아픈 말들이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와 국회에서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51회 제2차 정례회(2014. 11. 20.)
- 발언요지 :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강제추진 하려고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이 전액부담 하는 퇴직금과, 일반적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는 달리, 국가와 공무원 간의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후불 임금의 성격이며, 공무원 신분으로 불리하게 살아온 삶을 보상하는 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대화도 없이 연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은 정부와 공무원이 매칭하는 방식으로 매달 월급에서 7%를 떼어 적립하여, 공무원의 퇴직 후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은 지난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경제개발 시기에 국가발전을 위해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강요당해 왔으며, 재직 중 영리행위금지와 취업제한, 정치활동금지, 노동기본권제한, 급여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노후를 보장하고, 각종 금지의무 등이 부과된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것입니다. 자녀 대학학자금 혜택이 없는 공무원들의 실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 퇴직금의 성격이 짙은 공무원 연금은 노후보장 이외에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의 일부와 산재보험, 고용보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공무원 연금 지출율은 GDP대비 0.6%로 OECD평균 1.5%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재직시 보수와 퇴직 후 받

게 되는 연금을 합한 총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민간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면서 세금을 거덜 내는 밑 빠진 독 인양 인식을 시키고 있으며, 급기야 국가가 연금재정 악화를 핑계로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정부는 연금운용과 정에서 낭비된 수십조원에 대한 책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국가처럼 공직자의 특수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미래세대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연금 등 본인들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모범적 자세를 먼저 보여야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또한 노동자입니다.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로 정당한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을 일반노동자들과 분리하여 특수직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을 비교하면서 정부의 연금운영에서 낭비된 수십조원을 공무원들이 고통분담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취지는 전 국민에 대한 노후 보장적 최소한의 사회 안전장치이며 그 재정의 안정화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연금을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하여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적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연금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노후를 재벌들에게 넘기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론 분열과 힘 없는 민초들을 또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2회 임시회(2015. 1. 29.)
- 발언요지 :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 무차별적인 서민세금 폭탄 즉각 중단하라!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강진희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1894년 전북 정읍 고부 군수 조병갑의 세금 착취에 항거하여 일어난 갑오농민들의 저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세목을 만들어 백성의 고혈을 쥐어쥔 조병갑 군수의 행태가 지금 박근혜 정권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의 허리를 쥐어짜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정책, 13월의 세금폭탄이 조병갑 군수의 세금 착취와 무엇이 다르니까?

201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배값을 인상하고,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세해 주면서 부족한 재원을 노동자와 서민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서민세금 증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해 무산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설명한 뒤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세금 인상 추진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같자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지자체가 요구하면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를 호소하는 지자체에 그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상황에서도 끝없이 서민세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증세는 중단돼야 하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부족한 재정난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2년 새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40~60%)인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이라고 합니다.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고소득층(상위 20%)인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원에서 667만원으로 6.5%(41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중간층의 세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1배입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최저소득층(1분위) 증가율 7.7%에도 못 미쳤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불통의 정치, 재벌을 위한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민증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해 주면서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사가 말해 주듯이 대국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족한 재정을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정책을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중소기업들의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는 이유를 잘 보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를 반대하며, 지금 즉시 폭력적인 서민증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52회 임시회(2015. 1. 29.)
- 발언요지 : 수명다한 원전가동 중단 및 폐기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새해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최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와 폐기를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잦은 방사능 유출사고와 막대한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던 월성1호기가 30년의 수명을 마치고, 2012년 이후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전력수급 문제와 경제성의 이유로 수명연장을 강행하려하고 있고,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과 우리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며 폐쇄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심사 안전이 상정되어 재가동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2/12)달로 결정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역사회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원전 재가동에 따르는 안전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52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던 노후 원전을 재정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원전부품 납품비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정비는 안전에 대한 불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중단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한 우려와 함께 폐쇄결정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야기 하고 있는 전력공급에도 차질은 없습니다. 월성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2년

이 넘게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전력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5년 후에는 전력 예비율이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최대 2,269억원 손해 보는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수명연장을 하든 안하든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고, 오래되면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고장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장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을 연장해서 40년을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주국 캐나다도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수로 원전입니다. 중수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의 쉐틸리2호기 역시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경제성 문제로 최근에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월성원전1호기를 수명 연장하는 문제는 단지 지금 세대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핵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지금도 우리는 처리 불가능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들을 핵발전소 임시저장고에 포화될 정도로 쌓아놓고 있지만 처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사용후 핵연료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월성원전1호기는 중수로 원전이라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소변에서 실제 삼중수소가 34.1Bq/L(리터당 배크렐)까지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원전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노후 원전 폭발을 통해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대재앙의 반복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0년 수명을 다하고도 8년째 연장 운행을 하고 있는 고리 1호기는 각종 사고와 고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리1호기 반경 30km 안에는 부산과 울산 도심을 비롯해 34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시민들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니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지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최근 “월성원전 민간 환경감시 기구”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의 71.2%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답변이 항상 우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 대다수는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바로 직접적인 방사능 피해 구역 안에 살고 있으며, 특히 북구지역은 월성1호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과 직장 숲터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야 하며, 아이들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과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설계 수명 30년이 넘는 월성원전1호기와 고리1호기의 연장 가동은 선령이 다한 세월호 연장운항과 같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한다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으로 위태로움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소중한 나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원전 연장가동 반대에 북구주민 나아가 울산시민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52회 임시회(2015. 1. 29.)
- 발언요지 : 이석기의원에 대한 대법원 내란음모 무죄판결, RO실체가 없다는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원천무효이다.



존경하는 19만 북구주민, 박천동 구청장님과 600여 북구청 직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여기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세계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두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진보정당을 분명한 이유없이 해산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비판세력,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불통의 결과는 20%대로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보당을 강제 해산한 주요한 근거가 된 내란음모와 아르오(RO)에 대한 판결이 확인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를 무죄판결하고 이른바 아르오(RO)도 실체가 없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 국정원 대선부정을 덮고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조작사건임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해산을 판결한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대법원판결이 나면 진보당을 해산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가 ‘주도세력’이란 비법적 용어로 지칭한 아르오(RO) 실체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 역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가 내세운 주요근거와 핵심주장이 모두 엉터리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8인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통합진보당 해산이었습니까? 합리적 증거에 의한 법리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권을 감싸기 위한 충성 판결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10만 당원들을 능멸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훼손시킨 공안정치판결입니다.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시너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부정선거와 비선실세로 인한 정권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종북몰이와 진보정당 탄압에 앞장 선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과 10만 당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해산돼야 할 대상은 진보당이 아닌 박근혜 정권입니다. 부정과 비리, 무능과 무책임을 덮으려는 정치공작을 멈추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결단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세금을 인상하고 재벌들의 편에 서서 부자감세를 하겠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닌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당원들은 지난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슴 속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면서 진보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당이 해산되는 것 자체로 죄스러움과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리며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해고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움츠리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정면으로 승부하며 시민들의 삶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서서 폭력적인 서민세금 인상, 일자리를 빼앗는 재벌의 횡포, 재벌을 위한 경제 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에 맞서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자유발언을 통해 하소연하고자 하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53회 임시회(2015. 4. 20.)
- 발언요지 : 4.24 민주노총 국민총파업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2015년 새해부터 온 나라는 담뱃값 인상과 세액공제로 술렁이며 박근혜정부의 ‘반 노동자 서민, 친 재벌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적 요구는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고, 진보당 강제해산으로 나타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공적연금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들의 요구는 끝나지 않고 있으며, 전국 경향각지에서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해 대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완화, 비정규직 확대, 임금 축소, 노동조합 탄압 등 노동자를 착취하고 재벌을 위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세금 인상,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청년실업문제, 노인일자리 요구 등 심각한 사회문제 속에서 갈수록 일자리는 사라지고 서민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결국 민주노총은 국민총파업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2년동안 국민의 호소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면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 구조는 심각해지는 마당에 민주노총은 국민총파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현 사회 현실에 대한 반영이며 국민과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파업을 하려는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성완중 게이트로 정치적 불신만 높이고 있고,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 문제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해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나라 안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들의 울부짖음이 이어지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성완중 게이트로 정치권에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마당에 말입니다.

600여 공무원과 19만 북구 구민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96년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추진 당시보다 훨씬 개악된 심각한 노동악법입니다. 민주노총 국민 총파업은 제도의 완화라는 이름하에 해고는 쉽게, 임금만 깎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한마디로 노동자를 죽이는 법과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무조건 개악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맞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려는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감세는 거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해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기 보다는 국민연금을 인상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악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정규직이 양보하라고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란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자리를 빼앗아 아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묘한 선전논리로 국민을 우롱하고 노동자와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이간책입니다. 결국 정규직의 일자리를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주에게 해고의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끊임없이 평생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만드는 구조개악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재벌만을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파견근로의 전면허용이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데, 결국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에

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그나마 최저임금도 적용 되지 않는 노동자가 2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일본도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임금인상을 촉구하였습니다. OECD 하위권 수준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이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 시행령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세월호 진상을 은폐하려는 정부 시행령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합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금, 보상금이 아니라 올바른 진상규명이고 안전한 사회입니다.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국민총파업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습니다. 자자손손 재벌과 기득권세력만을 위한 정권이라면 다수의 노동자, 서민에게는 필요 없는 정권입니다.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파괴와 진보정치 탄압, 4자방 비리와 성완중 게이트, 민생파탄과 노동착취악법에 맞선 4. 24 민주노총 국민총파업 결정은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정치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의 정치에 맞선 국민총파업은 반드시 성사되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역사의 전진에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총파업 성사를 위해 우리 사회에 양심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도록 호소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3회 임시회(2015. 4. 20.)
- 발언요지 : 진상규명 방해하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촉구! 모욕적인 배보상 절차 중단!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으며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때같은 아이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하나 둘 잃어가야만 했던 그 때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4·16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아직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시스템 마련은 커녕 아직 참사의 진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런 1년을 맞으며 참사보다 더한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더딘 진상규명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예의와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참사 1년을 맞으며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격려와 보살핌에 보다 더 민감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참사 1년이 다가오자 뜬금없이 4억이니 7억이니 하는 배보상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 앞에 돈을 흔드는 격입니다. 이 무슨 짓입니까? 또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공식결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인양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인양 비용에 포커스를 맞춘 저질스런 언론플레이로 세월호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 보내달라는 국민의 절규,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야만 했는지 알고 싶다는 세월호 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어떻게 이토록 비열하고 폭력적으로 묵살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참사 1년을 맞으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내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반쪽짜리 법이었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대승적 양보를 거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4·16 참사에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가족추천으로,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 직원을 채용하는 등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전체와 소위원회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등의 자리에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자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상규명의 사업내용조차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극단적으로 축소되어 있고 직원의 수 또한 법률에 비해 3/4으로 줄여 사실상 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수사권한을 주고, 피고인에게 판결을 맡기겠다는 식인데 세상에 이런 터무니없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정부 시행령안은 참사의 진실과 진상보다는 참사의 책임자이자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비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방탄시행령, 조사방해 시행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안전한 새 사회로 가자는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이라고 있으니 세월호 가족들이 기댈 곳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일 세월호 가족 52명이 삭발을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416시간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한 엄마 아빠가 된 것도 억울한데 부끄러운 엄마 아빠가 되기를 강요하는 무례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를 향해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까지 고통 받아야 합니까?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세월호 가족들의 세가지 요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정부 시행령을 즉시 폐기하고 최소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수용, 공포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에 실종자 9분과 참사의 진상이 있습니다. 정부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셋째,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은 세월호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53회 임시회(2015. 5. 1.)
- 발언요지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북구청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의 직영운영 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 위탁대행료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과 사업장에만 실시해오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범위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북구청 추진배경 설명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등 인력감소에 따른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청 직영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에 따른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북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3억원(5천만원×6명), 차량유지비 2천7백4십6만9천원으로 연간 3억2천7백4십6만9천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3명을 포함하여 총9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출근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새벽3시에 작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에 대한 수당도 없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민간위탁 비용으로 2억2천3백9십4만6천원 (967톤 × 231,632원)을 대행료로 지급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3억2천7백4십6만9천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2억2천3백9십4만6천원으로 대행하게 되면, 표면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량운행비를 제외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환경미화원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업무만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원을 거리 환경미화로 돌린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지만 전체적으로 정원을 53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산을 들여 대행함으로 대행업체 노동자에게 저임금 고노동 착취를 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일을 9명에서 6명이 한다는 것도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지만, 구청 직영시 받는 임금의 65%를 받고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것은 공공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위탁운영 업체의 임금은 (대략) 34,000천원 ~ 38,000천원이 됩니다. 대행업체인 춘산환경은 4명, 동천기업은 2명이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결국 구청직영 9명의 일을 대행업체는 6명이 하게 됩니다. 특히 춘산환경의 경우 3명만 우선 고용하고, 1명은 일을 해보고 고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결국 5톤 차량은 2명이, 비좁은 골목을 담당해야 할 1톤은 1명이 운전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시가 아니라 밤 12시부터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임금은 적게 받으면서 일은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공공 기관에서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민간위탁도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일을 대행업체를 만들어 위탁 운영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니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착취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임금 노동착취를 행하는 민간위탁은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정원이 56명이고, 현원은 50명이라고 합니다. 박천동 구청장은 취임 초에 53명의 정원을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원을 축소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인원을 충원하여 분담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위탁으로 돌리고 정원은 줄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는 도시가 발전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정해진 정원을 채워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고, 구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예산절감과 인원 수급의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문제는 결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대행업체에서 구청직영 때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행료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채워 할 일을 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라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한 만큼 국민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마저 정규직의 자리를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워나간다면, 그 자리는 더욱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물리게 됨은 물론이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자녀세대에 계는 미래에 드리우진 어두운 그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고용불안에 내몰린 비정규직 가정들은 자녀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저출산으로 이어져 미래 동력인 인력난으로 이어져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산만큼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4회 제1차 정례회(2015. 7. 10.)
- 발언요지 :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높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동주민센터와 동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강진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은 민선 5기 박천동구청장이 취임한 날이자 제6기 북구의회가 출범한 뜻 깊은 날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동행정과 동주민자치센터입니다. 동 행정과 동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채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 공동체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북구의회에 접수된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을 보면서 동주민센터와 동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운영을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조절할 수 있고, 강사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강생들의 의견입니다. 수강생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강행한 강사 교체는 결국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고 주민분열과 주민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동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래교실 강사를 교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방식을 바꾸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에서는 바뀐 설문조사 방식을 제대로 공지도 하지 않아 노래교실에 거의 결석을 하지 않은 수강생들조차 설문조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참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과반도 안 되는 인원이 참여한 반쪽짜리 설문조사를 들이대며 강사를 자른 것입니다.

100% 완벽한 강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

거나 강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면 당연히 강사를 교체해야지요. 하지만 수강생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그게 전체 의견인양 강사를 교체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방식이 바뀐 것을 제대로 공지도 하지 않고 수강생 과반도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설문조사함을 2주 동안 방치하여 불만인 사람이 두 번 세 번 설문에 응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에 응한 90%가 강사에게 매우 불만으로 나왔지만, 노래교실 수업을 참관한 저의 눈에는 수업 분위기가 설문조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잘못된 설문조사로 인해 강사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수강생들 또한 강사에게 미안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강생들이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다시 해 달라고 한 것은 4년 6개월 동안 수업을 한 강사에게 너무 미안해서 강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다시 해 달라고 한 것이지, 죽어도 강사를 교체 못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강생들의 마음은 엉터리 설문조사로 강사를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양정동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끄럽지 않게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에 동장은 왜 두 번 세 번 따지냐며 소리를 지르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에게 임명된 5급 공무원이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민에 대한 무시이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노래교실 수강생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자 의회에 민원을 넣은 것을 두고 주민자치위원장은 강진희와 노래교실 강사가 시켜서 민원을 넣었다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은 긴급 소집한 회의에 노래교실 회장, 총무를 불러 놓고, 강진희와 노래교실 강사가 시켜서 민원을 넣은 것이냐, 강진희가 노래교실에 몇 번 왔느냐, 와서 무슨 발언을 했냐며 캐물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양정동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기에 선출직 의원에게 이런 언행을 한단 말입니까? 의원인 저에게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양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북구선거관위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

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수업중인 노래교실에 찾아가서 40여분을 연설을 하며, 간접적으로 전 구청장을 음해하고 현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홍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대동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노래교실 수강생들의 참석이 저조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하수인 역할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만 두어야죠.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특정 정당의 당원이자, 주요 직책을 맡고 있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는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양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해서 양정·염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6월 17일 현대자동차 4공장 정문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영남, 대구, 경북권 노동자 집회가 있었습니다.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회가 있는 것을 사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메르스 청정지역 울산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하라’ 라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현수막으로 인하여 지역 언론은 메르스 전파가 마치 집회하는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했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6월 월례회에서 확인한 결과 양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들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독단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비용도 위원장 개인 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 여러 정치적 지형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 구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현수막은 메르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심리를 이용하여 여론을 호도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는 상당히 불쾌해 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주간연속 2교대로 인하여 상권이 무너진 염포·양정지역을 위하여 염포·양정도시재생활성화협의회에 들어와 있으며, 4월 15일 사업협력 협약식에도 참가하였고, 5월 15일 경기도 안양 2차 심사에도 참가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사업 선정을 위해 호소하였습니다.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염포·양정 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정성을 들이고 있는 중이며, 최종 심사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양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부적절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현대차 지부가 협의회에서도 빠지고 함께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박천동 구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정보고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았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현대차지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취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는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행정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생활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여론이 무섭게 번져나가는 곳입니다.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이 같은 정당이라고 품어주고 물어둘 게 아니라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거법을 위반하고 특정 정당 활동에 치우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다른 일이 많다는 핑계로 무성의하게 민원을 처리할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주 동 주민센터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이 의회에 접수된 민원인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동 행정과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55회 임시회(2015. 9. 8.)
- 발언요지 :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며, 여성 공무원을 집회의 방패막이로 세운 것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우리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9만 울산 북구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승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월 17일 진행된 울산시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해임과 강등 등의 중징계와 17일 당일 울산시 여성공무원을 앞세워 울산시청 현관 정문을 봉쇄한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하여 규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본부장에 대해 해임, 북구지부장에 대해 강등, 정책기획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는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하루 무단결근했다고 해임하고 강등, 정직 3개월을 처분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징계를 받은 세 사람은 사전에 연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연가 신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4월 24일이 민주노총 총파업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불허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살인과 같은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정부와 울산시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무단결근을 했다고 내린 처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유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강등,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하면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무조건 탄압하고 해임하고 징계하는 현 박근혜 정권의 공안정치가 노동,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을 넘어 공무원들에게까지 그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협박입니다. 그것이 독재정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탄압한 것이라면 소통과 설득보다는 공권력의 폭력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준 것입니다. 공무원도 인간이고 국민입니다. 공무원의 유일한 노후보장책인 연금법 개악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연금 운영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지우려는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정당한 주장이며 권리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주장을 탄압하고 강행하려는 정부에 반대하여 이를 막기 위해 연가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출근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의 직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을 할 만큼의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 노조간부들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노조운동을 하지 말 것을 강압하고 노조간부들을 탄압함으로써 동료 공무원들과 격리시키려는 처사이기에 더욱더 부당하며 치사한 처분이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인 민주노총의 4. 24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총파업 참가자를 불법행위자로 몰아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도록 장관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이행 조치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대를 탄압하고 정부의 안대로 강행하려는 폭력적 처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자치부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35명의 징계대상자 중 유일하게 울산시 북구청의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무원노조 중앙본부 간부들에 대해서조차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처분이 울산지역 간부들에 대해서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시장과 박천동 구청장의 과잉 충성인지, 아니면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생각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울산시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부당한 징계에 대한 항의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 공무원의 평화적인 항의 집회에 울산시청 신청사 현관 정문을 봉쇄하기 위해 여성공무원들을 제일 앞에 세워 성을 무기로 봉쇄한 반도덕적, 반인권적, 반여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니다. 보다 못한 강진희 부의장이 아는 간부공무원에게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으니 여성공무원들을 뒤로 물러나게 해서 좀 쉬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여성공무원들은 경찰들조차도 교대로 서 있거나 앉아서 있는 시간 내 내 맨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알려 지면서 전국 인권단체와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규탄을 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집회참가자들도 그러지 말라는 부탁을 하는 반도덕적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동원과 방패막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노린 것이라면 더욱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반여성적, 반인권적인 공무원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번 부당한 울산시의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과 북구청장은 울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중징계가 철회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여성공무원을 동원하는 반도덕적인 행정이 없도록 울산시민 앞에 약속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5회 임시회(2015. 9. 8.)
- 발언요지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즉각 중단하라!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청년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청년일자리를 만드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정책도 아니고,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은 710조원이 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수탈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한 정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욕을 먹을테니,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명분으로 채택된 것이 청년일자리요, 경제 살리기일 뿐입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3%밖에 안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을 해야 합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세금감면 해주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재벌은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자기를 공간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을 그대로 두어서는 청년 일자리도, 중소 자영업자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사라 집니다. 현재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공간에 쌓아둔 돈만 710조, 무려 우리 국가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1000조로 늘었고, 청년 고용률은 -1.9%입니다. 중소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재벌이 식당과 커피숍만이 아니라 콩나물과 두부가게까지 공략하는 탓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중소자영업의 일자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재벌은 자기

기업의 일자리도 직접 줄입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아웃소싱 이렇게 줄인 일자리만 무려 130만개입니다. 재벌은 하청기업의 이윤까지 정해줍니다. 하청기업의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마진 2% 보장!’ 이러면 하청기업은 2% 이윤에 그냥 만족해야 합니다. 심지어 재벌은 투자도 줄였습니다. 지난 5년간 법인세 감면으로 혜택 받은 돈이 37조인데 재벌대기업이 투자를 늘렸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14조원이나 투자를 줄였습니다. 세금감면까지 고려하면 총51조나 투자를 줄인 셈입니다. 이 결과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불평등, 사회양극화가 더 커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저성장 탓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8%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1.8%로 경제성장률의 반밖에 안되고,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무려 16.8%로 경제성장률의 4배에 달합니다.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정부와 재벌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 이 균형을 맞추어야만 청년일자리,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삶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재벌개혁을 외면하고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해고 자유화를 위한 가짜 개혁입니다. 재벌의 공간을 더 채워주고 중산층을 없애겠다는 중산층 몰락 프로젝트의 다른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봉 5천에서 8천정도 되는 50대 부모님의 임금을 깎겠다? 전체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와 내수마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는 재벌개혁을 통해서만 늘릴 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3%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7만개입니다. 재벌 대기업 법인세 원상회복과 분리과세를 통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무려 20만개, 재벌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하면 늘어나는 일자리 2만개, 거기다가 사내유보금 710조를 이익공유 형태로 사회 환원 1%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23만개입니다.

여러분, 재벌개혁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시겠습니까? 노동개혁으로 중산층을 없애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재벌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 부모자식, 모든 국민이 웃습니다.

청년은 실업에서 벗어나고 부모 세대는 임금삭감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고 중소 자영업자는 물건을 더 많이 팔게 되고, 그래서 내수가 늘면 심지어 재벌 대기업에게도 좋습니다. 이제 가짜 노동개혁이 아니라, 진짜 재벌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7회 제2차 정례회(2015. 11. 20.)
- 발언요지 :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한국사 국정화 고시 즉각 철회하라!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강진희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3일, 역사는 이 날을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의 딸이 아버지에 이어 영구집권을 꿈꾸는 역사쿠데타를 감행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1974년 박정희정권이 도입한 국정교과서를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 겨레가 수천 년 살아온 삶의 발자취이며,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해석과 역사교육은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친일과 독재 미화로 귀결될 것이 필연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10월 12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화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강행하였으며, 더욱이 행정예고 전인 10월 5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비공개 국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가 끝나자마자 11월 3일 확정고시를 강행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비밀주의와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일방통행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근혜 정권에 이어 최근 새누리당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법령 위반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작까지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정교과서를 관철시키면서 약속했던 집필과정의 투명성마저 걷어 차버리겠다는 심산입니다.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혼한 공청회 한번 없이 은밀하게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법령을 위반해가며 예산을 집행하고,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집필진의

공개마저 비밀로 부치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모습은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국정교과서가 가치중립의 역사문제에 권력이 개입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며,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는 정부 여당의 우편향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국정교과서의 퇴행성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태도가 주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역사는 어떤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며, 역사해석의 권한은 역사학자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마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운운하며 흑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우리 역사 교과서에 기재된 친일파의 친일행적과 군부독재의 잘못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기록한 역사’를 부정하고, 제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미화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종북 빨갱이’라고 욕을 하며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조상님들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없는 진실을 거짓말로 지어내어 이념갈등을 부추겨서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신의 뿌리를 들춰내면 볼 수 있는 정치적 친일의 잔재를 없애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이념 갈등을 부추겨서 우익과 꼴통집단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혹시 과거 유신으로 회귀하고 싶은 더러운 욕심이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나쁜 역사든 아픈 역사든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두운 미래로 내쳐질 것입니다. 우리 역사와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한국사 국정화 고시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7회 제2차 정례회(2015. 12. 16.)
- 발언요지 : 지역 복지와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방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규탄한다!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강진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 중 중앙정부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 또는 타사업과 통·폐합하라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이후에 추진실적까지(정비계획을 반영한 2016년 예산안 제출, 통과된 예산 제출)제출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비하라고 한 사업들은 각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 사업 5,981개 사업 가운데 1,496개 사업, 9,99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사업 수의 25.4%, 예산의 15.4%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정비방안은 가뜰이나 열악한 지역복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정비 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다름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복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모두 삭감대상, 정비대상입니다.

2012년 10월, 중증장애인임에도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과 10분 만에 진화된 화재에 목숨을 잃은 고(故)김주영 씨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 지원을 하여 활동보조 24시간

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가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복이란 말입니까?

전국 각지에서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급여는 130여만원, 생활복지사 급여 12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중복 사업이라며 깎으라고 합니다. 매일 12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연차휴가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정비대상입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사무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주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주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방의회가 산정한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임의적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비 방안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복지 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의 0.5~0.6%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들을 유사, 중복, 편중 운운하면서 폐지·축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결정한 자체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마음대로 막는다는 점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것입니다.

사회보장 정비 방안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역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OECD 최저 수준의 복지, 최악의 자살률, 출산률 쪼그러들 기록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없는 복지를 빼앗는 정부를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7회 제2차 정례회(2015. 12. 23.)
- 발언요지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1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급격히 퇴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강진희 의원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1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급격히 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이맘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보정당 해산에 대한 부당함을 신상발언을 통해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이 강제 해산되고, 무소속의원으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러웠지만, 1% 재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99% 국민을 위한 정치, 노동자·서민이 주인되는 정치, 진보정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힘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험적 성격의 중대성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험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해산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정당해산 결정 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은 더 활성화 되었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되었어야 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한층 확립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헌법재판소가 공언한 바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신호탄으로 우리 사회는 오히려 급격히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된다고 진보정당을 해산시켜놓고, 우리 사회는 지금 어땁니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곧 우리 사회가

붕괴될 것 같이 얘기해 놓고, 해산된 지 1년이 지난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기본권은 훼손되고, 우리 사회는 전두환 정권시절로, 박정희 유신정권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유신이 부활하였고, 사문화되어 있던 소요죄가 29년 만에 부활해 전두환 정권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산결정 후 정부는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검찰, 경찰, 보수언론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개악 저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살인적 시위진압 규탄 등의 표현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이라는 색깔공세로 불온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해산결정 후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정당이 없어짐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는 확립되기는커녕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이제 민주노총마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전 국민적 재앙을 불러올 노동시장 개혁 5대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된 위원장을 마치 파렴치범으로 취급하는 쓰레기 같은 언론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진보정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이미 사문화된 소요죄를 적용하며 군사정권시절로 되돌아가 민주노총을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 파괴는 정권을 장악한 다수파의 전횡에 의한 것이지 소수 반대파에 의해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소수파를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한 불통의 정치, 파렴치한 친일친재벌정당 새누리당, 무기력한 보수야당에 신물이 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지난 11월 14일 제1차 민

중총궐기에 13만명이나 모였습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는 5만명이 모였고, 울산에서 열린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에서는 3천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진보정당 해산 후 서서히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진보정치에 대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여야가 야합하는 것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 진보정치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은 뜨겁습니다.

조계사를 나서며 기자회견을 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절규가 생각납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돈 없고 뺨 없어서 서러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1% 재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돈 없고 뺨 없어서 서러운 노동자·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위해 더욱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57회 제2차 정례회(2015. 12. 16.)
- 발언요지 : 재벌만 편드는 노동 개악안 즉시 폐기하라! 노동탄압 중단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윤치용 의원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노동공약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공약,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나마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탱해주던 밥그릇마저 걷어차겠다는 공약파기가 바로 노동개악입니다. 노동개혁의 원래 취지는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서 양극화를 해소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노동단체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해야한다 했더니 겨우 450원 올라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 그쳤습니다. 물가인상대비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노동시장개혁은 온데간데없고, 청와대는 재벌이나 사용자단체의 민원처리 급행 창구인지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헐뜯하고 강행처리를 주문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야당대표시절 발의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일방처리가 어렵게 되자, 이제는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라는 초헌법적 카드까지 검토한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인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재벌청탁 노동 개악법 즉각 폐기하라!

기간제법, 35세 이상 기간제 2년에서 4년 연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입니까? 파견법, 뿌리산업 6대 업종(금형, 용접, 주조, 열처리, 포면처리, 소성가공)에 파견을 허용하여, 울산의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모든 제조업현장에 파견노동자를 투입하게 되면, 있던 정규직도 해고될 판이고 용접·도장 등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은 인력파견업체에 줄을 서야하는 이 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저시급제, 호봉제로 술한 이익금은 다 챙겨먹고 이제 와서 장기근속자 늘어나니까 통상임금 부담돼서 근로기준법 개악 하자는 것이 노동개혁입니까?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는 저성과자란 이름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고 해고시켜도 된다고 노동부에서 토론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무력화시키겠다는 양대 지침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한상균은 무죄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은 80만 노동자대표로서 노동대재앙을 불러올 노동 개악안을 막아내기 위해 온갖 수모와 난관에 앞서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싸웠습니다. 노동자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의 노동재앙을 막기 위한 총파업 역시 정당합니다. 오히려 약속을 저버리고 재벌 정부 노동 개악법 강행 처리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대선공약 이행하고 한상균을 무죄 석방해야 합니다.

울산시민은 노동악법 강행 처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차례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농민, 청년 등 정당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IS에 비유하고 총궐기를 과격폭력시위로 매도하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 사무실 압수수색, 소요죄 적용 등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노동 개악법을 연말 임시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지도부를 짓밟겠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노동개악 처리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58회 임시회(2016. 2. 17.)
- 발언요지 :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불법적 정부의 2대 지침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직원여러분과 이수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사회는 꿈과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연애도, 결혼도, 자식도, 취업도, 내집마련도, 인간관계도,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7포 시대”를 선언하고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민생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퇴직자 문제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정, 재벌들은 살리고 노동자 서민은 죽이려는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대 지침을 행정 독재로 밀어 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2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2대 지침”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대 지침은 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해고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모든 국민을 저임금 구조인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노동개악이라며 반대하면서 법률로 처리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법적문제가 있는 2대 지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의 발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적인 지침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조항과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한 행정의 독재적인 행위입니다.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도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자의 공동체를 말살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쉬운해고 지침”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을 벗어난 ‘맘대로 해고’ 지침입니다.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이나 업무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만 거친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반해 행정지침만으로 해고규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저성과자해고 실행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를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며, ‘쉬운해고 지침’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사업장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하여 사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쉬운 해고 지침’은 부당해고를 합법해고로 둔갑시킬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절차마저 완화해 남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해고제한 취지를 흔들고 ‘해고 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정당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괴하겠다는 지침입니다.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은 정면으로 이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대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개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으며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건립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불법 행정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제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침 강행 시행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불법적인 2대 지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동재앙이라고도 하

는 2대 지침을 지속하고 강행 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사성어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생각나는 시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운영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는 기대감이 고사성어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응,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인 한일협상과 법을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그리고 북핵에 대한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를 보면서 무능력과 무책임한 그 모습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는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지 못했고, 개성공단이 주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도 없는 무능과 무식의 조치라고들 합니다. 통일부장관의 근거도 없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보다 우리 중소기업과 경제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개성공단의 폐쇄는 국가운영에 대한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핵에 대한 국가 위기 대응능력과 미국과 중국에 구걸하는 식의 북핵 문제 해결은 국민과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모든 불통을 그만두고 정치권과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서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8회 임시회(2016. 2. 17.)
- 발언요지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친일정권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직원여러분과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습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했습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 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

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 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회색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58회 임시회(2016. 2. 25.)
- 발언요지 : 박근혜 정권3년, 민주주의 파괴, 민생포기, 경제파탄, 평화와 통일마저 포기, 2016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차 되는 날입니다. 취임 3년차를 보내고 4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는 멈추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문지마 쌀개방, 대북 적대정책과 긴장 고조, 일본군 ‘위안부’ 야합을 통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 등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로 폭주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이 땅 평화의 마지막 안전판을 기어이 뽑아내었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최대 교역국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보복에 이 땅 국민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특전단을 동원한 ‘참수작전’을 포함한 유례없는 대규모의 전쟁 연습을 강행, 일촉즉발의 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주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며 대북 적대와 전쟁불사의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전범국가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미국 앞에 꿈쩍 못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정권입니까? 국민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민족의 이익보다 더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나쁜 정부입니다.

외교와 안보에서 무능함을 표출한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과 재벌의 민원만 해결해 주려고 노동자, 서민들의 목줄을 조르고 있습니다.

노동 개악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로 개악안 통과가 지연되자, 박근혜 정권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정부지침’을 통해 일반해고를 기어이 강행하고자 말

았습니다. 묻지마 TPP-쌀개방을 기어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귀 기울이는 고통은 ‘재벌’과 ‘부자’들의 고통뿐이며, 자신들에게 국민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메르스 사태 당시 참사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를 ‘괴담’으로 매도하고 진상규명 노력을 ‘탄압’하는 데에만 유능했던 이 정권은,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 살인 물대포에 쓰러져 100일이 넘도록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그 값싼 사과와 한마디조차 외면한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자들을 영전시키는 패륜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천재지변과 전시·사변에 준한 상태인가요? 국회의장이 현 시국을 그러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대통령 관심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집권 만3년이자 4년차의 시작인 25일을 하루 앞둔 국회의 진풍경입니다.

지금울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이유는 박근혜의 집권 이외는 없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기 이전에 대선에 개입하는 등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권한을 늘리는 법안이자, 이를 통해 비판세력을 감시·통제하는 ‘민주주의 테러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협박에 굴복해 시대착오적 이유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 큼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많은 참여를 간절히 호소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58회 임시회(2016. 2. 26.)
- 발언요지 :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직권상정한 국정원의 대국민 감시용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19만 주민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성을 갈겠다”며 청와대의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요구를 버티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직권상정을 감행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근혜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미비하나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하고자 합니다.

국정원 출신이며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지역의 박대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은 야당 국회의원과 전문 법률인 등 전문가들이 “국정원 통화감청법” “안기부 부활법” “국정원 강화법” “유신독재 부활법”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는 “유신 때는 헌법이 문제가 많아서 인권을 탄압했지만, 테러방지법은 멀쩡한 헌법을 무력화 시키게 된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권교체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의 백혜련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은 결국 국정원지키기법 내지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본다”면서 “국정원은 정권 초기부터 댓글사건으로 인하여 그 중립성이 완전히 훼손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만 조항만 말씀드리면, 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조항인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명의 인권보호관이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하던 검찰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집행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조직이 국정원입니다.

8조 전담조직의 설치 조항도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감청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의 핵심인 9조는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과 금융거래정보,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국정원장의 허가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에 들어갔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안기부가 불법적으로 여야 거물급 정치인과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 참모총장 등을 불법적으로 도청하여 파일을 만들어 관리해 온 안기부 X파일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 2명 구속되고 수사도중 전직 차장이 자살하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안기부가 한 도청이 불법이었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합법적인 감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이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핵시험과 북한 인공위성을 발사를 기회로 사드배치, 북과의 유일한 평화고리인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하여 얻고자 한 것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과 세력을 감시하면서 권력을 유지, 영구독재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19만 북구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59회 임시회(2016. 5. 10.)
- 발언요지 :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3일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상식과 도를 넘는 검찰의 표적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2016년 4. 13 총선결과는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리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선거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온갖 규제를 풀고 기업특혜를 남발한 결과 발생한 경제정책 실패와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의 과오들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정리해고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노동법 개악과 같은 반노동, 반서민 정책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한 민의가 투표로 표출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헌법과 상위법마저 무시한 위법적 양대 지침과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는 노동법 개악 추진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으며, 역사교과서를 마음대로 바꾸고 세월호 아이들조차 구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지탄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국민들의 정서에 나타났으며, 사상최악의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울분들이 투표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권은 총선패배 결과에 승복하고 그간의 국정운영 실패와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하여 전격적인 압수수색 강행으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패배와 여소야대 정국을 타계하려는 모습에서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1차적으로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은 지역 방송사인

UBC와 MBC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었으며, 지역에선 처음이자 마지막 언론사 여론조사였기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입니다. 저녁 8시 여론조사 방송 결과는 윤 당선인이 14%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가능성이 높게 나왔으나, 공교롭게도 언론사 여론조사 발표가 있기 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저녁 뉴스에는 여론조사 결과와 압수수색 장면이 나란히 보도되므로 압도적으로 윤종오 당선인이 앞서고 있었던 선거 열세를 만회하고 여당후보 구하기 국면 전환용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공안검찰의 선거개입 의혹이 의심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윤종오 당선인의 불법선거 정황이 제보되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이 되었다면, 이에 위법한 정황을 선관위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시 1차적으로 해당 책임 선거사무원이나 후보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히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번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단지 혐의만 가지고 상식과 도의를 한참 벗어난 특수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공직선거법 89조에 나오는 유사선거사무소는 “선거를 위해 대규모의 컴퓨터와 전화를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인지한 유사선거 사무소로 지목한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은 1년 넘게 도시농부 텃밭사업과 마을카페 역할을 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행사무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추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무실이 아니었고, 또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윤종오 당선인이 상대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1차 압수수색에서 유사선거사무소로 불만한 정황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선거사무실을 추가 압수 수색하고 이도 모자라 윤종오 당선인의 자택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것은 상식적인 이유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결국 정치적 부담까지 안으면서 2차, 3차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가 부족한 증거를 찾기 위해 먼지털 기식 강압적인 압수수색은 정치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도를 넘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노동자출

신 당선인에 대한 정도를 벗어난 정치적 탄압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주신 19만 북구민들과 120만 울산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해운과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에게 인력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간 세계경제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임에도 파탄난 경제부양 정책으로 온갖 규제를 풀고 기업 특혜를 남발한 결과 발생한 경제위기를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하려 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윤종오 당선인은 산업구조조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고 당선시킨 윤종오는 무리한 검찰수사와 공안정국을 조성해서라도 당선무효 시켜야 할 탄압의 대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혐의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인지된 정황으로만 범죄인 대하듯이 당선자에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라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며, 박근혜 정부와 공안검찰은 노동자 국회의원을 향한 표적수사와 정치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60회 제1차 정례회(2016. 6. 24.)
- 발언요지 : 시례새터~상안새터 도로개설 계획
변경과 복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부결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
정과 의회의 독재입니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본의원은 많은 생각과 실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시례새터 ~ 상안새터 소방도로 개설” 관련한 민원을 접하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부터입니다.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 “시례새터 ~ 상안새터 소방도로 개설” 관련한 민원을 접하고 지역주민과 동료의원을 만나면서부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나서 하루 빨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후 의원들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다가 의회의 권한이자 기능인 행정사무조사에 통해서 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초 의원들끼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말도 안되는 반대와 표결로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초 계획한 소로3-20호선이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 의회와 구청에 변경을 요청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노선변경 불가라는 회신을 준 사안이 똑같은 민원인이 구청장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자마자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 변경을 요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가 민원을 책상위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했거나, 아니면 노선변경 불가하다고 한 사안을 구청장이 개입하면서 바꾸었다는 것, 그러면 둘 중 어느 것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의 경우는 구청직원의 민원에 대한 형식적 처리나 업무태만일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구청장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신뢰가 무너져 마을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막고 마을의 단합과 화합을 하루 빨리 만들도록 하는 것도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문제가 없다는 듯이 주민을 대하며 주민갈등과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법정에 까지 문제를 들고 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북구청 모든 직원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건을 다루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에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임무를 방기하며 욕되게 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반대하면 되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의회와 의원이 해야 할 일을 “법원에 맡기고 개입하지 말자” “법원에서 결정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자” “의원들이 중립적이지 않다” 는 등의 발언은 의원 스스로 의원으로 권한과 임무를 버린 것이고, 의회의 기능을 법원에 위탁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반대 결정을 해 와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협력의 정치를, 소통의 정치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니 다수의 국민들이 지방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구나 생각했습니다.

도단체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 구의원인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민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의회의 권리와 의무마저 버릴 수 있는지 같은 의원으로써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기에,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의원,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자는 저의 결심과 동료에 대한 호소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선출직인 박천동 구청장님에게도 호소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나선 사람들이 만큼 스스로를 희생하더라도 주민과 지역,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잘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호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60회 제1차 정례회(2016. 6. 24.)
- 발언요지 : 조선 산업 위기에 따른 무원칙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무원칙한 조선 산업 구조조정 반대 입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공포가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위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리해고식의 구조조정은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일방적 구조조정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하면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대량 해고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낳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문제 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외환 위기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모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IMF식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편중된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해외공장 증설, 과도한 수출 의존에 따른 내수 비중 약화, 좋은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 노동자 무한 양산과 이에 따른 극단적 사회 양극화, 이것이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인력 감축 중심의 구조 조정의 사회적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외환 위기와 쌍용차 사례를 통해 학습한 바 있기에 그런 경험과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지?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어떤 길로 가야할 지 토론도 없고, 진단도 없이 그냥 노동자 수만 줄이면, 기업의 이윤구조만 개선하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고칠 때에도 진단이 정확해야 사람을 살리는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조선 산업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경제를

살리고, 조선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이 조선 산업에서 얼마나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겼습니까? 재벌 오너 일가와 경영진들은 얼마나 많은 배당을 챙겨 갔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오류와 책임을 말하는 재벌과 경영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언론의 지적대로 ‘이윤은 사유화하고 부실은 사회화’ 하여 또다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경제발전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한 거 말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분들이야 말로 가장 앞서 지켜줘야 할 산업역군, 경제의 버팀목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구조조정,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삶과 생계를 책임지는 대책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토대이고, 노동자의 기술력이 제조업의 경쟁력입니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튼튼한 발전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의 경쟁력도 튼튼한 제조업에 있었습니다.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은 결국 노동자의 경쟁력입니다. 현재의 조선 산업 위기도 우리 정부와 재벌대기업의 책임이 크지만 유가하락 등의 세계 경제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부상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국 노동자의 기술력, 경쟁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일시적으로 조선 산업이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 한국 제조업, 조선 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울산은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국경제의 심장입니다. 또한 조선 산업의 미래, 조선 산업 노동자들의 미래가 울산 발전의 기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산업의 위기와 조선 산업 노동자들의 위기는 정파의 문제도,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닌 울산의 미래, 울산시민의 미래, 울산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나 정치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당장 실직의 위협과 생활고로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는 외면당하고, 그 사회는 불행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한파에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며, 언제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60회 제1차 정례회(2016. 6. 24.)
- 발언요지 : ‘맞춤형 보육’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을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울산 북구 보육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0~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고, 긴박한 사유 발생시 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맞춤형 선택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종일반 12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 아이들의 경우 오후 3시에 하원을 해야 하는데, 보통 만0~2세 아이들은 3시면 낮잠을 자고 막 일어나는 시간이거나 아직도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억지로 아이를 깨워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체리듬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업주부들은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상대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맘들은 빨리 하원하는 아이들을 보며 남겨진 내 아이가 느껴야 할 불안감을 걱정해야 합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로 조정되는데 맞춤반 조정이 많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보육료

삭감은 고스란히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담당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맞춤형 도입이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제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육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줄어드는 보육료보다 더 보육교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운용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은 ‘맞벌이, 구직, 임신, 가족 입원, 장애,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등’ 정부가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용대상 가구는 직접 보육료 자격 신청과 증빙을 완료해야 합니다. 무급가족종사자 등 종일반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증빙이 용이하지 않거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우려됩니다.

애초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원칙을 세운 데에는 맞벌이 가정 부모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학업, 가족 기능의 상실, 비정규직 생업 종사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있고, 애초에 가족의 보육책임을 공공이 나누어지겠다는 취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와 그 아이들에 대한 현장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업부모에 대한 역차별을 제도화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전업맘과 취업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고하여 보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맞춤형 보육교사 인건비 축소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현장교사의 이탈 등 제2의 보육대란이 예견됩니다.

보육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지키고(保) 돌보는(育) 일이며, 동시에 같은 의미로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은 중요한 사회정책이며, 일종의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시행을 목전에 둔 ‘맞춤형 보육 정책’에 있어,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1. 처리현황

(2014. 7. 1. ~ 2016. 6. 30.)

연도별	접 수	처 리 결 과			
		계	완 료	추진 중	불 가
계	21	21	3	4	14
2014	8	8	1	2	5
2015	10	10	1	2	7
2016	3	3	1		2

2.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4. 7. 4. 족구장 건설 제안 (불가)	울산북구 좋은 족구회 회원	○매곡월드아파트 인근 고가 다 리 밑 족구장 설치 요청 - 위치:매곡월드 고가다리 밑 - 현재 울산 북구 거주자 30여명 의 회원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 는 동호회로 체력증진을 목적 으로 족구를 하고 있으나,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월드공 원 야외족구장은 우천시 경 기가 불가하고 타 족구모임 사용량 증가로 현재 예약제 로 사용을 하고 있어 이용에 제한이 따름. - 자연방치되어 있는 다리밑	• ‘14. 7. 3. : 민원사항 통보(문화체 육과) • ‘14. 7. 14 : 문화체육과 → 의회 및 민원 회신 ☞ ‘교량하부 높이 공간 부족과 접 근성 애로, 기타 편의시설 확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기 추진은 어려우므로 인근에 기 존 족구장 이용을 바라며 지속 적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공간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바램 으로 족구장 건설을 제안함.	
‘14. 7. 2. 화봉동 효성삼환 아파트 보안등 설치 요청 (완료)	효성삼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회장	○ 화봉동 효성삼환아파트 107 동 외곽도로 (철길도로방면) 보안등 설치 요청 - 위치 : 효성삼환아파트 107 동 쪽문 맞은편 인근 외곽도 로 - 107동 쪽문 맞은편 인근 외 곽도로 일부 구간이 야간에 보행 이동시 어두워서 입주 민이 불안함을 느끼며 우범 지역으로 노출되어 있어 보 안등 설치를 요청함	• ‘14. 7. 3. : 민원사항 통보(안전건 설과) • ‘14. 7. 17. : 안전건설과 → 의회 및 민원 회신 ☞ ‘14. 7월 보안등 설치 완료됨.
‘14. 7. 23. 중산·이화 일반산업 단지 조성과정에 서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한 진정 (추진중)	이화발전 협의회	○ 중산·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한 진정 - 중산, 이화산업단지 산업도 로 주민 이용 접속도로 개설 요구 - 동대산 진입로 및 등산객 안 전대책 확보후 공사시행 - 갯안마을 주민 상수원 대책 - 비산먼지 발생으로 과수농 가 및 주민들 불편사항 보상 - 주민과 관이 협력 할 수 있도 록 담당관계자 선정	• ‘14. 7. 24. : 민원사항 통보(경제일 자리과, 안전건설과) • ‘14. 7. 28. : 경제일자리과 → 의회 회신 • ‘14. 7. 29. : 시 투자지원단 → 민원 회신 ☞ 중산, 이화산업단지 산업도로 주민이용 접속도로 개설 요구 - 대로3-85호선 도로 개설은 산 업로 확장, 동해남부선 복선 전 철화 준공시기 감안하여 도로 개설계획 검토예정. ☞ 동대산 진입로 및 등산객 안전 대책 확보 후 공사시행 - 2014. 11월까지 이화천에서 동 대산 등산로 개설 예정, 산단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준공 이후에는 갯안 앞천 둔치를 이용한 동대산 등산로 조성 예정 ☞ 갯안마을 주민 상수원 대책 - 북구청 및 마을 통장님과 협의 중이며, 추후 구체적 상수도 대책 마련 예정. ☞ 비산먼지 발생으로 과수농가 및 주민들 불편사항 보상 - 비산먼지 등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세륜·세차 시설 등 설치 - 주민과 관이 협력 할 수 있도록 담당 관계자 선정
‘14. 8. 21. 상원지마을 진입로 확보 요청 (추진중)	이○○	○ 상원지마을 진입로 확보 요청 - 상원지 마을은 현재 20여 세대가 거주하는 있는데 마을 진입로가 농소차고지 입구의 농로와, 창평천 옆 독길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형편으로나 농소차고지 입구 길은 좁고 곳곳이 파여 차량 운행에 애로가 많으며, - 창평천 독길은 최근 송정수변공원 이용 차량증가로 차량이 교차하기가 힘든 등 전체적으로 마을 진입로가 상원지 마을 주민이 제대로 이용 할 수 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함.	• ‘14. 8. 21. : 민원사항 통보(농수산과, 안전건설과) • ‘14. 8. 28. : 안전건설과, 농수산과 → 의회 및 민원 회신 ☞ 농로폭 협소와 훼손으로 통행편의를 위해 농로확포장이 시급하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농수산과)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이용객 증가로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 주민 교통 불편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 개설을 검토중에 있음.(안전건설과)
‘14. 9. 15. 양정동 534-7번지 소방도로	박○○	○ 양정동 534-7번지 소방도로 개설 요청 - 양정동 534-7번지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도시계획	• ‘14. 9. 15. : 민원사항 통보(안전건설과) • ‘14. 9. 19. : 안전건설과 → 의회 및 민원 회신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개설 요청 (불가)		되어 있으며, 현재 나지로 도로 개설시 장애물이 없고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현재 발과 차고지임) 짧은 구간임에도 도로를 개설해주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양정동 534-1, 534-10번지 주택에 대한 진입로가 좁아 도시가스도 쓸 수 없으며, 집이 극도로 노후하여 붕괴가능성이 있음에도 공사를 할 수 없음.	☞ 도시계획시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설치가 어려우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중장기 개설계획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양정교회 일원 소방도로 개설 등 주변 가로망을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이후 구 재정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검토할 계획임.
‘14. 11. 15. 강동산하지구 63블럭 및 68블럭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재고 요청 (불가)	문○○ (강동산하 블루마 시티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강동산하지구 63블럭 및 68블럭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재고 요청 - 강동산하지구 도시계획상 63블럭과 68블럭은 준주거지역으로 유통시설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었으나, 병풍같은 아파트가 허가되어 조망권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어 병풍아파트 건설 인허가 재고요청함.	• ‘14. 11. 14. : 민원사항 통보(건축주택과) • ‘14. 11. 18. : 건축주택과→의회 및 민원 회신 ☞ 강동산하지구내 해당획지는 상업인접형 준주거용지로 강동산하지구 개발사업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인구배분계획, 지구단위 계획상 공동주택입지가 가능하고,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종합적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등 주택법령에 적합하여 사업승인이 처리되었음.
‘14. 12. 16. 농소3동 및 천곡문화센터 회비 인상 및 강사교체 조사 및 의견	김○○ 등 농 소 3 동 및 천곡문화센터 수 강생	○ 농소3동 및 천곡문화센터 회비 인상 및 강사교체 조사 및 의견 수렴 요청 - 회비가 급격하게 인상됐음에도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강사 또한 회원 설문조	• ‘14. 12. 17. : 민원사항 통보(주민참여과) • ‘14. 12. 30. : 주민참여과→의회 및 민원 회신 • ‘15. 1. 2. : 민원사항 통보(자치행정과)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수렴 요청 (불가)		사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교체 결정을 하고 타지역 강사가 채용되기도 하여 필요시 회원의견 수렴을 하고,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청함.	• '15. 1. 9. : 자치행정과 → 의회 및 민원 회신 ☞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게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상한액이 낮아, 강좌가 다양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수강료를 인상하게 되었고, 강사는 유능하고 우수한 강사를 선발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강사 간담회를 통해 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014. 11. 5.일부터 공개모집 후 선발하였음. ☞ 이번 수강료 인상 및 강사 공개모집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수강생 대표단 및 강사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으로, 취미교양 및 건강 관련 강좌 중심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평생학습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음.
'14. 12. 31. 농소3동 및 천곡문화센터 회비 인상 및 강사교체 조사 및 의견 수렴 요청 (불가)	김○○ 등 농 소 3 동 및 천곡문 화센터 수 강생		
'15. 3. 6. (가칭) 약수마을 지역주택 조합 개인 토지 무단 편입 조치 요청	최○○	○ (가칭)약수마을 지역주택조합 개인 토지 무단 편입 조치 요청 - (가칭)약수마을 지역 주택조합은 민원인 소유 토지 중산동 92-1일대 3,716㎡를 사전동의 및 매입 없이 무단으로 편입시켜 사업승인 절차를	• '15. 3. 9. 의회 → 해당부서(건축주택과)민원사항 이첩 • '15. 3.12. 건축주택과 → 민원인 및 의회 회신 ☞ 사전에 상의나 협의 없이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가칭)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협의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추진중)		진행하고 있어, 해당 토지에 계획 중이었던 건축을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조치를 요청함.	토록 협조 요청 ☞ 또한 울산광역시(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에 통보하여 사업 계획 승인 신청시 신청사항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될수 있도록 하겠음.
‘15. 4. 3. 달천 모바일테크 밸리산업단지 조성 중단 요청 (불가)	김○○ (산단조 성 반대 달천 주민위원 회 대표)	○ 달천 “모바일테크밸리 산업 단지 조성” 중단 요청 - 계획예정지는 울창한 산림 이 있어, 달천농공단지와 신 설예정인 옥동-농소간 국도 의 소음과 공해로부터 주거 지역을 보호해줌. - 산업단지 조성으로 각종 소 음, 분진, 악취, 폐수 등 불량 한 환경 초래. 대형화물차 왕래에 따른 소음, 매연 사 고 초래. - 산업단지 입주이후 난개발 예상 및 공해관리가 열악할 것으로 사료. -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중단할 것을 요청.	• ‘15. 4. 3. 의회사무과 → 해당부서 (도시행정과)민원사항 이첩 • ‘15. 4.13. 도시행정과 → 시 산업 입지과로 이첩 ☞ 시 산업입지과 회신내용 - 환경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환 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낙 동강유역환경청(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 검토)’과 협의 를 거치고, - 협의 내용 이행을 확인 하기 위 해 공사때(착공 후 준공시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고, -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운영할 때 도 3년에 걸쳐 ‘사후환경영향조 사’를 실시하여 낙동강유역환경 청에 통보하는 듯 환경에 대해 서는 철저히 검증받도록 환경관 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중임. ※ 참고사항 • 달천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민원처리 절차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 본 산업단지는 민간기업이 신청하여 추진하는 산단으로, 관계기관(부서)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합동설명회 개최 후, - 사업시행자가 주민의견, 관련기관 협의내용, 전문가 기술검토서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여부가 결정됨. - 현재 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39개 중앙부처)과 협의 중임.
‘15. 4. 7. 철탑설치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불가)	이○○	○ 철탑설치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 대안동 임야에 소재한 부모님의 묘 위쪽으로 철탑을 이전 설치한다고 하여 묘소주변을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으나, 산소의 혈맥을 절단하여 공사한 것을 확인함. - 이에 산소를 이장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게 부지를 마련해달라고 했으나, 위로금 900만원을 주겠다고 할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현재는 배수로를 만들어놓아 산소출입까지 힘든 상황임. 이에 피해 보상을 요청함.	• ‘15. 4. 7. 의회사무과 → 해당부서(공원녹지과)민원사항 알림 • 공원녹지과 → 한국전력공사로 이첩 ☞ 한국전력공사 회신사항 - 민원면담실시 : 4. 14(화) 12:00/호계 수성마을회관 - 민원인은 분묘이장을 요구(한전이 토지 구입 후 이장 요청)하고, - 한전은 분묘 이장시 이장비 지원은 가능하나, 토지 구입 후 이장은 불가하다고 하여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고 함.
‘15. 6. 11 양정동 노래교실 강사계약	신○○ (북구 노래교실 대표)	○ 양정동 노래교실 강사 계약해지 관련 설문조사 진위여부 확인 요청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요청	• ‘15. 6. 11. 의회사무과 → 해당부서(자치행정과)민원사항 이첩 • ‘15. 6. 18. 자치행정과 → 북구의 회 및 민원인 회신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해지관련 설문조사 진위여부 확인요청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요청 (불가)		- 양정동 노래교실 강사가 재계약되지 못한 사유가 설문조사에서 21명 중 19명이 매우 불만이라는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으나, - 회원들이 직접 6월 3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4명 중 30명이 좋다는 답변을 하여 당초 설문조사의 진위여부가 의심됨. - 이에 따라 설문조사의 진위여부 확인과 책임자의 처벌을 요청함. ※ 양정동 노래교실 회원 26명 서명 회원 자체 설문 북구 노래교실 회원 71명 서명	• 민원회신 내용 [자치행정과→민원인] ☞ 매년 상, 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경우 수업시간에 강사가 있는 자리에서는 강사에 대한 솔직한 만족도 조사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고, 각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수업방식이나 강사의 태도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수업시간 외에 자유롭게 설문에 참여하도록 설문 방식을 변경하여 3. 25. ~ 4. 8.(2주간)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노래교실은 수업시간 중에 했던 결과와 달리, 수업시간 외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1명 중 19명이 '매우불만' 결과가 나왔음. - 2015. 5. 27. 양정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밸리댄스는 폐강, 태보 프로그램 신설과 12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강사 공개모집키로 하고,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의 불만이 많은 노래교실 강사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대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5. 7. 6. 강동동 해안마을 (신명, 화암, 산음, 북정자) 고도제한 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호소 및 고도제한 완화 촉구 (불가)	서○○ 외 176명	○ 강동동 해안마을(신명, 화암, 산음, 북정자)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호소 및 고도제한 완화 촉구 - 2004년부터 설정된 산하동 해안마을 일대의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고,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해 해안경관 훼손이 되고 있음. - 시의 고도제한의 이유가 있겠으나, 구에서 해안경관에 맞는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함.	• ‘15. 7. 6. 의회사무과 → 해당부서(도시행정과)민원사항 이첩 • ‘15. 7. 3. 도시행정과 → 시 도시계획과 • ‘15. 7. 7. 시 도시계획과 → 민원인 회신 ※ 구 도시행정과에 동일 민원이 접수되어, 시 도시계획과에 이첩함. ☞ 시 도시계획과 회신 사항 - 해당지역은 경관이 수려한 강동동 해안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4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변경(건폐율 완화 20%→60%)지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해안경관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최고고도 지구 (7m 이하, 2층 이하)로 지정된 지역임. - 이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배치 계획, 건축물 현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구를 결정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용도지구 변경은 어려우나, 향후 도시의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할 예정임.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5. 7. 29. 화봉동 탐마트 근처 형평성있는 주정차 단속과 민원응대 개선 요청 (완료)	김○○	○ 화봉동 탐마트 근처 형평성 있는 주정차 단속과 민원응대 개선 요청 - 화봉동 탐마트 근처에서 7월 3일 4시경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후, 단속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였으나. - 주차단속 카메라가 24시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을 바뀌가며 설명하고, 활어차 등 생계를 위한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마트 이용차량만 단속한다고 하는 등 형평성 있게 모든 차량을 단속하지 않고 있음. -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해, 설득력이 없고, 말 바꾸기를 하는 등 일관성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였음. - 주차단속카메라가 공평하게 24시간 단속하는지 여부 확인 요청, 정확한 법 안내와 공무원의 말 바꾸기식 응대 등 민원 응대 부족사항 개선 요청.	• ‘15. 8. 3. 교통행정과 → 민원인 및 의회 회신 ☞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에 대해 직원의 응대태도에 불쾌함을 느낀 점 사과함. - 향후 직원에 주의를 주어 개선해 나가겠음. ☞ 주차단속에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탐마트 인근 도로는 수년 동안 인근 아파트 주민 및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과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지역이었음. ☞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구에서는 2015. 7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09:00~21:00까지 단속운영하고 있으며, 활어차 등 2.5톤 이하 소형 화물차량 및 택배 차량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에 의거 단속시간을 15분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림. - 향후 교통단속과 부과 업무 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림.
‘15. 8. 20. 상안동 559-5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계획 대로소방	신○○, 이○○ 등 46명	○ 상안동 559-5번지 일원 도시계획대로 소방도로 개설 요청 - 새터마을 상안동 555번지 일원에서 시례마을로 잇는 소방도로가 난다고 하지만 그곳은 필요없고 급하지 않은	• ‘15. 8. 24. 건설과 → 민원인 및 의회 회신 ☞ 시례·상안동 일원에 시행 중인 5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원된 농소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도로 개설 요청 (불가)		도로임. - 기존의 도시계획선대로 559-5번지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을 요청함.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청 에 의하여 사업위치를 선정하 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 도시계획도로(3-248호선)는 당 초 시례동 새터마을~하수처리 장으로 이어지는 제방 노선으 로 도로개설을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 사업 위치인 상안동 새터마을~ 시례동 새터마을 노선(소3-248 호선)으로 노선변경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으므로, 또다시 노 선변경하기는 어려운 사항임 을 알려 드림.
‘15. 8. 18. 7번 국도 확장에 따른 재산권 침해 해결 및 생산녹지, 농업진흥 구역을 자연녹지로 변경 요구 (불가)	이○○ 외 29명	○ 7번 국도 확장에 따른 재산권 침해 해결 및 생산녹지, 농업 진흥구역을 자연녹지로 변경 요구 - 국도 7호선 6차선 확장시 일 부수용 되기로 예정되었던 토지가 전부 수용으로 변경 된 사항을 원안대로 6차선 확장 및 일부수용으로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함. - 국도 7호선 일대 생산녹지와 농업진흥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구함.	• ‘15. 8. 20. 건설과, 도시행정과, 농 수산과 이첩 • ‘15. 8. 26. 도시행정과, 농수산과 이첩 ※ 시 소관 사항으로 시에도 동일 민 원사항 접수됨. ☞ 법면조성 및 가감차로 설치에 따른 편입(시 종합건설본부) -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 설계시 인근부지와와의 단차로 인한 법 면 조성,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 한 배수시설 설치 및 교차로 내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가· 감차로 설치 등의 계획으로, 도 로 편입부지 등이 결정되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진흥구역 해제요건 아님 (시 농축산과)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 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해제가 불가함. 향후 여건 변화시 적극 검토하겠음. ☞ 용도지역에 앞서 농지법 행위제한(시 도시계획과) - 해당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생산녹지, 자연녹지)에 상관없이 농지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임.
‘15. 8. 26. 7번 국도 확장에 따른 재산권 침해 해결 및 생산녹지, 농업진흥 구역을 자연녹지로 변경 요구 (불가)	이○○ 외 8명	○ 7번 국도 접한 신천동 561번지 일대 생산녹지, 농업진흥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 요구 - 국도 7호선 주변에 유일하게 생산녹지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561번지 일대뿐으로 생산녹지와 농업진흥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구함.	
‘15. 10. 26. 화봉동 일원 보도 정비 공사 중단 요청의 건 (추진중)	효성삼환 아파트입 주자대표 회의 회장	○ 효성삼환아파트 진입로 차도 폭 축소 공사 중단 요청 - 효성삼환아파트 노후 경계 석 및 보도 블록 교체 요청을 하였으나, 차도폭 축소 및 인도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 중단을 요청함.	• ‘15. 10. 26. 건설과 이첩 • ‘15. 10. 28. 건설과 → 민원인 회신 ☞ 도로폭 변경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장에서 입대위와 협의한 결과, 당초 공사하기로 계획한 6M(3M*2차선)를 6.5M(3.25M*2차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임.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6. 1. 26. 화봉동 “착한 주차존” 폐쇄 요구 (불가)	심○○, 서○○ 등 805명	○ 화봉동 “착한 주차존” 폐쇄 요구 - 화봉동(화산로 14번지 일대) 착한 주차존이 설치되어 주 차난이 더 심각해졌고, 상가 영업 주민과 고객들이 주차 장이 없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으며, 착한 주차존 에 금요장이 열려 인근 상인 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착한 주차존” 폐 쇄 요청함.	• ‘16. 1. 26. 교통행정과 이첩 • ‘16. 2. 2. 교통행정과 → 민원인 및 의회 회신 ☞ 본 구간은 “착한 주차존”으로 지정되기 전, 도로 양면 모두 주정차금지구역이었으며, 불 법주정차에 따라 차량교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이 매우 높은 민원다발(유선, 새울 민원 등) 지역으로, 인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 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 인단속카메라 설치까지 요청 한 구간임. ☞ “착한 주차존”은 상가 상인의 생업과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현 도로상황을 감안하여, 양면 주정차금지구역에서 한 쪽 면에는 주차가 가능한 구간 으로 지정한 것으로, 만약 “착 한 주차존”을 폐쇄하고 불법주 정차단속을 하지않을 경우 차 량교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 험이 높아 민원이 끊임없이 제 기될 것이므로, 부득이 현재와 같이 “착한 주차존”을 운영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람. ☞ 또한, “금요장”으로 인하여 주 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점 사과드리며, 현재 단속원 2명 이 북구전역을 대상으로 노점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시 일 시철거 후 재차 상행위를 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가 반복되어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근본적인 근절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임을 알려 드림.
‘16. 5. 27. 8년전 자동차 과태료 및 5년전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어 조치 요청 (완료)	강○○	○ 8년전 자동차 과태료 및 5년전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어 조치 요청함. - 2008년에 부과된 주정차과태료 2건과, 2011년에 부과된 검사지연 과태료 1건이 수년이 지난 지금 고지서가 날아왔음. 차도 이미 매도하였고, 납부 확인이 힘든 상황에서 이미 납부했을지도 모르는 위반 사항을 5~8년이 지나 부과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함.	• ‘16. 5. 30. 의회사무과→교통행정과 이첩 • ‘16. 6. 3. 교통행정과→민원인 회신 • ‘16. 6. 8. 교통행정과→의회 회신 내용 통보 ☞ 내용 확인 결과 2008년 주정차 위반 2건 및 2011년 검사지연 과태료 1건으로 각각 부과, 독촉, 압류예고 절차를 걸쳐 차량이 압류되었고, 해당 차량은 2013년 11월 환가가치 차령초과로 말소되어 다른 소유 재산을 압류하였음. - 압류된 체납 건에 대하여는 연 2회 통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내역 안내 및 납부 독려를 하고 있음.
‘16. 6.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가 가능하므로, 신천동 239-5번지	감○○ 등 400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가 가능하므로, 신천동 239-5번지 외 11필지에 대하여 공공지 해제 검토를 요청함. - 해당지역은 15년전 무계획적 공공공지로 지정. 하천정비계획 수립하여 이미 주민편의시설 완료되었으므로 무의미한 도시계획시설임.	• ‘16. 6. 14. 의회사무과→도시행정과 - 관련 자료 및 집행부 의견 요청 • ‘16. 6. 20. 도시행정과→의회사무과 - 집행부 의견 회신. ☞ 공공공지 해제 청원 건에 대하여 담당부서 문의 결과, 본 지역은 하천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 밖 지역이며, 올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외 11필지에 대하여 공공공지 해제검토를 요청함. (불가)		현재 가설 건축물이 영업중으로 수십명의 생계가 달려 있음.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유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따라 해당지역 공공공지 해제 검토를 요청함. [참고] 공공공지란?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시·군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해 1회추경 예산에 공공공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계획 수립 중에 있음. - 용역 완료 후 공공공지 내 주차장, 산책로, 휴게공간 등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올해 2016년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시 관련부서 계획을 참고하여 검토할 예정임.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 2014년 하반기

01.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는 2010년 11월 5일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조례입법연구회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월1회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조례입법연구회 활동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의 조례 중 제정이 필요한 조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북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 등을 제·개정하여 구민편의 증진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02.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북구 유치 기자회견 실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북구 유치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이수선 의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북구 강동은 건립예산 절감, 접근성 양호, 인프라 구축용이, 구·

군간 문화체육시설 불균형 등의 이유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최적지이므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반드시 북구 강동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03. 재활용선별장 자원봉사 실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7월 18일 오전 11시 북구재활용선별장을 찾아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재활용 홍보관에서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북구 재활용 선별장 현황 및 재활용품 제출요령, 자원 재활용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실시

하였다.

재활용선별작업을 실시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재활용 선별장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직원분들의 처우개선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북구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04. 북부경찰서 설립 촉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은 9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울산 북부경찰서 설립에 관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울산 중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이 날 이원희 중부경찰서장은 북부경찰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LH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울산송정지구개발계획 및 실

시설계 변경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수선 북구의회회장은 道 경계지역이고, 新 주거단지 개발로 인한 치안 수요 증가, 행정구역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북부경찰서는 조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현재 북구의 경우 20만명의 인구와 157km²의 넓은 면적에도 북구하고 울산의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관내에 경찰서가 없다. 북구의 동쪽 3개동은 동부서가, 나머지 5개동은 중부서가 나눠 담당하고 있어 북구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북부경찰서 설립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05.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의원들은 9월 4일 오후 2시 관내 복지시설인 울산북구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을 방문하여, 생활용품과 생필품을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더불어 어려운 이웃

을 되돌아보고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 날 참석한 의원들은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줄 것”을 당부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06. 강동해역 적조 방제활동 예찰



이수선 북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9월 16일 오후 적조경보가 발령된 강동연안 피해 우려지역 현장을 직접방문 점검하는 적조 방제예찰 활동을 실시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적조방제에 나선 관계자들에게 “북구 강동지역은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해수온도에 따라 발

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안 피해 우려지역에 어업인 황토방제 선단을 구성해 집중 방제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07.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염포 신전시장 방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과 의원들은 10월 1일 오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시 열리는 염포동 신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북구청과 시장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인들의 의견과 물가조사 등 시장현황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상인 서옥순(65세)씨는 “전통시장은 그 지역 경제의 저변이고 흐름의 중심이다.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모든 경제활동에 생기가 돌고 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꽃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참여한 의원들은 “물건을 사면서 시장 상인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고, 자주 이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덤으로 주시는 게 산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이것이 인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상인들이 친구 같고 부모님 같은 분들이라 보니,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는 것이 즐거웠다”고 소감을 나눴다. 이수선 의장은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상인들은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길 것, 각자 지역에 가서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장상인들도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방문한 의원들과 직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와 상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만큼 대책마련과 상인들의 교육을 꼽았다.

08. 제150회 제1차 정례회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방문 실시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오토밸리로 2구간,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사업현장 등 북구에서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으로 북구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날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등 대상사업이 제대로 추진,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대상사업 추진에 대해 사전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현장점검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09. 관내농장 무화과 수확 자원봉사 실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의원 일동은 수확의 계절을 맞아 10일 오후 관내 농장을 방문하여 무화과 수확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자원봉사활동에는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수선 의장은 “농가에서의 봉사활동도 중요하

지만 일손이 부족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우리 주변의 일손 돕기가 필요하다”며 “오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의회차원에서 적극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북구의회는 6대 의회 개원 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전통시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 연중 지속적인 위문,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쳐나는 주민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2015년 상반기

01. 차일마을 민원 현장(오토밸리 2공구) 점검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과 이상육 운영위원장은 차일마을 주민 10여명과 함께 1월 27일 오전 오토밸리로 2공구 지역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와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차일마을 주민 엄우용(65)씨는 “오토밸리로 도로공사로 인해 평소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이 단절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통행로 박스가 기존 농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진입로마저 꺾여있고 법면의 단차가 커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오토밸리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소장 및 오토밸리로 2공구 감리단에서 참석했으며, 시공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어렵고, 주민들이 원하는 통로박스를 개설할 경우 인근 지면보다 낮게 공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배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은 공사관계자에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농로인 만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오토밸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2. 설맞이 지역아동센터 방문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의원들은 2월 11일 오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2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수선 의장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센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므로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주길 바란다.”고 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03. 부산 연제구의회 북구의회 방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장 주석수)의원 10명은 3월 9일 오후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를 방문하여 북구의회 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항들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제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북구의회 방문은 국내 비교시찰의 일환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시설 및 의회를 방문·견학하여 의정활동 정보 수집과 교류를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04.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3월 13일 오후 강동 산하해변을 찾아 겨우내 해변에 쌓여있던 스티로폼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한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최근 울산 강동권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언론과 기타 외지인들의

발길이 많은 지역인 만큼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하여 더욱 깨끗한 이미지 확립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북구의회의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은 2008년부터 실시 해오던 것으로 제6대 북구의회에서 분기별 1회씩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05. 제6대 북구의회 개원 기념식수



울산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4월 21일 오전 구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와 박천동 북구청장이 함께한 가운데 50년산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서 제6대 북구의회 개원을 기념하는 간소한 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수 후 이수선 의장은

북구의회 출범 18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8여년의 의정을 뒤 돌아 보고, 특히 제6대 북구의회가 19만 북구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푸른 정신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념사를 마쳤다.

한편, 자리를 함께한 박천동 구청장은 "작고 내실 있는 오늘 행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제고와 올바른 의회상 정립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된 것 같다"며, 북구의회 개원 제18주년을 축하했다.

06. 제153회 임시회 관내 주요 사업현장 방문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현장,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 사업현장 등 당면현안 행정사무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울산 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은 2018년까지 송정정거장 등 4개역사에 교량 38개소, 터널25개소로 총 2조 3,666억원이 투

입된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53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으로 북구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상황을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수선 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지난해 집중 폭우로 박상진호수공원 경사지에 토사가 흘러내려 산책로 데크가 유실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은 지역인 만큼 이번 사면안정화 사업으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07.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 자원봉사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6월 29일 오전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과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자원봉사활동에는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하였다.

한편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2015년 하반기

01. 제154회 제1차 정례회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 방문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7월 22일 농소하수처리시설 사업현장과 옥동 ~ 농소간 도로 공사현장 등 북구에서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농소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4,906백만원이 투입되어 2016년 2월에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옥동 ~ 농소2도로 개설 사업은 중구 성안동에서 북구 중산동까지 총 8.9km구간으로 총 179,451백만원이 투입되어 2017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인 사업이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으로 북구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상황을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등 대상사업이 제대로 추진,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대상사업 추진에 대해 사전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02. 북구의회, 경주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와 경주시의회가 양 도시 간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7월29일 오전 10시 40분 경주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연접한 지역적 특성과 조건이 서로 비슷한 두 지역의 의회가 지역적 특성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은 “경주시의회와 북구의회간 상생을 위한 우호협력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하면서 “오늘 체결하는 우호협력교류 협약으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상호 이해와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상호기관 간의 우호를 다지며 상호 의정활동 및 정보교환으로 기관간의 협력증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협약으로 양측 의회는 행정,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고 폭넓은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의회와 경주시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03. 매곡초등학교 북구의회 견학



북구 매곡초등학교 김기수 교장 및 자치의회 임원 학생 19명, 인솔 교사와 학부모 5명은 20일 오전 10시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홍보 영상물을 감상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매곡초 자치의정 회의’라는 주제를

가상으로 설정하여 실감나게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매곡초등학교 복지체험부 정희영 교사는 “관내 공공기관인 북구의회의 견학은 우리 학생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뒤 협의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지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가상회의 진행 체험을 한 홍환의(매곡초6) 학생은 “북구의회 견학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 것을 새롭게 배우고 나니 의원님들이 더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고 견학소감을 밝혔다. 이날 매곡초등학교 학생들은 의회 현장체험과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과 면담의 시간을 가진 뒤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였다.

04.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체험봉사 활동



북구의회(이수선 의장)는 9월 18일 오후 2시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현장체험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날 현장체험 봉사활동에는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작업장 관계자들과 함께 종이상자 접기와 비누포장 등의 일을 체험했다. 특히 이수선 의장은 “비누 판매포장 작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가 필요하고 반드시 큰 틀에서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05.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의원들은 9월 21일 오전 관내 복지시설인 울산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과 이화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생필품과 생활용품을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06. 중국 비성시 국제교류 대표단 북구의회 방문



중국 비성시 국제교류 대표단이 11월 5일 북구 의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북구청의 국제 교류 일환으로, 비성시위원회 서기 및 기업체 대표 등 총 6명이 11월 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북구를 방문한 데 따른 것이다.

대표단은 일정 동안 국제우호 및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에 대해 논의하고 강동권 관광 개발사업 현장 및 당사해양낚시공원을 방문하였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비성시는 1,277km² 면적에 인구 97만여명이 살고 있다. 지난 2011년 비성시의 방문을 시작으로 두 도시 간 교류가 본격화됐으며, 2015. 4. 8.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협력강화에 나서고 있다. 북구의회를 방문한 중국 비성시 대표단은 이날 의회시설을 견학하고, 의원들과 상호 관심사항, 의회운영 현황 및 의정활동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07. 김장나눔 행사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의원들은 11월 30일 오후 북구 보건소 지하주차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함께한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를 통하여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마음을 몸으로 실천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 날 참석한 의원들은 “주민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땀 흘리니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북구의회는 정기적으로 이웃을 위한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08.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 심의의결



북구의회는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10.18% 증가한 2,465억 5,041만원(일반회계 2,452억 3,311만원, 특별회계 13억 1,72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8건 7억 8,220만원을 삭감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70건으로, 감사 실시 결과 행정수요에 비해 열악한 인적구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 등 당면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사업 내실 추진, 쇄부리축제 위상 강화, 현장업무 안전사고 예방 안전매뉴얼 작성, 주거밀집지역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에 대한 지적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수도요금을 절약한 예산 절감정책,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으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점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09. 무릉산 환경정화 활동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12월 22일 오후 무릉산 정상 등산로 변에서 쓰레기 수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한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무릉산 정화활동을 통하여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행정현장의 애

로사항에 대해 직접체험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북구의회는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 봉사 및 현장 체험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 2016년 상반기

01. 이수선 북구의회 의장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이수선 북구의회 의장은 1월 7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 본부) 주최로 진행된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지난해 12월 21일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심사결과, 광역의원 40명과 기초의원 39명

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울산광역시 기초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이 선정되었다. 이 의장은 주민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목소

리에 귀 기울여 듣고 정성껏 섬기는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발휘해 구정현안을 집행부와 함께 상생하는 의회를 정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장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은 주민과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에 성심성의를 다해 이행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현안과 공약 사항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 각 공약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쟁겨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지난 해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전국 3,692명의 지방의원(광역 794, 기초 2,898)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다. 민선 6기 지방의원의 현재까지 공약이행현황 및 주민소통 활동 실적에 대한 약속대상 신청서와 공약이행 자체평가표를 받아 완료도와 주민소통 평가기준으로 20일간 엄정한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02. 의정역량강화 특별연수



북구의회는 1월 27일 ~ 29일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의원·직원 합동연수는 지방의회 운영실무,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통한 의정실무능력 함양과 선진시설 비교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통해

건전한 정책대안 제시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03.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의원들은 2월 3일 오후 관내 복지시설인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와 아나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생활용품 및 생필품을 설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설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

고, 어려움에 한 북구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04. 경주시의회, 울산 북구의회 방문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5월 13일 오후 1시 30분 북구의회와 쇄부리축제가 열리는 구청 광장, 현대자동차 시설견학 등 경주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 2015년 7월 29일 체결한 양도시 기초의회 간 ‘상호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울산

북구의회와 경주시의회 상호간 폭 넓은 문화행사 교류 추진을 위하여 북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제12회 울산 쇄부리축제’ 개막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및 경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리적

으로도 인접하였고, 동해남부선 철도, 국도 7호선 확장 등 여러 공통 현안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구와 경주시 간에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의원님들께 우리 구의 세계적인 기업 현대자동차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산업 자원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광석 광산인 달천철장으로 대표되는 우수한 철기 문화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양 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서로의 우수한 문화를 나누어 미래를 향해 상생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라고 환영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환영 행사로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환영 인사 및 홍보 동영상 상영을 하고,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견학, 울산 쇠부리축제 개막식 참석 및 행사부스 체험을 통해 북구를 대표하는 문화·산업관광을 소개하였다. 이 날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공업도시 울산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어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렇게 역동적인 북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라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수많은 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및 명품 관광도시로 널리 알려진 경주시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행사를 통해 경주시의 좋은 정책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 발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05. 제160회 제1차 정례회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 방문



북구의회(의장 이수선)는 6월 23일 쇠부리체육센터 신축 현장과 송정택지지구 내 LH현장 사무실 등 관내 주요 추진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활동은 제1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으로 북구 관내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쇠부리체육센터는 북구 천곡동 482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쇠부리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159억원이 투입된 건축물로 각종 스포츠 시설 외에도 공연장 등을 갖추 예정이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이 될 전망이다. 이 날 의원들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과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장애인 이용객에 대한 가족 샤워시설이 없는데 공사 과정에 꼭 반영시켜 소수에 장애인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며, 여러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북구 송정동 일대에 조성 중인 송정택지지구는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 및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개발 부지로서 울산 시내 단일 택지지구 중 최대 규모이다. 이 날 의원들은 송정택지지구 내 LH공사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택지지구 조성 계획 및 7번국도와 오토밸리로 접속 도로 등 송정택지지구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날 의원들은 울산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준공 시 까지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해 주고 오토밸리로, 7번국도 접속도로 등 사업 추진 중인 주변 간선 도로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6절 의정활동일지

2014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1(화) 10:00	북구의회 본회의장	임사회	○ 제147회 북구의회 임사회	
7. 1(화) 15:30	북구의회 본회의장	개원식	○ 제6대 북구의회 개원식	
7. 5(토) 14:30	태화강변	기념행사	○ 2014 울산 태화강 전국 고래배 경주대회	
7. 8(화) 14:30	매곡동 일원	현장점검	○ 매곡동 상가 침수 현장 확인	
7. 9(수) 13:4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정기행사	○ 제19회 여성주간 행사	
7. 10(목) 10:20	오도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세대공감 명랑운동회	
7. 10(목)~ 7. 18(금)	북구의회	임사회	○ 제148회 북구의회 임사회	
7. 13(일) 17:00	송정동 한솔근린공원	축제	○ 제3회 송화축제	
7. 11(수) 17:00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기자회견	
7. 13(토) 10: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결의대회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결의대회	
7. 18(금) 11:00	북구 재활용 선별장	봉사활동	○ 재활용 선별장 자원봉사	
7. 21(월) 10:00	오도밸리 복지센터	수료식	○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 양성과정 수료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21(월) 15: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수료식	○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7. 22(화) 10:00	북구의회	의회방문	○염포양정 어머니 한글교실 북구의회 방문	
7. 25(금) 10:00	북구 친환경급식센터	발표회	○친환경 무상급식 4년의 성과와 과제	
7. 25(금) 11:00	명춘근린공원	콘서트	○투게더 콘서트(효문동)	
7. 26(토) 11:00	강동산하해변	개장식	○강동해변 물놀이장 개장식	
7. 28(월) 11: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이·취임식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장 이·취임식	
7. 28(월) 14:00	북구의회	의회방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의회 방문	
7. 29(화)~ 7. 31(목)	제주도	연 수	○2014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북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특별연수	
7. 31(목) 18:00	북구청 3층 상황실	간담회	○구청 주요현안사업 추진 관련 국회의원과 의 간담회	
8. 1(금) 15:30	북구의회	의회방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의회 방문	
8. 1(금) 13:00	울산광역시청	간담회	○시장·시의장과의 간담회	
8. 13(수) 10:00	북구의회 의장실	민원상담	○농소3동 주민 민원상담	
8. 15(금)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박상진 의사 추모제	
8. 18(월) 09:00	북구청 지하 충무상황실	을지훈련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 참석	
8. 18(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북구의회 조례입법 연구회	
8. 19(화) 13:00	북구의회	견 학	○매곡신천여성회 어린이 북구의회 견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8. 19(화) 16:0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울산현대축구단 송동진 단장 북구의회 방문	
8. 21(목) 13:00	울산공항	을지훈련	○울산공항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석	
8. 25(월) 09:3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교 육	○노인자원봉사자클럽 소양교육	
8. 25(월) 14:00	북구의회	견 학	○염포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녀 북구의회 견학	
8. 25(월) 15: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보고회	○2014년 동북지위원회 중간평가 보고회	
8. 27(수) 15:00	북구문예회관 1층 다목적실	워크숍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공무원 공동 워크숍	
8. 28(목)~ 9. 4(목)	북구의회	임사회	○제149회 북구의회 임사회	
8. 31(일) 16:00	문수경기장	정기행사	○K리그 북구데이 행사	
9. 1(월) 10: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9월 의원 간담회	
9. 1(월) 16:30	울산중부 경찰서	기관방문	○울산중부경찰서 방문	
9. 4(목) 13:00	메아리복지원	위 문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9. 5(금) 10:00	북구의회	견 학	○동천고등학교 학생 북구의회 견학	
9. 16(화) 14:00	강동정자해변	현장방문	○강동해역 적조방제 예찰	
9. 17(수) 14:00	농소농협 대강당	설명회	○국도7호선 확장관련 주민 설명회	
9. 19(금) 16:30	북구의회	견 학	○농서초등학교 학생 북구의회 견학	
9. 20(토) 14:0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정기행사	○북구 청소년예술제 참관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9. 23(화) 11:00	정자 어업인쉼터	개소식	○ 정자 어업인쉼터 개소식	
9. 23(화) 14:00	오토밸리 복지센터	박람회	○ 울산 북구 일자리 · 인생이모작 박람회	
9. 23(화) 16:00	꿈쟁이 작은도서관	개관식	○ 꿈쟁이 작은도서관 개관식	
9. 25(목) 14:00	차일경로당, 북구 노인지회	위 문	○ 차일경로당 및 북구 노인지회 위문 방문	
9. 25(목) 19:0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정기행사	○ 2014 무룡예술제 참관	
9. 26(금) 09:30	호계 · 매곡지 구 현장부지	기공식	○ 호계 · 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	
9. 27(토) 09: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 사회복지시설 · 기관 한마음 체육대회	
9. 27(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클린 환경 나눔장터 참석	
9. 27(토) 17:00	호계역 광장	정기행사	○ 제3회 호계역과 흙골의 소리나눔 축제	
9. 28(일) 10:30	천곡중학교 체육관	정기행사	○ 농소3동 경로 잔치	
9. 28(일) 09:30	메카볼링센터	정기행사	○ 북구생활체육회장기 볼링대회	
9. 29(월) 10:00	북구의회	의회방문	○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북구의회 방문	
9. 29(월)~ 10. 13(월)	북구의회	정례회	○ 제15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9. 29(월) 13:30	북구의회 의장실	면 답	○ 환경미화원 북구노조 임원 면담	
9. 29(월) 16:00	더케이호텔 경주	정기행사	○ 2014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0. 1(수) 13:00	신전시장	현장방문	○ 염포동 신전시장 격려 방문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 5(일) 10:00	송정초등학교 체육관	정기행사	○ 송정동 경로잔치	
10. 6(월) 10:00	북구의회	의회방청	○ 아이쿱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북구의회 방청	
10. 7(화) 09:00	효문동 내 텃밭	현장활동	○ 새마을 도시농업 고구마캐기 현장체험	
10. 8(수) 09:00	강동산하지구 의 2개소	현장방문	○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방문(강동산하지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오토밸리로 2공구)	
10. 8(수)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늦깎이 학생의 행복골든벨	
10. 10(금) 10:00	북구의회	의회방청	○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북구의회 방청	
10. 11(토) 09:00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정기행사	○ 2014 경로당 회원 웃놀이 및 노래자랑 대회	
10. 12(일) 09:0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0. 13(월)~ 10. 15(수)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 등	합동연수	○ 2014 하반기 북구의회 의원·직원 합동연수	
10. 16(목) 10: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 2014 주민자치위원 어울림 한마당	
10. 17(금) 12:00	양정생활 체육공원	정기행사	○ 2014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참석	
10. 28(화) 13:00	북구의회	의회방문	○ 올리브어린이집 북구의회 방문	
10. 29(수) 10:30	한국자산 관리공사	기관방문	○ 천곡마을회관 부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10. 30(목) 09:00	매곡중학교 체육관	기관방문	○ 매곡중학교 매향축제 축하 방문	
10. 30(목) 13:0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 북울산JC 청년회의소 북구의회 방문	
11. 1(토) 09: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농도한마당 큰잔치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 3(월) 15:00	북구청 1층 로비	정기행사	○ 찾아가는 한글교실 가을전시회	
11. 4(화) 11:00	북구의회	의회방문	○ 터키 이즈미트시 시장 북구의회 방문	
11. 6(목) 16:00	북구의회	토론회	○ 친환경 무상급식 토론회	
11. 8(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2014 울산 북구 책잔치 및 나눔장터	
11. 8(토) 13:30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정기행사	○ 청소년 직업체험 축제 꿈꾸Job	
11. 8(토) 14:00	염포동 주민센터	정기행사	○ 제1회 삼포축제	
11. 8(토) 15:30	원지 경로당	정기행사	○ 원지경로당 경로잔치	
11. 10(월) 14:00	관내 무화과 농장	정기행사	○ 무화과 수확 자원봉사활동	
11. 11(화) 10:00	문수국제 양궁장	정기행사	○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체육대회	
11. 12(수) 10:00	오토밸리 컨벤션웨딩	정기행사	○ 2014 북구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교육	
11. 14(금) 10:30	화동못 수변공원	정기행사	○ 2014 그린리더 힘 다지기 행사	
11. 14(금) 11: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4 보훈가족 합동 위로연	
11. 16(일) 14:00	매곡중학교 체육관	정기행사	○ 2014 농소2동 한마음 큰잔치 및 주민자치 센터 발표회	
11. 19(수) 14:00	북구의회	의회방문	○ 북구 어린이집 회장단 북구의회 방문	
11. 20(목)~ 12. 22(월)	북구의회	정례회	○ 제1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 27(목)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 제3대학 제7기 졸업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 27(목) 19: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 북구지역아동센터 후원의 밤	
12. 1(월) 11:00	북구보건소 지하주차장	정기행사	○ 북구 새마을회 김장나눔 행사	
12. 1(월) 13:00	북구문예회관 1층 다목적실	정기행사	○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축제	
12. 1(월) 13:0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 친환경급식연대모임 북구의회 방문	
12. 2(화) 10:00	북구의회 의장실	전달식	○ 2014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12. 2(화) 16:0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 양정동 주민 북구의회 방문	
12. 4(목) 13:30	오토밸리 북지센터	정기행사	○ 2014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12. 9(화) 09:3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 7765부대 2대대장 북구의회 방문	
12. 10(수) 11:00	북구의회 의장실	전달식	○ 희망2015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	
12. 10(수) 11:30	북구의회	의회방문	○ 2014 신규공무원 북구의회 방문	
12. 16(화) 14:0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정기행사	○ 2014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12. 17(수) 11:00	북구의회	의회방문	○ 중국 비성시 관계공무원 북구의회 방문	
12. 24(수)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정기행사	○ 2014 북구의회 종무식	
12. 29(월)~ 12. 30(화)	경주시 일원	합동연수	○ 2014 하반기 의원·직원 합동연수	
12. 31(수) 11: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4 북구청 집행부 종무식	

2015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 1(수) 07:30	당사해변	정기행사	○ 2015 당사 해맞이 행사	
1. 20(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1월 의원 간담회	
1. 23(금) 18: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이·취임 식	○ 자연보호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1. 26(월) 13:30	차일마을	현장점검	○ 차일마을 민원 지역 현장점검	
1. 29(목)~ 2. 11(수)	북구의회	임사회	○ 제152회 북구의회 임사회	
2. 3(화) 16:00	북구의회	의회방문	○ 중산동 화훼농가 대표 북구의회 방문	
2. 9(월) 13:30	북구의회	의회방문	○ 천곡동 주민 북구의회 방문	
2. 11(수) 13: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2월 의원 간담회	
2. 11(수) 15:00	관내 지역아동 센터 2개소	위문방문	○ 설맞이 지역아동센터 위문 방문	
2. 12(목) 14:00	성혜마을 경로당	준공식	○ 성혜마을 경로당 준공식	
2. 17(화) 07:00	강동정자시장	위문방문	○ 설맞이 강동정자시장 방문	
2. 17(화) 07:00	북구의회	의회방문	○ 한일이화어린이집 북구의회 견학	
3. 3(화)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 제3대학 제8기 입학식	
3. 4(수) 11: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노인대학 입학식	
3. 5(목) 18:00	매곡천 일원 등 동별 1개소	정기행사	○ 정월대보름 행사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 6(금)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이·취임 식	○북구 새마을회 회장 이·취임식	
3. 9(월) 13:00	북구의회	의회방문	○부산 연제구의회 북구의회 방문	
3. 11(수) 11:00	북구의회	협약식	○어린이집-경로당 1·3세대 결연 협약식	
3. 12(목) 10:00	북구문예회관 1층 다목적실	수료식	○제2기 세대공감창의놀이터지기 양성과정 수료식	
3. 12(목) 10:00	강동산하해변	봉사활동	○강동산하해변 자원봉사 활동	
3. 17(화)~ 3. 20(금)	제주도	합동연수	○2015 상반기 의원·직원 합동연수	
3. 25(수) 10:00	시례동 산51-2 일원	정기행사	○2015 나무심기 행사	
3. 27(금)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한국자유총연맹 울산북구지회 결성 및 초 대회장 취임식	
3. 27(금) 11:0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울산대교 및 엮포터널 통행료 주민대책위 원회 회원 북구의회 내방	
4. 3(금) 10:30	농소농협 벼 육묘장	정기행사	○제2회 풍년농사 기원 및 화합의 장 행사	
4. 4(토) 09:30	엮포동 일원	정기행사	○제3회 엮포사랑 벚꽃길 등반대회	
4. 4(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2015 제1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4. 12(일)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자율방법연합회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4. 13(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4월 의원 간담회	
4. 16(목) 16: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2015 북구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4. 18(토) 19:00	호계시장	정기행사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4. 19(일) 12:00	염포초등학교	정기행사	○ 염포동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4. 19(일) 12:00	천곡동 산 71	추모식	○ 4·19 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행사	
4. 19(일) 12:00	북구의회 의장실	위촉식	○ 2015 결산검사 심의위원 위촉식	
4. 20(월)~ 5. 1(금)	북구의회	임사회	○ 제153회 북구의회 임사회	
4. 20(월) 14:00	북구의회	의회방문	○ 천곡동 주민 북구의회 내방	
4. 23(목) 12:00	양정경로당	정기행사	○ 양정경로당 경로 잔치	
4. 23(목) 16:00	매곡교 일원	정기행사	○ 제16회 기박산성 의병문화제	
4. 28(화) 16:00	송정박상진호수 공원 외 1개소	현장방문	○ 구정 주요 사업추진현장 방문(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사업, 송정박상진호수공원)	
4. 30(목)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5 주민자치위원 어울림 한마당	
5. 1(금) 10: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5월 의원 간담회	
5. 5(화)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2015 북구 어린이 큰잔치	
5. 6(수) 09:30	북구의회	의회방문	○ 동천고등학교 학생 북구의회 방문	
5. 8(금) 10:00	북구 노인복지관	정기행사	○ 2015 노인복지관 어버이날 기념행사	
5. 10(일) 07:00	달천운동장	정기행사	○ 농소3동 편백숲 걷기대회	
5. 10(일) 10:30	매곡초등학교	정기행사	○ 농소2동 한마음 큰잔치 생활체육대회	
5. 11(월) 10:30	북구청 광장	개관식	○ 제11회 북구 봄꽃트레이야기 개관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 12(화) 10:00	북구문예회관 2층 다목적실	정기행사	○ 2015 어린이집 부모교육	
5. 13(수) 16:00	매곡 월드 메르디앙APT	정기행사	○ 자원봉사 홈타운 ‘21호점’ 현판 제막식	
5. 15(금)~ 5. 17(일)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제11회 울산쇠부리축제	
5. 26(화) 10:00	북구의회	견 학	○ 북구청사 어린이집 어린이 북구의회 견학	
5. 29(금) 15: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5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	
5. 29(금) 12:00	양정생활 체육공원	정기행사	○ 2015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5. 29(금) 14:00	울산대교	준공식	○ 울산대교 준공식	
5. 30(토) 13:30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정기행사	○ 청소년 직업체험축제 꿈꾸Job	
6. 2(화) 10:00	예은어린이집	현장체험	○ 예은어린이집 일일보육교사 체험	
6. 2(화) 11:30	북구의회	의회방문	○ 시 교육청 유아교육장학관 및 장학사 북구 의회 방문	
6. 5(금) 13:3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 관내 기업인 북구의회 내방	
6. 5(금) 14:3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 농소농협주부대학생 북구의회 내방	
6. 9(화) 14:00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개소식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개소식	
6. 18(목) 15:00	농소3동 일원	재난대비 훈련	○ 풍수해 대비 양수기 실제가동훈련	
6. 22(월) 10:00	북구 관내 텃밭	봉사활동	○ 북구 새마을회 텃밭 감자수확 봉사활동	
6. 18(목) 15:00	농소3동 일원	재난대비 훈련	○ 풍수해 대비 양수기 실제가동훈련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6. 29(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6월 의원 간담회	
6. 29(월) 11:30	북구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노인복지관 행복식당 급식 자원봉사 활동	
7. 2(목) 13:30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정기행사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7. 10(금)~ 7. 24(금)	북구의회	정례회	○제15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7. 10(금) 18:00	매곡초등학교	기관방문	○매곡 리더십캠프 방문	
7. 13(월) 13:30	시청자미디어 센터 신축현장	기공식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기공식	
7. 18(토) 11:00	양정생활 체육공원	개장식	○양정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개장식	
7. 18(토) 14:00	극동스타클래스 APT	개소식	○극동푸른작은도서관 개소식	
7. 18(토) 11:00	농소하수처리시 설 현장 외 1개소	현장방문	○관내 주요 추진사업 현장방문(농소하수처리시설 신축, 농소-옥동 간 도로)	
7. 24(금)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7월 의원 간담회	
7. 24(금) 13:30	북구의회	견 학	○약수초등학교 학생 북구의회 견학	
7. 24(금) 20:00	명춘근린공원	정기행사	○효문동 투게더콘서트	
7. 25(토) 11:00	강동산하해변	개장식	○강동해변 물놀이장 개장식	
7. 27(월)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교 육	○직원 폭력예방 교육	
7. 27(월) 11:00	당사해양 낚시공원	개장식	○강동 해양레저체험마을 개장식	
7. 28(화) 10:3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농소2동 통장 북구의회 방문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29(수) 11:00	경주시의회 의장실	협약식	○울산 북구의회-경주시의회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	
8. 1(토) 20:00	강동산하해변	정기행사	○강동 해변가요제	
8. 3(월) 16:00	동산마을회관	간담회	○동산마을 진입로관련 주민 간담회	
8. 15(토) 20:00	염포초등학교	정기행사	○염포동 투게더콘서트	
8. 17(월) 14:00	북구의회 의장실	민원상담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관련 민원상담	
8. 18(화) 15:00	북구청 지하 충무상황실	현장방문	○을지훈련 유관기관 근무자 격려 방문	
8. 20(목) 10:30	북구의회	견 학	○매곡초등학교 자치의회 임원 북구의회 견학	
8. 21(금) 16:00	북구의회	견 학	○마을공동체학교 참여 초등학생 북구의회 견학	
8. 21(금) 20:00	상안초등학교	정기행사	○농소3동 투게더콘서트	
8. 22(토) 20:00	양정생활 체육공원	정기행사	○양정동 투게더콘서트	
8. 26(수) 16:00	달천마을회관	간담회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관련 주민 간 담회	
9. 5(토) 09:0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울산광역시·구·군 공무원 체육대회	
9. 7(월) 10:30	쇠부리체육센 터 신축현장	기공식	○쇠부리체육센터 기공식	
9. 8(화) 14:0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정기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9. 8(화) 15:00	오치골 경로당	개소식	○오치골 경로당 개소식	
9. 8(화)~ 9. 21.(월)	북구의회	임사회	○제155회 북구의회 임사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 고
9. 9(수) 10:2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5 1·3세대 신나는 명랑운동회	
9. 12(토) 17:30	쇠부리 문화거리	정기행사	○ 농소3동 어울림 한마당	
9. 12(토) 18:30	정자항 남방파제	정기행사	○ 강동 섣다리 축제	
9. 12(토) 10: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제4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9. 12(토) 16:00	양정생활 체육공원	정기행사	○ 양정동 한마음 체육대회	
9. 18(금) 13:30	북구장애인 보호작업장	현장활동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체험활동	
9. 19(토) 09: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 사회복지시설·기관 한마음 대회	
9. 19(토) 16:30	문수축구 경기장	정기행사	○ K리그 동구·북구 Day 행사	
9. 21(월) 10:5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9월 의원 간담회	
9. 21(월) 14:00	이화지역아동 센터 외 1개소	위문방문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9. 24(목) 14:00	강동 당사항	현장활동	○ 붉은솜땀이 종묘 방류 활동	
9. 30(수) 10:30	천곡동 농지 일원	평가회	○ 벼품종 비교 시범표 종합평가회	
10. 11(일) 09:00	농소운동장	평가회	○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0. 14(수)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평가회	○ 10월 의원 간담회	
10. 14(수) 14:00	북구노인복지 관 희망공원	정기행사	○ 북구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10. 15(목)~ 10. 16(금)	예천, 단양 일원	견 학	○ 2015 하반기 선진지 견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 16(금) 18: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화합·열정 한마당 음악회	
10. 16(금) 18:30	달천운동장	정기행사	○ 북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10. 30(금) 12:00	무릉운동장	정기행사	○ 2015 하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10. 31(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제2회 울산 북구 책잔치	
11. 1(일) 09:30	정자항 남방과제	정기행사	○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11. 3(화)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5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11. 4(수) 17: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 중산일반산업단지 협의회 창립 기념식	
11. 5(목) 11:00	북구의회	정기행사	○ 중국 비성시 관계공무원 북구의회 내방	
11. 7(토) 11: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제16회 북구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11. 9(월) 10:00	북구의회 의장실	민원상담	○ 화동마을 소규모급수시설 관련 민원상담	
11. 9(월) 10: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5 그린리더 힘 다지기 행사	
11. 10(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11월 의원 간담회	
11. 11(수) 09:00	서부시민운동 장	정기행사	○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 체육대회	
11. 12(목) 14:00	농소2동 주민센터	준공식	○ 농소2동주민센터 회의실 준공식	
11. 15(일) 07:00	동천초등학교	정기행사	○ 2015 동천 뚝방길 달리기대회	
11. 17(화) 10:00	오토밸리 컨벤션웨딩	정기행사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 17(화) 14:00	북구의회 의장실	의원상담	○조례 상담을 위한 울산중부경찰서 경찰관 북구의회 내방	
11. 18(수) 10:0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정기행사	○농소2동 어르신 한마음 큰잔치	
11. 20(금)~ ~12. 23(수)	북구의회	정례회	○ 제15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 22(일) 11:00	진장파크골프 장	개장식	○ 진장파크골프장 개장식	
11. 24(화) 12:10	매곡푸르지오 1차 APT	협약식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협약 및 현판식	
11. 24(화) 19: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북구지역아동센터 후원의 밤	
11. 29(일) 10:00	상안테니스장	개장식	○상안테니스장 개장식	
11. 30(월)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축제	
11. 30(월) 11:30	북구보건소 지하주차장	정기행사	○2015 김장나눔 행사	
12. 1(화) 13:3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2015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12. 1(화)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 제3대학 제8기 졸업식	
12. 4(금) 17:00	오토밸리 컨벤션웨딩	정기행사	○2015 바르게 살기 운동	
12. 4(금) 18:3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정기행사	○쇠부리보존회 송년의 밤	
12. 5(토) 10:00	송정동주민센 터 주차장	정기행사	○송정동 김장담그기 행사	
12. 10(목) 19:00	롯데마트 진장점	정기행사	○2015 해병대전우회 북구지회 송년의 밤	
12. 11(금) 16:00	북구문예회관 1층 다목적실	토론회	○울산 쇄부리 역사, 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2. 15(화) 11:00	북구의회 의장실	정기행사	○ 201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12. 17(목) 11:30	오토밸리 컨벤션웨딩	정기행사	○ 2015 자활사업 송년회	
12. 17(목) 15:00	울산광역시 의회 대회의실	수상식	○ 장애인의정모니터 우수의원 시상식	
12. 17(목) 18:30	오토밸리 컨벤션웨딩	정기행사	○ 2015 북구생활체육 유공자 시상 및 체육인 의 밤	
12. 18(금) 17:30	울산MBC 컨벤션웨딩	정기행사	○ 제5회 북구 보육인의 밤	
12. 21(월) 14:0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정기행사	○ 201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12. 22(화) 10:30	무룡산	봉사활동	○ 4분기 무룡산 환경정비 활동	
12. 22(화) 14:00	북구노인복지관	준공식	○ 6.25 참전유공자 선양비 준공식	
12. 22(화) 14:00	울산 롯데호텔	수상식	○ 2015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표창	
12. 24(목)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정기행사	○ 2015 북구의회 종무식	
12. 29(화) 10:00	중구 문화의전당	수상식	○ 제191차 전국 시·도 대표회의 의정봉사 상 수상	
12. 31(목) 11:30	북구청 구내식당	정기행사	○ 2015 북구청 종무식	

2016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 6(수)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6 구정발전 기원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	
1. 7(목) 14:00	서울 영등포아트홀	수상식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1. 12(화) 10:00	북구청 주차장	참여활동	○ 북한 핵실험 반대 1인 릴레이	
1. 14(목) 19: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보고회	○ 2015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1. 19(화) 10:00	북구의회 의장실	민원상담	○ 온누리교회 신축 허가 관련 민원상담	
1. 20(수)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1월 의원 간담회	
1. 20(수) 15:20	북구청 임시주차장	재난대비 행사	○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작업 숙달 훈련	
1. 21(목) 10:00	북구의회 의장실	의회방문	○ 신임 울산중부경찰서장 북구의회 내방	
1. 21(목) 15: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설명회	○ 2027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방향 설명회	
1. 25(월) 14:00	울산북구 시니어클럽	개소식	○ 울산북구시니어클럽 개소식	
1. 27(수)~ 1. 29(금)	제주도	합동연수	○ 2016 의원·직원 합동연수	
2. 3(수) 10: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2월 의원 간담회	
2. 3(수) 10:30	호계노타나무 지역아동센터 외 1개소	위문방문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2. 12(금) 14:00	북구의회 의장실	민원상담	○ 북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도로 개설 관련 민원상담	
2. 17(수)~ 2. 29(월)	북구의회	임시회	○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 22(월) 11:00	오토벨리 복지센터	이·취임식	○북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2. 22(월) 17:00	매곡교 일원 등 동별 1개소	정기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2. 25(목) 13:30	북구청 주차장	재난대비 행사	○폭설대비 신규구입 제설 차량 성능 점검	
2. 26(금) 16:00	매곡119 안전센터	개청식	○매곡119안전센터 개청식	
2. 29(월) 15:00	북구의회 의장실	위촉식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3. 3(목)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이·취임식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3. 8(화)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제3대학 제9기 입학식	
3. 9(수)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개강식	
3. 10(목) 13:30	산음수변공원	개장식	○산음수변공원 개장식	
3. 10(목) 15:00	농소수질 개선사업소	준공식	○농소수질개선사업소 준공식	
3. 11(금) 11: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협약식	○1·3세대 행복만남 경로당-어린이집 결 연 협약식	
3. 17(목) 14:00	화봉경로당	개강식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개강식	
3. 30(수) 10:30	상안동 산 57 일원	정기행사	○2016 나무심기 행사	
3. 31(목) 14:00	명춘둔치 일원	정기행사	○2016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	
4. 5(화) 11:00	호봉사 일원	정기행사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위령제	
4. 15(금) 10:30	농소농협 벼 육묘장	정기행사	○풍년농사 기원 및 화합의 장 행사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4. 15(금) 13:3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교 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4. 19(화) 11:00	천곡동 산 71	정기행사	○4.19 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행사	
4. 21(목)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창단식	○북구청 장애인 수영단 창단식	
4. 23(토) 17:00	매곡교 일원	정기행사	○ 제17회 기박산성 의병문화제	
4. 24(일)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자율방법연합회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4. 24(일) 10:30	명춘둔치 일원	걷기대회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걷기대회	
4. 24(일) 11:00	달천운동장	정기행사	○농소3동 명랑운동회	
4. 24(일) 12:00	화봉초등학교 체육관	정기행사	○ 제9회 송정동민 체육대회	
4. 25(월) 14:00	평창리비에르 3차APT 경로당	현판식	○우리마을 치매사랑방 현판식	
4. 27(수) 14:00	매곡도서관 신축현장	기공식	○매곡도서관 기공식	
4. 28(목)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4월 의원 간담회 및 조례입법연구회	
4. 28(목) 18:00	오토밸리 컨벤션웨딩	이·취임식	○북구체육회장 이·취임식	
4. 29(금) 10:30	무릉운동장	정기행사	○북구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5. 1(일) 10:00	이화중학교	정기행사	○농소2동 건강걷기 대회	
5. 2(월) 09:30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개장식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5. 2(월) 11:30	강동동 농가 3개소	현장방문	○로컬푸드 친환경 재배농가 현장방문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 3(화) 11:00	북구 노인복지관	정기행사	○어버이날 기념 효사랑 카네이션 축제	
5. 4(수) 09:0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북구 노인 건강 체육대회	
5. 4(수) 17:30	북구의회 의장실	민원상담	○숙박시설 건축 허가 관련 민원상담	
5. 5(목) 09: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북구 어린이 큰잔치	
5. 10(화) 16:00	울산동부 경찰서	기관방문	○울산동부경찰서 치안정책 설명회 방문	
5. 10(화)~ 5. 24(화)	북구의회	임사회	○제159회 북구의회 임사회	
5. 5(목) 09:30	북구청 광장	개관식	○제12회 봄꽃뜨레 이야기 개관식	
5. 13(금) 14:00	북구청 광장, 현대자동차	초청행사	○경주시의회 문화교류 초청 행사	
5. 13(금) 19: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제12회 울산 쇄부리축제	
5. 15(일) 10:00	정자항 남방파제	정기행사	○울산 해파랑길 걷기대회	
5. 20(금) 12: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2016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5. 21(토) 09:00	양정생활 체육공원	정기행사	○양정동 체육대회	
5. 21(토) 11:0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해병대 전우회 축구대회	
5. 21(토) 13:00	화봉공원	정기행사	○제3회 청소년 직업체험 축제 꿈꾸Job	
5. 22(일) 07:00	동천초등학교	정기행사	○동천 뚝방길 달리기대회	
5. 22(일) 10:30	염포초등학교	정기행사	○염포동 체육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 22(일) 13: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 효문동 체육대회	
5. 23(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시례새터마을 도로개설 민원 관련 간담회	
5. 23(월) 15: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5월 의원 간담회	
5. 24(화) 15: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6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	
5. 28(토) 11: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제5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5. 31(화)~ 6. 2(목)	광명, 음성, 충주, 고령	견 학	○ 2016 상반기 선진지 견학	
6. 9(목) 11:00	강동푸르지오 2차 APT	개원식	○ 국공립 바다별 어린이집 개원식	
6. 9(목) 17:30	북구의회 의장실	설명회	○ 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사업설명회	
6. 10(금)~ 6. 24(금)	북구의회	정례회	○ 제16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6. 10(금) 08:00	농소1동 주민센터	정기행사	○ 호계공설시장 2기 상인대학 입학식	
6. 12(일) 10:00	강동산하해변	정기행사	○ 강동해변 몽돌마라톤 대회	
6. 17(금) 19:30	무룡산 매봉재	정기행사	○ 무룡산 달빛 야경 음악회	
6. 23(목) 10:30	쇠부리체육센터 , 송정택지지구	정기행사	○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방문	
6. 24(금) 10:4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 6월 의원 간담회	
6. 29(수) 10:00	북구의회	임사회	○ 제161회 북구의회 임사회	



•제6대 전반기 의정백서•

.....

부 록

1. 역대 의장단 명단
2. 초대의원 명단
3. 초대의원 사진
4. 제2대 의원 명단
5. 제2대 의원 사진
6. 제3대 의원 명단
7. 제3대 의원 사진
8. 제4대 의원 명단
9. 제4대 의원 사진
10. 제5대 의원 명단
11. 제5대 의원 사진
12.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13. 역대 구청장 명단
14.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15.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강 동 동	김 성 보	1937. 4. 4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8.7.7 ~2000.2.21	
"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송 정 동	김 진 영	1964.10.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염 포 동	하 인 규	1959. 9.17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류 재 건	1961. 2. 5	2006.7.3 ~2008.7.2	
제4대 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윤 임 지	1952.10.15	2008.7.3 ~2010.6.30	
제5대 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안 승 찬	1963. 5.29	2010.7.1 ~2012.6.30	
제5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윤 치 용	1966.11.18	2012.7.1. ~2014.6.30	
제6대 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이 수 선	1961.12.7	2014.7.1. ~2016.6.30	

□ 부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1998.7.7 ~2000.2.21	
"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강 동 동	박 광 식	1955.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농소1동	이 재 경	1956. 4.25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윤 임 지	1952.10.15	2006.7.3 ~2008.7.2	
제4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문 석 주	1962. 8.27	2008.7.3 ~2010.4.21	
"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류 인 목	1961.12.30	2010.4.22 ~2010.6.30	
제5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정 윤 석	1960. 9.20	2010.7.1 ~2012.6.30	
제5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이 수 선	1961.12.7	2012.7.1. ~2014.6.30	
제6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강 진 희	1970.5.12	2014.7.1. ~2016.6.30	



초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교육사회
3	의 원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7.7.15 ~1998.6.30	운영 · 건설
4	의 원	농소동	한성두	1941. 3.31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 · 강동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7.7.15 ~1998.6.30	운영 · 내무
6	의 원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7.7.15 ~1998.6.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간사) · 운영
8	의 원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8.3.2 ~1998.6.30	환경수도 (간사) · 운영

※ 초대 울산광역시회의의원 겸직

초대의원 사진

□ 의장단

강 동 동(면)



의장 김 성 보

송 정 동



부의장 윤 두 환

□ 의 원

제10선거구



이 상 원

농 소 동(읍)



한 성 두

진 장 동



정 석 수

효 문 동



이 병 우

양 정 동



진 한 길

염 포 동



조 승 수



제2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7.1 ~2000.2.21	전반기
2	"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3	"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4	부의장	강동동	박광식	1955.11.15	1998.7.1 ~2002.6.30	
5	의 원	농소1동	김수현	1957.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2동	강혁진	1961.10. 1	1998.7.1 ~2002.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1998.7.1 ~2002.6.30	
8	"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0.6.8 ~2002.6.30	보궐선거 당선
9	"	염포동	윤종오	1963. 8.14	1998.7.1 ~2002.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제2대 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윤 두 환

농 소 3 동



의장 박 춘 환

양 정 동



의장 진 한 결

강 동 동



부의장 박 광 식

□ 의 원

농 소 1 동



김 수 현

농 소 2 동



강 혁 진

효 문 동



류 재 건

송 정 동



김 진 영

염 포 동



윤 중 오



제3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2.7.1 ~2006.6.30	전반기 의장
2	"	염포동	하인규	1959. 9.17	2002.7.1 ~2006.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2동	김재근	1958. 9.11	2002.7.1 ~2006.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1동	이재경	1956. 4.25	2002.7.1 ~2006.6.30	후반기 부의장
5	의원	농소3동	김대영	1960. 2. 2	2002.7.1 ~2006.4.1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강동동	윤임지	1952.10.15	2002.7.1 ~2006.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2002.7.1 ~2006.6.30	
8	"	양정동	류인목	1961.12.30	2002.7.1 ~2006.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3대 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김 진 영

염 포 동



의장 하 인 규

농 소 2 동



부의장 김 재 근

농 소 1 동



부의장 이 재 경

□ 의 원

농 소 3 동



김 대 영

강 동 동



윤 임 지

효 문 동



류 재 건

양 정 동



류 인 목



제4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재건	1961. 2. 5	2006.7.1 ~2010.6.30	전반기 의장
2	"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윤임지	1952.10.15	2006.7.1 ~2010.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윤임지	1952.10.15	2006.7.1 ~2010.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2동, 농소3동	문석주	1962. 8.27	2006.7.1 ~2010.4.21	후반기 부의장
5	"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인복	1961.12.30	2006.7.1 ~2010.6.30	후반기 부의장
6	의원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박병석	1966. 9.25	2006.7.1 ~2010.6.30	
7	"	농소2동, 농소3동	이은영	1966.10.16	2006.7.1 ~2010.3.22	
8	"	비례대표	이영희	1963. 7.22	2006.7.1 ~2010.6.30	

제4대 의원 사진

□ 의장단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의장 류 재 건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의장 윤 임 지

농소2동, 농소3동



부의장 문 석 주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류 인 목

□ 의 원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박 병 석

농소2동, 농소3동



이 은 영

비례대표



이 영 희



제5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안승찬	1963. 5. 29.	2010.7.1 ~2014.6.30	전반기 의장
2	"	농소2동, 농소3동	윤치용	1966. 11. 18.	2010.7.1 ~2014.6.30	후반기 의장 전반기 운영위원장
3	부의장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정윤석	1960. 9. 20.	2010.7.1 ~2014.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2동, 농소3동	이수선	1961. 12. 7.	2010.7.1 ~2014.6.30	후반기 부의장
5	의원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강진희	1970. 5. 12.	2010.7.1 ~2014.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이홍걸	1961. 2. 10.	2010.7.1 ~2014.6.30	
7	"	비례대표	이혜경	1969. 3. 21.	2010.7.1 ~2014.6.30	



제5대 의원 사진

□ 의장단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의장 안 승 찬

농소2동, 농소3동



의장 윤 치 용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정 윤 석

농소2동, 농소3동



부의장 이 수 선

□ 의 원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강 진 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이 홍 겅

비례대표



이 혜 경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97.7.15 이전)

연 번	직위	선거구	성 명	생년 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원	울산시제 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5.7.1 ~1997.7.14	제5대 경남도회의의원 운영·내무위원
2	의장	울주군 농소읍	한성두	1941. 3.31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울주군의회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의원	울주군 강동면	김성보	1937. 4.4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원
4	"	중 구 송정동	윤두환	1955. 3.5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교육사회위원
5	"	중 구 진장동	김두현	1936. 4.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원
6	"	중 구 효문동	한기찬	1938. 4.3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건설위원
7	운영 위원장	중 구 양정동	류재락	1945. 8.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
8	의원	중 구 염포동	김춘길	1942. 10.10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
9	"	중 구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의원 운영·건설위원
10	내무 위원장	중 구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의원 내무위원장
11	의 원	중 구 양정동	진한걸	1953. 11.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의원 도시경제위간사·운영위원
12	"	중 구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의원 환경수도위간사·운영위원

역대 구청장 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직무대행	황 성 환	1948. 2.29	1997.7.15~1998.6.30	
2	민선초대	조 승 수	1963. 1.22	1998.7.1~2002.6.30	
3	민선제2대	이 상 범	1957. 4.15	2002.7.1~2006.5.24	
4	민선제3대	강 석 구	1960. 9.18	2006.7.1~2010.6.30	
5	민선제4대	윤 종 오	1963. 8.14	2010.7.1~2014.6.30	
6	민선제5대	박 천 동	1966. 3.20	2014.7.1~현재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사무 국장	지방 서기관	이종영	1939. 9.27	1997.7.15~1998.9.30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 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백용한	1946.12.30	1998.10.1~2001.1.15	"
3	"	"	최종식	1952.10.20	2001.1.16~2004.3.5	
4	"	"	송태호	1955. 1.10	2004.3.6~2006.1.11	
5	"	"	이상헌	1955. 2. 6	2006.1.12~2007.7.26	
6	"	"	홍장희	1956. 7.22	2007.7.27~2009.7.19	
7	"	"	윤규태	1959. 5.10	2009.7.20~2010.7.22	
8	"	"	이차범	1955. 9.17	2010.7.23~2011.12.31	
9	"	"	강걸수	1957.11. 5	2012.1.1~2014.8.6	
10	"	"	이태희	1959. 9.23	2014.8.7~현재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무관	백용한	1946.12.30	1997.7.15 ~1998.9.30	
2	"	"	이차호	1960.10.26	1998.10.1 ~1999.9.30	
3	"	"	성낙화	1952. 5. 5	1999.10.1 ~2001.1.15	
4	"	"	김찬수	1955. 9.28	2001.1.16 ~2003.1.27	
5	"	"	이상찬	1971.12.25	2003.1.28 ~2006.1.8	
6	"	"	박민수	1957. 4.27	2006.1.12 ~2008.7.20	
7	"	"	윤규태	1959. 5.10	2008.7.21 ~2009.7.19	
8	"	"	김규석	1956. 7.26	2009.7.20 ~2011.2.13	
9	"	"	김종구	1956.10. 2	2011.2.14 ~2012.12.31	
10	"	"	공영옥	1955. 4.15	2013.1.1 ~2014.6.30	
11	"	"	김남희	1964. 1. 5	2014.8.7 ~2015.6.30	
12	"	"	이정걸	1957. 4.19	2015.7.1. ~2016.6.30	

의 정 백 서 제10집

제6대 전반기

인 쇄 : 2016년 12월 일

발 행 : 2016년 12월 일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편집처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TEL : 052-241-8973

FAX : 052-241-8979

인쇄사 : 신정종합인쇄사(T.052-273-1070)
